

무향의 불향에서  
조선 4대 명필

# 자암 김구를 만나다

| 김충희 | 著 |



예산문화원

북항의 불항에서  
조선 4대 명필

# 자암 김구를 만나다

| 김충희 著 |



묵향의분향에서  
조선 4대 명필

# 자암 김구를 만나다

---

|          |                         |
|----------|-------------------------|
| 발행일      | 2014년 8월 31일            |
| 펴낸이      | 김시운                     |
| 지은이      | 김충희                     |
| 펴낸곳      | 예산문화원                   |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
| 전화       | 041) 333-2441, 335-2441 |
| 기획       | 박세진                     |
| 행정지원     | 김상희, 박지혜                |
| 디자인 · 인쇄 | 디자인톤(010-8524-0514)     |

---

© 김충희, 2014 예산문화원

ISBN 978-89-968223-9-4 03990

※ 이 책의 저작권은 예산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묵향의 분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  
지은이: 김충희, — 예산 : 예산문화원, 2014  
p. : cm

ISBN 978-89-968223-9-4 03990 : 비매품

김구(서예가:조선중기)[金絳]

명필[名筆]

서예가[書藝家]

640.911-KDC5

745.6199519-DDC21

CIP2014024039

북향의 불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



## 발 간 사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한줄기를 형성 하고 있는 예산, 시간의 흐름이 이제 1,100여 년의 역사의 물줄기를 품고 잉태되어 예산에서 용트름 하듯이 인수체의 자암 김구 선생(1488~1534, 신암면)이 초석을 놓으시고 초서의 아계 이산해 선생(1539~1609, 대술면), 동국진체의 옥동 이서 선생(1662~1723, 고덕면), 추사체의 추사 김정희 선생(1786~1856, 신암면)에 의해 충청남도 예산이 대한민국 서예의 본향으로서의 입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대 인수체라는 필법으로 단순한 글자의 새김을 넘어 대한민국 서예 예술로의 초석을 닦으신 자암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를 조사하여 예산 문화원에서 『묵향의 본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라는 자암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담은 서적을 발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본 책자는 그동안 자암 선생 자신의 작품이 중국상인들에게 팔려 나가는 것에 상심하여 스스로 절필하다시피 하시어 유작품이 많지 않아 추사선생님과 더불어 예산이 낳은 또 한분의 서성이 그들에 가려져 있음에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던 차에 자암기념사업회와 더불어 전국서예대전 및 학술 발표회, 유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충·효·예 삼합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예산의 자랑스런 선조의 발자취를 좀 더 조사하여 집대성해보자는 취지에 중지가 모아져 발간된 결정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암 선생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본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충청남도 예산이 대한민국 한류문화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묵향의 본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1,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많은 유형의 문화재와 더불어 서향이라는 무형의 문화재를 내포한 명실상부한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나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해 보며, 마지막으로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을 김충희 회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올리며, 많은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8월 31일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 축 간 사

예산출신 자암 김구(自菴 金絀, 1488~1534) 선생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귀중한 책자 『묵향의 본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료를 정리하느라 온 정성을 다하신 자암 기념사업회 김충희 회장님과 귀한 책자를 발간해 주신 예산문화원 김시운 원장님께 마음 깊은 경하를 드리고자 한다.

자암 김구 선생은 예산 출신으로 조선 4대 명필(안평대군(安平大君), 양사언(楊士彦), 한호(韓濩), 김구(金絀))의 한분으로 지목될 만큼 저명한 인물임에도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작업이 바로 이 책자로서 「묵향의 본향에서 조선 4대 명필」이라는 부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인수체’라는 필법으로 우리나라 서예예술의 초석을 닦으신 자암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를 정밀하게 찾아 집대성한 것이다. 자암의 글씨는 인수체라 불리는데, 그만의 독특한 서체로 왕희지 필법을 배웠지만 왕희지와는 다른 필법을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며 후인들이 그의 서체를 인수체라 한 것은 그가 서울 인수방(仁壽坊)에 살았기 때문이라 전한다.

저자는 자암의 문집과 전승되는 유물, 조선왕조실록 등의 원전 사료, 그리고 세인의 자암에 대한 평들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자인 내가 보아도 그 전문적 식견과 자상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도 이 책이 예산과 자암의 인연, 자암 김구의 생애, 그리고 인수체로 대변되는 서예사와 자암을 이해하는 가장 고귀한 책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예산문화원은 이와 더불어 전국서예대전 및 학술발표회, 유품전시회 등을 자암기념사업회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추사 김정희로 대표되던 예산 고을에서 묵향의 전통과 예술이 되살아나는 또 하나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묵향의 본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를 발간하신 예산문화원과 자암기념사업회의 문화 사랑과 정열에 경하를 드린다.

2014년 8월 31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이 해 준

## 머 리 말

자암(自菴) 김구(金絿) 선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충청남도과 예산군 그리고 예산문화원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암 김구는 묵향의 개기(開基)를 열어놓은 시조격(始祖格)의 인물로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의 한 분이시며 조선고유의 서체인 인수체(仁壽體)를 창시한 충남 예산 출신의 명현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16대조이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비롯한 문중 어른들한테 자암, 자암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때는 자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2008년 신암 면지 발간을 계기로 자암 김구가 면지에 수록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범(白凡)김구(金九)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후손된 한 사람으로 송구하고 안타까워,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자암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선생을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다 하였습니다.

문중 일가 어른들을 수 없이 방문하고 종손을 설득에 설득을 거듭 하여 각서까지 써 주면서 선생의 유품 40여 점을 수집하여 충남역사박물관에 기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제1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및 자암 김구 학술발표회, 자암 유품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생 외 4대 명필(안평대군 이용·봉래 양사언·석봉 한호)을 비롯한 선현들에 관한 학술대회 및 기타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자암 김구 선생에 관한 책자나 논문, 학술대회 등은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예산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책자를 발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동안 전해 들은 이야기와 광산김씨 사온직장공파 보, 외 흠어져있던 자암 김구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 한 권에 써 보았습니다. 혹여 저의 부족함으로 오류나 오역이 있을 것이니 이 책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쓸 기회가 오면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충·효·예, 모두를 실천한 자암 선생의 올곧은 선비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여 오늘을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자암(自菴) 김구(金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암기념사업회 회장 김 충 희

## 자암 김구 선생 관련 유품

---



### 조선위원화초석산수매죽일월연 | 朝鮮渭原花草石山水梅竹日月硯

16세기 초 / 32.5cm × 20.7cm × 2.5cm

중종中宗이 자암 선생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는 벼루로 연지硯池는 달을, 연당硯堂은 해를 표현한 일월연이다. 재질은 평안북도 위원군 압록강 수중에서 채집된 위원화초석渭原花草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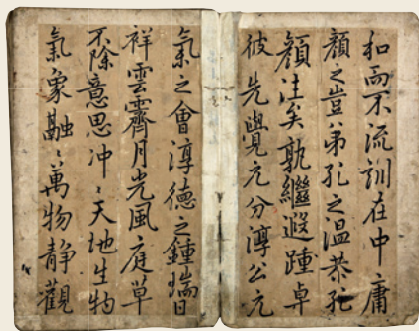
벼루의 문양은 당시 사람의 취향이 새겨져 있다. 선비들의 절개를 표현한 매화와 대나무, 솔개에 쫓기는 두 마리의 기러기는 기묘사화에 연루된 긴장된 상황을 잘 표현 하였다. 산수운문은 대자연을 동경한 노장사상에 대한 염원을 말하였고, 오리는 자맥질하여 한 마리의 고기를 물고 있다. 두루미 한 쌍은 정답게 즐기고, 외로운 수달은 구경만할 뿐이다. 역시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신선의 귀를 섬세한 선묘로 표현하고, 수달의 손질된 털의 표현기법은 매우 섬세하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 ※자암 선생 용연명

나의 친구 김두룡 광서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종조 자암공이 중묘조 때 난파에서 속직으로 글을 읽자 왕이 글소리를 듣고 소환을 데리고 친히 거동하여 종용한 배주로써 예우함이 우악하였다. 인하여 어안위에 있는 반룡연을 하사했는데 버루의 크기가 거의 한자로써 오채가 영롱하고 무늬 높은 비단같은 운무가 그림처럼 착락하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보물이다. 그 뒤에 북문의 화로 여러 명류의 박해가 미치게 되자 공이 남해로 귀양 갈 때 이 버루를 그 아우 영평공에게 주었으니 곧 나의 5대조이다. 이때부터 버루가 내 집의 세전하는 물건이 되었더니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 지키지 못하여 타인에게 넘어간 지라 내가 적이 슬퍼하여 그 값을 주고 찾아와서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것이 그 실적으로써 민멸 시킬 수 없으즉 자네가 명을 지어주게” 라고 하였다. 내가 광서의 말을 듣고 자연이 개용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암공의 청명직절이 장세에 우뚝 높아 그 유풍과 여운이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킨지라 백대아래에 진실로 공의 향기와 혜택을 받은 것이 비록 끊어지고 부러진 간필이라도 오히려 보배스럽거던 하물며 이 버루야 말로 가빈의 기이한 보물로써 그 유래가 더욱 귀중한 것이라. 문자의 흠이 왕이 준 물건이 아니로되 감당에 비유하였거늘 하물며 이 버루는 오히려 어로의 천향을 지닌 것이라. 왕씨의 선조에 자암 같은 어진이가 없어도 오히려 청전을 귀하게 여겼거던 하물며 이 버루는 일찍이 군자의 문방에 비치하였던 것이라. 그 뒤에 또 광서 같은 자가 있어 학문을 심고 문장을 짜아 그 가성을 계승하여 버루가 여러 번 풍상을 겪었다가 다시 광서한테 돌아왔으즉 그 전한 것이 오래되고 먼 것이니 어찌 흠과 청전에 비할손가 옛날 사마공의 필량이 또한 치평시대 가운데에 하사한 물건으로 남한 장부자가 명을 했으니 이 버루가 주저한지가 오래였더니 광서가 청하기를 굳이 하므로 감히 사양을 못하고 명하노니 명에 이르기를, 단계의 정교함이요 문방의 보배로써 옛날 중종임금이 명신에게 하사하였네 명신은 그 누구인가 자암김공으로 공이 옥당에 있을 때 군신의 잘 어울린 계분이 밝고 화하였네 공의 명절은 가을 하늘의 해와 별같고 문장 또한 강물과 우리와 번개와 같았도다 버루가 공의 소유된 것은 천고의 기우로써 정과 덕이 합쳐서 한묵의 좋은 벼이 되었네 공이 남쪽으로 내치어 귀양 갈 때 아우에게 주어 열겁이나 싸서 보장하여 후인에게 전해 주었네 여러 대를 지나는 동안 위부의 감추운 술잔 같았더니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평천의 화석같이 옮겨졌는가 다행히 현손이 있어 아주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며 관전에 의뢰하지 않고 빨리 옛날 물건을 되돌려 찾아왔네 내가 광서에게 이르노니 자네의 뜻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물건의 보배로운 것은 사람을 인하여야 이에 귀중한 것일세 자암이 있지 않으면 누가 이 버루를 보배로 알으랴 버루가 지금 자네에게 돌아왔으니 자네가 더욱 힘써 바일세 내가 “광서”에게 이 버루를 잘 보장하라고 축하하노니 때로써 현양하여 크게 가성을 드러내어 밝히게 되면 전후로 빛이 나서 버루도 또한 영광스러우리니 내가 자네 친구가 되어 이렇게 명을 지어주네.

가선대부이조참판 곡산 한덕후 근명(嘉善大夫吏曹參判 谷山 韓德厚 謹銘)

《광산김씨사 1권 346~347》



## 자암서법 | 自菴書法

16세기 추정 / 1첩 / 필본 / 33cm × 21cm

자암 선생의 해서 친필로 화명과銘을 적은 것이다. 화명은 원元の 유학자 오초려吳草廬의 저작으로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에도 실려 있다.

화명의 본문인 “和而不流. 訓在中庸. 顏之豈. 弟. 孔之溫恭. 孔顏注矣. 孰繼遐踵. 卓彼先覺. 元分淳公. 元氣之會. 淳德之鍾. 瑞日祥雲. 霽月光風. 庭草不除. 意思冲冲. 天地生物. 氣象融融. 萬物靜觀. 境與天通. 四時佳興. 樂與人同. 混若圭角. 春然心胃. 如玉之潤. 如酒之醴. 晬面盎背. 辭色雍容. 待人接物. 德量含洪. 和粹之氣. 涵養之功. 敢以此語. 佩于厥躬”을 한 장에 쓴 것을 가위로 오려 전첩본으로 만들었다.

낙관은 다른 곳에서 오려 붙인 것으로 자암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암이 ‘蹤’자를 쓴 것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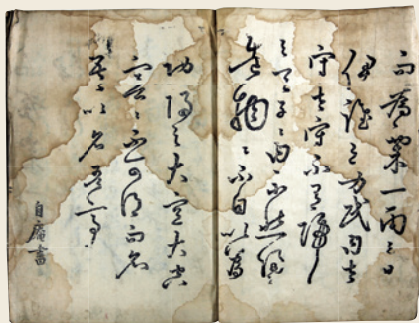


## 자암서법 난정체 | 自菴書法 蘭亭休

16세기 추정 / 1첩 / 목판본 / 51.7cm × 27.3cm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왕희지王羲之(307~365년)의 「난정집서蘭亭集序」를 자암선생이 임서臨書한 대자 글씨이다. 목판으로 만들어 인출한 것이다. 비록 낙관이 없는 임서이지만 자암 서체의 특징인 필획 굵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필획은 그의 필적임을 말해준다.

자암선생은 왕희지체를 익혀 인수체를 완성한 명필이다. 인수체는 왕희지필법을 배웠지만 왕희지와는 다른 필법을 완성한 서체로 그만의 특징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후인들이 인수체라고 한 것이다. 같은 글씨를 공부하더라도 필자의 성정性情에 따라 각자 다른 특징적인 필획과 결구로 표현된다. 이 필첩은 인수체의 발생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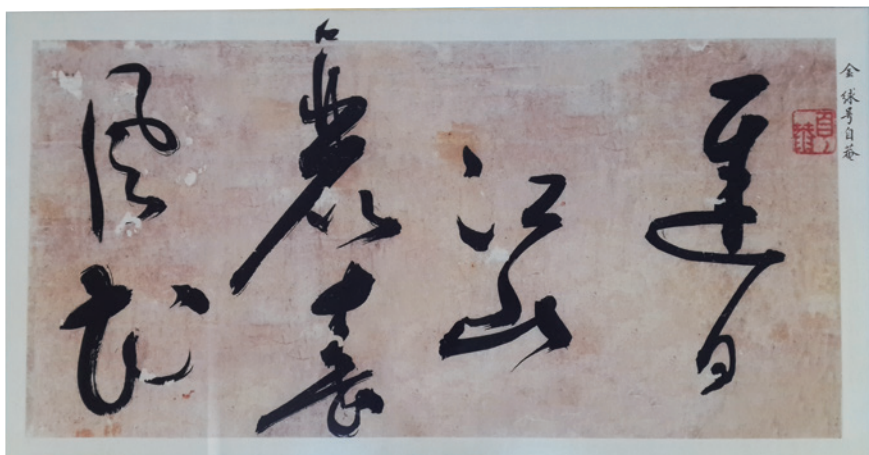


## 희우정기 | 喜雨亭記

16세기 추정 / 1첩 / 목판본 / 40cm × 28.5cm

이 필첩은 당唐 소식蘇軾의 「희우정기」를 초서草書로 적은 것이다. 이는 다른 글씨와 달리 작품화한 것을 목판으로 인출한 것이다. 그리고 「희우정기」는 유일하게 자암 선생의 낙관落款이 있다. 다만 이는 후대後洛으로 해서楷書로 낙관하였다.

「희우정기」는 단순한 필사의 개념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개념으로 서사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글씨와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의 필획과 결구, 그리고 장법까지도 완전하게 살필 수 있는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는 초서작품이다. 비록 목판본이지만 인수체의 초서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지일강산려 춘풍화 | 遲日江山麗 春風花

복제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암 김구 선생이 쓴 두보杜甫의 절구絶句 2수 가운데 일부로 초서 글씨 8자가 쓰여 있다. 이 큰 글씨의 초서는 힘이 넘치는 필획과 동감動感이 커 마치 춤을 추는 듯하며, 양쪽 화면의 글씨 배치와 여백의 효과는 균형과 긴장감을 함께 느끼게 해준다.

지일강산려 遲日江山麗 나른한 봄날에 강산이 아름답고  
 춘풍화초향 春風花草香 봄바람은 꽃향기 싣고 불어오네.  
 나옹비연자 泥融飛燕子 진흙이 녹으니 집지으려는 제비들 날아오고  
 사난수원양 砂暖睡鴛鴦 따뜻한 강모래에 원앙 한 쌍 잠들었구나.

## 홀 | 笏

16세기 추정 / 2점 / 상아 45.2cm, 목재 40.7cm

홀笏은 신하들이 왕을 뵈 때 손에 쥐는 일종의 메모장이다. 원래는 왕의 가르침이나 임금에게 올리려는 글을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단순한 의례용으로 제도화되었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든 홀을 들었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나무로 만든 홀을 들었다.

홀은 유물의 양식이 시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홀 자체만으로 시대구분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자암 문중 종손의 전언에 의하면 이 홀은 자암 선생이 직접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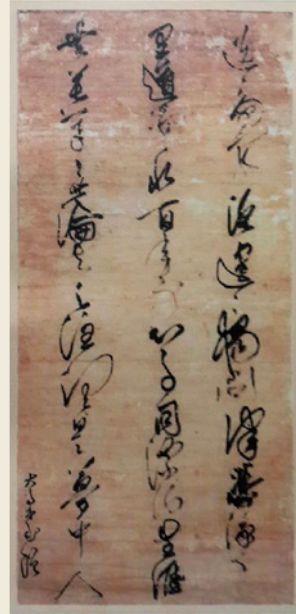


## 별설화 | 別薛華

복제본(중재유물전시관 소장)

자암 김구 선생이 왕발(王勃, 650~676년)의 이별시인 별설화別薛華 5언율시 1수를 쓴 것이다. 1519년(중종 14) 6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예조참판에서 삼척부사로 좌천되어 나가는 충재沖齋 권법權機에게 이별의 시로 써서 준 것이다. 이 시는 초서체로 세로 3행에 걸쳐 쓰고 좌측 하단에 '대유서증대柔書贈'이라 적었다. 필체가 호탕하다.

송송다궁로 送送多窮路    꺾이나 힘든 길로 그대를 보내고 나서  
황황독문진 遑遑獨問津    허둥지둥 홀로 나루에 가서 물어 보노라.  
비량천리도 悲涼千里道    슬픈 천릿길에 애끓는 사람 마음이나  
처단백년신 悵斷百年身    기껏 백년인 몸 슬픔으로 애간장은 끊어지는 듯  
심사동표박 心事同漂泊    마음은 일과 떠돌기를 함께 하니  
생애공고신 生涯共苦辛    평생토록 함께 고생만 하는구나.  
무론거여주 無論去與住    가고 머무는 것 따위야 논하지 말거나  
구시몽중인 俱是夢中人    모두가 꿈속의 사람이니.



## 치제문 | 致祭文

1714년(숙종 40)\_강희康熙 53년 / 54cm × 77cm

1714년 10월 9일 부제하 증이조참판 김구 선생의 기일忌日을 맞이하여 국왕 숙종이 예조정랑 박사동朴師東에게 제문祭文을 보낸 것이다. 치제致祭란 국가에서 왕족王族이나 대신大臣,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갖추어 지내주는 제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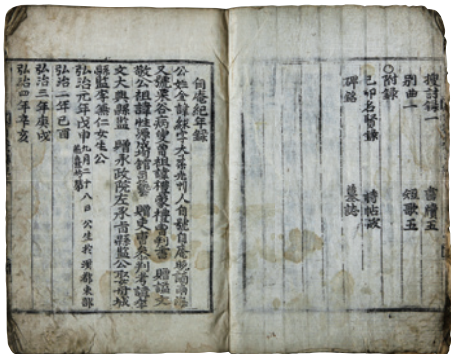
1714년은 자암 선생을 배향한 덕잠서원이 사액賜額을 받은 해로 이를 기념하여 국왕 숙종이 치제한 것으로 보인다.

## 증시교지 | 贈誼教旨

1747년(영조 23)\_건륭乾隆 12년 / 61.5cm × 71.5cm

영조임금이 자암 선생에게 시호를 내린 교지이다. 시호諡號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나라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문의文懿'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문文은 '도덕박문道德博聞'알,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그 도리를 체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無不知는 뜻이고, 의懿는 '온유성선溫柔性善'알, 즉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천성이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1746년 영의정 김재로가 기묘명현 가운데 학문과 명절이 특이한 분들에 대한 증직과 증시를 청하자 국왕이 허락한 것이다.



## 자암집 | 自菴集

1659년 추정 / 2권 1책 / 목판본 / 30.3cm × 20.9cm

자암 김구 선생의 시문집이다. 자암 선생은 원래 필력筆力이 강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나 뒤에 절필絶筆하여 전하는 것이 적었다고 하며, 여기에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다수가 소실되었다. 그 후 외증손 外曾孫인 순양부원군順陽府院君 안몽운安夢尹이 흠여저있던 문헌을 모아 편집하여 보관하던 것을 몽운夢尹의 아들인 현령 응창應昌이 연보年譜와 묘지墓誌 등을 찬술撰述·합편合編하여 1659년(효종 10)에 의성義城에서 간행하였다.

자암집 권1에는 시詩, 권2에는 부賦, 표表, 송頌, 책策, 의疑, 옥중상소獄中上疏, 망운산기우문望雲山祈雨文, 묘갈음기墓碣陰記 및 왜구수토록倭寇搜討錄, 서書, 별곡別曲, 단가短歌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으로 안응창의 발문跋文이 있다.

附錄金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金先生謫居遺稿卷之八  
 鳴呼其言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種出字是也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可以省 先生之澤人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懷傷之不 先生之澤人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事以圖其不朽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皆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詳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詩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北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此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院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事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人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學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清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學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時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十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中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特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斯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七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而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付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崔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自卷此金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金先生謫居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鳴呼其言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種出字是也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可以省 先生之澤人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懷傷之不 先生之澤人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事以圖其不朽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皆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詳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詩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北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此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院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事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人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學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清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學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時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十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中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特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斯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七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而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付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崔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先生遺稿卷之八

##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문 | 自菴金先生謫居遺墟追慕碑文

1705년(숙종 31) · 승정기원후 78년 / 37.5cm × 88.5cm

자암 김구 선생의 6대손인 김만상金萬相이 남해현령으로 부임한 이듬해인 1705년(숙종 31)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자암 선생을 추모하기 하기 위해 당시 유배지의 옛터에 세운 추모비의 초본 문서 2장이다. 이 중 1장은 추모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만상은 1704년 9월 4일 남해현령에 제수되었고, 1711년 사헌부 감찰, 1712년 박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김만상에 대해 “정사를 행함에 강직하고 명석하였으며, 백성들을 지성으로 잘 돌보고, 관청의 곡식을 고르게 나누어 주어 백성들에게 명성이 자자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 | 自菴金先生謫廬遺墟追慕碑

유명조선국 중 가선대부 이조참판 행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

아! 이곳은 나의 선조이신 자암 선생께서 귀양살이 하시던 고을이다. 선생의 6대손인 내가 이 고을에 수령으로 와서 처음으로 선생의 유지를 찾았다. 고을 사람이 그 곳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생의 음덕이 이곳 사람들 마음속 깊이 스며 있음을 알았으며, 이미 그 여기 저기 돌아보며 사모함과 존경스러움과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현인 군자들이 지나거나 머물러 사시던 곳이라면 그러한 사실들을 밝게 드러내어 영원히 잊지 않게 하는 법이거늘, 불초 자손이 여기에 와서 어찌 선생의 유적을 돌보지 않아 그 자취가 길이 전하지 않도록 하겠는가.’고 여겼다.

그러므로 임피의 적소나 예산 고향땅에 모두 선생의 서원이 있으니, 이곳에도 반드시 비석에 새겨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선생의 휘는 구요, 자는 대유이니, 본관은 광주이다. 타고 나면서 특이한 자질이 있어 6세 때에 석류에 관한 시를 지었는데, 그 뜻이 기이하여 모든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리고 16세에는 한성에서 장원을 하였다. 약관인 20세에는 생원시와 진사사에서 모두 급제하니, 시험관이 선생의 지은 시에 쓰기를, ‘한퇴지(한유)의 작법이요, 왕희지(의 필체이다)’라고 하고는 놀라워하였다. 26세 때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니 괴원(槐院 승무원)을 거쳐 홍문관의 정자, 저작박사가 되었다. 그리고 수찬, 교리를 역임하고 이조의 좌랑과 정랑을 거쳐 사간원 사간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홍문관에 들어가 응교, 전한, 직제학을 지냈다. 사가호당(조선조 때 인재를 기르고 문풍을 떨칠 목적으로 양반 관료, 지식인 가운데 총명하고 젊은 문신들을 뽑아 여가를 주고 국비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하던 제도) 하였으며, 이어 동부승지로 승직되었다가 부제학으로 옮겨 임명되었다. 일찍이 달 밝은 밤 옥당에서 숙직을 하며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종종 임금께서 달빛을 따라 술을 가지고 친림하셨다. 임금께서는 선생의 책 읽는 청아한 소리에 이끌려 시가를 읊게 하신 다음 선생에게 담비 가죽을 내려 용숭히 대우하셨으니, 이 일은 실로 고금에 드문 일이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조정암, 김충암과 함께 도의로써 사귀었다. 서로 협심하고 도와서 요순시절과 같은 새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시운이 불행하여 기묘사화가 일어나 이 땅에 귀양 오지게 되었다. 일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겁내었으나 정작 선생은 화복을 개의치 않았고 대나무 숲에 작은 집을 지어 놓고 술을 즐기며 한가로이 지내었다. 13년 만에 다시 임피로 귀양지를 옮겼다가, 계사년(중종 28, 1533년)에 풀려났고, 이듬해 갑오년에 복관되었다. 유배 중에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였으므로 슬픔이 지나쳐 마침내 송추(松楸)에 돌아와 추복(追服)하고 시묘살이를 하면서 조석으로 통곡하니, 눈물이 초목을 적서 다 말라 죽었다. 선생은 홍치 무인년(성종 19, 1488년)에 태어나시고, 가정 갑오년(성종 29, 1534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때의 나이는 47세였다. 만력 신묘년(선조 27년, 1591년)에 이조 참판으로 추증되었으니, 종계문무 때의 공로 때문이었다. 아! 선생의 도덕과 문장은 그의 행장에 쓰여 있고, 또한 국사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히 속일 것이 없으므로 불초 후손이 짧은 소견을 보낼 것이 없겠다. 이제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188년 만에 이곳에다 비석을 세우게 되니, 이 어찌 우러러 사모함이 나 혼자만의 사사로운 정이겠는가. 장차 멀고 외딴 시골 사람들도 추모하고 분발하여 선생의 유적이 이 곳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노라. 승정 기원 후 79년(숙종 32, 1706년) 병술년 3월 에 6대손 통훈대부 행 남해현령 만상은 쓰고, 후안(後安)통훈대부 전 행 사헌부 장령 김만주는 삼가 전액(篆額)하다.

김구가 유배지인 남해 땅을 떠난 지 173년 후인 1704년(숙종 30)에 육대 후손 김만상이 남해현령으로 와서 조상의 흔적을 찾아보니 찾을 길이 없고, 향인에게 수소문하여 옛 터를 찾아 1706년(숙종 32)에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를 세우고 김구가 향인과 교류했던 서당 터에 죽림서원을 세워 자암 김구의 일을 길이 새길 수 있도록 배향하였다.



## 남해적려유허비

자암 선생의 6대손인 김만상이 남해 현령시 공의 6대조인 자암 선생이 귀양 가서 살던 집터를 찾을 때 읍인들이 그 곳을 알려 주어 그 유적을 후세에 전하고자 자암선생적려유허비문을 지었다.



##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문 | 自菴金先生謫廬遺墟追慕碑文

18세기 이후 / 탁본첩 / 41cm × 24.8cm

1706년(숙종 32) 경상도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자암 김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그 옛터에 세운 추모비를 탁본하여 첩으로 만든 것이다. 김만화金萬和가 비문을 짓고, 자암 선생의 6대손인 남해현령 김만상金萬相이 쓰고, 김만주金萬冑가 전액篆額하였다.

탁본첩의 끝부분에는 자암 선생이 충재 권벌 선생에게 써준 이별시인 5언율시 '별설화別薛華'의 목판본 글씨가 있다.



묘비 전면



묘비 후면

## 김구 묘비 | 金絨 墓碑

1640년에 충청남도 예산에 건립된 김구 선생의 묘비 탁본이다. 자암自菴 김구(金絨, 1488~1534년) 선생은 중종 때의 문신이다. 1511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직제학으로 있다가 기묘사화(1519년)에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과 연루되어 귀양 갔으며 15년 만에 석방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병사하였다.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여 조광조, 김식金湜과 비길 만했다고 하며 음률에도 능통하였다. 특히 글씨에 뛰어나 안평대군, 양사언, 한호(석봉) 등과 함께 조선 전기 4대 서예가로 꼽힌다. 선조 때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성균관 대사성 김세렴이 비문을 지었다.



## 김계문 묘비 | 金季文 墓碑

자암 김구의 부친인 대흥공 김계문金季文의 묘비이다. 김계문의 자는 자미子美, 본은 광산으로 성균관 成均館 사예司藝 김성원金性源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에 식년시 생원 3등 7위에 임격하였고, 대흥현감으로 치적을 남겼고, 중종반정 공신으로 승지를 증직 받았다. 묘소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중경리에 있다. 김계문이 대흥현감으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후손들은 이 고장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묘비 전면



묘비 후면

## 이겸인 묘비 | 李兼仁 墓碑

단성현감丹城縣監 이겸인(李兼仁, 1412~1476년)의 묘비문墓碑文 탁본이다.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자암自庵 김구金絿 선생이 해서楷書로 212글자를 써서 1515년 예산현禮山縣 종경宗敬[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중경리]에 세운 것이다. 김구는 이겸인의 외손자外孫子로서 이겸인의 사위인 김계문金季文의 아들이다.

비문은 글자의 짜임을 위아래로 길쭉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납작한 짜임의 송설체와는 다른 외양을 이루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고, 군데군데 왕희지 행서풍을 가미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묘비 전면



묘비 후면

# 덕잠서원 관련 유품



## 덕잠서원 사액 현판 | 德岑書院 賜額 懸板

1714년(숙종 40) / 판각복각 / 32.5cm × 113.4cm

덕잠서원의 현판으로 1714년(숙종 40) 사액 받을 당시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평으로 거는 횡액橫額이며, 글자를 양각으로 판각한 뒤 바탕은 검은색, 글자에는 흰색을 칠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판의 테는 남아있지 않으나 테를 고정시켰던 나무못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충식蟲食 현상이 보이며 진행 중이다. 현판의 앞면에는 황토로 보이는 흙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 충청도예산현자암김선생건원사적 | 忠淸道禮山縣自菴先生建院事蹟

18세기 추정 / 1책 / 필사본 / 24cm × 23cm

덕잠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관계된 문서를 등서謄書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1703년(숙종 42) 덕잠서원의 창건에 대해 예산의 유생들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정문문文과 감사의 제사題辭, 청건소請建疏, 복개復啓, 1703년 12월의 서원 상량문上樑文, 1705년 1월의 봉안제문奉安祭文, 춘추제문春秋祭文, 동년 8월의 청액소請額疏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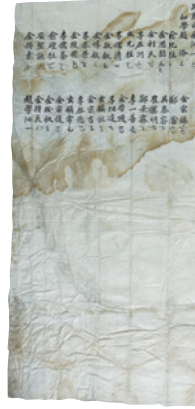


## 첩정 | 牒呈

1802년(순조 2) / 덕잠서원 유생 / 덕잠서원 원장 / 102cm × 60cm

덕잠서원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 별유사別有司 등 35명의 덕잠서원 유생이 당시 서원 원장이었던 풍고楓臯 김조순(金祖淳, 1765~1832년)에게 올린 문서이다.

정암 조광조와, 충암 김정을 모시는 서원은 모두 중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직 자암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은 중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건물이 모두 쇠락하였으니 원장께서 서원의 중수에 힘써달라는 내용이다. 이후 덕잠서원은 1803년에 사당부터 중수에 들어가 1813년 중수를 마치게 되었다.



## 첩정 | 牒呈

1862년(철종 13) / 덕잠서원 유생 / 예산현감 / 78cm × 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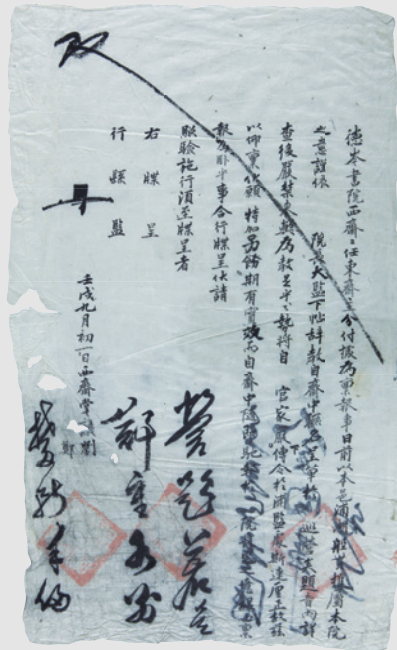
덕잠서원 유생 조재趙在俊 등 12명이 1862년 8월 15일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예산현의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은 본래 덕잠서원에서 거둬들여 사용하던 것인데 근래 아산의 도산사道山祠에서 불법으로 가로채고 있으니 세금의 수취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 첩정 |牒呈

1862년(철종 12)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78cm × 58cm

덕잠서원 서재西齋 장의掌議인 유瀏, 정鄭 2명이 1862년 9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관찰사, 원장대감의 처분이 있었으니 포감浦監에게 영을 전하여 이를 속히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 포감浦監: 포구의 감독과 감시를 수행하는 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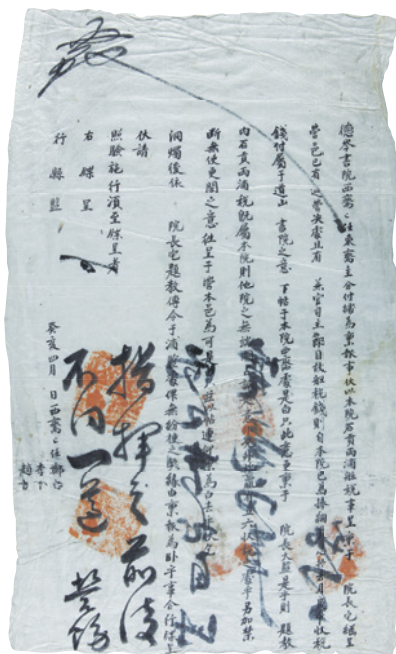


## 첩정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유생 / 덕잠서원 원장 / 89cm × 58cm

덕잠서원 유생 조재준趙在俊 등 12명이 1863년 3월 당시 덕잠서원의 원장인 김좌근(金佐根, 1797~1869년) 대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지난해에 현감과 관찰사에게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를 신창의 도산사로부터 돌려받기를 청하는 문서를 올려 이에 허락을 받았음에도 도산사道山祠에서 백 년 동안 수취해오던 것을 근거 없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해 원장에게 힘을 써주길 청원하는 문서이다.



##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3cm × 38cm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4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예산현감, 충청도관찰사, 원장대감의 제음[데김]이 있었음에도 5~6곳에서 다시 수세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폐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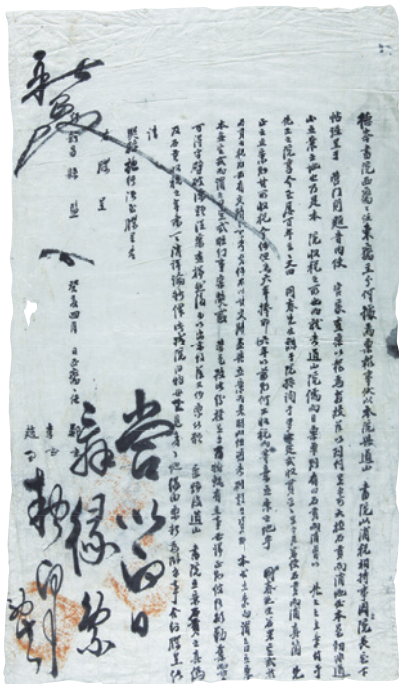
## 첩정 | 牒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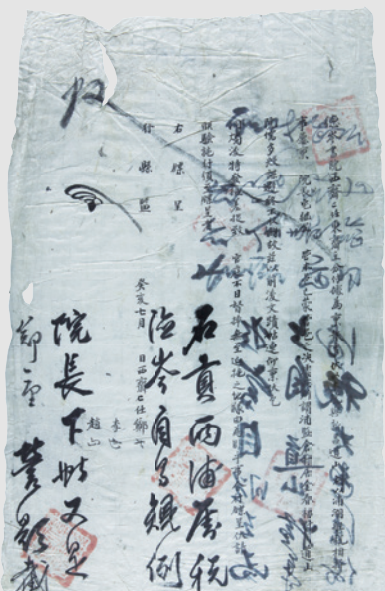
1863년(철종 14) / 덕잠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4cm × 37cm

덕잠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4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잠서원에 돌려주라는 예산현감, 충청도관찰사 원장대감의 제음[데김]이 있음에도 도산서원은 입안立案에 기재된 석포石浦 공호貢湖의 수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므로 이 입안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내용이다.

\* 입안立案 :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준 문서로 요즘의 등기登記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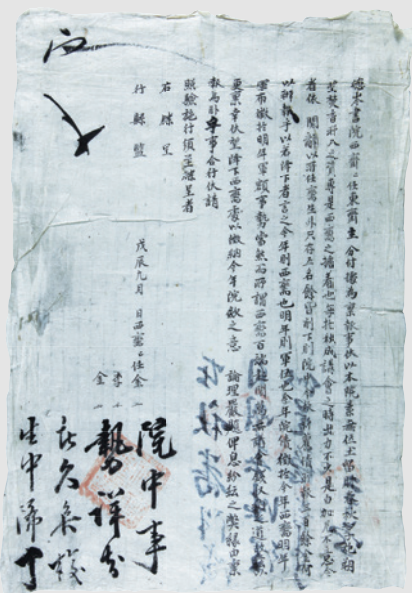


## 첩정 | 牒呈

1863년(철종 14) / 덕암서원 서재 재임 / 예산현감 / 63cm × 38cm

덕암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정鄭, 이李, 조趙 3명이 1863년 7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석포와 공호의 선세 수취를 덕암서원에 돌려주라는 현감, 관찰사의 판결이 있는 후에도 포감浦監인 창촌倉村에 사는 김춘복金春福이 도산사의 유생들과 한통속으로 모의하여 수납하지 않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 첩정 | 牒呈

1868년(고종 5) / 덕암서원 재임 / 예산현감 / 54cm × 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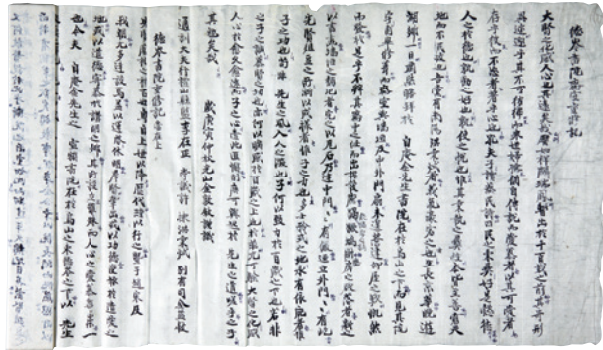
덕암서원 서재西齋 재임齋任인 김金, 이李, 김金 3명이 1868년 9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덕암서원은 토지와 재산이 거의 없어 춘추제와 삭망분향 제사도 서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00여 금의 재무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이다.



## 덕잠서원중수기 | 德岑書院重修記

19세기 추정 / 필사본 / 27cm × 145.5cm

3편의 덕잠서원 중수기를 연이어 필사해 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덕잠서원재실중수기德岑書院齋室重修記」로 1830년 김돈서金敦敍가 쓰고 예산현감 이재정李在正, 장의 허간許揀·홍병식洪秉弼, 별유사 김익서金益敍가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덕잠서원중수기德岑書院重修記」로 1826년 역시 김돈서가 쓰고 예산현감 이명하李溟夏, 장의 조문원趙文源·김익서金益敍, 별유사 김종복金宗復이 참여하였다. 마지막 「덕잠서원중수기德岑書院重修記」는 1856년 이장찬李章贊이 쓰고 예산현감 홍훈모洪薰謀, 장의 성맹환成孟煥·김현오金顯五, 본손 김달수가 참여하였다.



## 자암김선생서원유허비 | 自菴金先生書院遺墟碑

1942년 / 임한주 / 필사본 / 33.5cm × 59cm

덕잠서원 유허비의 비문 원본이다. 자암 김구 선생을 모신 덕잠서원은 1705년(숙종 31)에 세워졌다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된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42년 자암 선생의 후손들은 이곳에 자암 선생을 모셨던 서원이 있었던 곳이라는 유허비를 세우기 위해 성헌 임한주(林翰周, 1871~1954년)에게 글을 부탁한다. 임한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항일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충청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유림이었다.



# 후손 및 기타 소장 유물



## 묘위전 명문 | 墓位田 明文

1697년(숙종 23) / 필사본 / 46cm × 90cm

자암 김구 선생의 6대 종손인 김한상에게 내린 묘위전墓位田 상속에 관련한 명문明文이다. 문서에 기록된 전답과 노비는 대흥공大興公 조부모, 자암공自菴公 조부모, 옥천공沃川公 조부모, 지평공持平公 조부모 4대의 한식寒食 제사와 가을 10월에 설행되는 제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자손들이 다룰 때에는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는 내용이다. 문서의 말미에 증인과 집필자의 성명과 수결[서명]이 있다.

## 상서 | 上書

1862년(철종 13) / 덕잠서원 유생 / 충청도관찰사 / 90cm × 55cm

덕잠서원 유생 조재준趙在俊 등 12명이 1862년 8월 하순에 충청도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예산현의 석포石浦와 공호貢湖의 선세船貰는 본래 조정에서 덕잠서원에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라고 내려준 것인데 서원이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몰락하면서 구구가 사라지고 징협할 문서가 없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근래 예산현이 아닌 아산의 도산사道山祠에서 월경하여 선세를 불법으로 가로채고 있으니 세금의 수취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같은 달 먼저 예산현감에게 청정문서를 올린 뒤에도 도산사에서 수취권을 돌려주지 않자 다시 충청도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 상서 | 上書

1865년(고종 2) / 덕잠서원 유생 / 예산현감 / 78cm × 55cm

덕잠서원 유생 신태환辛德煥 등 27인이 1865년 8월 예산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서원의 원장인 김좌근 대감이 서원의 부채를 갚으라고 준 200금을 음에 거주하는 이두영李斗英에게 담보를 받고 일시 빌려주었으나 담보의 시기時價가 원금에 미치지 못하니 이두영 소유의 말馬까지 함께 서원에서 팔아 채무를 갚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북향의 분향에서  
조선 4대 명필

# 자암 김구를 만나다

---

## 목차 | Contents

|                                                    |     |
|----------------------------------------------------|-----|
| 1장 _ 자암 김구                                         | 33  |
| 1. 김구의 가문                                          | 38  |
| 2. 예산의 명현 자암 김구                                    | 41  |
| 2장 _ 자암의 문학                                        | 42  |
| 1. 화전별곡                                            | 43  |
| 2. 자암집 제1권                                         | 45  |
| 시조 · 단가(時調 · 短歌)                                   |     |
| 3. 자암집 제2권                                         | 67  |
| 부(賦), 표(表), 책(策), 소(疏), 문(文), 갈기(碣記), 수토록(搜討錄), 편지 |     |
| 4. 자암 선생문집 서문(정두경)                                 | 99  |
| 5. 자암 김선생집 서문(안응창)                                 | 101 |
| 6. 자암의 시첩에 쓰다(윤근수)                                 | 102 |
| 3장 _ 인수체                                           | 104 |

---

|                     |     |
|---------------------|-----|
| 4장 _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 107 |
| 5장 _ 덕잠서원           | 111 |
| 6장 _ 묘비             | 122 |
| 1. 자암 김선생 묘지(안응창)   | 129 |
| 7장 _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 132 |
| 자암기년록               | 300 |
| 참고문헌                |     |





## 자암 김구

자암 김구는(성종 18~중종 29, 1488~1534년) 안평대군이용, 한호식봉, 봉래양사언과 더불어 조선 초기 4대 서예가 중 한분으로 인수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남겼다. 정암조광조, 충암김정 등 사림들과 함께 도학정치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다 홍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훈구파의 “주초위왕”(조광조가왕이된다)의 계략에 말려 기묘사화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32세에 1519년(중종 14) 11월 16일에 유배 되었다. 처음 개령(경북김천)으로 귀양 갔다 남해로 옮겨 13년을 지내는 동안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다. 신묘년(1531년)에 임피(전북옥구)로 옮겨갔다가 계사년에 석방되어 예산으로 바빠 돌아가 부모의 무덤에 곡하고 추복을 입는 정을 펴고자 하며 아침저녁으로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 풀과 나무가 모두 말랐고 그로인하여 병을 얻어 1년 만에 죽으니 그의 나이 47세였다. 선조가 종계변무 때 자암 공이 지은 표문을 써서 명나라의 허락을 얻었다하여 특별히 이조참판에 추증하고 광국중훈에 기록했다.

다음은《연려실기술》의 기록이다.

“김구의 자는 대유이며, 호는 자암이요, 본관은 광산이다. 무신년(1488년)에 태어났으며, 예조판서 예몽의 증손이다. 16세에 한성시에 장원했고 정묘년에 생원시와 진사시 두 시험에서 모두 장원했으며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기묘사화 때 부제학으로서 개령으로 귀양 갔다가 남해로 옮겨 섬 속에서 13년을 지내는 동안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다. 신묘년(1531년)에 임피로 옮겨갔다가 계사년에 석방되자 예산으로 분주히 돌아가 부모의 무덤에 곡하고 추복을 입는 정을 펴고자 하며 조석으로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 있던 초목이 모두 말랐고, 인하여 병이 되어 1년 만에 죽으니, 나이 47세였다. 선조가 종계변무 때에 공이 지은 표문을 써서 명나라의 허락을 얻었다하여 특별히 이조 참판에 추증하고 광국중훈에 기록했다. 아들 균이 있었는데, 사마시에 장원했으나 일찍 죽었다.

김안국(성종 9 ~ 중종 38)은 젊었을 때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장원하였는데, 출발할 때에 한 사람이 양쪽에서 장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진사에는 2등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시관이 되어 김구가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장원을 하자, 여러 시관들이 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장원이 될 수 없다.”라니, 김안국이 분연히 말하기를, “왕희지의 필법과 한퇴지의 문장으로 무엇이 불가하겠는가.”하여, 드디어 양쪽의 장원이 되었다. 《기재잡기》

경진년(1520년) 봄에 공의 부인 김해 김씨가 한 마리의 말에 한 바리의 짐을 식도 5~6명을 데리고 공의 귀양지를 좇아갔다. 이때는 김식이 도망 중에 있어서 현상 수배가 날로 엄하여 길가에 나졸들이 늘어서 지키며 여행자는 모두 수색 검문하고서야 보내주었다. 경상 감사 반석평이 길가에서 한 부인 일행이 붙잡혀서 떠나지 못하고 길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캐물어 사정을 알고 측은하게 여겨 양식과 물건을, 또 영의 아전을 시켜 일행을 호송하도록 했다. 공은 드디어 죽림에 집을 짓고 살았다. 《당적보》

공의 문장은 기이하고 필력이 굳세며 위나라의 종유와 왕희지의 필법을 사모하였다. 일찍이 중국 사람이 자기 글씨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끊고 쓰지 않아서 필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당적보》

공은 기예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장악원정에 임명된 것도 음률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공의 행서는 볼만한 것이 없고 큰 글씨로 된 행서와 초서는 법도가 매우 훌륭하였으나, 필력은 둔하고 느렸다. 그러나 일찍이 유세모의 집에서 대폭 하나를 보니 뛰어난 솜씨여서, 그 또한 쉽게 말할 수 없다. 《원교필결》

공의 필법을 인수체라고 했는데, 이는 공이 인수방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명현록》

자암은 1507년(중종 2). 20세에 소과인 생원진사과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는데, 시험지의 답을 본 시험관이 말하기를 “한퇴지의 작법이요 왕희지의 서체”라 칭찬하였다. 한퇴지는 당나라의 문학자이다. 글이 자유롭고 논설을 전개하면서 사실을 기술하는 문체였다. 왕희지는 동진의 서예가인데 당태종이 왕희지를 존중하여 글씨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친필은 없고 탁본만 전하고 있다. 이토록 자암의 글을 보고 극찬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자암의 문체와 글씨가 독특하였을 뿐 아니라, 시문들을 볼 때 그때그때의 사실을 잘 묘사하였고 소재를 삼은 것 같다. 특히 자암의 서체를 서울 인수방에 살았다하여 인수체라 하는데

국내에서는 자암의 친필 작품은 보기가 어렵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공의 글씨를 보배로 여긴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글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의 필적이 세상에 드물고 자암 글씨를 좋아한 중국인들이 거의 수집해 갔다고 한다.

1513년(중종 8), 26세 때 별시 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승문부정자, 홍문박사, 이조좌랑, 교리, 사성 등을 지냈다.

구전에 의하면 어느 날 김구가 옥당에서 숙직을 하고 있을 때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뜻밖에 중종임금이 별감을 데리고 있으므로 앞드리니 중종이 이르기를 “달이 밝은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내 여길 왔으니 어찌 군신의 예가 필요 있으리오. 친구로서 서로 대함이 마땅하도다.” 하고 술을 함께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남해에 있는 자암김선생적려유허추모비 비문에도 “어느 달 밝은 밤 옥당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침 완월하리 뜰에 나와 있던 임금이 그 낭랑한 목소리에 매혹되어 주연을 함께 베풀었다. 선생은 즉석에서 임금께 노래 두수를 바치고 고금에 유례없이 돈피로 만든 갓옷을 하사 받은 은총을 입기도 하였다. 이렇게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틈틈이 독서를 즐기면서 작시 하였고 서예를 즐기는 문학가인 동시에 예술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때는 한가롭지 않았다.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연산군의 악정으로 무오·갑자사화가 일어났고 결국은 1506년에 중종반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연산군의 부친인 성종은 성군이였다. 성종에게 왕을 받은 맏아들 연산군은 성종의 후궁 정씨와 엄씨에 의해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가 내쫓겨 사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산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정씨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각도에 채홍사와 채청사를 파견하여 미녀와 양마를 징발하고 성군관을 유흥장으로, 경연과 사간원을 폐지하고 모친 윤씨 사사에 관련된 선비들을 학살하였다. 또한 국사인 원각사를 기생양성소로, 한글서적을 불태워 국문 쇠퇴를 초래하는 악정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자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느낀 지중추부사 박원종과 이조참판 성희안, 이조판서 유순정 등이 주동이 되어 연산군을 폐위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왕위를 계승케 하였다. 진성대군이

곧 중종이다. 이 때 자암 김구는 19세의 나이로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에 참여하고자 다음 해에 소과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한 것이다.

중종은 즉위하여 연산군의 악정으로 흐트러진 기강을 세우고 새로운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에 젊은 유신 조광조를 발탁하였고 조광조를 중심으로 유생들을 대거 등용한 후, 훈구세력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조광조는 유교로서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도학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을 시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첫째로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기 위해 소격서를 혁파하였고, 둘째, 과거제도인 현량과를 실시하여 소장학파를 등용한 후 요직에 안배하였다. 셋째, 중종반정으로 인한 정국공신이 많음을 비판하면서 공신 3/4에 해당하는 76명의 훈작을 삭탈하고 넷째, 군현에 있는 유향소를 축소하고 사람이 주역이 되어 여씨향약을 보급하였다.

이에 훈구파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이 비밀리에 중종을 만나 신진 세력과 조광조 등을 탄핵하기 시작하였다. 중종 역시 개혁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유림들의 급진 개혁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때였기에 훈구파들의 탄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홍경주는 딸인 희빈 홍씨를 시켜 나뭇잎에 ‘주초위왕(走肖爲王)’을 벌꿀로 써 벌레가 파먹게 한 후 이것을 중종에게 바쳐 조(趙, 走+肖)씨가 왕이 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고 홍경주는 위훈삭제를 개정하는 척 하면서 훈구파들과 규합하여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조광조의 왕도정치 실현은 물거품이 되고 이에 가담한 신진세력들은 대거 숙청당하게 되는데 이때 숙청된 인물들을 기묘명현이라 한다. 기묘명현록에 기록된 인물은 모두 2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묘명현록은 1565년(명종 20) 을축년에 중종 후손 이종균이 서문을 썼다.

아래는《기묘명현록》에 기록된 자암 김구의 내용이다.

김구 자는 대유, 호는 자암, 광산인이다. 정유년(중종 2, 1507년)에 생원진 사시에 장원급제하고 계유년(중종 8, 1513년)에 급제하였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 기묘사화를 당하여 충암(김정), 정암(조광조)과 같이 하옥되었다가 곤장을 맞고 개령으로 부처되었다. 다시 12월에 남해로 유배되었다. 죽림 속에 있는 집에서 적거생활을 하다가 신묘년(중종 26, 1531년) 11월에 임피로 유배지를

유했으나 계사년(중종 28, 1533년)에 풀려나 고향 예산으로 돌아와 부모 묘에 곡을 하고 시묘살이를 했다. 부모상은 남해 유배 때 당하여 슬픔이 더하였다. 조석으로 통곡을 하니 눈물이 초목을 적서 다 말라 죽었다. 공의 필력은 강건하여 종사들이 따랐고 왕은 소문을 들어서 화려한 필적을 알았으나 필적은 없고 죽은 이후에 드물게 세상에 전한다.

국조인물고(상)에도 위의 내용으로 비문에 새겨져 있다.

이름은 구요, 자는 대유이고 광산인으로 기묘선현에 전하며 자암 김선생이라 칭한다...중략...대신 정광필의 사상을 주장하다 전국 사방으로 분산되어 유배되었고 자암은 개령으로 부처되었다가 수개월 후에 죄가 추가되어 남해로 유배되었다. 정암과 충암도 죄가 가중하게 추가된 것은 애통한 일이다. 선비들은 충직의 길을 다하여 선정을 고집하였지만 부득이 학문이 쇠퇴하고 재앙이 내려 죽을 땅에 유배되었다...하략.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기묘록 보유 상권 김구 전에 배소를 개령에서 남해 절도로 옮기면서 일어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경진년 봄에 부인은 한 필의 말로 짐한 바리와 창두(종) 5~6명을 거느리고 공의 배소를 뒤 따라갔다. 이때는 김대성이 도망 중이라서 탐색이 엄중하였다. 갈림길을 지키는 군졸이 서로 바라보면서 수직할 정도이고 무릇 나그네가 있으면 모두 수검한 뒤에 보내었다. 경상감사 반석평이 길에서 여행하는 어떤 부인이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길가에 머물러 사정을 물어본 다음 민망하고 측은하게 여겨서 양식과 물품을 찾아 주고 또 하도로 가는 영리를 시켜 배행하게 하였다. 공은 드디어 죽림 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 김구가 남해 적소로 옮길 때 부인도 같이 왔고 김구가 거느릴 수 있는 하인도 5~6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1591년(선조 24) 가선대부 이조참판,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에 추증되었다.



## 김구의 가문

자암 김구는 광산인으로, 시조김홍광은 신라왕자로서 신라말기에 있어 중국에 장차 난리가 있을 것을 미리짐작 하고 왕자의 지위를 버린 채 이곳 광주 서일동(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동)에 은거 하였으니 김씨의 본관을 광산으로 함이 이로부터이다.

홍광의 아들 식으로부터 고려조에 평장사(현 장관급)가 여덟 분이 났으므로 동명을 평장동이라 하였다.

시조홍광의 17대손 영은 사온직장공과 파조 이고 고려 말에 사문서 의 직장(종7품)을 지냈으며 조선조에 공조참의(정3품)로 추증되었다. 자암공 아버지의 이름은 계문으로 대흥현감을 지냈는데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광김의 8문중에 한분이며, 광산김씨의 예산 입향조이다. 조부의 이름은 성원으로 성균관사예를 지냈는데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증조의 이름은 예몽으로 광김의 5몽중의 한 분으로 예조 판서를 지냈는데 시호는 문경공이다. 예몽을 비롯한 5몽(인몽, 의몽, 예몽, 지몽, 신몽)형제. 계문을 비롯한 8문(백문, 숙문, 계문, 윤문, 철문, 말문, 내문, 중문)형제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5몽8문 가문이라 불렀다. 자암공 어머니는 숙부인 전의이씨로 고려 때 태사를 지낸 이도의 후손이며 부친의 이름은 겸인으로 단성현감을 지냈다. 공(자암)께서 김해김씨 만호진현의 따님과 결혼하여 2남1녀를 두었는데 장남 용은 일찍 죽었고 둘째의 이름은 균인데 진사시험에 장원급제 하였다. 딸은 전력부위 이사항에게 시집을 갔다. 둘째 아들 균도 2남1녀를 두었는데 장남의 이름은 온으로 사간원헌납을 지냈다. 둘째의 이름은 갑으로 별좌를 지냈다. 효성이 지극하여 지평이 증직되었는데 용의 후손으로 출계했다.

딸은 순계군 안세복에게 시집을 갔다. 이사항은 아들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은 희용이고 직장을 지냈다. 장남 온은 2남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이름이 별로 만호를 지냈고 둘째 황은 통정군수를 지냈으며 딸은 윤경덕에게 시집을 갔다.

둘째아들 갑은 2남2녀를 두었는데 장남의 이름은 숙으로 덕산현감을 지냈고 둘째의 이름은 건으로 장사랑을 지냈으며 큰딸은 현령 이영의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딸은 첨지 이진형에게 시집을 갔다.

안세복은 4남3녀를 두었는데 장남의 이름은 몽익으로 생원을 지냈고 둘째 몽운은 순양군에 봉해졌으며 셋째몽척은 선무를 지냈고 넷째몽상은 통덕을 지냈다. 큰딸은 사인 신대인에게 둘째딸은 참봉 원사익에게 셋째딸은 주무 홍형에게 시집갔다. 이렇듯 안밖으로 증손과 현손이 백여 명에 이르렀다.

다음은 《광산김씨사온직장공파보》에 실린 내용이다.

자는 대유요 호는 자암이요 또 하나의 호는 율곡병수이다. 1488년(성종(무신)) 9월 28일에 낳았고 정묘년에 생원, 진사 두 시험에 장원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과 교리를 거쳐 이조정랑에 임명되고 사헌부헌납과 장악원정을 지내고 다시 응교와 전한과 예문관직제학을 거쳐 호당과 동부승지에 올랐고 부제학으로 옮겼다가 마침내 기묘사화를 당하여 조정암(조광조), 김충암(김정)과 함께 한곳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나 대신정광필이 힘써 구원함에 힘입어 각각 귀양 보냈는데 남해로 가서 13년을 살고 임피로 옮겨 2년 뒤에 풀리고 1534년(갑오) 11월 16일에 졸하니 향년이 47이요. 선조 조에 가선대부이조참판 겸 양관 제학에 추증 되었고 영조 조에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양관 대제학 지경연의 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빈객 오위도총관에 더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의공이니 도덕이 있고 학문이 박식함을 문이라 하는 것이요 온유하고 착한성품을 지닌 것을 의라 하는 것이다. 문집이 있어 세상에 알려졌고 해동명신록과 기묘록 및 국조필원에 사실이 나와 있다. 묘는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왼쪽 자좌에 있으니 대사성김세림이 묘갈명을 지었고 대제학 윤봉조가 시장을 지었으며 외손 사부 안응창이 묘지를 지었고 우암송시열이 서첩발문을 지었다. 예산덕잠서원, 임피봉암서원, 장단임강서원, 남해죽림서원 등 여러 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배위는 증정부인 김해김씨이니 아버지는 만호진현이요 할아버지는 통례귀통이다. 묘는 쌍분이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증조김예몽에 관한 내용이다.

#### ◎ 1469년(예종 1) 9월 18일(무술)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김예몽이 병 때문에 사직하였다. 김예몽은 젊

어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문사(文辭)에 풍치가 있고 아담하여 오랫동안 성균관을 맡아서 학자의 모범이 되었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서부터 병도 찾아왔으므로, 충주에 별서(別墅)를 짓고 거기에서 일생을 마치려는 뜻이 있어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 1469년(예종 1) 10월 18일(무진)

행 동지중추부사 김예몽이 졸(卒)하니, 1일간 철조(輟朝)하고, 조문을 하고, 부의하고 전(奠)을 올렸다. 사부(詞賦)에도 공교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뽑혀서 들어가고, 여러 조정을 대대로 섬겨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일찍이 성균사성을 겸하니, 매양 제생(諸生)의 제술(製述)을 가려서 시험하여 우등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포장을 주어 권장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고, 무릇 사람과 사귀는 데 애안<sup>1)</sup>(涯岸)을 세우지 않았다. 이때에 병으로 걸신<sup>2)</sup>(乞神) 하고 충주에 돌아가 있다가 졸하니 사림들이 애도하였다. 시호(諡號)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는데,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부지런히 일을 받드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아들 김덕원과 김성원이 있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위의 기록과 같이 김구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도덕과 학문, 절의가 높은 학자들과 훈신(勳臣), 상신(相臣)이 많이 배출된, 예문종가(禮文宗家)로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일컬어지는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

1)애안: 오만하여 남과 어울리지 않음.

2)걸신: 늙은 재신(宰臣)이 벼슬을 사퇴하기를 임금에게 청원함.

## 예산의 명현 자암 김구

자암 김구가 예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버지 김계문이 대흥현감을 역임하면서, 예산현 입암면에 입향하게 된 것인데 외가인 전의이씨 문중이 세거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주지는 서울 인수방이었음에도 예산 신암에도 근거지가 있다.

그의 외가는 전의이씨로 고려 태사 이도의 후손 들이며 자암의 외조부이점인의 묘소가 신암면 종경리 자암의 부모 묘 옆에 있었던 것을 전의 이씨 후손들이 예산 대술면 시산리로 이장 하였다. 자암 부친 김계문은 1501년(연산 7)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선능 봉사를 지냈고 주부를 거쳐 고산 현감에 임명 되었다가 만기가 되어 당시 처가 전의이씨가 세거 하던 대흥에 현감으로 부임하여 증종(병술년)에 관아에서 별세 했다. 그리하여 명현 자암 김구는 예산과 인연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이곳 예산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예산 신암면 종경리 광산김씨선영에는 자암 부친 김계문의 묘, 자암 김구의 묘, 그로부터 4대손까지 묘역이 조성되어있다. 조선시대 전중기(前中紀)의 분묘유적으로 희소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며, 묘역, 묘비, 금석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자암의 문학

김구, 자는 대유, 호는 자암, 본관은 광산, 시호는 문의이다. 1488년(성종 19) 9월 28일 한양 동부 연희방 현종로구연건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착하고 인품이 고왔다. 그는 일찍이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 하였다. 어려서부터 행실이 독실하고 발분, 정진하여 학문에 임했다. 6세 때 이미 “석류시”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다. 8세 때는 “오작교시”를 지었고 16세 때는 한성시에서 1등으로 뽑혔다. 1507년(중종 2) 그의 나이 약관 20세 때 사마시에서 양장원했다. 이때 “시험관이 비를 내려 시권을 보고 말하기를 글은 한되지 글이요, 글씨는 왕희지체라고 칭찬했다.” 자암의 나이 26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 부정자, 28세 때 이조좌랑, 30세 때 승문원 교리, 31세 때 공조정랑, 홍문응교, 홍문관전한, 성균사성, 장락원정 등을 역임했다.

1519(중종 14) 자암의 나이 32세 때 홍문관 직제학, 예문관응교, 성균사성을 거쳐 홍문관 부제학에 올라 좋은 정치를 시도하였으나 기묘사화로 조광조, 김정 등과 함께 투옥되고 개령에 유배되었다가 남해에 안치 되었다. 1531년(중종 26) 그의 나이 44세 때 임피에 양이 되었으며 1533년(중종 28) 그의 나이 46세 때 14년의 유배에서 풀려 나와 고향인 예산 신암 종경리로 돌아와 그 이듬해 1534년 11월 16일 생을 마쳤다. 향년 47세다. 묘소는 종경리 선영하 자좌에 안장되었다. 묘소 앞에 신도비를 1984년 4월(갑자)에 세웠다. 특히 자암은 글씨에 뛰어나 인수체라는 독자의 서체를 창시한 서예 대가다.

고려말 이래로 서도의 대중으로 군림해온 조맹부의 송설체를 탈피하여 소위 진체라는 왕희지체로 복고를 시도하던 중 “인수체”라는 독자의 서체를 창시하여 조선 고유서체의 시원을 이룬 것이다. 인수체라는 서체명은 자암이 인수방에 살면서 독자의 서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자암은 조선 초기 4대 서예가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선조때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예산의 덕잠서원, 임피의 봉암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자암집” 작품에 이겸인묘비, 자암필첩, 우주영허첩 등이 있다. 특히 자암집에는 그의 시조5수와 “화전별곡”이 수록되어있다.

# 화전별곡

## 〈제1장〉

하늘의 끝, 땅의 변두리, 한 점 신선이 사는 섬.  
 왼쪽은 망운산이고, 오른쪽은 금산, 봉내와 고내 흐르고,  
 산천이 기묘하게 뛰어나 호걸과 준사들이 모였나니, 인물이 번성했네.  
 아, 하늘 남쪽 경치 아름다운 곳의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풍류와 주색을 즐기는 한 시절의 인걸들,  
 풍류와 주색을 즐기는 한 시절의 인걸들.  
 아, 나까지 몇 분입니까!

## 〈제2장〉

하별시 위의 지란과 영지 무늬를 새긴 품대, 나이와 관직이 아울러 높고,  
 박교수가 취한 가운데 이리저리 손 휘젓는 버릇.  
 강륜의 잡담과 방훈이 코골며 자는 모습, 정기가 먹고 마시는 모습.  
 아, 품계를 지닌 벼슬아치들이 화목하게 모여 있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하세연씨가 재주를 뽐내면서 읊는 풍월,  
 하세연씨가 재주를 뽐내면서 읊는 풍월.  
 아, 시를 지어 부르고 화답하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 〈제3장〉

서옥비와 고옥비의 검고 흰 피부 빛깔이 아주 다르고,  
 큰 은덕과 작은 은덕의 높고 짧은 것이 같지 아니하며,  
 강금의 노래와 춤, 녹금의 장고 솜씨, 몸맵시 잘난 학비와 못난 옥지.  
 아, 꽃나무와 수풀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화전이라는 별호가 이름과 실상이 딱 맞아 떨어지네,



화전이라는 별호가 이름과 실상이 딱 맞아 떨어지네.  
아, 철석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아니 끊어질 리 없더라!

#### 〈제4장〉

한원금은 글로써 노래하고, 정소는 풀피리를 부는데,  
때로 바릿대를 치고 소반도 두드리면서 때로 잔대도 치고  
머리를 흔들고 몸을 뒤흔드는 등 갖가지 취한 모습들.  
아, 흥이 발하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강윤원씨 가 스르렁텅 거문고를 타는 소리,  
강윤원씨 가 스르렁텅 거문고를 타는 소리.  
아, 듣고 난 뒤에야 잠이 들리라!

#### 〈제5장〉

녹파주와 소국주에 맥주와 탁주까지, 황금빛 닭과 흰 문어며 유자잔과 첩시  
대에  
아, 잔에 가득 부어 술잔을 권하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정희철씨 는 밀밭만 지나가도 크게 취한다네,  
정희철씨 는 밀밭만 지나가도 크게 취한다네.  
아, 어느 때에 슬픈 적이 있겠습니까!

#### 〈제6장〉

서울의 변화함이야, 너는 부러우냐?  
지체 높은 벼슬아치가 사는 붉은 대문, 술과 고기가 너는 좋으냐?  
돌무더기 골라낸 밭에 따로 엮은 작은 집, 계절마다 조화롭고 해마다 풍년  
이 드니  
향촌 사람들이 모여 여는 모임을 나는 좋아하노라!

자암 김구가 남해 유배지에서 남긴 대표작은 경기체가로 지은 6장의 화전별곡이다. 위에 제시한 것이 화전별곡의 현대어 해석문이다. 화전은 남해의 별칭이고, 제1장은 화전의 경치, 제2장은 교우(交友), 제3장은 연락(宴樂), 제4장은 연락 중에 음악, 제5장은 술과 안주의 풍부함, 제6장은 결락구로서 자신의 생애를 읊고 있다.



# 자암집 제권

시조 · 단가(時調 · 短歌)

## ◆석류(공이 여섯 살 때 지었다.)

보물을 아끼면서 몸을 아낄 줄 몰랐다니  
고호의 어리석음이 가소롭구나.  
어찌다가 스스로를 아끼지 못하여  
몸을 갈라 밝은 진주를 숨겼단 말인가?

## ◆오작교(운을 받아서 여덟 살 때 지었다.)

가을 하늘 은하수는 더욱 멀고 먼데  
까마귀와 까치가 어찌 먼 거리를 어그러뜨리리.  
누가 인간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할까  
푸른 하늘의 신비한 만남은 다리를 필요치 않는다네.  
산수 내린 골에 삼색도화 떠 오거늘  
내 성은 호걸이라 옷 입은 채 들오이다.  
꽃으란 건져 안고 물에 들어 솟과라.

## ◆태산이 높다 하여도 하늘 아래 뒤흔다.

하해 깊다 하여도 땅 위에 물이로다.  
아마도 높고 싶을손 성은이가 하노라.

이 노래와 초장(初章)이 같은 양사언의 시조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태산이 높다하여도 하늘 아래 뒤흔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업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흔만 높다 하더라.

그러나 자암은 1488~1534년(성종 19~중종 29) 때의 사람이고 양사언은 1517~1584년(중종 12~선조 17) 때의 사람이다. 따라서 양사언보다 연대적으로 29년이나 앞선다. 또 자암집에 뚜렷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양사언이 자암의 시조 초장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묘 조에 자암 선생께서 옥당(玉堂 : 홍문관의 별칭)에서 당직을 하게 되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의관을 정제하고 있었다. 하루는 월야에 촛불을 밝게 켜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때에 밖에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괴상히 여겨 문을 열어보니 중종(中宗)께서 청상에 계시고 별감이 주안상을 가지고 따라와 있지 않은가. 이에 황급히 뜰아래에 내려가 예를 올리니 중종이 말하기를 ‘오늘 같이 밝은 달밤에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 이 밤은 군신(君臣)의 예를 떠나 벗으로 대하자’ 하였다.

술상을 마주하고 조용한 가운데 술잔이 오고 갔다. 흥이 일자 중종이 말하기를 ‘글 읽는 소리가 청아하니 반드시 노래도 잘 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 하였다. 자암은 꿇어 앉아 대답하기를 ‘오늘의 성은은 고금에 없는 일이오니 옛 노래나 지금의 곡조로 아뢰기 보다는 신(臣)이 직접 지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아래와 같이 불렀다.

기껍구나! 오늘이야말로! 즐겁구나! 오늘이야말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견줄 곳 없는 오늘이구나.  
날마다 오늘 같으면 무슨 성가실 것이 있으랴!

그리고 중종이 다시 재청을 하니 또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기가 되도록  
무궁토록 복을 누리셔서 역만세를 누리소서.

이렇게 중종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임금 앞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시를 지어 읊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높은 시안(詩眼)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종이 듣기를 마치고는 칭찬한 다음 「그대에게 노모(老母)가 있다는 말을 들었노라.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갓옷을 하사하오니 가져다가 드리도록 하라」하고 담비의 갓옷을 하사받았다.

### ◆초봄에 홀로 지내면서

봄바람만이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이  
문 앞이든 골목길이든 오가는 사람 끊겼네.  
개가 짖으니 마을은 더욱 궁벽하고  
물고기 잡기니 물에는 절로 물결이 이네.  
한가롭게 지내면 경박하다는 핀잔이나 부르고  
내내 게으르면 고질병에 빠졌다 하네.  
궁하면 통한다는 이치를 다시 믿어도  
아득하여라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 ◆정자에서

갈대숲은 아득히 자랐고 물은 하늘로 닿았는데  
떠도는 마음 가을 흥취로 한 잔 술을 대했네.  
남은 생애도 길이 천지의 은혜를 입으리니  
검은 바다에 삶을 담그면서 취해 바로 잠드네.

### ◆궁궐 뜰에서의 연구

상세한 것은 기묘록과 『충암집』안에 실려있다.

밝은 달이 밤하늘을 길게 비추니(공)  
추운 겨울에 아쉽게 이별하는 때일세.(충암)

### ◆제목없음

흰 달이 빈 바다에 가득한데  
푸른 안개로 먼 산봉우리는 숨었네.  
그윽한 서재에 밤 감상할 것 없어도  
소나무와 대나무가 내 마음을 알겠구나.

### ◆최선비와 이별하면서 2수

술잔을 그대 자리에 올리니  
푸르고 넓은 바다에 해는 어둑하네.  
그대 살던 집을 응당 지나가겠지만

꽃은 지고 사립문은 닫혀 있겠지.①

매운 바다 기운에 눈물을 주룩 흘리니  
꽃이 지는 삼월의 때라네.  
객살이라 지닌 것이 없어서  
애오라지 시 한 편을 주노라.②

#### ◆사람을 보내면서

이별이 슬퍼 언덕 위 정자에서 술을 마시는데.  
새로찾아온 가을에 바닷가 산언덕이 슬프네.  
봉산<sup>3)</sup>은 어느 곳이 거기인지  
아득히 멀리 흰 구름 떠가는 너머인가.

#### ◆여관 창가에 쓰노라

술 마시자니 구름 낀 하늘도 저물고  
뜬구름 인생은 바닷가 마을에 머무네.  
올해도 한식<sup>4)</sup>이 지나가는데  
꽃은 떨어지고 비만 부슬부슬 내리는구나.

#### ◆옛 뜻을 노래함 2수

손에 한중의 거문고를 잡으니  
한중의 사람들 모두 놀라는구나.  
소리 속에 미묘함이 들게 된 까닭은  
줄과 손이 모두 신묘함을 갖춘 탓이지.①

줄과 손이 모두 신묘함을 갖추었어도  
신묘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네.  
마음 밖에 다시 물건이 없으니  
오호라! 옛날이 지금과 같구나.②

---

3) 봉산: 경남동래의 옛이름

4) 한식: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보통 4월 5, 6일쯤 된다.

### ◆상호 형제에게 2수

노랑이 일찍이 지척간이더니  
한 아우가 천리 길에서 돌아왔네.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각하는 뜻은  
아득히 물 하나를 사이에 두었구나.①

평안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은 생각은 두 사람에게 맡겼네.  
어느 곳이 고산현인가?  
아득하게 하늘엔 흰구름만 떠다니네.②

### ◆입춘첩을 적어 걸다

물색을 보니 기운 돌아나는 것을 알겠는데  
햇볕과 화기가 지극한 어쭙을 베푸는구나.  
오직 새로움이 만 가지 조화를 열었으니  
남은 은택은 떠도는 사람에게 미치겠네.

### ◆서태원의 시에 차운함

두 사람의 회포를 달 뜬 밤에 나누는데  
외로운 원한으로 아침 구름도 어둡구나.  
가난한 살림이라드릴 것이 없어서  
빙호<sup>5)</sup>를 다만 그대에게 주노라.

### ◆심천<sup>6)</sup>집에 있으면서 짓다

봄날 밤에 함께 말을 탔으니  
좋은 기약은 표매<sup>7)</sup>를 좇는구나.  
주인의 마음 씹씹이가 두터워서  
자주 깊은 술잔을 내놓네.

---

5) 빙호: 얼음같이 맑은 마음이 옥항아리에 있다는 뜻. 마음이 맑고 티없이 깨끗함을 일컫는 말

6) 심천: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7) 표매: 매화나무의 열매가 익어 떨어진다는 뜻, 여자가 결혼할 연령이 되었음을 일컫는 말



◆제목없음

멀리 헤어졌다가 어찌다 서로 모이니  
가까이 있어도 만나기 어렵구나.  
하늘이 정한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으니  
모두 술 한 잔 속에 잊어버리노라.

◆제목없음

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이 쉬며 물을 마시니  
조롱 속에 갇힌 새가 하늘로 날아가네.  
먼지 세상을 껍질 벗듯이 떨치고 나가  
아득히 오색구름 사이를 나는구나.

◆마음을 담아서

날 저무는 빛소리는 끊이지 않고  
밤은 깊은데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네.  
어찌다 만 리 땅에 외로운 나그네 되어  
홀로 앉아 어버이와 임금을 그리워하나.

◆제목없음

몇 해동안 나그네 신세 담장 꽃과 벗 삼더니  
헤어진 뒤 마음만 간절해져 귀밑털이 다 세었네.  
내 성격이 본래 술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찌다 술잔 잡는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많아졌나.

◆금봉 연도사의 시에 차운함 4수(연도사의 이름은 세홍이다)

신선의 동자가 년출 옷 입고 멀리 서로 지나다가  
거문고 서책을 들고 놓으니 보랏빛 노을이 일어나네.  
읽고 나자 황홀하기가 백학을 탄 것 같은데  
문득 메뚜기가 옥황의 집에 닿은 듯하구나.①

근심스레 그윽하게 살면서 대나무 숲에 앉았는데  
술잔을 여니 푸른 하늘에 가벼운 그늘이 지는구나.

술을 친다면 마땅히 유하<sup>8)</sup>를 부어 마실 것이니  
누가 속세 세상에서 도를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②

복숭아 꽃 푸르게 피어 대나무 숲에 비치더니  
봄은 가고 꽃은 졌어도 녹음은 남았네.  
현관<sup>9)</sup>의 주인은 일찍이 돌아갔지만  
꽃이 피고 꽃이 졌어도 절로 봄마음일세. ③

신선의 누대가 푸른 복숭아 숲에 숨어 어렸는데  
깊은 골짜기 차가워 시냇가 그늘에 머물렀네.  
금조<sup>10)</sup>와 돌 문 앞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거니  
단약을 지어 보낸들 누가 갈홍<sup>11)</sup>의 마음을 알겠는가? ④

#### ◆이수재의 시에 차운함

강가 마을에서 근심에 젖어 그윽한 정을 담았더니  
하늘과 땅이 아득하여 마음대로 술에 취하고 깨네.  
떠도는 인생살이라 원래 멋대로 두었거니  
연못을 비추는 외로운 달만이 내 마음인 듯 밝구나.

#### ◆배숙모를 애도하면서

용모며 목소리가 분명하게 기억되더니  
부음을 듣고 정신이 없어 문득 더욱 의심스럽네.  
집안 형편이 영락했으니 남은 것이 얼마겠나  
바닷가 해 저무는데 홀로 옷깃을 적시네.

---

8) 유하: 전설에 나오는 천사의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

9) 현관: 현묘(玄妙)한 이치를 꿰뚫어봄.

10) 금조: 도사(道士)들이 연단할때 쓰는 아궁이

11) 갈홍: 284~364. 동진, 단양, 구용사람. 자는 아천, 호는 포박자이다.

### ◆주인이 한양에 간다기에 헤어지면서

가깝기<sup>12)</sup>가 옛 주인을 만난 듯하여  
거문고 뜯고 술 마시며 뜻이 맞아 마음으로 허락했지.  
언덕 정자에 흰 눈 내려 뜻이 무궁하더니  
다만 돌아올 기약이 중춘<sup>13)</sup>을 어길까 걱정이네.

###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맞이하다

봄바람이 불어와서 버들가지가 다 떨어지더니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어쩔 줄 모르네.  
내 갇힌 죄인이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강가에서 술잔 나누며 위로할 길이 없구나.

### ◆주인의 남대 시운에 차운하여

나무는 높은 정자가 되고 바위는 섬돌이 되는데  
하늘에는 맑은 빛이 감돌아 달은 술잔으로 드네.  
그윽한 거처라서 울적한 마음을 떨칠 수 있으니  
신선만이 어찌 유독 누대를 좋아하겠는가?

### ◆장난스럽게 하청수에게 올림(이름은 세련이다)

일호<sup>14)</sup>에서의 맑은 만남이 청류<sup>15)</sup>에 가깝더니  
손을 남은 술잔에 두고서 삼가 멈추질 마시게나.  
그대 시가 술의 힘을 빌렸음이 안타까우니  
옛날부터 돌피가 벌써 가을을 앞섰다네.

---

12) 가깝기(傾蓋): 경개(傾蓋)는 면식(面識)이 없던 사람이 길에서 만나 두 마차를 접근시켜 덮개를 젖히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한번 만나보고도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 사람같이 친한 것을 일컫는 말

13) 중춘: 음력 2월의 다른 이름

14) 일호: 도가전설에 나오는 항아리 속에 따로 있다는 천지. 그리하여 우주나 선경을 비유한다.

15) 청류: 명분이나 절의를 지키는 청렴결백한 선비의 무리

### ◆태수 이환을 보내면서

길가에 향기로운 풀은 푸른 봄을 밟았는데  
웅당 대흥 관아를 지나며 노친을 뵈겠구나.  
아득히 바라보니 흰 구름과 푸른 바다가 끊겼는데  
그대를 보내노라니 다시 눈물이 수건을 적시오.

\* 당시 공의 아버지가 대흥현(현, 충남예산)의 원님으로 있기에 이렇게 말했다.

### ◆서울로 돌아가는 종제를 보내면서

하늘 끝에서 이별이 서러워 바다 해마저 흐릿한데  
저녁 구름과 가을 나무가 외로운 술잔을 마주했네.  
쓸쓸한 길에 마음도 웅당 갈피를 못 잡으리니  
눈물이 두 눈을 가려 감히 말도 못하겠구나.

### ◆향교에서 석전<sup>16)</sup>을 한 뒤에 음복하면서 강윤의 시에 차운하다 자는 이지다

कु나무와 단풍 숲에서는 봄이 몇 번이나 지나갔나  
우리 유교의 높은 모임을 보니 성균관이 생각나네.  
주변 사람들 긴 피리를 불라고 하질 말아라  
한 곡조 듣고 나니 머리카락도 새로워진다.

### ◆흥언점을 보내면서 자는 백눌이다

갈림길에서 손을 잡고 벗과 헤어지니  
버들가지를 꺾어 들어도 봄은 오지 않네.  
지금 마음이야 서로 막힐 게 없으니  
만 리로 떨어져도 이웃인양 몰래 통하리라.

### ◆회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첨사 김위전을 보내면서

남쪽 고을의 풍도가 절로 같지 않기에  
한 몸으로 나라를 지키니 일이 따르기 어렵구나.

---

16) 석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서 문묘에서 선성, 선사와 산천 묘사에 올리는 제례

하늘 남쪽과 변방의 북쪽은 구름으로 천 리 길이니  
술잔을 올려도 어느 해나 다시 흥금을 토로하리오.

#### ◆고향으로 돌아가는 서태원을 보내면서

태원은 자가 원지다. 남해혼도를 지냈는데, 그의 예명이 칠비라 이렇게 말했다.

바다 끝에서 맑은 벼슬살이가 얼음과 눈과 같더니  
봄바람을 홀쩍 지나 어느덧 칠월 가을일세.  
다만 평생토록 마음과 힘이 건강한 것을 믿어  
오늘 머리가 하얗게 세는 것을 싫어하지 말게나.

#### ◆체귀<sup>17)</sup>때문에 다시 떠나는 서태원을 송별하는 시에 차운하면서

나무잎 지고 매미 울어 바다 산에는 가을이 왔는데  
별천지에서 병들었어도 힘써 누대에 오르네.  
타향에서 자주 손님을 보내는 일이 역겨우니  
헤어질 때 고향 그리는 근심이 일기 때문이지.

#### ◆서태원의 방직<sup>18)</sup>을 대신해 짓다(앞의 시운을 썼다)

게으르게 진주와 비취가 맑은 가을을 비추는데  
주인님을 전송하러 저녁에 누대에 몸을 실었네.  
물은 울음을 삼켰고 산은 눈썹을 찡그리는데  
가물거리는 등불을 보며 홀로 밤에 근심에 젖네.

#### ◆중양절에

바다 나라에 바람과 안개는 넓어 걷히지 않고  
사람의 애를 끊게 하는 고향의 가을이구나.  
국화꽃에 청주 마시는 중양절을 맞이하여  
어느 곳 높은 언덕에서 먼 곳 사람을 생각할까?

---

17) 체귀: 병이 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또는 나이가 들어서 관직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

18) 방직: 방지기. 관청의 심부름꾼의 하나.

◆이밀양 댁의 잔치 자리에서 우희<sup>19)</sup>를 보고 짓다 을유년(1525) 원일<sup>20)</sup>에

환상적인 솜씨는 요란하고 복소리는 뚝뚝거리는데  
참모습과 가면으로 사람의 뉘를 빼놓는구나.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하러 구별하겠는가  
참이나 거짓이나 원래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네.

◆곤양태수 김수겸이 부채에 글을 부탁하기에 취한김에 주필<sup>21)</sup>로 쓰다  
을유년(1525) 6월에

높은 누대에 얼음과 눈이 햇빛 을 누르는데  
마음으로 그리던 사람 만만데다 경사스런 잔치까지 곁했네.  
백 년 인생에 즐거운 오늘 같은 날 드물 것이니  
어찌 하루 종일 술잔 따르는 것을 사양하리오.

\* 당시 첩사<sup>22)</sup> 서수천이 과거에 급제하여 당상에 올라 축하 잔치를 베풀었기에 이렇게 말했다.

◆오진사가 소주를 빌려주기에 시를 지어 답례하다

산 거처가 높고 우뚝해 하늘 은하수와 가깝더니  
이슬 떨어지는 가을 하늘이 특별히 넓구나.  
한 번 마심에 거북과 용의 수명을 더하리니  
동근달과 하얀 눈이 없는 것이 안타깝구려.

◆시든 매화를 노래함

외모는 비록 시들었어도 참된 본성은 그대로이니  
옥비<sup>23)</sup>는 어느 곳에서 향기로운 뉘이 끊겼나?  
고운 가지와 하얀 꽃술은 어디나 같겠지만  
만개하고 시든 것을 함께 갖춘 때는 이 특별한 마을이지.

19) 우희(優戲): 우인들이 이야기에 유희적인 놀이 요소를 가미하여 연출하는 즉흥 연기

20) 원일(元日): 정월 초하루, 설날.

21) 주필(走筆): 붓을 빨리 돌려 글을 씀. 시를 지을 때 남이 준 시문에 맞춰 즉석에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22) 첩사(僉使): 조선시대 각 진영에 속한 종3품의 무관. 첩절제사의 줄인 말이다.

23) 옥비(玉妃): 세 가지 뜻이 있다. ①선녀 ②양귀비 ③매화를 가리키는 말



### ◆오진사가 병이 나은 뒤에 찾아왔기에 장난삼아 지어주다

억지로 파리한 말을 몰아 병든 몸을 이끌고서  
바위와 골짜기를 넘고 건너 삼계를 찾아주셨네요.  
온몸이 열로 뜨거워 엷매이고 답답하겠지만  
잘 치료하겠다는 마음의 기약은 달이 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화방사<sup>24)</sup>에서 노닐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짓다 2수

억지로 파리한 말을 타고 읊조리며 채찍을 치니  
쌓인 낙엽에 산은 묻혔고 샘물 소리 가녀리게 들리네.  
물으니 화방사는 어느 곳에 있는가?  
푸른 안개가 고목을 두르고 노을이 지는 곳이라오.①

떨나무 연기 가라앉은 곳에 외로운 마을이 있는데  
개울물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혀 즐겁구나.  
모래톱가에 나란히 앉으니 배고픔은 심한데  
여울물이 모래 흔적을 지우는 것을 부럽게 보네.②

### ◆누대에 올라

천 리 길을 떠돌며 지내다 홀로 누대에 오르니  
강주에 나무는 안개 같은데 생각은 아득하구나.  
달은 어디서 밝았기에 강가 성에서 피리소리 들리는가  
매화 꽃 다 떨어졌어도 읊조림을 그치지 않네.

### ◆정언<sup>25)</sup> 민회현<sup>26)</sup>에게 올림

말이 홀로 오는 것을 삼가라 했으니 홀로를 삼가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는 자리를 닦는 것을 기르니 닦음을 기르는 것은 아니네.  
문득 삼가고 기르는 것도 없으니 내 무엇을 적으리오  
시내와 산은 절로 있고 나도 절로 노니노라.

---

24) 화방사: 경남 남해에 있는 사찰

25) 정언: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직

26) 민회현: 1472~1540년. 조선중종 때의 문신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계사 호는 일제다. 기묘사화로 파방되었음

### ◆ 집을 짓고서

궁벽한 곳 끝자락에 몸을 깃들여  
산 뿌리 곁에 집을 지었네.  
대나무 길은 나뭇꾼 길로 이어졌고  
소나무 문은 바닷가 입구에 닿았네.  
시냇가 등나무 사이로 성글게 달빛은 비치고  
포구에 자란 나무는 멀리 마을을 갈랐네.  
이를 보면서 내 졸렬함을 지키니  
말을 잊고서 밤 술잔을 기울이노라.

### ◆ 골짜기에 걸린 구름 한지에게 보이다. 화방사에 올랐을 때 썼다.

골짜기에 걸린 구름 걷힐 날 없더니  
강가 달은 몇 번이나 빛났었나?  
어둑어둑한 은빛 갈고리<sup>27)</sup>는 이지러졌고  
그림자를 대하니 한 몸과도 어긋났네.  
쓸쓸하게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나는 반딧불만이 돌아가는 길을 비추네.

### ◆ 제목없음

오랫동안 떨어져 행궁과 마주했더니  
부평초 같은 인생에 땅은 머리에 다했네.  
만났다가 헤어지니 별은 만 리 밖에 있고  
뜻을 잃은 머리카락엔 가을이 왔네.  
달빛 어린 바다는 은빛으로 세계를 이루었고  
안개 자욱한 봉우리는 비취빛이 뜨는 듯하구나.  
하늘 끝에서 가고 머무는 것을 슬퍼하니  
모두 십 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네.

---

27) 은빛갈고리: 은구는 조각달을 비유하는 말

### ◆유배생활을 하면서 권정자<sup>28)</sup>에게 주다

해는 저무는데 고운님은 멀어지고  
하늘 끝이라 친근한 이도 없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긴 밤에 떠오르는 달이 있고  
강과 바다에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네.  
청조<sup>29)</sup>도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고  
누런 초가집에선 봄을 알지 못하네.  
나그네 회포를 어느 곳에서 풀어볼까?  
남쪽 먼 땅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노라.

### ◆병중에 회포를 적어 민기수에게 주다

한 해를 지내면서 고질병으로 신음했더니  
문을 닫아걸고 나쁜 기운을 막았네.  
바다에서는 까마귀 울어 새벽인 것을 깨닫고  
숲에서는 까치가 다투어 저녁인 것을 알았네.  
잠도 오지 않아 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술을 끊어 나그네의 슬픔도 흐트리지 못하네.  
언제나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가  
높은 곳에 올라 북쪽 구름을 바라볼까?

### ◆민인로가 과거 시험을 보러가기에

바닷가 산골에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타향 땅에서 또 사람을 보내네.  
이별의 술잔에는 애오라지 국화를 띄웠고  
근심에 젖은 머리카락엔 은빛이 는 것을 깨닫네.  
호락<sup>30)</sup>은 세 번 승리를 기약하고  
용문<sup>31)</sup>에서는 한 번 물고기가 변했네.

28) 정자(正字): 관직이름 조선초기 서연관으로 정7품직이었지만 세종 2년에 집현전의 정9품직으로 경연관을 겸하게 되었고 이후 정9품직으로 근무해 홍문관, 승문원, 교서관에 배치되었다.

29) 청조(靑鳥): 요지에서 서왕모가 기르는 새로 빛이 푸르고 다리가 썩이라고 한다.

30) 호락: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군사 책략.

31) 용문(龍門): 중국 산서성 하진현 황하의 상류에 있는 나루 이름 황하의 물이 이곳을 지날 때 가장 흐름이 급해져서 잉어가 이 곳을 오르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천문동(天門洞)

돌아오면 응당 눈을 씻고 다시 보리니  
머리 위에는 봄날 계수나무 꽃을 얻었겠구나.

◆교수 박완을 보내면서 신묘년(1531) 5월 19일

뜻 맞는 친구와 헤어지는 이곳에  
파도가 넘실거리 생각은 끊이질 않네.  
하늘은 산세와 이어져 멀기만 하고  
안개는 나무 그림자에서 일어 무겁네.  
세상일은 모두 시비의 밖에 두었고  
한평생은 시와 술가운데 두었지.  
그대는 항상 이런 것을 얻었으려니  
떠돌이 병든 늙은이를 부끄럽게 하는구려.

◆청허선자에게 청하는 묘향산의 스님 휴정<sup>32)</sup>

대나무 집에 풍경 소리는 생생하고  
소리는 가락가락 푸른 하늘로 퍼지네.  
봉우리 나무에서는 뽕꼭새가 울고  
뜰 앞 잣나무에는 백학이 앉아 있네.  
돌 틈을 흐르는 물소리는 줄줄 들리고  
병을 씻은 듯한 산 달이 떨어지네.  
떠도는 것이 한조각 구름과 같으니  
이 늙은이를 누가 능히 알겠는가?

◆금봉도사에게 당시 연방이 금산을 여행했다

봉래섬 누대는 어느 곳에 있는가  
그대 생각에도 아득하여 구름과 안개로 막혔네.  
꿈에서 깨어 소나무 사이 달을 보니 더욱 생각나고  
구슬 자리서 시 읊조리기 마치니 더욱 전하고 싶구나.  
유람하는 일에 인연이 있어도 백발이 부끄럽고

---

32) 휴정(休正): 휴정(休靜, 1520~1604년)의 오기. 조선중기의 고승 자는 현옹 호는 청허다. 별호는 백화도인 또는 서산대사. 법명은 휴정이다.

들고 남에 계획이 없어서 푸른 하늘에 맡겼노라.  
어느 해나 훌훌 털어버리고 예쁘게 꾸미고서  
피리 불고 학을 탄 채 표연하게 약수<sup>33)</sup>로 가려나.

#### ◆가을밤에 회포를 적다

허물을 쫓고자 궁벽한 강가에서 문을 걸어잠그니  
달만 마주해도 그림자와 몸을 서로 가엽게 여기네.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 서늘하니 사람들 시심을 돋우고  
닭 잠들고 밤은 차가우니 외로운 새벽이 두렵구나.  
겨울옷을 손으로 다듬는 어머니 생각에 슬퍼지고  
짧은 편지에 심회를 담으니 옛 사람에게 부끄럽네.  
슬프게 하늘 북쪽 끝 도성을 바라보니  
서리가 귀밑털에 더해서 몇 올이나 새롭겠는가?

#### ◆사상<sup>34)</sup> 김극성<sup>35)</sup>의 시에 받들어 차운함 2수

붉은 수레에 금빛 지절(持節)을 들고 남쪽 구석에 머무니  
바다 고을에 바람은 높아 낙엽이 지는 때일세.  
천 리의 당당한 마음으로 군주의 덕을 펼쳤고  
십 년만에 헤어졌다 만나니 서로 교제하던 기약이지.  
깊은 근심에 문득 깨니 뜬구름은 흩어졌고  
이별의 상념은 다시 가을 낙엽을 따라 흩날리네.  
내일이면 신선의 배를 근심으로 바라볼 터이니  
나이를 잊은 뜻과 기상은 여전히 서로 알리라.①

깃발과 지절을 휘두르며 바닷가 성을 달리니  
감상하려는 마음이 군왕의 일정이 더디게 해 부끄럽네.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 십 년 만의 일이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새며 은근히 정을 나누었지.

---

33) 약수(弱水): 원래는 물이 얇아 배를 대기 어려운 곳을 말하지만, 보통 험난하여 건너기 어려운 강과 바다를 일컫는 말이다.

34) 사상(使相): 중국 송나라 때의 벼슬. 우리나라의 절도사나 중서령에 해당되었다.

35) 김극성: 1474~1540년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이고 자는 성지며 호는 청라 또는 우정이고 시호는 충정이다. 문집에 『우정집』이 있다.

흥이 떨어지면 어부나 나무꾼이 되어 살다 죽겠고  
 은혜는 깊어서 비와 서리가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과 같네.  
 외로운 섬에서 서로 만나 다시 할 기약이 어려우니  
 말이 다하자 그윽한 회포로 밝은 달을 기다린다네.②

####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 그리워 날마다 높은 봉우리에 오르니  
 소식은 아득하고 바다와 산은 겹겹으로 이어졌네.  
 음식이 떨어지자 아내는 약을 넣어 보내왔고  
 그릇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만드신 옷가지를 부치셨네.  
 궁핍한 길에 홀로 시를 읊조려도 흥을 두기 어렵고  
 근심하는 곳에 술잔을 깊이 마시니 효과를 보기 쉽구나.  
 스스로 생애가 남쪽 땅에서 늙어갈 것을 아니  
 한 즐기 시원한 소리는 북쪽에서 온 기러기일세.

#### ◆우연히 읊어 한지에게 주노라 2수

유배로 내쳐진 미미한 몸이 만 번 죽어도 가벼운데  
 은혜가 천지를 가득 채워 남쪽 변방으로 객살이 왔네.  
 강가 기러기는 절로 욕심을 잊고 어울릴 만하고  
 형주의 박옥은 쪼아 그릇으로 만들려다 망가뜨렸네.  
 현인과 성인도 술을 마시면 문란에 이르게 되고  
 군주와 신하의 약재로도 미친 병은 고치지 못하네.  
 어쩌면 걷어내 다시는 뜬 명성에 얽매이지 않을까  
 어부와 낚시꾼이 서로 찾으니 귀밀털이 푸르구나.①

궁궐을 그리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이미 금할 수 없지만  
 늙고 병들어서 어느 일도 다시 찾을 수 없구나.  
 젊은 시절 즐거운 놀음도 세월을 따라 스러졌고  
 나그네 밤에 깊은 회포는 새벽이 되자 더해지네.  
 대나무 숲에서 소리 들리니 만나 감상함을 알겠고  
 외로운 오동에 시율은 꿈졌으니 벗이 드문 것을 원망하네.  
 고향을 그리는 꿈도 하늘 남쪽 끝에서 끊겼고  
 차가운 비만 쓸쓸하게 북쪽 숲을 어둡게 하는구나.②

### ◆과거를 보러가는 오수재를 보내면서 2수

낙엽 지는 가을바람에 하늘은 높고  
산에 올라 물을 보니 이별의 생각도 스러지네.  
바다 남쪽서 봄 술 마시며 함께 마음으로 느꼈더니  
한강 북쪽에서 가을 날 생각하며 귀밀털을 보겠구나.  
□로 물고기 뱃속을 열어보니 코뿔소와 코끼리를 만나고  
바람이 봉새의 날개를 치니 구름 하늘로 올라가네.  
옛사람들도 오히려 외롭게 엮매여 지냈으니  
우두커니 국화꽃이 푸른 옷에 비치는 것을 보노라. ①

만 번 죽어 좋을 미친한 신하가 땅이 다한 곳에 있지만  
충성의 작은 마음은 가을날의 궁궐에 부쳐 보내노라.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늘 남쪽 끊긴 곳으로 이어졌고  
낮선 이가 사는 바다 물결은 한강 북쪽 물과 닿았네.  
푸른 머리털은 누런 나뭇잎 따라 점점 변해가고  
붉은 충심은 하릴없이 푸른 하늘을 향해 아득하네.  
그윽한 회포로 한밤에 뜬 달을 올려다보노라니  
천 리 길 그리운 마음을 막힌 채 둘 수가 없네. ②

### ◆스님에게 드림

하늘 끝에 유배를 와서 사람과 비슷해도 반가운데  
광산 스님이야 오래 전부터 만난 듯 서로 가깝구나.  
누대 둘러 소나무와 달이 능히 도를 지키고 있으니  
십 년 동안 시와 글로 몸을 즐겁게 한 게 부끄럽네.  
남쪽 너머는 차고 아득해 검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북극성은 멀고멀어 꿈결에나 자주 나타나네.  
두류산을 아득히 바라보며 해진 쁘신을 함께 했더니  
만 리 밖에 외로운 배에서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 ◆국광의 시에 차운하다

-이 시는 『속청구풍아』에 실려 있다.

더러운 진흙탕은 다시 맑은 먼지<sup>36)</sup>와 만나지 않으리니



더러운 바다를 동쪽 바람은 몇 번이나 새롭게 했네.  
 이부에서도 대합조개를 먹어 결국 세속을 물들게 하겠고  
 군대에 참여해 오랑캐 말을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지.  
 깊은 어둠을 이미 얻었으니 삼면을 열겠건만  
 변방에서 오히려 한 몸 늘어감도 견디는 구나.  
 재앙과 행복은 하늘의 뜻임을 응당 스스로 믿으니  
 복조<sup>37)</sup>에 놀라 심신을 상할 필요는 없으리라.

#### ◆금봉 연도사에게 부침

나산산 아래서 바다는 넘실거리는데  
 선비가 움집에서 억울한 것을 어찌 말할 수 있으리.  
 연옹<sup>38)</sup>의 집에 살면서 보리밥도 나눠먹었고  
 굴수와 정신이 통해 용근을 먹었다네.  
 두릉<sup>39)</sup>의 들보 위에 뜬 달은 한림의 얼굴이고  
 송옥<sup>40)</sup>의 강가 단풍나무는 시인의 혼백일세.  
 오고가는 소식이 전해지다 끊겼으니  
 옛 벗의 마음 씹씹이가 구름을 휘젓듯 어둡구나.

#### ◆중국의 사신이 제천정을 노닐며 지은 시를 듣고 함께 노닐 기분으로 짓다

백 척 되는 높은 누대는 강여울을 눌렀는데  
 사신의 행차가 아득히 지나가는 영광을 누렸네.  
 명성은 중국 땅에서도 울려 북극성을 우러렸고  
 시는 조선 땅까지 전해져 남녘에 금을 내려주네.  
 술자리는 흥청거려 좋은 만남을 축수하니  
 나무터 나무는 아득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일으키네.  
 흥에 겨워 헤어지지 못하고 밤을 이어 즐기니  
 술잔에 뜬 푸른 기운은 더욱 넓고 깊어라.

36) 맑은 먼지(淸塵): 청진은 청정무위한 경계를 비유하여 청고한 유품이나 고상한 풍격을 가리키는 말.

37) 복조(鵬鳥): 머리가 고양이처럼 생겼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알려진 새.

38) 연옹: 연옹은 신라 평진읍전에 딸린 관원. 그러나 여기서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연도사의 연옹을 잘못 쓴 것 같다.

39) 두릉: 장안의 동남 교외에 있는, 전한 선제의 능 이름

40) 송옥: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 ◆부운 이충절과 함께 매를 날리면서

손바닥 같은 트인 들판에 불길은 다시 타오르고  
사냥개들이 다투어 뛰니 날랜 말도 잡을 듯하구나.  
들판 꿩은 놀라 보리 밭 독 위로 미친 듯 날고  
까치에 앉은 매는 넘어질 듯 꽃 실을 잡아채네.  
몸을 뒤집어 옆으로 쫓아가니 안개 숲은 멀어지고  
비낀 눈빛은 가볍고 멀어 눈 내린 봉우리가 높아라.  
군센 기축은 가로로 걸쳤고 갈날은 비단을 쪼갤 듯한데  
노숙한 손길로 다시 피 묻은 새의 깃털을 닦아챈다.  
보니 흥겨운 마음이 구름 자욱한 하늘 너머로 뻗쳐  
나약했던 기운도 한결 호기롭게 떨쳐 오르네.

### ◆단양의 숙부님을 애도하면서

약해지고 쇠퇴한 기운이 문 앞에 모였으니  
우리 집안도 마침내 의지할 데가 없어졌네.  
망령된 인연이 명을 재촉한 것을 한탄하고  
참된 본성은 하늘의 기운에 맡겨야겠지.  
공부에 발분하여 장막 내리는 것이 늦었고  
서성이며 지내다 계수나무에 오른 것이 더디었네.  
경전을 깊이 배워 장차 쓰려고 했더니  
옛 진리를 마침내 베풀기 어렵게 되었구나.  
관직 생활이 힘들었던 것 살아생전 엮매임이었고  
은혜를 남긴 것은 떠난 뒤에도 기억하리다.  
조각구름이 지내시던 곳을 어지럽히니  
긴긴 밤에 새벽은 언제 오는가?  
겨울도 식어 난새 그림자 와 이별했고  
봄날에 연리지<sup>41)</sup>도 찾아들었네.  
미약한 몸으로 많은 조카를 맡았지만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여느 아이와 달랐지.

---

41) 연리지: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붙음.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공중에서 만나 하나가 된 나무를 가리킨다.

은혜와 덕은 능히 보답할 길을 도모했고  
 감정과 회포는 다만 스스로 알 뿐일세.  
 이른 봄날에 우연히 뵈고 인사드렸는데  
 다시 찾아뵈겠다니 짐짓 사양하셨지.  
 발걸음 돌린 것이 영원한 결별이 되었으니  
 가슴이 막막한 것이 더욱 의심스럽구나.  
 문을 닫아걸자니 귀신을 막을까두렵고  
 죄수의 신세라 힘들여 거북을 보관했노라.  
 비통하게 삶과 죽음의 먼 거리를 바라보노니  
 슬픔은 너무 커서 떠나보낼 길이 없구나.  
 산과 강이 하릴없이 떼어내고 막아버려  
 천지 아래서 어찌 기약을 다하겠는가?  
 거센 바다에 피눈물을 뿌리면서  
 남쪽 고을에서 비참한 마음의 시를 보내노라.  
 구천에서나마 애오라지 편히 쉬시기를  
 얼음과 구슬 이 뜰 처마에 비칩니다.

#### ◆준상인에게 드림

산봉우리 저 너머 있는 직지사<sup>42)</sup>  
 시를 청하는 스님은 준상인이지.  
 주장자 짊고 바다 섬까지 들어와  
 은근히 외로운 객지 생활을 위로해주네.  
 한 두루마리 속에 문장은 숲처럼 많은데  
 깊고 조화로운 가운데 우뚝 기이하구나.  
 구슬 나무에는 신선의 꽃이 피었고  
 그윽한 숲에는 괴이한 도깨비가 쌓였네.  
 나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를 풀어달라면서  
 여러 어진 분들의 시로 화답해주기를 부탁하네.  
 마침 내가 근심과 병에 시달리는 중이라  
 형체의 기운이 날마다 파리해가는 처지였지.

---

42) 직지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황악산에 있는 사찰 418년(눌지왕 2)에 목호자가 창건했다.

문장이란 기운을 주인으로 삼는데  
 기운이 쇠약해졌으니 문사도 시들해졌지.  
 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 요즘인데  
 어느 겨를에 시문을 지겠는가?  
 어찌 화답하여 뜻을 더럽히리오  
 워낭소리 사이로 바람이 부는구나.  
 헛되이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왔는데  
 내 안타까우니 스님은 혈뜬지 마소.  
 스님이여 만약 뜻이 있다면  
 내가 어찌 스님을 속이겠소이까.

#### ◆유배지를 옮길 때 진주에서 길을 잃고 짓다 4수

— 날이 저물어 허락의 집에 투숙했다

동서로 길을 분간 못하는데 밤은 이미 깊어졌고  
 진흙길에 비마져 내려 무리와 떨어질까 걱정이네.  
 산허리를 내리 달리니 참으로 선을 그을 듯한데  
 소나무 문에 깊이 들어가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저무는 한 해에 봄기운 있어 비는 미끄러지는 듯하고  
 벽을 비추는 깜박이는 등불에 나그네 꿈도 외롭구나.  
 평생을 돌이켜보니 응당 스스로 떳떳하지만  
 사내의 큰 꿈은 궁핍한 길에 몸을 맡겼네.

한밤에 마을 사립문을 억지로 두드리는데  
 주인이 반갑게 맞으니 서로 의심할 게 없구나.  
 피당 하여 촛불 밝히니 정성은 바라는 바 아닌데  
 젊은 처자가 조심스럽게 백옥 술잔을 올리는구려.

길을 잃었으니 끝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렵고 위험해지니 뜻이 더욱 참되구나.  
 여러 선비들 사업이 남아 있으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함께 한다네.

## 자암집 제2권

부(賦), 표(表), 책(策), 소(疏), 문(文), 갈기(碣記), 수토록(搜討錄), 편지

◆과진부 정묘년(1507년) 사마시에서 수석 상지상을 차지했다. 부 / 賦

— 진나라의 잘못을 노래하다

아 천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때여  
 만물이 혼탁하여 뒤섞여 있었다네.  
 얼마 뒤 맑은 것과 흐린 것이 모양을 달리함이며  
 아래 위가 떠받들면서 서로 노래했네.  
 오직 제왕이 나타나 백성들의 주인이 됨이며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강상을 세웠네.  
 자리에 이 큰 도가 있음이며  
 일러 인의예지(仁義禮智)라 했네.  
 삼황과 오제로부터  
 이 도는 잘 융화되어 통했지.  
 천지신명이 복을 내림이 당당함이며  
 억조 만민을 맡기셨도다.  
 무릇 저 영씨의 진나라가 일어섬이며  
 서용에서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했네.  
 선공과 영공 때 참람 되게 자리를 차지함이며  
 효공에 이르러 영웅이라 칭했네.  
 백이의 함곡관에 거점을 마련함이며  
 뜻을 천하를 병탄하는 데 두었네.  
 세대가 다시 전해져 영씨(의 세상으)로 바뀌이며  
 영정이 호시탐탐 강국들과 경쟁했지.  
 사해를 채찍질하면서 제어함이며  
 제후들의 오랜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했네.  
 마침내 존귀한 위치에까지 스스로 오름이며

주나라의 신기를 옮겨놓았네.  
 인의의큰 도리를 능멸함이여  
 날을 다투어 전쟁과 정벌을 일삼았네.  
 몽분을 풀어놓아 병사를 마구 쓰고  
 위사가 정치를 사사롭게 휘저었지.  
 사해를 어지럽히며 외로운 이들을 흘겨봄이여.  
 뼈를 깎아내고 껍질을 벗겨 목숨을 잃음이 애통하구나.  
 이들을 일러 천하의 잔악한 흉적이라 했으니  
 어찌 만백성의 하나 된 왕이라 부르겠는가!  
 그러나 공을 몇 개 들면서 허물을 사양함이여  
 억지로 삼황오제보다 성스럽고 덕이 많다고 했지.  
 내가 장차 머리를 움켜쥐고 그 잘못을 하나하나 따짐이로다  
 천백 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일 뿐이로다.  
 이미 그러한데 성현이 세운 전고를 없애고  
 제왕들의 서책들마저 다 없애버렸네.  
 법률을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참된 선비의 유골을 구덩이에 파묻었지.  
 예관<sup>43)</sup>들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고  
 훌륭한 학자들은 책을 안고 자취를 감추었네.  
 마침내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흙탕 속으로 눈과 귀를 빠뜨리게 하고 말았네.  
 이것이 그 허물의 첫 번째로다.  
 또 저 오등을 없애고 군현을 세웠는데  
 정전법<sup>44)</sup>을 없애고 천맥<sup>45)</sup>을 개설했지.  
 자제(평민)들은 한 뼘의 봉토도 받지 못했고  
 권세가들에게는 이를 겸병할 길이 되었네.  
 뿌리와 가지가 서로 의지하는 것을 막음이여  
 몰래 근심스럽고 외로워도 말할 곳이 없었네.  
 마침내 성인의 법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부족하게 되었으니

43) 예관(禮官): 예의교화를 관장한 관리

44) 정전법(井田法): 옛날 토지제도의 하나.

45) 천맥: 논이나 밭에 난 길. 동서로 난 것을 맥이라 하고 남북으로 난 것을 천이라 한다.

이것이 그 허물의 두 번째로다.  
 또 신선의 배를 동해 바닷가에 줄줄이 대고  
 아방궁<sup>46)</sup>이 여산을 내려다보며 누르게 했지.  
 백성들의 목숨은 토목 공사로 다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고 들뜨게 만들었네.  
 오호라! 황음이 끝날 길이 없음이여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끝날 기약이 있으니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몸도 짓이겨지게 하여  
 영원히 이때를 비웃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그 허물의 세 번째로다.  
 이에 진나라가 왜 진나라인지를 알게 되도다.  
 덕과 의로움을 닦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리하여 뒤집히고 멸망하는 데 이르렀네.  
 또한 공격하고 수비할 때가 달랐던 데서 말미암았지.  
 만약 진나라가 인의의 도를 시행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술책을 버리면서  
 이사<sup>47)</sup>의 논의를 억누르고  
 순우월<sup>48)</sup>의 계책을 받아들였다면  
 노생<sup>49)</sup>의 한 마디 말이  
 분서갱유(焚書坑儒) 하는 참화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바람을 타고 배가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상산의 붉은 흙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의지했다면  
 어찌 목을 늘어놓고서 능멸<sup>50)</sup>을 당했겠는가?  
 오호라! 진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후세 사람들이 그 허물을 꾸짖었네.  
 후세 사람들도 꾸짖기만 하고 경계 삼지 못한다면  
 또 후세 사람들로 하여 이전 후세 사람들을 꾸짖게 만들리라.

46) 아방궁: 진나라의 시황제가 지은 화려한 궁궐 이름

47) 이사(李斯): ?~기원전208.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상채 사람 진시황 26년 천하를 통일하자 승상에 올랐다.

48) 순우월: ?~?. 전국시대 진나라 사람

49) 노생: ?~? 전국시대 진나라 사람

50) 능멸(陵轢): 능력은 속이고 억누름. 속이고 멸시함.



◆ **혜고**<sup>51)</sup> 부 / 賦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넓고 큼이여  
만물을 주재하면서 화육 하네.  
태어나 목숨의 길고 짧음이 고르지 못하니  
종류도 크고 작은 것부터 천만 가지로 다르네.  
대춘<sup>52)</sup>은 생명이 아득하게 길고  
가을날 매미는 너무나 짧구나.  
겨우 봄날 화창할 때 몸을 부쳤다가  
이윽고 쓸쓸한 가을이면 자취를 거두네.  
우주가 관리하는 단서를 엿보니  
애달피라 목숨 준 것이 경각에 이르렀네.  
일찍이 한 기 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백 세<sup>53)</sup>를 능히 헤아리겠는가?  
시절마다 물건들이 실마리가 많음이여  
문득 길게 한숨 쉬면서 태어난 것을 슬퍼하네.  
묵묵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살펴보니  
한 번 생각함에 만 가지 이치를 알 수 있구나.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천지간에 깃들여  
유한한 몸을 무궁한 공간에 담았네.  
번개 칠 짧은 순간에 어린아이가 늙은이가 되지만  
나방이 촛불에 뛰어드는 것도 백 년 세월이라 하겠네.  
누가 오래 살아 항상 지켜보았기에  
천지의 시작과 끝을 알겠는가?  
천고의 세월을 거슬러서 크게 물어보니  
근심을 금할 수 없구나, 나의 충심(衷心)이여.  
꿈에 화서<sup>54)</sup>에 젖는데  
정호<sup>55)</sup>에 화살을 두고 왔지.

---

51) 혜고: 매미의 일종. 혜고는 여름에만 살기 때문에 봄, 가을은 알지 못 한다.

52) 대춘: 중국 강남 지방에서 나는 나무 이름.

53) 세(世): 보통 30년을 말한다. 100세는 3,000년.

54) 화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 꿈속의 세계.

55) 정호: 지명(地名). 고대전설에서 황제가 용을 타고 승천한 곳.

거문고에서는 남훈<sup>56)</sup>의 소리가 끊겼고  
 구의산 에는 슬픈 바람뿐이로구나.  
 박읍<sup>57)</sup>에 남은 자취가 있고  
 옛터전은 호풍<sup>58)</sup>에 있지.  
 별떼처럼 오백<sup>59)</sup>은 시끄러웠고  
 개미처럼 칠웅이 진을 쳤었네.  
 말 위에서 보낸 세월이  
 어느덧 4백 년이었지.  
 그만두어라,  
 구릉에는 마른 해골이 구르는데  
 천지를 돌며 살펴보니  
 조균<sup>60)</sup>에게는 그믐과 초하루로다.  
 세월이 그 얼마인지 탄식하고  
 어지럽게 도는 것은 그 얼마인가?  
 백 년 동안 힘줄과 뼈를 괴롭히지만  
 한 생애가 어긋나는 것이 어렵기만 하네.  
 어지럽게 승화<sup>61)</sup>하여 마침으로 돌아가니  
 떠돌이 인생길도 거의 쉬게 되겠지.  
 내 모르겠네, 천지 가운데에서  
 누가 매미처럼 형체를 벗어던지나?  
 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식견에도 도를 달리하지만  
 못 사람들이 우물 속 개구리인 것을 보니  
 슬퍼라 꿈틀거리면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네.  
 전체를 생각하는 일에도 스스로 몽매하고  
 피를 내는 것도 입고 먹는 데 지나지 않네.

---

56) 남훈가: 순 임금의 지었다는 노래

57) 박읍: 중국 역사상 은나라의 도읍지로 알려진 곳

58) 호풍: 서주의 수도였던 풍과 호. 풍은 문왕이 호는 무왕이 도읍한 곳이다. 그리하여 도읍지 풍호.

59) 오백(五伯): 다섯 사람의 패자.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진나라; 목공, 송나라; 양공, 초나라; 장왕을 일컫는다.

60) 조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스러지는 균류 식물로 지극히 짧은 생명을 비유한다.

61) 승화(乘化): 자연의 흐름을 따라 감.

성인의 큰 도리가 있어도  
 만 가지 중 하나도 엿보는 이가 드물구나.  
 보는 바가 비좁은 데 따라서  
 지해도 광달하게 두루 하지 못하네.  
 이것은 참으로 벌레가 봄에만 머물러  
 네 계절이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네.  
 비록 그러하지만 물건이 고르지 못한 것은  
 물건의 정상(情狀)이고  
 크거나 가늘거나 길거나 짧거나 간에  
 생명을 주어 생명을 갖추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또 어찌 놀라겠는가?  
 하루살이는 일생이 아침나절이고  
 거북과 학은 천 년을 살지.  
 나무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고  
 풀에는 협명<sup>62)</sup>이 있다네.  
 팽조<sup>63)</sup>는 팔백 년을 살았지만  
 상<sup>64)</sup>은 한 해도 못 살았지.  
 다 크고 작은 것은 평소에 정해졌으니  
 사람이 도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그 큰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천지에는 이미 시작과 끝이 있을 것이고,  
 해와 달도 또한 차고 이지러짐이 있네.  
 하물며 물건의 이치는 함께 태어나서  
 한 하늘을 공유하면서 나누어갖지.  
 어찌 그 길고 짧음을 비교하면서  
 어지럽게 영화는 기뻐하고 메마른 것은 슬퍼하리오.  
 천지에는 시작과 끝이 있음이여  
 나에게게도 또한 그 시작과 끝이 있다네.

62) 협명: 중국 요임금 때에 나왔다는 상서로운 풀의 이름.

63) 팽조: 전설속의 인물. 전설에 따르면 양생을 잘해서 팔백 살 고령까지 살았다고 한다.

64) 상(殤): 일찍 죽음, 요절 함.

마음을 활짝 열어 크게 살펴본다면  
 저것이나 이것이 하나로써 함께 돌아간다네.  
 다만 근심할 일은  
 사람이 천지에 태어나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벌레들과 다른바는  
 오로지 지키는 것이 있음이라.  
 물건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오히려 온전하게 받으면서도  
 사람은 가장 영험한 존재인지라  
 어찌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리오.  
 들으니 옛 사람 가운데 순 임금<sup>65</sup>이 있으니  
 천지에 명성이 자자해 길고 오래 갔다네.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인색하며  
 저는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두터운가?  
 그 가진 바를 아니  
 나에게게도 있어라.  
 순 임금과 같기를 힘쓰면서  
 스스로를 구차하게 만들지 말라.  
 누가 차마 사람이 되어  
 미미한 벌레와 함께 썩겠는가?  
 만약 스스로 극진하지 않다면  
 미물이나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듣겠지.  
 작고 크거나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근심할 바가 아닌 것이어서  
 또한 스스로 근심할 겨를도 없을 뿐이다.

#### ◆추성부

말하기를 혼돈한 상태에서 처음 세상이 열렸을 때  
 온갖 구멍들이 입을 벌리고 비로소 터졌다네.  
 이의<sup>65)</sup>가 형상을 낼 때 광대했는데

---

65) 이의(二義): 음(陰)과 양(陽), 혹은 일월(日月), 천지(天地)

온갖 무리들이 모양을 갖추며 뒤섞였지.  
 문득 천기<sup>66)</sup>가 움직여 제어하니  
 오묘하게 소리가 되어 서로 부딪쳤네.  
 무릇 소리가 물건과 접촉하면  
 만 가지로 다르게 흠어져 불려지니  
 때로 크고 작으며 울림이 달라지기도 했고  
 때로 맑거나 흐려 들림에 차이가 있기도 했네.  
 이에 처절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는데,  
 가만히 나는 이 귀뚜라미 소리에 슬퍼하노라.  
 한 해가 흘러가 저물려고 하는 때  
 옥수<sup>67)</sup>가 계절을 맡게되지.  
 하늘이 텅 비고 고요하게 열리니  
 답답하게 온갖 형상들이 처량하고 쓸쓸하구나.  
 처음에 거센 소리가 금방 에서 들리더니  
 마침내 모든 벌레들에게 운에 맞게 베풀어졌네.  
 차츰 낙엽이 지면서 요란하게 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나무와 대나무를 치면서 뽕뽕 울리네.  
 관악기 현악기가 달리하듯이 즐즐 거리는데  
 쇠나 돌이 꺾꺾 대는 소리는 아니었지.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나 의아해 했더니  
 아연 파도가 거세게 이는 듯해 밤에 놀라 깨었네.  
 흠어지는 것은 마치 시석<sup>68)</sup>이 무너지고 날아가는 듯하고  
 시끄러움은 만 마리 말이 세차게 내달리는 것 같구나.  
 문득 대붕이 바다 위를 날아가는 듯하고  
 아연 용문에서 물줄기가 무너져 찢기는 듯하네.  
 텅 빈 방안에 있는 시인을 겁먹게 만들고  
 깊은 규방에서 상념에 젖은 아녀자를 불러일으키네.  
 유배를 당한 나그네가 바닷가에서  
 하릴없이 임금을 그리워하며 눈물 닦게 만드네.

---

66) 천기(天機): 하늘이 부여한 영기를 말한다.

67) 옥수: 신의 이름. 가을을 맡은 신. 하늘에 있어서 인간의 형벌을 맡아 본다고 한다.

68) 시석: 화살과 첩석. 옛날에 성을 지킬 때 쓰던 무기.

관산<sup>69)</sup> 만 리 밖 타향에서  
 정부<sup>70)</sup>의 아픈 심정을 더한 것 같구나.  
 넓은 문을 오랫동안 닫아걸고  
 진후의 꿈은 몇 번이나 깨었나?  
 깊으로 만든 부채처럼 은혜가 열어지니  
 반희의 원망을 그 누가 알겠는가?  
 송옥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듯하니  
 초목이 변해 시드는 것에 슬퍼하노라.  
 반랑의 귀밑털 위로  
 서리와 눈이 이미 내린 것을 탄식하네.  
 하물며 뜻 있는 선비가 깊이 근심하면서  
 십 년이나 칼을 써보지 못한 것 같구나.  
 가벼운 추위 속에 놓인 사람이  
 옷을 받을 때가 이미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변해 빗질을 하니 새로 머리가 하얗고  
 용모는 거울 속 오랜 연지마저 바랬으며  
 바람과 먼지가 거세게 몰아쳐서  
 마음과 뜻이 괴로워 꺾이고 손상되었네.  
 굶주린 송골매가 구렁 속에 있으니 슬프고  
 늙은 천리마가 말구유에 엮드렸으니 안타까워라.  
 귀뚜라미 소리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뜻은 천 리 밖과 푸른 하늘에 두었네.  
 비록 그렇지만  
 소리란 것은 소리 있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만 조화<sup>71)</sup>를 느껴서 서로 믿는 것이지.  
 조화 또한 능히 소리 없는 것으로 하여금 소리 있게 할 수는 없네.  
 마침 서로 놓이게 되어 양자가 서로 부르는 것이지.  
 기운이 이르면 느끼게 되고  
 사람과 물건이 하나가 되네.

---

69) 관산: 중국 북방 변경에 있는 산.

70) 정부(征夫): 행역에 나선사람. 또는 출정한 사병.

71) 조화: 자연세계를 창조한 사람. 또는 자연이 창조하거나 화육함.

우직<sup>72)</sup>은 요순을 기다려 소리를 내게 되었으니  
 요순은 우직에게 있어서 가을이 되는 셈일세.  
 이주<sup>73)</sup>는 탕왕과 문왕을 기다려 소리를 내게 되었으니  
 탕왕과 문왕은 이주에게 있어서 가을이 되는 셈일세.  
 목탁<sup>74)</sup>은 육경<sup>75)</sup>에서 소리를 내었으니  
 육경은 또한 공자(孔子)의 한 가을이라고 하겠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요 임금의 하늘을 이고 순 임금의 해를 바라보면서  
 또한 장차 가을에 귀뚜라미가 오기를 기다려  
 대아<sup>76)</sup>를 올리면서 스스로 소리를 내리라.

### ◆당나라 위징이 인의(仁義)를 베풀어야 한다고 올린 글을 본받은 표 표 / 表

－ 계유년(1513년) 봄 별전에서 주필을 시험볼 때

훌륭한 군주가 원형의 영역을 밝았으면 당연히 정치를 하는 근본을 앞세워야 하고, 미천한 신하가 인의의 이야기를 진술하면 쓰임이 훌륭한 정치에 이르는 요체를 도와야 합니다. 마음대로 비천한 생각을 서술하여 어찌 총명한 군주의 들음을 더럽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인의의 큰 도리는 실로 제왕이 항상 가야 할 길입니다. 당우<sup>77)</sup>가 이로 말미암아 옹희<sup>78)</sup>의 풍도에 이른 것이고 삼대가 이것으로서 크게 융화하는 전성기를 이룬 것입니다. 진실로 이 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찌 왕도의 다스림이 바른 길을 걷겠습니까? 걸주<sup>79)</sup>는 형벌을 가하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위세를 부렸고, 전국시대에는 교활하게 속이는 나쁜 술법들을 숭상하더니 마침내 어육이 되어버리는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제왕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 잔악하고 포악한 악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니

72) 우직(禹稷): 하우와 후직을 가리키는 말. 두 사람은 요순의 명을 받아 산천을 정비하고 백성들에게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을 가르쳤다. 현신으로 불린다.

73) 이주(伊周): 상 나라의 이윤과 서주의 주공단. 두 사람 모두 섭정을 맡아 후에 병칭 되었다.

74) 목탁(木鐸): 추를 나무로 만든 큰방울. 고대에 문사 또는 법령을 발표할 때 흔들고 다녔다고 함.

75) 육경: 『시경』과 『서경』 『역경』 『주례』 『예기』 『춘추』 등 여섯 가지 서책을 아울러 일컫는 말.

76) 대아: 『시경』 시체의 하나. 왕정 폐흥의 자취를 읊은 연향의 악가 이다.

77) 당우: 도당씨와 유우씨. 요 임금과 순 임금 시대를 말함.

78) 옹희: 순 임금 때에 군신 상하가 서로 화열 한 기상. 그리하여 화락하고 태평스런 세상을 말 한다.

79) 걸주: 한나라의 걸 임금과 상나라의 주 임금을 함께 부르는 말. 모두 폭군이다.



문덕과 무덕을 갖추어 성스럽게 되고 신령스럽게 되어 세상을 구제하려는 훌륭한 인재를 거느리고 잔악한데 떨어진 일들을 혁파하여 천하를 안정시켰으며,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넓은 덕을 쌓아 대당 제국을 삼신<sup>80)</sup>을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지금 오계<sup>81)</sup>의 뒤섞여 어지러운 상황을 맞이하여 어찌 삼대의 순박한 풍속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정치를 흥기시킬 흐름을 궁구함에 인의의 흐름보다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도는 진실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오로지 성스러운 덕으로 기본을 잘 가르쳐야지 어찌 교유<sup>82)</sup>와 박축<sup>83)</sup>을 기다리겠습니까? 진실로 조금씩 무릇게 만들면서 훈도해야 할 것입니다.

엮으려 바라건대 신의 근본을 돌이키려는 심정을 공홀이 여기시고 신의 돈독하게 교화하려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침내 인의의 도리가 행해지면 마음을 먼저 한 다음에 사방에 형벌을 가하도록 하시고, 이어 교화가 일어나는 책임을 두셔서 내 몸에서 시작하여 만백성에게 이르게 된다면 신은 삼가 모든 견고하고 깨끗한 충절을 가지고서 더욱 간절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요순의 일이 아니라면 감히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군주를 섬기는 직분을 다하기를 맹세하니, 인의를 시행하는데 무엇도 막지 못할 것이니 가만히 옛날의 기풍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천제께서 양필<sup>84)</sup>을 받으신 것을 찬송함

— 계유년(1513년) 봄 별전시 때 지음. 병서

먼저 말합니다.

푸른 하늘이 백성을 내서서 빼곡히 모여 무리를 지어 살게 된 이래로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군주를 세워 이들을 기르게 했고, 어진 사람을 세워 보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진 군주가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어진 신하들이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80) 삼신: 일월성신(日月星辰), 곧 해와 달과 별을 아울러 일컫는 말.

81) 오계(五季): 다섯 왕조가 자주 갈린 말세라는 뜻. 중국 후오대를 일컫는 말이다.

82) 교유: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뜻. 여기서는 지나치게 형벌이나 제도에 얽매어 이를 집행하는 부작용을 말함.

83) 박축: 꺾박하여 못 살게 만들.

84) 양필: 보필의 임무를 훌륭히 감당하는 신하.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도가 천하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릇 어진 군주가 있는 곳에 도도 존재하게 됩니다. 도가 존재하는 곳에 어진 신하도 나오는 법입니다.

옛날을 돌아보면 요임금과 순임금께서 이 도를 잘 실천하셨기 때문에 고요<sup>85)</sup>와 설<sup>86)</sup>이 곁에 있었던 것이고, 하결이 이 도를 난폭하게 없애니 강포한 무리들이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군주가 있으니 그런 신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널리 생각하니 우리 사왕<sup>87)</sup>께서 양음<sup>88)</sup>을 하시면서 3년을 마쳤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항상 어느때나 올바른 도를 찾으셨는데, 천제께서 훌륭한 신하를 내려주셨으니 그 도를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이 이룬 효과이고, 이정성에 감응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대개 푸르고 푸르게 위에 계신 이를 일러 천(天)이라 부르니, 만물을 주재합니다. 호령을 내는 이를 제(帝)라 부르고, 만물가운데 순수하고 가장 신령한 이를 인(人)이라 부릅니다. 이른바 하나로 엮는다는 것은 감응하는 도가 아니겠습니까?

대개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이치의 근본이 있었고, 이미 천지가 있고난 뒤에 이치도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이치가 없는 것은 없고, 어떤 일이라도 이치에 따라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찬란한 것은 비록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혼연일체인 것으로 따지면 천·제·인이 처음부터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순종하면 위에서는 따르고, 이쪽에서 느끼면 저쪽에서 응하니 이치가 같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어두운 군주가 이 도를 생각할 줄 알지 못하니, 때문에 이치가 비로소 어그러지고 이에 감응하는 도도 막히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천과 인이 상통하는 이치는 저절로 떨어져서 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사왕께서 도를 생각하시는 것은 그 다름을 합치시키고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왕의 배움은 바로 도를 생각하는 근본이 아닙니까! 지금 임금께서 이미 정당한 학문을 배우시고 요·순·우 임금으로 서로 전해져온 도를 생각하셔서 어진 신하를 찾으시는 정성이 은연중 침묵

---

85) 고요: 순 임금의 신하. 법리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또 옥을 만들었다.

86) 설: 순 임금의 신하. 사도가 되어 정치를 보좌하였다.

87) 사왕: 선왕(先王)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

88) 양음: 임금이 부모상에 거상할 때 있는방.

하는 가운데 통하여 바로 잡히니 상제가 어찌 요·순·우 임금의 현명함으로서  
오늘에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상(圖象)으로 봐도 닮았고 좌우의 신하들이  
도우니, 장맛비가 들 때 배를 띄우고 누룩을 빚을 때 매실을 누렇게 만드는 일  
을 바라 꾸짖는 일은 비록 왕께서 하신 것이지만 또한 반드시 왕께서 하신 것이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신(史臣) 아무개는 이미 이 사실을 서책에 기록하여 애오라지 다시 성덕을  
널리 떨치고, 왕께서 훌륭한 신하를 얻은 까닭이 제(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움에 있음을 서술하여 후세 왕으로 하여금 어진 신하를 얻는 방법이 하늘에 있  
는 상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게 있는 상제에게 있을 때 반드시 얻게  
됨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를 노래로 지어 찬송하여 글을 지었습니다.

도는 하늘에 있지만  
이를 넓히는 것은 사람에게 있네.  
하늘이여 사람이여  
이를 통하게 하는 것은 몸에 있네.  
하늘은 멀리 있지만  
도는 가까운 곳에 있지.  
하물며 이 어쉴이란  
실로 나와 같은 무리로다.  
어진 이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도를 찾는 일은 쉽지 않네.  
오호라! 훌륭한 임금이여  
큰 실마리를 이으셨구나.  
삼 년 동안 조심하면서  
명령을 내리거나 말씀도 하지 않으셨네.  
탈상을 마친 처음에는  
공손하게 묵묵히 생각을 하셨지.  
갑자기 황급한 상황을 당하셨어도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네  
그 정성이 하늘에도 통했으니  
상제도 역시 마땅하다 여기셨지.  
왕께서 말하기를 오호라!  
내 꿈이 길하지 않은가?

그 꿈은 또 어떠한가?  
 꿈에 훌륭한 신하를 얻었으니  
 형상하는 바가 오래갈 것이로다.  
 주(周)나라가 천하를 받은 것도  
 여기에서 얻은 것이고.  
 이것을 들판에서 전해 받아서  
 마땅한 자리에 있도록 했네.  
 이에 좌우에서 보필하니  
 옳은 정치를 열고 비옥하게 했네.  
 마치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격이니  
 바람이 간절하면 책임도 깊어지지.  
 성스러운 학문을 이끌려면  
 민첩하게 힘쓰고 와서 수양을 해야지.  
 즐겁구나, 군자들이여  
 한 나라의 아름다움일세.  
 어진 임금을 만나기 어렵다면  
 하늘을 향해 충심을 열어야지.  
 중간에 매개가 없더라도  
 그 심정은 신령스럽게 갈아졌네.  
 이에 찬송하여 떨치니  
 하늘에게 영험한 용을 받음이라.  
 왕이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늘에 사정을 알려야지.  
 상제가 말하기를 오후라!  
 어썸 밖에 도가 없고  
 도 밖에 어썸이는 없는 것이니라.

#### ◆ 술이 끼치는 재앙 책 / 策

문노라.

술이 재앙이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 근원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미워했고, 무왕은 〈주고〉를 지었으며, 위무공도 허물을  
 뉘우치고 시를 지었다. 그 생각함이 멀긴 하지만 모두 능히 그 근원을 끊어버리

지는 못했으니 어인 까닭인가? 이후 세상의 군주들 가운데도 술로 패망한 이들이 많았는데, 일일이 헤아려서 말할 수 있겠는가?

삼가 생각하니 우리 왕조의 군주들도 대대로 술을 경계로 삼으니, 세종대왕은 글을 지어 대외에 공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앞서의 세 성인(우 임금과 무왕, 위무공)의 견해와 다를 것은 없지만 이후의 술을 숭배하는 것은 지금이 더욱 심해졌다. 때로는 완전히 술독에 빠져 일마저 접어버렸거나 때로 미혹하고 문란해져 덕을 망치기도 했으니, 비록 농사가 흉년인 때를 만나 금지령을 내리고 막았어도 여염에서는 술을 빚는 일이 그치지 않아 곡식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 되었다. 이에 이를 구하고자 하니 그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대답합니다.

과거를 담당한 선생께서 춘위<sup>89)</sup>에서 문제를 냈는데, 특히 ‘술의 재앙’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역대의 일들을 거론하시고 현재 사정까지 이르러서 폐단을 구할 방법을 듣고자 하시니 제가 비록 배운바가 없지만 어찌 입을 다물고 있어 두터운 바람을 저버리겠습니까? 가만히 말씀드리니 세상에는 쉬운 재앙도 있고, 구제하기 어려운 재앙도 있으니, 일어나기 쉬운 재앙은 물건의 재앙이고, 구제하기 어려운 재앙은 마음의 재앙입니다. 구제하기 어려운 것을 먼저 해결하고 일어나기 쉬운 것은 뒤로 돌려야하니, 마음의 재앙을 먼저 시작하고 물건의 재앙은 마지막에 처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나무에 병이 생기면 벌레들이 끼게 되고, 젓갈이 쉬게 되면 구더기가 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의 재앙이 어찌 마음에서 일어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심합니다. 술의 재앙이여.

무릇 사람에게는 떳떳한 본성이 있는데 술이 이를 해치고, 질서가 있어 오류가 있는데 술이 이를 무너뜨리며, 체제로서 온갖 일들이 있는데 술이 이를 없앤다면 술은 바로 본성을 죽이는 도끼와 같은 것입니다. 성현으로서 들어간 사람도 바보가 되어 나오고, 총명한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도 흐려져서 나오며, 강직하게 들어간 사람도 나약해져서 나온다면 술은 바로 마음을 공격하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술이 사람에게 재앙을 입히니 영원히 끊어야 하고, 술이 사람의 체모를 잃게 하니 다시는 써서는 안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술의 재앙이야말로 큰 것입니다.

---

89) 춘위(春闈): 당나라와 송나라 때 예부에서 보이던 봄철의 과거 시험

그러나 술의 쓰임도 역시 큼니다. 대개 술의 됴됨이가 제사에도 필요하고 친족을 화합하게 하는데도 필요하니 여러 가지 의례를 치를 수 있게 하고 군신 간의 연회를 열 수 있게 해주는데, 어찌 영원히 끊어버리겠으며 어찌 완전히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음양과 풍우, 회명(어둡고 밝은 것)은 하늘의 여섯 가지 기운입니다. 무릇 사람의 기운이 지나치면 질병을 부르게 되는데 의사는 여섯 기운이 질병을 부르는 원인이라면서 음양과 풍우, 회명이 없어지면 질병도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사는 의사 가운데서도 졸렬한 축에 속합니다. 때문에 몸을 지키는 일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질병이 여섯 기운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기르는 일도 나에게 있는 것이지 재앙이 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차하게 술에게로 허물을 돌리고 자기 마음으로 돌리지 않아서 그저 일어나기 쉬운 것만 걱정하고 구제하기 어려운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본성을 잃애고 몸을 망치면서 병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부르는 데 들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옛날의 명군들이 마음으로써 아랫사람들을 인도하고, 옛날의 좋은 선비들이 마음으로써 그 몸을 길었던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군주와 용렬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거덜 냈던 것도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물음이 미치는 바를 밝혀 말하겠습니다.

우선 원시 시대를 살펴 멀리 현풍<sup>90)</sup>을 보면 풍속과 백성들은 소박하고 순박해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땅의 마땅함에 순종했습니다. 물로서 술을 빚으니 당우와 하우씨가 이를 가지고 제사에 바치는 용도로 삼았는데, 의적<sup>91)</sup>에 이르러 맛좋은 술을 빚었습니다. 은나라를 거쳐 주나라로 바뀌어도 술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그 근원을 가히 거슬러 올라가 살필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맛좋은 술을 미워한 글을 읽으면 우 임금이 재앙을 염려한 것이 컸고, <주서>에서 <주고>편을 읽으면 무왕이 재앙에 대비한 것이 깊었습니다. 『시경(詩經)』에서 <초연>의 시를 읽으면 위무왕이 재앙에 대해 위우치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징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을 미워했다는 글은 <하서>에 보이고 주인<sup>92)</sup>의 직책은 주관에 실려 있습니다. 저 강작<sup>93)</sup>에 술을 따른다는 구절이 자경의 시에 실려 있으니, 능히 그 근원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도 명백

90) 현풍: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현천(玄天)의 바람.

91) 의적: 전설에 나오는 하우 때 술을 잘 빚던 사람. 처음 술을 빚었다고 한다.

92) 주인(酒人): 옛 관직 이름. 술을 빚는 일을 관장했다.

93) 강작: 비어 있는 술 그릇.

합니다. 오호라! 우 임금과 위무왕의 훌륭한 덕으로 재앙을 뉘우치는 일에 극진하게 대비하는 것이 깊고 컸으니, 어찌 사람에게 해가 없고 나라에도 해가 없으니 괜찮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덕으로도 능히 교화할 수 없고, 교화가 능히 아랫사람들 까지 이끌 수 없어 그런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술로써 예를 갖추는 때 필요한 물건으로 쓰고 나이 많은 분들을 받들며 신명을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도구로 쓰니 감히 끊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하기를 손님과 주인이 여러 가지 예를 행할 때 술을 세 번 돌린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하루 종일 술을 마셔도 감히 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에도 때를 두고 쓰는 것에도 절제를 두면 본성이 난폭해지고 감정을 촉발시키는 데 까지는 나가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인께서 술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아셨고, 또 술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비록 인재를 쓰는 사이에도 금지하는 일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술을 따를 때 상(觴)을 쓴 것은 몸이 상할까 경계한 것이고, 몸을 조아릴 때 치(匕)를 쓴 것은 그 위험함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그 술잔을 잡고 그 술을 입으로 마시게 하는 것이니, 환란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대개 모두 그 마음을 먼저하고 그 재앙을 뒤로 하면 될 것으로, 그 재앙이 비록 일어나기 쉽다고 해도 그것을 구제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호라! 세상이 쇠미해지고 도마저 미미해지는 데다 사람의 마음도 옛날과 같지 않으니 폭군과 용렬한 군주의 무리도 마음을 기르는 도와 재앙을 없애는 근본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과 뒤가 모두 패망하니, 다 술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주지 했던 걸(桀)이나 술에 절어 산 주(紂), 주색에 탐닉했던 한나라의 성제<sup>94)</sup>, 음악과 기녀, 술로 방종했던 진후주<sup>95)</sup>에서부터 수나라의 양제와 당나라의 명황<sup>96)</sup>에 이르기까지 술을 너무 좋아해 마치 같은 바퀴자국을 지난 것처럼 재앙을 부르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비록 좌제<sup>97)</sup>를 쥐고서 헤아려본다고 해도 그 죄악과 책임을 따지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94) 성제: 기원전 52~기원전 7년, 유오, 전한의 황제

95) 진후주: 533~604년 진숙보, 자는 원수, 남조 진나라 선제의 맏아들, 진나라 마지막 군주.

96) 명황: 당현종을 달리 부르는 말.

97) 좌제: 둘로 나눈 부신의 왼쪽의 것. 하나를 자기 손에 두어 좌계로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 우계로 삼았다.



선생께서 숫자로 헤아린 것을 듣고 싶어 하니 감히 혀를 숨겨둘 수 없어 짐짓 백에 하나를 열거하니, 우리나라의 열성조께서 왕위를 서로 이으시어 당우삼대의 풍속을 만회하고자 힘쓰고 요순과 우왕, 무왕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셨을 때 반드시 먼저 아래 백성들의 마음의 재앙부터 막고 또 술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한 일은 태종께서 지은 계주의 글에서부터 나왔고, 이어 세종께서도 보이셨는데, 이는 바로 하나라 우왕이 맛있는 술을 미워하고 주나라 무왕이 누이의 나라에 고하며 위무왕이 잔치의 풍성한 마음을 지은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사람마다 마땅히 스스로 술에 빠지는 악습을 없애고 순박한 옛날의 풍속을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녀장을 우물 속에 던져버리고 몸을 술독사이에 놓히면서 사대부로서 술에 빠진 사람들은 누룩을 베고 술지개미를 깔고 있지 않으면 얼굴이 불그레하거나 허리가 썩었으며, 평민으로서 술에 방종한 사람들은 음양<sup>98)</sup>하는 예를 엄숙한 연회에서조차 행하고 온유한 표정을 화목한 의식에서 행해야 하는 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홀로 어찌 감당 하시겠습니까? 성상께서 보위에 오르신 해로부터 아래에서 음수를 숭상하는 이들이 날마다 달마다 술에 빠져 극에 이르러 완전히 취해 일도 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어지럽고 문란해져 덕을 내 팽개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술집에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 춤을 추고 길거리와 골목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음란하여 방종하고 방탕한 이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통달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술과 여색을 멀리하면 사람들은 썩었다고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상복을 입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에 취하고 재계하면서 지낼 때도 술과 산가지가 어지러우니, 3년 동안 복상하는 일을 어찌 제대로 치르겠으며 경건하게 재계하는 정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릇 술과 고기는 하나의 물건일 뿐인데, 지금은 이를 나눠서 둘로 하니 어찌다 이렇게 어그러졌는지요? 술을 이미 얻어 마신다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국물 등을 구해 함께 뜯어 먹는 일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것으로써 조정에도 이르고 이것으로써 방기<sup>99)</sup>에도 이르며 이것으로써 사방에 이르러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이것이 무슨 풍속입니까?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근래에는 해마다 곡식이 여물지 않고 죽어 백성

98) 음양: 두 손을 잡고 허리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뜻을 표시함.

99) 방기: 경기도 지역을 말할 때로는 전국을 말하기도 함.

들 가운데 굶주려 죽는 이가 많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보전하지 못하고 헤어져 떠돌게 되어 촌락이 쓸쓸해지고 닭울음 소리나 개울음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술을 숭상해 일삼고 동복과 미녀들이 화려한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창기의 노랫소리와 기녀들의 풍류소리가 집안에 줄지어 흐르니 삼생<sup>100)</sup>의 고기는 썩어 먹을 수 없고 맑고 진한 술들은 다 쉬어버려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으로도 만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자가 흰쌀밥을 먹지 않고 공의자가 밥을 먹으면서 고기를 멀리했던 일과 비교하면 하나같이 어그러진 것이 어찌면 이리도 심합니까? 나라가 비록 날마다 거듭해서 금주령을 내린다 한들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호라! 근원이 시작되어 거세게 흘러가고 길이 열려 사방으로 통하게 되어 저 여염에서 술을 빚는 일을 끊이지 않고 곡식들은 바닥이 나고 있으니 어찌 죽히 괴이하지 않습니까? 풍속이 이와 같고 선비의 습속이 이와 같은데,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세태가 점점 무뎌져버려 이곳으로부터 아래까지를 더럽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교화가 밝지 않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논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자못 망해버린 왕조의 풍습인데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써 이들을 이끌지 않고 다만 법률로만 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그 폐단을 구제한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능히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습속을 바꾸어서 모두 술이란 제사를 지낼 때만 쓰는 것이지 잔치하고 유람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라고 여길 것입니다. 또 술이란 향음에 대비하는 것이지 마구 취하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이에 그 뜻에 맞춰 각자 그 분수를 지키게 되어 저 술이 내 마음을 침탈하지 못할 것이고 마음도 스스로 욕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 재앙도 내 몸을 촉발시켜 벗겨내지 못하니 몸도 능히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아랫사람들이 술을 숭상하는 일도 장차 바뀌어 착함을 숭상할 것이고, 아랫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일도 장차 바뀌어 의로움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을 좋아하면 공익을 받들고 나라에 순종하기에도 겨를 없을 것인데 어찌 일을 그르칠까 걱정

---

100) 삼생: 제례에 있어서 제물로 쓰던 세 가지 동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착함을 숭상하면 배움에 힘쓰고 도를 구하기에 시간을 보낼 짬도 없을 터인데 어찌 어지럽고 문란해져 도를 망칠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뒤라면 비록 그들에게 진한 술을 마시게 하고 삶은 고기를 권해도 오히려 그 분수를 넘거나 절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인데, 술 빚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곡식이 바닥나는 일 따위를 또 어찌 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일찍이 지금의 세태로 말미암아 지금의 풍속을 살펴보니 질병은 거의 고질병이 되어 썩은 나무에는 무늬를 새길 수 없는 꼴이라 진실로 위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면서 이를 시행하려는 뜻을 더하여 배움에 힘써 마음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돌아보아 구구하게 법령으로만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법령이 나가면 간사한 무리들이 나오고 법령이 하달되면 거짓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마치 쇠를 끓여지고 화재를 진화하려 하고 펄펄 끓는 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식히려고 하는 것이니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웅<sup>101)</sup>이 말하기를 “정나라와 위나라의 퇴폐한 곡조는 기<sup>102)</sup>에서 비롯되었지만 역시 소소<sup>103)</sup>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법률과 아름다운 정치는 지난 왕조의 퇴폐한 풍조를 거쳐 온 뒤로 바뀌어 진나라나 수나라의 형제와 같이 되었으니, 요컨대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고치고 교화시키며 개혁하고 시행 할 뿐입니다.

옛날에 무왕이 일개 누이의 나라로써 주 임금의 악행에 물들었지만 오히려 열심히 권유하고 깨우쳐 잘못을 고치게 했으면서도 이루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는 사방의 나라들과 돌렸으면서 하나의 누이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상전하께서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가르치신다면 어찌 주나라 무왕의 치세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라 하여 능히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이와 같으니 다행이 과거를 맡은 선생께서 혹여 옳다고 여기셔서 주상전하께도 아뢰어 주신다면 참으로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

101) 양웅: 기원전 53~기원후 18년, 전한 촉군 성도 사람. 자는 자운이다.

102) 기: 순 임금 때의 약관

103) 소소: 순 임금 때의 음악 이름

## ◆성현의 근심과 두려움

문노라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근심도 않고 두려워도 않는다.”고 했고, 맹자는 말하기를 “요 임금의 순을 얻지 못할까를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다.”고 했다. 순 임금은 귀하게도 천자가 되었어도 근심에서 풀려나올 수 없었고, 공자도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으시고는 또 말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성현에게는 과연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인가?

대답합니다.

자사자<sup>104)</sup>는 말하기를 “희노애락이 드러나기 전에 일러 중(中)이라 하고, 드러나서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和)라 한다.”고 했고, 주자 역시 말하기를 “중화는 성정이 바름을 얻는 것으로 성현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성현의 희노애락이 반드시 그 중화의 도를 다한 것을 아신다면 성현의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비록 때로 의심이 든다고 해도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청컨대 논의를 펼칠 수 있다면 하늘이 성인을 낳으신 까닭은 장차 그 도를 걱정하여 이를 천하에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성인이 이 일을 책임으로 맡은 것은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 원칙을 세워 만세에 태평한 기운을 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요 임금은 밝은 덕으로 빛을 천하에 덮었으니 백성들의 운명을 맡아 천지를 다스리는 책임을 진 것입니다. 재위한 지 17년에 반드시 성인을 얻어 이를 전하니, 천하로 하여금 마땅한 자리를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주<sup>105)</sup>가 부족하여 족히 순 임금의 뒤를 이어 요 임금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순 임금과 같은 사람을 얻은 뒤야 능히 하늘이 맡긴 막중한 임무를 부탁하고 만국의 백성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 임금이 이것을 순 임금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능히 그 도를 전하여 제위를 다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 임금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근심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근심한 것이고, 천하를 근심한 것이며, 만세를 근심한 것입니다.

104) 자사자(子思子): 자사 기원전 483~기원전 402년. 전국시대 노나라 추읍 사람. 이름은 급이고 자사는 자로 공자의 손자이며, 『중용』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105) 단주: ?~? 요 임금의 아들.

또 저 하늘이란 것은 만물이 바탕을 삼아 시작되는 근거이고, 땅은 만물이 바탕을 삼아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고생하고 노심초사하는 은혜가 천지의 그것과 합치하니 그래서 망극(다함이 없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 임금의 근심을 한 까닭은 그 호흡과 혈기가 몸에서 소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불순하여 자식의 도리를 잃겠습니까? 반드시 아버지의 후덕함을 미루어서 크게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천지를 섬기는 도를 바탕으로 부모를 섬기는 정성을 얻게 되니, 그것이 대효(大孝)입니다. 진실로 부모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은혜롭게 여기면서 효모하는 심정을 버린다면 이것은 천지를 더럽게 여기고 천지를 버리는 꼴입니다.

제가 순 임금의 대효에 대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무릇 옛날의 큰 성인들은 아버지가 완고하고 어머니가 시끄러워 곳집을 수리하고 우물을 파는 재앙이 있어 거의 천륜이 무너질 지경이 되었으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귀영화를 소개와 같이 보고 천하를 헤어진 신발짝처럼 보아 다만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뿐입니다. 만약 고수<sup>106)</sup>가 저 예<sup>107)</sup>에 이르지 않았다면 순 임금의 근심도 끝내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공평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를 빛내는 것은 성인에게 있고, 성인에게 명을 내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공자를 낸 데에도 그 뜻이 있을 것이지만, 다시 공자를 곤궁에 처하게 한 것은 하늘이 성인을 곤궁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장차 공자로 하여금 천하를 두루 다니게 하여 눈 멀고 귀 먹은 풍속을 바로잡고 좋은 정치를 이루는 법이 만세에 드리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나라의 도가 쇠미해지고 왕의 기강이 해이해지자 신하도 능히 그 군주를 두지 못하고, 자식도 능히 그 부모를 두지 못하게 되어 하늘의 이치가 이미 없어졌고 인간의 욕망만 들끓게 되니, 성인의 세상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어찌 이것에 대해 항상 두려워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이에 공자께서 왕도의 기풍이 삭막해진 것을 걱정하고 세상의 도리가 쇠미해진 것을 애통해 하여 천리로써 자임하고 사도로써 스스로 기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의

106) 고수: 고제 우순의 아버지다.

107) 저예: 『맹자』이루 편에 나오는 말. 순 임금이 온천하가 자기를 추대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완악했던 그의 아버지를 극진한 효성으로 받들고 감화시켜 천하에 부자 사이의 윤상의 기본이 확립된 것을 일컬었다.

마음이 오전<sup>108)</sup>이 충실하지 못하다 여겨 스스로 서술을 감당하셨고, 오례가 쓰이지 않는다 여겨 스스로 질서를 잡으셨으며 오복<sup>109)</sup>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겨 스스로 명령을 받으셨고 오형<sup>110)</sup>이 쓰이지 않는다 여겨 스스로 토벌을 집행했습니다. 덕은 있었어도 지위는 없었으니 이백 남면의 권위를 빌려 『춘추』를 지어 왕법을 담았고 난세를 다스려 바름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준비의 등급을 서술하여 상하의 윤리를 세웠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칭찬하니 선함이 이로부터 권유되었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질타하니 악함은 절로 징계되었습니다. 그런즉 두려워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뜻을 두고 만세를 가르침을 드리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맹자와 같은 분은 아성의 자질로 전국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음모가 뛰어난 것을 왕이라 하고, 공적이 뛰어난 것을 백이라 하며, 말이 남다른 것을 지라 하고, 행동이 남다른 것을 현이라 하면서 임금된 자는 요순으로 법을 삼지 않고, 신하된 사람들도 이주<sup>111)</sup>에 마음 두지 않고 진나라의 위세로서 마음을 두었습니다. 배움을 한다는 사람들은 성현으로 스승을 삼지 않고 양목<sup>112)</sup>으로 스승을 삼으니, 때문에 당시 군주들의 법도와 형정이 뒤집혀져 구르고 착란되어 사악한 학설과 혹세무민하는 행동들이 인륜을 크게 훼손하여 장차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금수의 무리가 되도록 했으니, 그 재앙이 참혹했습니다. 맹자가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천하가 물에 빠지려는 것을 좌시하느니 성인들과 함께 그 두려움을 함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인의 도를 얻어 성인의 도를 밝혔는데, 성인으로서 먼 사람을 들 때는 요순을 반드시 칭하고, 성인으로써 가까운 분을 들 때는 반드시 공자를 들었던 것입니다. 훼손되고 무너진 상황에서도 돈독하고 후덕했던 덕성을 회복했고, 없어지고 분열된 현실에서도 도덕을 진작시키면서 양목이 제 뜻을 함부로 펴지 못하게 막았고, 향원<sup>113)</sup>들이 그 덕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108) 오전(五典):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인륜. 아버지는 의롭고(父義), 어머니는 자애로우며(母慈), 형은 우애가 있고(兄友), 아우는 공손하며(弟恭), 자식은 효성스러운(子孝)것을 일컫는 말.

109) 오복(五服): 상(喪)을 당했을 때 죽은 사람과의 혈통 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의 상복 제도

110) 오형(五刑): 다섯 가지의 형벌. 우순시대에는 목(이마에 글자를 새김), 의(코를 뺨), 비(발꿈치를 뺨), 궁(생식기를 도려 냄), 대벽(목을 뺨)의 다섯가지.

111) 이주: 이윤과 주공단을 가리키는 말

112) 양목: 양주와 목적. 양주는 전국시대 사람 극단의 이기주의자였음. 목적도 전국시대 사람으로 겸애설을 주장했다. 맹자는 이 두 사람의 학설을 이단이라 비난했다.

113) 향원: 향촌의 인정을 살피 이에 영합하려는 사람. 향인에게는 덕이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



그 공이 어찌 홍수를 막고 이적 들에게 항거하며 뱀과 용을 내몬 일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즉 그 두려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호라!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은 중화의 도를 잃지 않았으니 성현이 일을 처리하는 올바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살피건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군자가 몸을 지키는 떳떳한 도였던 것이고, 요순과 공자, 맹자가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성현이 일을 처리할 때의 큰 권도인 것입니다. 요임금에 있어서 순 임금을 얻지 못할까 스스로 근심하지 않았다면 요임금은 능히 천하의 근심에 대해 근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도를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순임금에 있어서 그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않아 자신의 근심으로 삼지 않았다면 순임금은 고수를 저예할 수 없어 능히 큰 효도로 일컬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난적으로써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공자도 능히 만세에 가르침을 드리워서 천하의 종주로 불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자에게 있어서 양목으로 두려움을 삼지 않았다면 맹자도 능히 선성의 도를 아름답게 하지 못했을 것이니, 그 공이 우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심한 바가 이와 같다면 근심한 것이 무엇인지는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 바가 이와 같다면 그 두려워한 바가 무엇이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자와 맹자의 말씀이 합당하고 중화를 바로잡은 것을 관찰한 뒤에야 성현의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대답합니다.

#### ◆옥중에 올린 상소 소 / 疏

신등은 모두 정신이 어지럽고 생각이 짧으며 어리석었는데도 태평한 시대를 만나 경악<sup>114)</sup>을 드나들면서 찬란한 빛을 가까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충심(衷心)이나마 다하고 시기하는 무리들과 맞서 싸우면서 바라기는 우리 군주께서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한 몸만을 위해 일을 도모했겠습니까? 하늘에서 해가 내리 비추듯이 어떤 사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비들에게 재앙이 한 번 열리자 장차 후일에 닥칠 이 나라의 명맥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의 문이 막히고 떨어져 생각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심속에 묵묵히 있다가 말을 길게 늘어놓았으니 참으로 차마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14) 경악(經軼): 조선시대 신하가 국왕에게 유학의 경서나 역사서를 강론하는 일이나 그를 행하는 자리. 일반적으로는 경연이라고 한다.



다행이 한 번 몸소 질문하시는 자리를 허락받았으니 만 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이 막히고 글은 움츠려들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익<sup>115)</sup> 『기묘록』에서

#### ◆망운산 기우문 문 / 文

－ 망운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쓴 글

산이 높고 우뚝하니  
바다를 누르는 관문입니다.  
바다의 기운을 뿜고 머금으면서  
비로도 내리고 구름으로 떠돕니다.  
신령들이 모여 안고 도우니  
은택이 백성 들을 맡으셨습니다.  
시절이 바야흐로 농사철에 이르렀는데  
가뭄 귀신이 일어나 위태롭고 고통스럽네요.  
산은 어찌하여 땀감을 쓰느라 붉게 혈벗고  
물은 어이하여 메말라 버렸습니까?  
쇠도 끈적거리고 돌은 녹았으니  
하물며 농사짓는 벼이겠는지요.  
열기를 씻고 마른 것들을 소생시키어서  
직분을 맡은 신령은 이를 베푸소서.  
신령이 외면하여 직분을 버렸다면  
어찌 이를 참아내겠습니까?  
내 조정의 명령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바다의 땅을 맡았습니다.  
두루 옹화<sup>116)</sup>한 기운을 베풀어서  
이 근심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소서.  
직접 희생을 잡아 실효를 요구하노니

---

115) 신익: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이다.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나 기묘사화 때 희생된 8현을 추모한 『팔현전』을 간행하기도 했다.

116) 옹화(雍和): 융합하고 화목함.

구휼하신다면 성스런 탕임금 아님이 없겠습니다.  
 이 미약한 정성을 받들어올리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을 다해 올립니다.  
 우리러 돌아보실 것을 바라보니  
 신령께서도 응답하여 내려주소서.  
 문득 구름 기운이 일어나더니  
 이곳에 두루두루 비가 퍼붓겠지요.  
 말라버린 벼도 생기를 되찾고  
 삼도 자라지 못하다가 싹을 틔우리다.  
 은혜가 백성들에게 고루 베풀어져  
 끼니도 잇고 옷도 입으리이다.  
 오직 백성들의 운명은  
 오직 신령의 곡식에 있습니다.

#### ◆통덕랑 단성현감 이공<sup>117)</sup> 묘갈음기 갈기 / 碣記

— 공인<sup>118)</sup>은 수원김씨인데 1511년(정덕 6) 9월 9일에 매장했다.

공의 이름은 겸인이요, 자는 수옹이며, 전의 사람으로 고려 때 태사<sup>119)</sup> 이도<sup>120)</sup>의 후손이다. 증조의 이름은 이연촌인데, 중현대부와 내부령을 지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선경인데, 정용낭장을 지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양성인데, 통정대부로 광주목사를 지냈다. 목사공은 판사 장원도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임진년(1412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는데, 가는 곳마다 명성과 치적을 올렸다. 병신년(1476년) 9월 21일 집에서 병으로 세상을 마치니, 향년 65살이었다. 공은 먼저 호군<sup>121)</sup> 이계의 따님을 아내로 얻었지만, 후손이 없자 다시 진의부위 김인중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2남3녀를 두었다. 장남은 사헌장령을 지낸 기사공이고, 차남은 진사 이사겸이다. 장녀는 현감 김수문의 아내가 되었고, 차녀는 진사 신제담의 아내가 되었으며, 삼녀는

117) 이공: 이겸인 1412~1476년, 조선 세조 때의 문신, 본관은 전의 호는 수옹 이양성의 아들이다. 단성현감을 지냈다. 외손 김구가 지은 묘갈음기가 『자암집』에 실려 있다.

118) 공인: 조선시대 5품 문무 관리의 정처(正妻)에게 내리던 작호.

119) 태사: 고려 삼사의 하나로 정1품직.

120) 이도: ?~?. 고려 태조 때의 문신, 개국공신, 전의이씨의 시조, 자는 극선이며, 시호는 성절이다.

121) 호군(護軍): 조선시대 5위에 속하는 정4품의 무관직.

사용<sup>122)</sup> 박학령의 아내가 되었다. 병신년 11월 15일 공은 예산현 종경의 언덕에 묻혔고, 아내 김씨는 왼쪽에 합장했다.

황덕 10년(1515년)11월

선무랑<sup>123)</sup> 수홍문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김구가 쓰노라.

#### ◆왜구수토록 수토록 / 搜討錄

탐라는 바다 가운데 있는 고을인데, 예부터 수륙의 진귀한 물산들이 풍부하다고 불렸다. 때문에 해마다 달마다 공헌이 있어 거센 바람으로 물결이 있는 바다 위로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 올해 4월에 단호<sup>124)</sup>와 독신<sup>125)</sup>의 무리들이 추자도에 나타나서 세공선 5척을 쫓더니 기습하여 물건을 빼앗고 인명 40여 명을 살상했다. 이해 6월에 다시 회령포에 8척이 나타나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엿보고는 물러났다. 그 후 금갑 등 여러 곳에 나타나 때마다 싸웠는데, 도리를 거스르고 교화를 막으면서 흉악하고 광패한 짓으로 미쳐 날뛰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건이 처음 조정에 들어가자 폐하의 근심은 깊어지고 조야가 모두 분개했다. 이 교활하고 작은 추악한 무리들은 바람처럼 빠른 거룻배에 몸을 맡기고 외딴섬에 잠복해서 틈을 엿보는 간사한 자들이었다. 마땅히 황제의 정벌군을 파견하여 일거에 진압해야 옳을 것이다. 마침내 길을 나누어 장수를 파견하여 원팽조를 경상조방장으로 삼고 장세호<sup>126)</sup>와 조세봉, 장세침, 석간을 군관으로 삼아 본도절도사 김세희, 수사 허곤과 함께 나누어 호위하게 했다. 조방장수 미조항첨사 김위견, 남해현령 이환, 자랑만호 이안, 적량마호 맹안인, 편산포만호 김윤조, 소비포권관 강여온, 상수포권관 김맹겸, 삼천진권관 허순 등이 각각 지휘하는 소속된 병선 몇 척씩을 합하니 백여 척이 되었다. 미조항에 진영을 구축하고, 7월 초엿새 새벽에 바다로 발진하여 바로 육지도로 향했다.

122) 사용: 조선시대의 5위에 속하는 정9품의 무관직.

123) 선무랑: 조선시대 문관 종6품 하(下)의 품계명.

124) 단호: 야공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나오는 짐승으로 함사사명 하면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만드는 괴물이다.

125) 독신: 짐승의 이름. 사람에게 재앙을 끼친다고 한다. 단호와 독신은 여기서는 모두 왜구를 빗대 말한 것이다.

126) 장세호: ?~? 조선 중종 때의 무인. 재능을 인정받아 오랫동안 선전관을 지냈다.

그날 정오 무렵 읍포에 정박하니 절도사가 창원부사 이순, 김해부사 이세번, 함안군수 안방신, 거제현령 신구수<sup>127)</sup>, 진주판관 이종, 진해현감 조충령, 사천현감 이유, 당포만호 이세전, 오양권관 봉귀달을 인솔했는데, 그들 모두 자신들이 통솔하는 병선 몇 척씩을 내오니 도합 2백 척에 이르렀다. 수영에 집결하여 그달 초여드레에 바다에서 나와 육지로 와 정박 했다. 제포첨사 유성령과 안골포만호 우현조, 영등만호 김균, 지세포만호 황운문, 조라포만호 허인, 옥포만호 강감, 울포권감 성세충에게도 배가 백여 척이 있어 모두 섬으로 와 정박했다. 바다를 살피니 푸른 해역이 만 리로 이어졌고 파도가 눈앞에 가득했다. 앞뒤의 섬들이 둘러싸고 노와 돛대가 뺄뺄하게 차서 좌우를 둘러 동서로 바쁘게 오가는데, 깃발들은 하늘을 뒤덮을 기세였다. 배의 이물과 고물이 바다를 웅위하면서 노를 재촉하여 앞뒤로 나서고 돛을 아래위로 펼쳤는데, 결습<sup>128)</sup>과 사부는 이미 갖추어졌고, 군사 병졸들도 서로 대오를 가지런히 하여 이쪽에서 외치면 저쪽에서 호응했다. 북소리와 뿔피리 소리가 나란히 울리니 병사의 위세와 군대의 위용은 바다의 신도 능멸해 울릴 만했다. 바다 속 물고기들도 다들 기세에 놀라 쫓무니를 빼고 달아날 지경이었다.

물 위에서 밥을 끓여 먹고 물 위에서 잠을 자면서 기다린 지 닷새 만에 척후선을 전라좌수영에서 파견하여 적군을 탐색하여 토벌할 지 여부를 살피니 조방장 황보겸과 이안세가 벌써 경계로 들어서서 짐짓 이중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군호를 정한 뒤에 군선을 발진시킬 만하다고 보고하니 이에 다시 군사를 나누어서 미조항과 평산포에서 매복했고, 각자 휘하의 군사를 인솔하여 비미도에 주둔해 정박했다. 그날 밤 먹구름이 무너질 듯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갑자기 휘돌면서 뒤엀킨 바람은 바다를 말아 올릴 듯했고, 거친 파도는 하늘을 찔렀다. 우레와 천둥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로 코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서로 배안에 많은 병사들을 깊이 숨겨두었는데, 늠름한 충성과 분노로 손바닥을 치고 손에 침을 뱉으면서 순식간에 소탕할 것을 결의하니, 참으로 웅장한 모습이었다. 대장부의 행군에 이와 같은 일이 한 달에 두 세 번이었다.

무릇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편안히 앉아 잠자고 먹으려고 한다면, 애를 쓰며 산다지만 큰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평안한 것만 좋아하고 험난한 것을 미워하는 자라면 어찌 죽히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가치나 있겠는가? 그래서 이

127) 신구수: 1484~1534년. 조선 중종 때 의 문신. 풍지창수 신우정의 아들이다. 철산군수와 군자감 첨정을 지냈다.

128) 결습: 활을 쏠 때 쓰는 기구.

사실을 기록하여 나중에 한가하게 홀로 지낼 때 여러 군자들의 성명을 서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원년(1522년) 임오년 7월에 쓰노라.

#### ◆안순지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글

홍문저작 안처순<sup>129)</sup> 자가 순지다.

진심어린 글을 받들어 읽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다니 크게 안심이 됩니다. 또 그대가 저작<sup>130)</sup>에 임명되었다니 더욱 하례를 드립니다. 제가 양식이 떨어져 급히 출발했는데, 도중에 남원목사 등의 은혜를 입었지만 중지할 수는 없어 마침내 고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래 물건들을 가지고 관노가 왔는데, 지난번에 간곡하게 부탁드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장을 받은 예에 따라 답신을 보냈으니, 그대 또한 준비해 두셨던 것을 알겠습니다. 하하하! 나머지 일들은 서울에 도착하여 자세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같을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대의 물음을 받드니 더욱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언정이 도보로 가서 뒤처지게 된 뒤라 그대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갈 길이 바쁜데다가 도중에 허리병이 도져서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 공의 아버님이 고산의 원으로 있을 때 보낸 편지다.

#### ◆다시 안순지에게

- 무인년(1518년)에 안순지가 홍문박사로 있었는데, 부모님 봉양을 위해 고을 원이 되기를 간청해 구려로 내려왔다.

남해 절도로 외롭게 죄수 생활을 하던 차에 옛 친구의 편지를 받아 크게 위로가 되니 어떤 말이 이보다 낫겠습니까? 저는 때로 병을 앓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물길로 막혔는데, 응어리진 말은 많아도 입을 담을 수 없으니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바다에 떠 오겠다는 뜻을 보였는데, 저는 본래 사람을 꺼리는 형편인지라 감히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자취를

129) 안처순: 1492~1534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 자는 순지, 호는 기재, 남원 출생이다. 남원의 영천서원에 제향되었다.

130) 저작(著作): 조선시대 홍문관, 승정원, 교서관에 둔 정8품직. 세조 9년 홍문관 신설 때 저작랑을 두었던 것이 세조 12년 관제경정 때 저작으로 개칭되었다.

숨기고 들어오신다면 또 차마 억지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해서 출발을 신중하게 고려해 움직이지는 마십시오.

여러 차례 받은 고마운 편지는 하나하나 해명하러 든다면 말은 길어지고 악언(惡言)도 담게 될 것이니 차라리 묵묵히 입을 닫아 말을 잇은 가운데 정신을 모아 번거롭게 편지를 쓸것은 없었습니다. 만 번이나(만약) 서로 편지를 받아본다면 뜻과 염원도 다하고 심회도 다 하겠지만 어찌 능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려러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조금씩 먼 생각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밖에도 진중하고 또 진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거듭 절합니다. 조석으로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신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대가 아니라면 제가 어찌 감히 끼니 거리라도 구했겠습니까?

중추 16일날 섬 나그네가 절합니다.

-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쓴 편지다. 아래 세 통의 편지도 같다.

#### ◆안순지에게 보내는 편지

동풍이 더욱 거센데 지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저는 여전히 바다 섬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조석으로 쓸 물건들을 보내시면서 술에 빠지는 일은 없으시라고 하시니 전번 편지는 과연 군색함이 심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내려주시는 것도 또한 한 번 사연을 쓰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터이니, 어찌 능히 넉넉하게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대와 나는 거리끼거나 주저할 까닭이 없는 사이입니다. 어찌하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 한 번 침울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 볼까요? 나머지 심정은 모두 말하지 않는 가운데 숨었으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삼가 묻습니다.

- 원망에 바다 나그네가 머리 조아립니다.

#### ◆안구례에게 답장하여 감사를 표함

괴로운 심정 중에 위문의 글을 받으니 감사와 위로를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죽지 못해 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충경<sup>131)</sup>의 일은 저 또한 일찍이 듣고서 폐하의 은혜를 감축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암이 한라로 옮겼

---

131) 충경(沖敬): 충은 충암 김정이고 경은 미상

다는 소식을 살피니 정신이 끊기고 메마른 울음이 나오는데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두보가 말한 “구원황천의 길에 만날 기약도 다했네”란 구절과 같습니다. 애통합니다. 애통합니다. 또 편지를 읽으면서 그대의 정의에 감격하여 지렁이의 힘이나마 애쓰고 힘써 올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대가 보내준 붓은 뾰족하고 가늘어 큰 글자를 쓰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상 위를 보면 쓴 글자가 형편 없는데, 모두 군색하고 졸렬하여 글자의 이치를 이루지 못했으니 안타깝습니다. 금색 종이와 고정<sup>132)</sup>에 쓴 글자는 둘 다 비교적으로 좋지만, 고정지에 쓴 글자가 조금 낫습니다. 진자<sup>133)</sup>라면 더욱 악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어서 아침저녁으로 살피고 감상하고 있습니다. 몸을 반성하고 나를 생각하는 도구인데, 마땅한 붓이 없어 해서에 능하지 못해 거꾸로 좋은 종이를 버리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자획이 공교롭거나 졸렬한데 있지 않고 요점은 정밀하게 연구하여 뜻을 경계하는 데 있으니 힘은 얼굴에까지 이르고 법도는 땅에까지 닿았습니다. 겹하여 제 편지에서 이 경계하는 정성과 뜻까지도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 다행이겠습니다. 무오년(1498년)의 논의와 같은 일을 지금 써서 올리지 않는 것도 또한 생각이 있어서이니 아울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살펴보니 그대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다만 토산물이 맞지 않아 그저 미옥한 노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본성이 본래 세밀하고 쓸데없는 일을 점검하고 관리하지 못해 처지가 가련합니다. 저는 또한 병으로 기운이 많이 손상되어 어둡고 빈 초가집에 엮매어서 쓸쓸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고민과 걱정은 말할 수 있으니 지금 살펴 그대가 보시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한 문파와 더불어 다시 논의하고 도모할 뿐입니다. 남은 심정은 다 적지 못하고 바빠서 여기에서 그칩니다. 바라건데 더욱 강업에 매진하십시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 기운이 너무 좋지 않아 바로 경계하는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와서 며칠 머물다가 가시구려. 아울러 살피시구려. 편지가 늦고 게으른 것을 허물하지 말아 주십시오. 7월 13일에 자암이 머리 숙입니다. 정순<sup>134)</sup>이 보여준 일은 마땅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2) 고정: 함경도에서 나는 귀리짚으로 만든 종이.

133) 진자: 해서(楷書)를 일컫는 말.

134) 정순: 누군가의 자인것 같기도하고, 아니면 “바르고 순하게”의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 ◆ 다시 보냅니다 좌랑 민회현<sup>135)</sup>의 편지에

성간을 장차 전송할 때에 귀한 사람이 마침 도착하여 전번 편지를 함께 보내니 살펴보십시오. 제 건강이라면 과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푸는 것이 간절하니 힘을 내어 빨리 낭(廊)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시는 일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다행일 것이니, 오시는 일을 어그러뜨리지 마십시오. 대유가 머리 숙입니다.

- 석방되어 오산에 있을 때였다.

---

135) 민회현: 1472~1540년. 조선 중종 때의 문신. 본관은 여흥, 자는 계사, 호는 일재다. 기묘사화로 파방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 자암 선생문집 서문(정두경)

자암집은 기묘명현<sup>136)</sup> 가운데 한 분인 김구 선생이 지은 것이다.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이미 수백여 년인데 문집이 간행되지 않으니, 식자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외가 쪽 후손인 의성사군 안응창<sup>137)</sup> 홍숙이 비로소 판각을 시작하니 어찌 사문의 큰 정사가 아니겠는가? 의성사군이 내게 말했다.

“나라가 여러 차례 병화를 입어 지은 글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선친인 순양 부원군<sup>138)</sup>께서 흠어진 글들을 두루 모아 상자 속에 잘 보관해 두시고는 오늘이 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선현께서 지은 글들을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자손 된 사람이겠는가? 의성 부자의 마음 씀도 또한 옳은 것이고 부지런하다고 하겠다. 의성사군이 내게 글을 부탁하기에 내 문집을 펼쳐 읽어 보았는데, 독서를 다 마친 뒤 크게 탄식하기를 그칠 수 없었다.

공은 옥당<sup>139)</sup>에 근무하면서 달 밝은 밤마다 책을 읽었는데, 종종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가상하게 여기셔서 직접 술을 들고 걸음 하여 납시셔서 더불어 술을 마시고는 아주 즐겁게 자리를 마치셨었다. 이어 갓옷을 하사하셨으니, 은총의 융성함은 예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마침내 북문의 변<sup>140)</sup>을 피하지 못하니 군신 사이의 남다른 만남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문집을 덮고 크게 탄식했던 것이다.

136) 기묘명현: 조선 중종 14(1519년) 기묘사화로 죽은 조광조, 김정, 기준, 한충, 김식 유배 파직을 당한 김구, 박세희, 박훈, 이자, 유인숙, 홍언필 및 사림을 두둔한 안당, 김정국 김안국 등을 일컫는 말.

137) 안응창: (1593년~?) 조선 인조 때의 학자. 자는 홍숙, 호는 우졸재, 본관은 순흥이다. 순양군 안몽윤의 아들로, 대군사부 등을 지냈다.

138) 순양부원군: 안몽윤(1571~1650년)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순흥. 자는 상경이다. 음보로 군직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다. 안현싸움으로 진무공신 3등, 순양군에 진봉 되었다.

139) 옥당: 홍문관을 달리 일컫는 말

140) 북문의 변: 북문지화, 기묘사화를 달리 일컫는 말. 남곤이 경복궁의 북문 신무문을 통해 들어가 옥사를 일으켜서 붙여진 말이다.

또 선생은 정암 조광조<sup>141)</sup> 충암 김정<sup>142)</sup> 두 분과 함께 소인배들에게 참소를 당하셨는데, 그 재량이 열고 깊음이 있어 홀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선생에게 기미를 보아 소인배들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선생이 다른 사람보다 몇 길 높은 증거라고 말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한다. 기해년(1659) 맹추(음력 7월) 온성 정두경<sup>143)</sup>이 쓰노라.

---

141) 조광조: (1482~1519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양이고, 자는 효직이며 호는 정암이고 시호는 문정이다.

142) 김정: (1486~1520년)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고, 자는 원충, 호는 충암, 시호는 문간이다.

143) 정두경: (1597~1673년)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본관은 온양, 자는 군평, 호는 동명이다. 1629년 별시 문과에 장원 급제했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고 대제학에 추증 되었다.

## 자암 김선생집 서문(안응창)

오호라! 지난 중종조 때 많은 현인들이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천명에 한 사람 꼴로 임금의 신임을 받은 것은 자암 김선생과 정암 조선생, 충암 김선생 여러분들이다. 이분들이 마음으로 협력하고 정치를 보좌하여 사문을 흥기 시켰으니, 잘못된 부분을 끌어당겨 만회하여 올바른 다스림으로 이끄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묘년에 재앙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선비들이 머리를 나란히 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아아! 애통함을 가히 이길 수 있겠는가!

선생께서 평생 지으신 저술들 또한 그간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보전되지 못했으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나의 선친은 바로 이 선생<sup>144)</sup>의 외증손이 되신다. 흩어지고 없어진 가운데 시문 일부분을 수습하여 이를 상자 속에 잘 보관해 두고 항상 간행하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내가 문소<sup>145)</sup>에 고을 원으로 나가 진작 봉급을 모아 책을 간행해 선친의 뜻을 잇고 간략하게 감회를 적어 권말에 쓴다.

승정 병자(1636년) 초여름에 현손 순흥 안응창이 제월현에서 삼가 쓰노라.

144) 자암 김구

145) 경북 의성의 옛 이름

## 자암의 시첩에 쓰다(윤근수)

자암공 김구는 자가 대유인데, 이 시첩은 공의 시를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 공은 기묘년 때의 바른 사람으로 지난 날 정암 조광조와 같은 한 때의 제현들이 명성을 떨쳤을 때 한결같이 도학에 뜻을 두어 다른 재예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충암 김정 이하 분들만 겹으로 문장을 지었을뿐이었다. 제현의 논의가 문장은 한(韓)나라를 모범으로, 시라면 당(唐)나라를 모범으로, 진초(眞草)라면 진(晉)나라를 모범으로, 인물이려면 송(宋)나라를 모범으로 삼아 평생 힘쓰는 근거로 삼았으니, 또한 풍성하다고 하겠다.

지금 이 시첩을 살펴보니 그렇다고 믿을 만하지 않은가! 제현들이 바야흐로 군주를 얻어 도를 시행할 때 힘써 삼대(三代)의 훌륭한 다스림을 당기고자 했는데, 간사한 인간들이 이간질을 하여 복문에서 재앙이 일어나 사방으로 유배를 떠나 심한 분은 목숨마저 보존하지 못했다. 공은 부학(副學)으로서 멀리 바닷가 까지 유배를 갔는데 계사년(1533년)에 사면을 받아 예산 구거(舊居)로 돌아왔다가 결국 이듬해 갑오년(1534년)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겨우 마흔 일곱 살이었다. 나중에 원래 직책을 회복했다. 옥당(玉堂)에 있을 때 종계(宗系)의 일에 참여하여 광국원종공 1등에 책록되어 이조참판에 증직되니, 이것이 공의 애석한 일과 영광된 일의 대강이다.

덕을 심은 사람은 보답을 받는데 공의 자부(子婦) 이씨와 공의 손자 김갑(金軻)이 모두 피해를 입었고, 공의손자 김온(金輿)은 도종사관으로 머물러 있다가 어머니의 어린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듣고 놀라고 근심된 끝에 병을 얻어 연이어 세상을 떠났으니,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을 내린다는 것도 틀린 것인가? 또 들으니 공의 재주는 약관의 나이로 생원진사시에 응시했는데, 고관이 공의 글을 읽고는 거듭 찬탄해 양 시험에서 제1명으로 급제했고, 얼마뒤 계유년(1513년)에 방안<sup>146)</sup>으로 석갈<sup>147)</sup> 사필(史筆)을 잡기도 했고 옥당에 올라 정자

146) 방안: 과거 시험의 전시 때 갑과에 둘째로 급제한 사람을 일컫는 말.

147) 석갈: 평민이 처음 관직을 맡은 것을 비유한다.

에서 관직을 쌓아 부제학에 이르렀는데, 중간에 외직으로 나간 것은 이조정부랑과 장악정일 뿐이었다. 악정에 임명된 것은 음률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또 호당<sup>148)</sup>에서 사가독서<sup>149)</sup> 하면서 시문으로 후일을 미리 기약했던 것은 참으로 멀고 큰 일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쫓겨나고 배척을 당한 데다 그 목숨마저 빼앗겼으니 옛날에 말한, 사람이 꺼린 것이고 하늘도 꺼린 일이겠다.

공의 글씨는 깊이 위진(魏晉)시대의 필법을 얻었으니, 지금 글씨를 배우는 사람들이 보고 베끼기를 그치지 않고있다. 글씨를 평하는 사람들은 혹 그를 두고 힘차지만 맹렬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강한<sup>150)</sup>은 맹렬하지만 힘차지는 않다고 하면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 또 어떻게 정론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시에는 완전히 당시의 풍골이 있어 공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져 흐름이 끊이지 않아 이를 확대하여 크게 했다면 이미 이론 업적이 어찌 여기서 멈췄겠는가? 시첩은 주부<sup>151)</sup> 조석대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나는 조맹부, 왕희지, 저수량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 행실은 전하지 않고 다만 작품만 남아 있는데, 후세 사람으로 공의 서법만 보고 시라면 오히려 아껴 감상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하물며 공은 깨끗하기 그지없는 명신으로 재주를 다시 겸해 갖추었으니, 이시첩과 같은 것은 보물로 보관하는 것이 그 어떠해야 하겠는가? 조군(조석대)에게 말하고 다시 마음에서 느끼는 바를 적어 돌려보낸다.

만력 임인년(1602년) 단양일(단오날)에 후학 해평 윤근수<sup>152)</sup>가 짓노라.

148) 호당: 독서당의 다른 이름 문관 중에 문학에 뛰어난 사람에게 휴가를 주어 오로지 학업을 닦게 하던 서재.

149) 사가독서: 조선시대 때 젊고 유능한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힘쓰도록 한제도, 대체로 6인 내외가 뽑혔다.

150) 강한: 1455년~? 조선 초기의 서예가. 자는 종지, 호는 금재 본관은 진주 함양의 구천서원에 제향되었다.

151) 주부: 조선시대의 관직, 관아에 설치되었던 종6품직 각 아문의 문서, 부적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다.

152) 윤근수: 1537~1616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해평, 자는 자고, 호는 월정, 시호는 문정이다. 1588년 별시문과에 급제했다. 1589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종계변무의 공으로 해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때 문안사와 주청사 등으로 명나라와의 외교를 담당하며 국난극복에 힘썼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글씨는 영화체(永和體)로 칭송이 자자했다.

# 인수체

## ◆묵향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 온 인수체의 고장 예산(禮山)

우리 서도사(書道史)는 한문의 전례와 그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의 출발이 삼국시대 어름이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데, 실제 고구려의 광개토왕비나 백제의 사택지적비 및 신라의 진흥왕순수비 등 금석문(金石文) 유적에 의해서 이를 실증할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빛나는 서예(書藝)의 발전을 이룩하여 김생(金生), 최치원(崔致遠) 탄연(坦然) 등 수많은 대가(大家)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려 이전의 서예가에 관한 사승의 적만은 이들의 출신지조차 분명히 밝히지 못하게 하니 서예사상 지역성을 운위(云謂)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다행히 조선왕조에 들어오면 진적(眞蹟)의 유존(遺存)과 함께 서예가들의 행상이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고 지지류(地誌類)의 기록이 정비되어 이들의 출신지 및 연고지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서예가 배출의 지연성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충남(忠南) 예산(禮山)지방은 바로 이런 예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조선왕조(朝鮮王朝) 서예사상 획기적 명인들과 항상 연고가 닿는 지역으로 명가 묵적(墨蹟)이 집중 보장(寶藏)되는 묵향(墨鄕)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다.

## ◆묵향의 개기(開基)를 열어놓은 시조격(始祖格)인 자암 김구

우선 묵향의 개기(開基)를 열어놓은 시조격(始祖格)의 인물은 자암(自菴) 김구(金救)(1488~1534년)이다. 자암은 자(字)를 대유(大柔), 호(號)는 자암(自菴) 공(孔)에 울곡병수(栗谷病叟) 혹은 삼일제(三一齋)라 하였다. 본관(本貫)은 광산(光山)이고, 예조판서 예몽의 증손이며 대흥현감 계문의 자(子)로 부인 전의익씨, 단성현감 이겸인 여(女)와 사이에 한양동부(漢陽東部) 연희방(燕喜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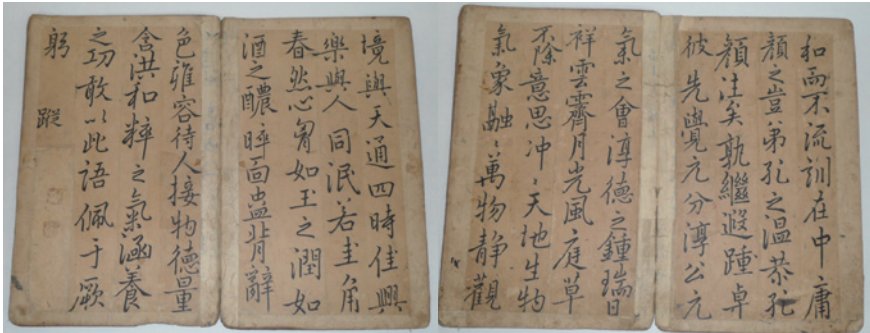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의 향저(鄉底)와 선영(先塋)은 예산 신암면 종경리에 있었으며 그의 공가(孔家) 역시 그곳에 근거(根基)가 있다. 자암은 6세 때 이미 석류시(石榴詩)를 짓고 8세 때에는 오작교시(烏鵲橋詩)를 지을 만큼 신동으로 알려졌었으며 16세에 장악궁기(長樂宮記)로 한성시(漢城試)에 장원하고 24세 때에는 생원(生員), 진사(進仕) 양장원(兩壯元)을 차지하여 양장원을 주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뜨렸다. 26세 때에는 문과에 급제, 정계에 투신하여 청요(淸要)의 직(職)을 두루 거쳐 32세 되는 기묘년에는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이른다.

#### ◆성리학적 이상 사회의 실현

그는 일찍이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년)의 문하에 나가서 주자성리학을 이어받았으므로 동문 선배인 정암 조광조 등과 더불어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급진적 개혁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관계에 진출하여서는 중종의 비호 아래 이의 실천을 강행하던 중 이들과 이해가 상반되던 훈구파들의 노련한 정략에 휘말려 을묘년(1519년) 말에는 반역당으로 몰리는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기묘사화로 중종반정 이후 새로이 진출한 사람들이 일망타진되는 크나큰 정치파동이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왕조의 국시(國是)인 주자성리학을 이상적으로 실천해보려던 사람들의 꿈은 일차적으로 크게 좌절되고 정국은 보수 반동적 경향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미 조선왕국이 건국한 지 100여 년이 지나서 그동안 국책으로 보호 장려해 온 주자학은 그 이해와 연구가 본 궤도에 올라 있어 이미 조선사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한 때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국의 변화는 표면적인 시대착오적 역류현상에 불과할 뿐 사조의 주류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니 박해를 받고 산야로 쫓겨난 이들 선비들의 착실한 학문 활동은 도리어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와 같은 불세출의 대학자를 비롯한 못별들과 같이 수많은 주자 학도들을 길러내서 주자학 자체를 학문적인 완성의 단계로 발전시켜 조선성리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조의 등극을 전후해서 이들 신진사류들이 대거 정치일선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성리학적 이상정치의 실현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위 기묘명현(己卯名賢)들이라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로부터 조선성리학의 단초가 열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하는 듯 이들의 서화나 문학작품 등에서 조선고유색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고유의 서체를 창시한 자암 김구의 인수체



〈자암 필묵〉

자암은 이런 시대상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다. 고려 말 이래로 이제까지 서도의 대중으로 군림해온 조맹부의 송설체를 탈피하여 소위 진체(晋體)라는 왕희지체로의 복고를 시도하여 인수체라는 독자의 서체를 창시하여 조선고유서체의 조원을 이루며 국문으로 가곡을 지어 불려 국문학사상 송강 정철의 선구를 이루니 경기체가의 형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화전별곡이나 시조 형태의 많은 단가(短歌) 작품들을 문집에 남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의 탈중국적인 의도가 얼마나 분명하였던가 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그의 글씨를 보배로 여겨 사간다는 말을 듣고는 붓을 꺾고 다시 글씨를 쓰지 않아서 그의 글씨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는 묘비명의 내용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그의 필법은 매우 강건하되 험경하지 않아서 당시에 이미 위이불맹의 평을 들었으며 인수체라는 서체명은 자암이 인수방에 살면서 독자의 서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배워 써서 자암 사후 70여 년이 지난 선조 30년 임인 1602년경까지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고 윤근수는 「제자암시첩」에서 말하고 있다. 이로 보면 자암의 인수체는 조선 성리학자의 성립과 안과 밝을 이루는 고유 서체로서 조선 서예사상 획기적인 서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

### ◆ 선정배경

조선전기 서예가 가운데 안평대군 이용(李瑬 1418~1534년), 김구(金絿 1488~1534년), 양사언(楊士彦 1517~1584년), 한호(韓濩 1534~1605년) 등을 일반적으로 조선전기의 4대 명필이라 한다.

15세기~17세기 초에 활동하였던 이들은 이광사(李匡師 1705~1777년)에 의하여 국조(國朝) 4대 명필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규정은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광사는 왜 4대가를 선정하게 되었고, 선정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구(論究)되지 않고 있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명필들 중 엄선한 4대 명필 가운데 한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완우 ‘석봉한호서예연구’] 그 외 인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4대가가 당대의 명필로 지목되는 과정과 이후의 평가들을 토대로 4대가에 선정과정 및 기준 등을 살펴보면 17~18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선전기 최고의 명필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4대 명필의 선정

조선시대의 명필을 정리한 인물은 남인(南人)이었던 허목과 이익에 의해 시작된 조선전기 명필의 선정은 소론(少論)인 이광사가 안평대군 이용, 자암 김구, 봉래양 사언, 석봉 한호를 조선전기 4대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광사는 《서결후론(書訣後論)》에서 4대가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는데

안평대군 이용은 글씨는 빼어난 풍치가 아름다워 사랑스러우며 재기(才氣)가 가장 우수하였으니, 마땅히 조맹부와 함께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조맹부의 필법을 전적으로 사용하여서 속됨을 면치 못하였다. 또 안평대군은 귀공자로서 이 필법을 맨 먼저 창시하여 한 시대를 눈부시게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열조(列朝)의 어필(御筆)이 모두 이 필법을 사용하니, 드디어 나라의 습속이 되었다. 이 몇 해 전에는 온 세상이 쏠리어서 왕희지, 조맹부라고까지 하였고, 또는 안평대군의 획법으로써 조맹부의 필체를 썼다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다.

자암 김구는 해서는 비루하여 볼 만한 것이 못되는데, 대자(大字)와 행서, 초서는 필법이 자못 훌륭하나 필력은 둔하고 느리다. 일찍이 홍산(鴻山)유세모(1687년~?)의 집에서 큰 글씨 한 폭을 보니 의젓하게 뛰어나서 그의 글씨도 쉽게 평론할 것이 아니었다.

봉래 양사언은 초서는 호탕하여 탈속하였는데 언뜻 보면 장우(張遇)보다도 뛰어나고 왕희지를 지나칠 것 같으나 재기는 있어도 학문이 없고 겉보기는 근사하여도 뼈대가 없어서 대가가 되지 못하였다.

석봉 한호는 재주와 학문이 높지 못하였으나 연습을 쌓은 공으로 비록 옛사람의 획법은 알지 못하였어도 자연히 서로 합치하였는데, 처지가 미천하였던 까닭에 관청의 서사(書寫)에 일정한 법식의 구속을 받았었다. 해서는 더욱 비루하였으나 필력은 볼 만하였고, 행서·초서의 잘된 곳은 웅장하고 힘차서 송·원의 명필보다도 뛰어났다고 하여도 잘못이 없을 정도였다.

이광사의 4대가에 대한 평가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극찬한 것은 아니었다. 이광사가 4대가를 선정한 기준은 4대가에 대한 논평에 뒤이은 백하(白下)윤순(1680~1741년)에 대한 평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광사는 윤순의 글씨에 대해 “윤순은 늦게 나서 중국의 획법을 독학하였는데, 서체가 신기·절묘하고 재사(才思)가 교묘, 화려하여 동방 사람의 비열함을 완전히 씻었으니 후학을 개발한 공이 4대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한 것이다. 즉 이광사가 볼 때 윤순은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태어나서 독학으로 일가를 이루었는데, 명나라 명사들의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4대가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4대가의 선정이 필력 외에 명나라의 명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었겠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안평대군과 한호는 명나라에 필명을 날렸기 때문에 선정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지만 나머지 2대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자암 김구는 생원과 진사시에 모두 장원을 하여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서 이정형(1549~1607년)은 《황토기사》에서 “김구의 초서가 천하제일이라 칭하였는데, 김구의 글씨가 명나라에 알려져서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리자 글씨쓰기를 기꺼워하지 않아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고 하였다. 김구의 신도비명을 지은 김세렴은 “선정신, 모제 김안국(1478~1543년)이 과거시험장의 고관(考官)이었는데 그 시권을 가르키며 ‘한퇴지의 작문에 왕희지의 글씨로다!’ 라고 평하였다. 마침내 생원 진사 모두 장원이 되니 국조에 드문 일이다. 필법이 강건하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세상에서는 인수체(仁壽體)라 하는데, 대개 공이 인수방에 살았기 때문이다. 뒤에 화인(華人)들이 구입한다는 말을 듣자 절필하고 쓰지 않아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고 김구의 서체가 왕희지체 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기묘록보유》를 지은 안로(1580~1657년)는 김구의 글씨에 대해 “공의 필력이 경건(勁健)하여 중요(鍾繇).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본받았다. 일찍이 명나라사람이 공의 글씨를 보배로 여긴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드디어 쓰지 않으므로 그의 필적이 세상에 드물다.”고 평하였다. [기묘록보유]상권 김구전《해동잡록》에서도 김구는 문명이 있었고 필법의 굳셈이 중요와 왕희지를 본받았는데, 공이 일찍이 명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글씨를 사들인다는 소문을 듣고는 글씨를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고 하여 김육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김구는 왕희지체를 연구하였던 것이고, 특히 초서에 능해 명나라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구의 글씨를 소장하기 위해 구입하려는 명나라 사람들의 움직임이 전해지자 작품 활동을 중단한 것은 김구의 도학자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구에 대해서는 글씨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기묘명현으로서 학문연마에 열중하던 모습이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정조는 「일득록」에서 “김구가 집현전을 지키며 달밤에 독서하니 종종께서 가상히 여겨 선운(宣醞)하여 장려하신 일이 있어 오늘에 이르도록 아름다운 일로 전해진다.”며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홍제전서]권2 「일득록」 이러한 김구가 4대가에 포함되었던 것은 김안국의 평도 있었지만, 명나라 사람들이 그 글씨를 높이 평가하여 구입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다.

이상은 승정원일기, 대동서법, 기묘록보유, 기묘명현록, 홍제전서 등에 기록된 내용 ‘조선전기 4대 명필론’의 성립과정(정해득, 한신대외래교수) 중 자암 김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범상을 넘은 붓글씨의 품격에 대해 신품(神品), 묘품(妙品), 절품(絶品) 순으로 등급을 매겼다. 신품은 오로지 신라의 김생(金生) 밖에 없으며 그 버금으로 고려의 승려 대감국사 탄연(坦然), 그리고 조선 4대 명필이다.

조선 4대 명필은 먼저 안평대군이 있고, 중종 때의 서예가로 왕희지체를 배워 인수체(仁壽體)라는 독자적인 필법을 개창한 자암 김구(1488~1584년), 마지막으로 왕희지필법으로 대성하여 조선최고의 서예가란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고유의 석봉체(石峰體)를 이루어낸 석봉 한호(1534~1605년)이다.

## 덕잠서원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덕잠(서원)골

창건 연대 : 1705년(숙종 31), 1714년 사액

덕잠서원의 위치는 예산읍 향천리 덕잠골로 예산향교의 뒷산 남동향 사면에 있다. 현재 덕잠서원은 그 터만 남아 있는데, 외편만이 곳곳에서 발견될 뿐 초석 등 건축물의 흔적조차 확인하기가 힘들다.

금오산의 동쪽 덕잠골에 자리했던 덕잠서원은 예산출신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를 마치고 귀향하여 일세를 마친 자암 김구(自菴 金綬, 1488~1534년)를 독배향하고 있는 예산군의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자암 김구는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책을 펼치던 중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개령과 남해의 섬에서 15년간 귀향살이를 하였고, 고향인 예산에 돌아와 부모의 시묘살이를 하다가 죽은 인물이다. 김구와 부모의 묘소는 모두 신암면 종경리에 자리하고 있다(1531년 김계문의 아들 김서金緒가 쓴 김계문의 묘비가 전하고 있다). 덕잠서원은 이러한 김구의 만년 생애가 유서가 되어 예산지역에 건립되었다.



예산 지역에 광산김씨들이 입향하는 것은 1500년대 초반이다. 광산김씨의 입향시조는 1500년대 초반 대흥군수로 예산 신암에 정착한 김계문(金季文, 1462~1526년)이며, 김구는 바로 김계문의 아들이다. 김계문은 대흥군수를 역임하던 중 대흥관아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가 예산현 신암에 입향하게 된 것은 처가인 전의이씨 문중이 세거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의이씨는 조선초기부터 대술면 부근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광산김씨의 묘소가 있는 종경리 일대는 원래 전의이씨 문중 터였다고 한다.

자암 김구는 예산 신암 태생으로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전고대방 김굉필 문인록 참조) 조광조·김정 등과 돈독한 우의를 맺고 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152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여러 지역에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정광필과 안당에게 구조되어 처음에는 개령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남해의 섬으로 옮겨졌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예산 신암에 돌아와 부모의 묘소를 처음 참배할 때 산소 앞 모토고 위에서 부모의 묘소를 바라보다가 기절하여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그는 이때 다친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인물과 성품에 대하여는 김세렴(金世濂)이 찬한 묘비명에서

‘중종이 문치에 뜻을 두어 매진하며 정암 조선생, 충암 김선생과 더불어 임금을 도와 좋은 정치를 회복하려 하였는데 남곤 심정이 대역으로 몰아 모두 귀양을 갔다. 정암과 충암은 죽음을 면치 못했고 자암은 15년 귀양살이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으므로 부모 산소에 올라가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다가 1534년 갑오년에 47세의 나이로 병으로 돌아가셨다.’

고 찬하고 있다. 그가 예산의 덕잠서원에 제향되는 것도 실은 이 같은 그의 행적과 그의 “가향(家鄉)”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덕잠서원의 건립 과정은 김구에 대한 일련의 추승활동이 예산지역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된다. 즉 그에 대한 추승활동은 증직과 묘비 및 신도비 건립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1591년(선조 24) 이조참판에 증직되고, 그의 문집인 『자암집(自菴集)』이 1636년(인조 14)에 초간되며, 4년 뒤인 1640년(인조 18)에는 자암 김구의 묘비가 건립(김세렴 찬·전, 외현손 안응감(安應鑑) 서)된다. 또 1659년(효종 10)에는 문집의 중간본이 외현손인 안응창(安應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문집 서문은 1659년 鄭斗卿 찬). 이러한 여러 활동이 1600년대 중반에 서서히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자암선생서첩발문(自菴先生書帖跋文)」을

송시열(1607~1689년)이 지은 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적인 당파의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1600년대 후반에 서인계열과 덕잠서원의 건립주도 세력간의 연결관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발문은 전라도 임피의 봉암서원에 김구와 김집이 함께 배향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참고로 임피 봉암서원은 1664년(현종 5)에 창건되어 1695년(숙종 21)에 사액받은 서원이다.

덕잠서원의 건립활동도 위와 같은 김구의 추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서인 노론계 인물들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덕잠서원의 창건에 대하여는 서원등록에 자세한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김구가 죽은 지 170여 년만인 1703년(숙종 29) 10월 예산 유학 임주국(林柱國) 등이 서원건립의 상소를 올려 건립을 허락받게 되었다. 임주국 등이 올린 청건 상서에 보면 그의 “도와 덕 출처시종(道德, 出處始終)”이 조광조 김정과 다름없었음을 강조하고 조광조 김정 2현은 사우에 제향되고 있으나 김구는 제외되어 그에 대한 포장과 선양은 미칠 바가 아니며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여 허락을 받아내고 있다. 당시 정암 조광조·충암 김정·자암 김구를 삼암(三菴)이라 할 정도로 이들 3현의 충절과 교우는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書院謄錄』, 숙종 29년 10월 6일조).

사실 이것은 김구 사후 174년이 지난 후의 일로서 동시대에 활약했던 김정의 상현서원이 호서 최초의 서원으로 1549년(명종 4)에 창건된 것에 비하면, 김구의 서원 건립은 매우 늦은 편이다. 이 청건상소로 서원이 건립된 것은 1705년(숙종 31) 이었다. 각종의 관찬기록에 덕잠서원의 건립시기는 1705년으로 나타나고 다만 충청도 읍지에서만 1703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건상소를 올려 허락받은 것을 창건 시기로 본데서 온 착오가 아닌가 보인다.

이 서원이 사액을 받는 것은 각종의 관찬서에 ‘숙종 갑오’(1714년)로 기록되고 있고, 당시 예산(禮山)으로는 예조정랑 박사동(朴師東)이 파견되었으며 「사액치제문」이 『광산김씨직장공진보 光山金氏直長公振譜』에 수록되어 있다.

사액을 받은 이후 덕잠서원의 영향력은 예산지역에서 더욱 커졌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1746년(영조 22)에는 자암 김구가 다시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에 추증되었고, 다음 해인 1747년(영조 23)에는 문의공(文懿公)이라는 시호까지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 자암 김구의 신도비가 찬술되는데, 이 신도비문은 외예이자 당시 호서학맥의 본류에 서 있던 윤봉조(尹鳳朝 1680~1761년)가 찬하고 있다.

한편 서원 건립 후 100여 년이 지난 1813년(순조 13)에 건물을 중수하였다. 이듬해 작성된 중수기에 의하면 덕잠서원은 창건연대가 오래되어 점점 퇴락해 무성한 풀로 뒤덮힐 정도였는데 다행히 당시 서원의 원장이었던 영안부원군 김조순(永安府院君 金祖淳)이 1803년(순조 3)에 먼저 정당(政堂)부터 고치고, 이어 강당과 신문 등의 중수를 꾀하다가 1813년에야 완료하였다고 한다(영안부원군 김조순이 중수비용을 전담했다). 이 중수기는 1825년에 김돈서(金敦紱)가 썼는데, 그는 묘비를 찬했던 김세렴의 현손이다. 중수에는 예산현감인 이명하(李溟夏)와 장의 조문원(掌議 趙文源)·김익서(金益紱), 별유사 김종복(別有司 金宗復)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의 덕잠서원의 건립 운영과 관련시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816년에 김구의 손자인 김갑의 효자 정려가 신암면 중경리의 김구묘소 전방에 세워진 사실이다. 김갑은 1550년경 태어난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어머니 진주이씨를 모시고 피난을 가던 중 왜적에게 살해당하였다. 1500년대의 인물이 1800년대에 정려 포장을 받고 정려를 건립하게 되는 것은 자암 김구, 혹은 덕잠서원을 통한 광산김씨 문중의 영향력 확보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후 덕잠서원은 1830년(순조 30) 남양홍씨 홍병식(洪秉弼)의 주력으로 재실의 중수가 이루어지며, 재실 및 담장과 중문, 외문마저도 이곳저곳에서 재력을 모아 중수하기에 이르렀다. 재실방벽을 서화로 새로 바르고 담은 기와와 돌로써 보완하였으며, 중문과 외문을 차례로 세웠다고 한다. 이때의 중수기를 쓴 것도 후학 광산김씨 김돈서이고 예산현감인 이재정과 장의 허간, 홍병식, 별유사 김익서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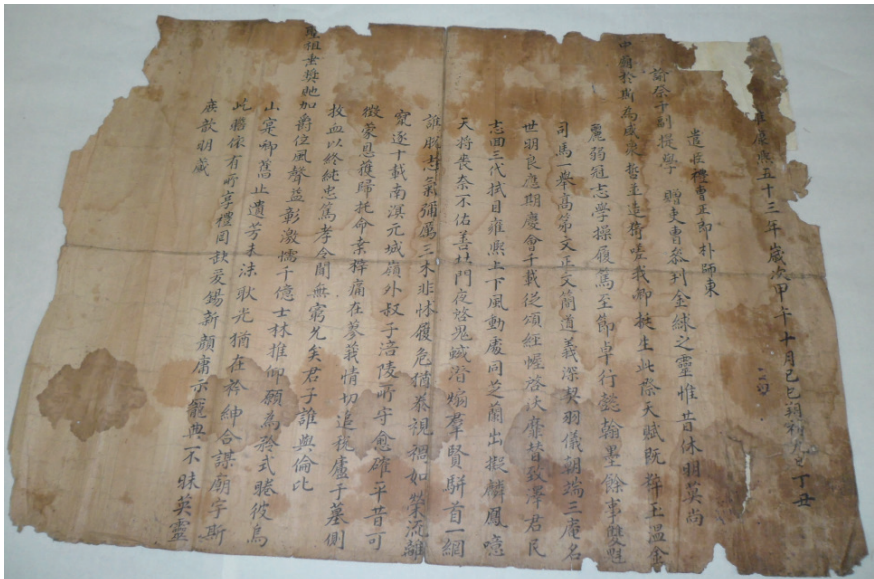
그 후 1856년(철종 7)에는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이 원장이 되어 다시 중수와 보수를 담당하고 경비를 부담하였다. 이때의 중수기를 보면 서원이 낡아 서원 유생들과 수령이 중수경비의 마련을 걱정하는 것을 본 김좌근이 3천금을 출연하여 새 기와를 올리고 담과 뜰을 단장하였다고 한다. 중수기를 쓴 사람은 토정(土亭)의 후손인 한산인 이장찬이고, 예산현감 홍훈모, 장의 성맹환, 김현오, 본손 김달수가 주력하였다.

이 시기 중수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사실은 김조순과 김좌근은 안동김씨로 예산현과 특별한 연고가 없이 한양에서 거주한 고관으로써 국정에 바쁜 분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예산의 서원 원장직을 맡았고, 그 중수 비용을 전담한 것을 보면 김구가 어느 만큼의 명현으로 숭앙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격이 높은 사액서원인데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이 대원군이 되면서 섭정 2년 만에 당쟁의 소굴이요, 국가 재정을 좀먹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유생들의 소굴인 서원철폐령에 따라 없어지고 말았다. 이때, 전국 650여 개 서원 중 서원에 사표(師表)가 될 47개 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철폐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명현(名賢) 김구 선생을 모시던 덕잠서원은 없어진 것이다. 과연 김구 선생은 나머지 47개 서원에 모신 분들만 못하여 철폐를 당한 것일까?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아마도 대원군의 숙적이던 하옥대감(荷屋大監) 김좌근(金佐根, 김조순의 아들)이 당시 이 서원의 원장이 아니었던들 사표로 남겨둔 서원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존속되었을 것이다. 서원 창건 132년 만에 철폐된 것이다.

#### ◆ 덕잠서원상향축문(德岑書院常享祝文)

덕(德)은 진유(眞儒)에 가까우나 도(道)는 밝을 때에 행하지 못하였으니  
높은 풍성(風聲)과 우뚝한 충절백세에(忠節百世)에 까지 사모(思慕)합니다.



덕잠서원사액치제문(54cm×77cm) 1714년(숙종 40)

김구를 배향한 예산 덕잠서원이 사액 받을 당시 숙종이 예조정랑 박사동을 보내 치제한 제문이다.

#### ◆예산덕잠서원사액치제문

유(維)강희 53년(1714년, 숙종 4) 세차 갑오10월 기사 삭(朔) 초9일 정축, 국왕은 신 예조정랑 박사동을 보내어 부제학 중 이조참판 김구의 영전에 유제(諭祭)하기를, 지난번 아름답고 밝은 시대가 종종조 보다 더 덮을 것이 없는데 이런 극성기(極盛期)를 타서 못 어진 선비가 아울러 많이 나왔도다. 아아! 우리 경(卿)이 이 무렵에 뺄어나서 천품의 청수(淸粹)한 것이 맑은옥(玉), 고은금(金) 같으네. 약관때 학문에 뜻을 두어 지조와 천이(賤履)가 돈독하고 지극할 뿐 아니라, 절개는 우뚝하고 행실은 아름다우니 글씨는 나머지 일일세. 생원 진사 양 장원으로 일약 높은 대과에 올라, 도의로 맺은 문정(조광조), 문간(김정)과 함께 조정에 벼슬하여 삼암(三庵)으로 이름이 가지런하도다. 밝은 임금, 어진 신하가 당하여 만남이 천재(千載)에 드문 일. 경연에 모시어 강논 할 제 계옥(마음에 있는 것을 잘 아뢰어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을 마지 아니 했네. 임금을 보필하고 백성을 혜택 하여 삼대(三代)의 왕정을 회복코자. 희호의 정치 눈을 씻고 기대하여 상하가 풍동(風動)하도다. 집에 있어서는 지란(芝蘭)의 사귀움과 같고, 나라에 나아가서는 기린(麒麟)과 봉황(鳳凰)이 나오는 듯 하구나. 아아! 하늘도 무심하다 착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귀역(귀신과 여우)의 무리가 밤중에 북문을 열어 난(亂)을 일으키었네. 여러 어진 사람들 머리를 아울러 잡혀 들어가서, 일망으로 타진 되니 어느 누가 벗어날 수 있으랴? 삼목(三木-梶杖곤장)의 혹독한 형벌에도 강철 같은 지기 더욱 굳세여 위태로움을 태평으로 화변(禍變)을 영광으로 여기도다. 멀리 남해(南海)섬에 찬축(竄逐)된지 10년 동안 유원성의 영외와 정이천의 부능과 같아. 더욱 굳게 지킨 바가 평소의 마음 그대로를 증명하도다. 아! 순전한 충성, 지극한 효행 무궁히 이름나리니 참으로 이런 훌륭한 군자 어느 누가 견주어 짝하랴? 성조(聖朝~宣祖朝)께서 포장 하시와 벼슬을 추증하시니 풍성이 더욱 드러나서 천억 년까지 격려되고 선비들이 추앙하여 공식(모범)될 곳 보여주시기를 원하도다. 돌아보니 저 오산(烏山)은 경(卿)이 살던 곳, 유방(遺芳)경광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네. 청금(유생)과 진신(벼슬아치)들이 의논을 모아 태산 같은 사당집 우뚝하게 지어 놓으니 우러러 의지할 곳 있어 형사(亨祀)의 예의 꺾임이 없네. 이에 새로운 액(額-현판)을 내리어 충영의 전(典)을 보이노니 하매(下昧)의 영령(英靈)이여-밝은 천신(薦新)희향할 지어다.



## ◆ 덕잠서원 중수기(德岑書院重修記)

대저 선현(先賢)의 묘사(廟祠) 지내는 예는 옛 법이다. 상세(上世)로부터 역대에 내려와서 뒤를 이어 행하였고 조송(趙宋) 및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더욱 많이 건설하였으니 대개 국운이 휴명(休明)하고 못 유현(儒賢)이 무리로 나와서 혹은 공덕(功德)으로서 유애<sup>153)</sup>(遺愛) 되던 고을에 보답(報答)을 받기로 하였고 혹은 도학(道學)으로써 강명(講明)하던 땅에 존모(尊慕)를 바치기도 하였으나 그 설립한 바는 비록 다르나 사람된 마음으로서의 애모(愛慕)하고 존숭(尊崇)하는 의의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자암 김선생의 선액(宣額)된 서원이 오산(烏山)의 동쪽 덕잠아래에 있는 것은 선생의 장구(杖屨)가 머무르시던 옛 땅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곧 중종조 때 기묘명현으로써 당시 삼암(조정암·김충암·김자암)의 한분이시니 그 덕행(德行)문장(文章)의赫赫(赫赫)함과 도덕학문의 천명(闡明)하신 공이 국승(國乘)야사(野史) 및 행장(行狀)묘지(墓誌) 등 모든 문자에 소명이 실려 있는 즉 어찌 또 감히 여기에 군더더기 말을 하겠는가?

선생 서원의 중대한 바가 이와 같은데 창건한 연대가 오래됨으로 퇴락이 날로 심해져서 선현의 제사 올리던 곳이 장차 국초<sup>154)</sup>(鞠草)의 탄식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다행히 영도령(領敦寧) 풍고 김공<sup>155)</sup>이 본 서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개연히 중수할 것을 생각하여 지나간 계해년에 먼저 정당(正堂)부터 고치고 기타 강당(講堂)이며 포방(庖房)이며 신문(神門)등 모든 역사(役事)의 미처 이룩하지 못한 것은 또 작년에 경영하고 구획하여 원유에게 신칙(申飭)해서 기한 안에 공역을 감독하여 마치도록 하는데 동영(棟楹-기둥)과 최각<sup>156)</sup>(檼栂)의 썩고 흔들리는 것과 와전<sup>157)</sup>(瓦磚)과 장벽이 깨지고 삼루(滲漏)되는 것을 모두 일일이 새로 고치니 전에 기울어지고 무너진 것이 이제 와서 견고해지고 전에 헐리고 떨어진 것이 이제 와서 윤환<sup>158)</sup>(輪奐)하여졌다.

153) 유애: 수령으로서 백성에게 은혜를 끼침.

154) 국초: 무성한 풀.

155) 풍고김공: 영안부원군 김조순.

156) 최각: 서까래.

157) 와전: 기와 와 벽돌.

158) 윤환: 우렁차고 빛나는것.

원에 있는 장보(章甫)의 선비와 길에 오고가는 나그네가 모두 선생서원의 거듭 새로워진 것을 축하하여 마지않으나 나는 홀로 선생의 도학이 다시 새로워진 것을 축하한다.

왜냐하면 무릇 나라의 주석이 되고 사람의 모범이 되는 풍고 김공으로써 높이는 국구(國舅)가 되고 귀히는 공상(公相)이 되어 낮밤으로 묘당(廟堂)정사에 한가할 겨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숭봉존모(崇奉尊慕)하던 곳을 권권(拳拳)히 생각하여 수보(修補)하는 방책에 급급히 마음을 쏟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이로 미루어 보면 더욱이 선생의 도덕문장이 앞과 뒤를 빛내서 오래일수록 더욱더 새로워짐을 알겠도다.

한자(당나라 8대 문장의 하나인 한퇴지 · 이름은 愈)가 이르기를 “선비가 백 세에까지 서로 광감<sup>159)</sup>(曠感)하는 바가 있다” 하였으니 옳도다! 이 말이어. 애저 세상에 충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전대의 충의로운 사람을 사모하고 지금에 문학의 선비는 반드시 전대의 문학의 선비를 사모하니 이는 곧 타고난 본연의 천성으로서의 그 류를 서로 동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풍고 김공은 사문종장(斯文宗匠)의 고가화주<sup>160)</sup>(古家華胄)로서 어릴 때부터 이미 가정교훈에 젖어 물 들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바가 어느 하나도 연원의리(淵源義理)의 학과 존사위도(尊師衛道)의 공이 아님이 없음으로서이다.

이러므로 이에 저같이 우뚝하게 밝은 선생의 도학에 있어 수백년 아래에서 애연(藹然)히 광감하여 이와 같이 미미<sup>161)</sup>(麤麤)한 것이니 아! 거룩하고 성하도다.

선생의 서원이 또 호남의 임피(臨陂) 고을에 있는 것은 호남 선비들이 선생의 양이<sup>162)</sup>(量移) 되신 옛땅에 창선한 것이요 추모비(追慕碑)를 영남의 남해 섬에 세운 것은 영남유생(嶺南儒生)들이 선생의 귀양 사신 옛터에 명(銘)을 새긴 것으로서 나의 고조 정언공(正言公)－휘만주(諱萬胄)가 그 비액(碑額)에 전서(篆書)하여 선생의 도덕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그후 일백십 유년에 이 시골의 본 서원을 새로 중수하자 원중의 제군자가 나에게 기문을 쓰라 하니 내 비록

---

159) 광감: 멀리 감응함.

160) 고가화주: 귀족들의 자손.

161) 미미: 아름답게 힘쓰는 것.

162) 양이: 섬이나 변지에 멀리 유배시켜 죄인들의 형벌을 감형하여 내지어나 가까운 곳에 옮기는 것.



사람과 글이 선대에 따르지 못한 점이 만만이나 이것이 우연치 않은 일이므로 의리상 감히 고사할 수 없어서 고루(孤陋)함을 잊고 이와 같이 기한다.

세재개유(歲在癸酉 - 순조 13년 1813) 계유하한(癸酉下澣)후학 광산 김돈서는 삼가 씀

통훈대부행 예산현감 이명하

장의 조문원 · 장의 김익서 · 별유사 김종복

#### ◆ 덕잠서원중수기(德岑書院重修記)

지나간 중종조 극성시대에 못 어진 선비가 무리로 나와서 요순(堯舜)의 왕도 정치를 실현코자 하다가 마침내 기묘(己卯)의 참혹한 화를 당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펴보지 못하였으나 한줄기 청의(淸義)가 오히려 능히 세도(世道)를 유지하여 지금까지 유학의 왕성한 것을 이르는 자가 모두 기묘의 여러 명현을 일컬으니 자암 김선생이 곧 그들의 한 분이시다.

선생을 타향(妥享)하는 곳이 예산고을에 있는데 내가 일찍이 지나다가 우러러볼 때 마침 원유(院儒) 두어 사람을 만나서 선생의 기절(氣節)과 학문을 이야기 한 뒤에 이어서 이르기 “이 서원이 이제 장차 유이하여 지는데 어찌 새로 고치지 않느냐?”고 하자 그들이 서로 탄식하며 이르기 “본서원의 강당·재실은 이미 풍고(楓臯)김선생이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재력을 독담하여 특별히 수선해서 지금에 이르렀으나 사당집을 수리코자 할진대 재력 일체를 여전히 원장에게만 오로지 의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매, 내가 듣고 옛 재상(宰相)의 사도(斯道)에 공(功)이 있는 것을 깊이 탄모(歎慕)하는 한편으로는 뒤의 사람들이 뒤를 바쳐서 이룩하지 못하는 것을 개연히 탄식한지 오래 되었다.

그러다가 교동상공<sup>163)</sup>이 또 원장이 되자 여론(輿論)이 모두 이르기 “교동상공의 석덕아망(碩德雅望)으로서 이미 능히 풍고선생(楓臯先生)의 유풍(遺風)을 계승하던 터에 지금 원장이 되었은즉 이 서원이 잘 되리로다.”고 하였다. 얼마 안되어 과연 그가 원유와 읍재에게 부탁하여 사우의 중수할 일을 의논케 하고 또는 경비의 부족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재 삼천량을 원유에게 맡기어

163) 교동상공: 풍고의 아들, 하옥대신 김좌근.

빨리 중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옛날의 깨어진 기와와 기울어진 난간이 이제야 정리한 기와집이 되었고 옛날의 무너진 담과 헐어진 뜰이 이제야 정결(整潔)한 계무(階廡)가 되었을 뿐 아니라 원내의 모든 용도 범백(凡百)이 굵이하고 의표 문물이 완전히 일신하므로 드디어 길일을 가려서 낙성하고 신위를 기리 타향 케 하였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성대 하도다.

아아! 근래 각 서원들의 조폐한 것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는데 오직 다행히 본 서원만은 앞서가는 풍고선생이 있었고, 뒤에는 교동상공이 있어서 양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부호하여 극력 수보함으로써 준공에 이르렀으니 비록 범(范) 문정공의 엄선생 사당을 수리한 것이나 조무회왕의 제갈공 사당을 수리한 것이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을 줄로 생각한다. 바라건대 지금 또는 뒤의 인사들이 이 서원에 노는 자가 서로 가르쳐 배우고 서로 경계하여 힘써서 명행을 지려<sup>164)</sup>하므로써 희현(希賢)의 정성을 돈독히 하고 경의를 강마 하므로써 여택<sup>165)</sup>(麗澤)의 도를 힘써서 시골에서나 조정에서나 이 동작으로 조처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자암 선생의 고품을 들음이 있다고 이를 것이요 또는 풍고선생과 교동상공을 저버림이 없다고 이를 것이니 원중의 모든 군자는 어찌 이로써 스스로 힘쓰지 않으랴? 이번 공역에 주관하여 애 쓴 사람은 예산사인 성맹환·김현오 등이요 나에게 기문을 청한 사람은 대흥사인 김달수니 그는 곧 자암 선생의 종손이다.

승정후 사주병진(철종 7년 1856) 관월의 하한

후학 오위도총부도사 한산 이장찬은 삼가 씀

통훈대부행 예산현감 홍훈모 장의 성맹환 본손 김달수

## ◆ 덕잠서원 재실 중수기

대저재현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멀고 깊도다. 비유하건대 상서로는 기린(麒麟) 봉황(鳳凰)이 수천 년 전에 잠깐 나와서 그 기이(奇異)한 형적(形迹)이 비슷하나마 아득하여 상상할 수 없으나 뒤 세상의 부인과 어린 이들이 오히려 전설하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 물건에 두어 항상 생각해서 잊지 않는 까닭이었다.

164) 지려: 가다듬음.

165) 여택: 서로도아 학문을 닦는 일.

공자께서 증민시(蒸民詩)를 읽으며 이르기를 “백성의 타고난 천성이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하였으니 사람이 덕에 있어서 어느 누가 권하며 좋아하게 하였으며 어느 누가 권하여 기뻐하게 하였으랴? 오직 그의 의젓하게 타고난 본연의 천성이 원래 지극히 순선(純善)해서 하늘땅이 다하도록 민멸(泯滅)하지 않는 때문이었다.

우리 당(黨)에 남양 홍병식이란 사람이 있으니 본디 의기 있고 호탕한 선비로서 일찍이 경화해서 성장하여 만년에 호향(湖鄕)에 내려와서 살았다. 하루는 오산 아래에서 자암 김선생의 서원을 숙연히 침배(瞻拜)한 뒤에 그 사우는 겨우 중수를 마치었으나 재실 및 담원이 많이 퇴락하고 중문, 외문 이 아직 영건(營建)되지 못한 것을 보자 개연히 탄식하여 재임의 망천(望薦)된 것을 사양치 않고 피를 내고 생각을 발하여 노고를 무릅쓰고 돌아다니며 재력을 모아서 새로이 이룩하는데 재실방벽의 파락된 것을 서화보써 새로 바르고 담원의 와석으로 써 다시 보완 하였으며 이어서 중문을 세우매 중문이 엄연하고 외문을 세우매 외문이 우뚝하였다. 그리하여 선현의 조두(俎豆)올리는 곳이 차차 성양(成樣)되어 가는 것은 오로지 그대의 힘이요, 많은 선비의 공식(矜式)되는 곳이 길이 의비(依庇)되는 것도 또한 그대의 공인지라. 만약 선생의 높은 풍성(風聲)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그대가 어떻게 백세의 아래에서 성력을 쓰겠으며 또는 그대의 성의가 선생을 간절히 사모함이 아니라면 어떻게 백세의 우의를 광감하겠는가? 여기서 더욱이 대현의 교화가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이 오랠수록 더욱더 깊어져서 그대의 한결같은 성심이 굳건히 게으르지 않아서 선생의 도덕에 감발(感發)흥기(興起)될 것을 징험(徵驗)하겠으니 아~그대여 힘쓸지이다.

세경인(歲庚寅 - 순조 30년 1830) 중추 후학 광산 김돈서는 삼가 지음

통훈대부행 예산현감 이재정

장의 허간 · 장의 홍병식 · 별유사 김익서

# 묘비

## ◆ 김구 묘비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시 대 : 조선(1640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마을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온 곳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김구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묘소 앞에는 옥계형 이수가 있는 화강암 석재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인조 1640년 (인조 18)에 건립된 것으로 규모는 높이 158.5cm×폭 62cm×두께 16.7cm이다.

묘비명은 김세림이 찬하고 글씨는 외현손 안응감이 썼다. 비신 전면에는 “통정대부홍문관부제학지제교검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 동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자암김선생구지묘 증정부인김해김씨부좌” 묘소에서 아래로 20m 떨어진 곳에 정찬모서(書)전(篆), 김용준 지(識)로 1984년에 다시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장방형의 대좌 위에 오석의 비신을 세우고 옥계형의 이수를 올리고 있고 비의 사면에는 행장 각서 되어있다.

#### ◆ 김구 묘비문



##### [전면대자]

통정대부 홍문관부제학 · 지제교검경연참찬관 · 춘추관수찬관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홍문관제학 · 예문관제학 · 동지경연 · 의금부 · 춘추관 · 성균관사 자암김선생휘구지묘

##### (두전) 자암 김선생 묘비명

유명조선국통정대부 홍문관부제학 · 지제교검경연참찬관 · 춘추관수찬관증가선대부이조참판홍문관제학 · 예문관제학 · 동지경연 · 의금부 · 춘추관 · 성균관사 자암 김선생묘비명 병서

공의 휘는 구요 자는 대유니 광산인이다. 기묘선현전에 이른바 자암 김선생이다. 공은 천성이 순교하며 행실이 또한 돈독하였다. 어려서부터 발본역행하여 그 서로 더불어 강구하고 절차한 이들이 모두 일시의 훌륭한 무리였다. 증묘조에 문치에 힘써서 한 세상을 일으키고 새롭게 함에 공과 정암 조선생, 충암 김선생이 위아래로 의지하고 중히 여기는 바가 되어서 협심하고 도와서 지극한 다스림을 도모하고 돌이켜서 요순의 군민으로 사문을 흥기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로 생각했다.

처음에 괴원으로부터 뽑혀서 홍문관에 정자가 되었으며 저작, 박사, 수찬, 교리를 역임하고 곧 이조좌랑을 배수하고 정랑으로 옮겼다. 사간원헌납, 사간과

장악원정을 말미암아 다시 홍문관에 들어와 응교, 전한 과 직제학이 되어서 항상 예문관 응교와 성균관사성을 겸하였다. 호당에 사가하고 승정원동부승지에 올랐다가 좌승지로 옮기고 부제학으로 배수하였다.

잠깐 있다가 복문에 화가 일어나니 곧 기묘년 11월 15일이었다. 공은 정암, 충암으로 더불어 하룻밤에 모두 내려 취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곤, 심정이 공의에 버리는 바가 되어서 적노감정을 드러내어 몰래 역적이라고 모함해서 일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신 정광필이 힘써 구함을 힘입어 나누어 귀양 감에 차등을 두어 귀양 보냈는데 공은 개령으로 장류되었다. 몇 달을 지내고 죄가 더하여져 남해로 쫓겨갔다. 정암, 충암은 사형의 명을 면치 못하였다. 오호라! 가히 통곡할 뿐이다. 선비는 진실로 충성을 다하고 도를 굳게 함이 있으니 나아가 밝은 임금에 착함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고 물러나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하고 액곤으로 세상에 몰하는 것이다.

만일 공같은 이는 충성이 죽히 써 임금의 알아줌을 맺을만하되 성명한 세상에서 내쳐졌고 밝음이 죽히 써 그 몸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마침내 모리배의 함정을 만났으니 이또한 어찌하리오?

슬프도다! 하늘의 도를 기피할수 없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도다. 공이 절도에 처한지 13년에 비로소 임피로 옮기고 또 2년에 향리에 방환 되었다. 그 적소에 있을때 부모가 모두 먼저 죽어 이에 이르러 부모의 묘에 달려가 곡 하였다. 쓰러졌다. 다시 소생해 추후에 죄를 벗고자 하는 감정이 조석으로 무덤에 올라 눈물을 흘린 곳에 초목이 모두 말랐다. 가정(1534년) 갑오년 11월 16일에 병들어 일어나지 못했으니 향년 47세이었다. 예산 종경리 자좌 오향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선세 산소에 따른 것이었다. 그후 57년에 이르러 선조묘에서 특별히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공의 문장은 기이하면서도 높지 아니하고 위진에서 나왔으면서도 겉으로 예능에 미쳐서 음울을 알아서 악정을 배수하여서는 명하여 아악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16세에 한성시에 장원했으며 20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26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사마시에 응할 적에 선정 김모재가 시관이 되었는데 자주 감탄하고 칭찬을 가하여 그 시권에 비답하여 이르길 “한퇴지의 지음이요, 왕희지의 글이다.” 하고서 드디어 발탁해서 두 장원으로 뽑았는데 국조에서 드문 바이었다. 필법이 강건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며 세상이 인수체라 일컬었으니 대개 공이 인



수방에 산 까닭이었다. 후에 중국 사람들이 사가는 바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끓고 쓰지 않아서 세상에 전해짐이 드물다. 고의 휘는 계문이니 대흥현감이며 좌승지에 증직하고 조의 휘는 성원이니 성균관 사예로 이조참판을 증직하고 증조의 휘는 예몽이니 예조 판서로 시호는 문경공이다. 비 숙부인 전의 이씨는 고려태사 도의 후예다. 김해김씨를 취하니 만호 진현이 그 아버지이다. 능히 부도를 이어나가서 아름답고 경사스러웠다. 2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 용은 일찍 죽고 다음 균은 진사에 장원하고 딸은 전력부위 이사항에게 시집갔다. 균이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온은 사간원 헌납이요, 차남 갑은 별좌인데 효로 지평을 증직 하였고 용에게 출제했다. 딸은 증 순계군 안세복에게 시집갔다. 이사항이 1남을 낳으니 희용인데 직장이다. 온이 2남 1녀를 낳았으니 딸은 만호요, 황은 통정으로 군수요, 딸은 윤덕경에게 시집갔는데 측실에서 나왔다. 갑이 2남 2녀를 낳았으니 숙은 현감이요, 건은 선무랑이요, 장녀는 현령 이영의에게 시집 갔으며 차녀는 첨지 이진형에게 시집갔다.

안세복은 4남 3녀를 낳았으니 몽익은 생원이요, 몽윤은 순양군이요, 몽척은 선무요, 몽상은 통덕이다. 장녀는 사인 신대근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참봉 원사익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주부 홍형에게 시집갔다. 내외 증현손이 모두 백여인이다. 유학 백휘는 숙의 소생으로 이가 종손이 되는데 순양군으로 더불어 제종인이 산소에 비 세울 것을 도모해서 가장을 가지고 김세렴에게 부탁하여 말하길 “공이 죽은지 이미 백여 년에 나타내어 각석함이 아직도 꺾혔으니 어찌 자손의 탓뿐이리요? 그 사문에 있어 결함이 또한 크도다. 그런즉, 그대가 아니면 누가 마땅히 명하리오” 하니 세렴이 사양하여 얻지 못하고 삼가 명하노니

도학의 일어남은 문정공이 실로 비롯하였다.  
 띠를 뽑아 연하여 먹음에 군자의 도 자라도다.  
 미쁘도다 선생이여! 조예가 깊었도다.  
 현인이 서로 응하여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도다.  
 경과 의를 끼어 갖고 오직 정을 기뻐하였는도다.  
 행함에는 험하고 평탄함이 있었으나 그 도는 고치지 아니한다.  
 군흥들이 미워하여 참소하고 모함이 그지없다.  
 위기가 마침내 놀래키어 귀신되고 여우 된다.  
 하늘이 장차 마함에 철인이 죽어간다.  
 먼 지역 귀양가고 궁향에서 종신한다.



공이 한번 정함에 백년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사람이 마루로 하고 하늘에는 북두칠성이라.  
 큰 비에 크게 새겨 그 무덤 표하노니  
 무궁한 뒷날에 새기어 보이나니 공이 어찌 유감이 있으리오.

황명 승정 13년 경진10월 일 세우다.  
 4대손 순흥후인 안음감서  
 후학통정대부 성균관대사성지제교 김세렴<sup>166)</sup> 찬전

### ◆김계문 묘비

소재지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시 대 : 조선(1531년)

축융황 참판 효현이 묘표를 지었고 아들 서가 글씨를 썼다. 배위는 숙부인 전의이씨 이니 아버지는 단성현감 겸인이요 할아버지는 광주목사 양성이며 증조는 정용랑장 선경이니 고려태사 도의 후손이고 외조는 진의 부위 김인중이다.



#### [전면대자]

통훈대부행대흥현감 김공지묘 숙인 이씨지묘  
 가정 10년(1531년) 3월 남(男)서(緒)서(書)

#### [후면]

원문 판독이 용이치 않아 아래의 글로 대신한다

증승정원 좌승지 행대흥현감 계문묘표

공의 휘는 계문이요, 자는 자미다.

공은 일찍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강예 습득  
 관으로 뽑히고 연산 신유년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정반에 첫 벼슬로 성원전

166) 김세렴: 1593~1646년 조선중기의 문신, 학자. 본관은 선산이고 자는 도원, 호는 동명 시호는 문강이다.

선릉 참봉이 되고 봉사 직장에 승진하여 주부를 거쳐 고산현감에 제수되었다. 만기가 되자 주부에 들어가고 대흥현감에 나아가 있다가 종종 병술년에 관아에서 별세했다.

공의 천성이 간고하고 청렴하고 결백하여 형제간에 나눌 물품이 있으면 반드시 퇴연이 많고 적음에 뜻이 없었다. 매양 나누어 공물에 붙일 때 의례히 여유가 있게 하고 희롱하는 말에는 “말 아니하는 나머지라.”라고 하였으니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이와 같았다. 형제간에 우애가 출천하여 행실이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고을의 수령이 되어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구휼하며 번다하고 가혹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 당대 중종반정에 원종공신에 참여 하였다.

참판 황효헌 찬략(參判 黃孝獻 撰略)

인용: 『광산김씨유적보감』상권 389쪽 上

#### ◆이겸인 묘비

소재지 :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당초는 신암면 종경리에 있었음)

시 대 : 조선(1515년)

단성현감 이겸인 묘비는 기묘명현의 한분인 자암 김구가 212개의 해서체 글자로 글을 써서 1515년 예산현 종경리, 현재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세운것 이다. 김구는 이겸인의 외손자로 이겸인의 사위인 김계문의 아들이다.



#### ◆이겸인 묘비문

공의 휘는 겸인이고 자는 수옹으로 전의인이며 고려태사 도의 후손이다. 증조의 휘는 언재로 중현대부 내부령이고 조의 휘는 선경으로 정용위랑장이며 고의 휘는 양성으로 통정대부 길주목사이다. 목사공이 판사 장원도의 딸과 혼인하여 임진(1412년 태종 1)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사마시에 급제 하였으며 관직은 현감에 이르렀다. 지내온 곳 마다[역임한 여러 고을에서] 명성과 공적이 있었으며 병신(1476년

성종 7) 9월 21일 병으로 집에서 생을 마치니 향년 65세였다. 공은 처음에 호군 이주의 따님과 혼인하였으나 자식이 없었고, 다음으로 진의부위 김인중의 따님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두었다. 장남은 사헌부 장령 사공이고, 차남은 진사인 사검이다. 첫째 따님은 현감 김계문에게, 둘째 따님은 진사 신제담, 셋째 따님은 사용 박학령에게 출가 하였다. 병신(1476년 성종 7) 11월 15일 예산현 종경의 언덕에 공을 장사지내니 공인 김씨는 좌측에 합폄하였다.

황명정덕10년(1515년 중종 10) 11월 일 외손 선무랑 수 홍문관수찬 지제교 경연검토관 김구가 글을 쓰다.

## 자암 김선생 묘지(안응창)

공의 성은 김씨고, 이름은 구며, 자는 대유인데, 광주 사람이다. 자호는 자암이고, 또 울곡병수를 썼다. 고조의 이름은 소(遡)인데, 성균관사성을 지냈고 의정부좌참찬에 증직되었다. 증조의 이름은 예몽인데, 예조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으로 당시에 명성을 떨쳤다. 조부의 이름은 성원인데, 성균관 사예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계문인데, 대흥현감을 지냈고, 승정원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숙부인 전의 이씨인데, 고려 때 태사를 지낸 이도(李棹)의 후손으로, 현감 이겸인(李兼仁)의 따님이시다. 홍치 무신년(1488년) 9월 29일 공을 낳았다.

16살에 한성시에 장원급제하고, 20살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장원급제했으며, 계유년(1513년) 한충방 별시에 제2명으로 급제했다. 급제한 초기에 괴원(승문원)에 들어갔고, 얼마뒤 옥당으로 옮겼다. 저작과 박사겸기사관을 역임하고 수찬으로 승진했으며, 승문원교리와 이조좌랑, 성균관전적을 거쳐 지제교에 선발되었다. 다시 옥당으로 들어와 교리겸주기관이 되고, 승문원교리를 거쳐 헌납과 공조와 예조, 이조의 정랑을 지냈다. 홍문관교수겸편수관과 예문관응교를 지내고, 홍문관전한에 이르렀는데, 다시 승문원참교와 사간, 사성, 장악원을 거쳐 홍문관직제학에 이르렀다. 기묘년(1519년) 승정원 동부승지와 우부승지를 거쳐 부제학에 올랐지만, 이 해 겨울 사옥(士獄)이 일어나 금오(金吾)에 체포되고, 남해의 절도로 유배를 갔다. 재앙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주(詩酒)와 가무를 끊지 않고, 위험에 처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생사궁달(生死窮達)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자세를 볼 수 있었다.

적거(謫居)한 지 무릇 13년이었는데, 병술년(1526년)과 무자년(1528년)에 각각 아버님과 어머니의 상을 당했다. 신묘년(1531년)에 사면을 받아 임피 현으로 옮기고, 계사년(1533년)에 석방되어 송추로 돌아왔다. 갑오년(1534년)직첩을 환수 받고, 뒤늦게 복상하고자 양친의 무덤 곁에 여막을 치고서 밤낮으로 통곡하면서 추세(追稅)의 정을 풀고자 했지만 먼저 병이 들어 끝내 일어나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나니, 가정 13년 갑오년 11월 16일의 일이었다. 향년 47살이다. 예산 종경리 선영 오향의 언덕에 장례를 치르니 치명<sup>167)</sup>을 따른 것이다. 공이 세상을 떠난 지 57년이 지난 선조대왕 만력 신묘년(1591년) 종계변무의 일로 표를 올려 비준을 받은 업적으로 광록중훈 일등에 추록(追錄)되어 공에게 이 작위가 추증되었다.

공은 어릴 때부터 벌써 어른처럼 행동해 나이 예닐곱 살에 글을 지을 줄 알았다. [석류시]와 [오작교시]를 지었는데, 언어가 모두 미묘하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이하게 여겼다. 나이 일곱 살 때 머리에 부스럼이 나 머리카락을 다 깎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찬바람에 상할까 염려해 담비 모자를 주었지만 사양하면서 “남의 물건은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며 끝내 거절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종종 시대를 당해 참으로 한 시대에 무거운 명성을 떨쳤지만, 문예는 단지 여기(餘技)로 여겼는데, 사마시에 응시했을 때에는 문필이 모두 뛰어나서 고관이 시권을 읽고는 찬탄하면서 ‘퇴지(韓愈)의 문장이고 희지(王羲之)의 글씨’라며 칭송했다. 양과에 모두 장원급제하니 우리 왕조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필법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 흠모하여 본받아 일러 인수체(仁壽體)라 했는데, 공이 살던 곳이 인수방(仁壽坊)이었던 때문이었다. 진초(眞草)로 남은 글씨들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종횡으로 모양새가 다양해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니, 참으로 세상의 진기한 보배라고 하겠다.

오호라! 공의 문장과 학술은 크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항상 문정 공 조광조 선생 등 제현과 훈지<sup>168)</sup>의 관계로 지내면서 바른 학문을 강독하며 세도(世道)를 되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었다. 그러나 마침내 사림의 재앙을 만나 여러 해 동안 오지에 버려져 그 뜻을 세상에 펼치지 못했으니 오호라!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인 김해 김씨와 결혼했는데, 좌통례<sup>169)</sup> 김귀통이 조부고 만호 김진현이 아버지다. 집안을 다스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데 모두 법식을 지켰으며, 2남 1녀를 낳으니, 첫째가 용(鎔)이나 일찍죽어 후사가 없고, 둘째가 균(鈞)으로 진

167) 치명: 사람이 죽기 전 정신이 멀쩡했을 때 한 유언.

168) 훈지: 피리의 일종 훈(壎)은 흙으로, 지(簾)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형이 훈을 아우는 지를붙여 서로 조화된 음률을 이룬다는 뜻에서 형제가 서로 화목한 것을 일컫는다.

169) 좌통례: 조선시대 통례원의 정3품직, 근시, 집례등 예식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사시험에 장원급제했는데, 중부(仲父) 종사랑 김담의 후계로 나갔다. 딸은 전령 부위 이사항에게 시집을 갔는데, 진사를 지냈다. 김균은 처음에 진주 강씨를 아내로 얻었지만 자식이 없자 함양 여씨 경력<sup>170)</sup> 여공정의 딸을 다시 아내로 얻었다. 아들 하나를 얻으니 이름이 온(軫)으로, 헌납을 지냈다. 세 번째로 전주 이씨 세종대왕의 증손 영평 이정보의 딸을 아내로 얻어 1남 1녀를 두었다. 사내의 이름은 김갑으로, 별제를 지냈는데 백부 김용의 후사로 출계했다. 딸은 좌찬성에 추증된 순계군 안세복에게 시집을 갔으니, 나의 왕모가 되신다. 부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희용으로 평시서직장을 지냈다. 이렇게 안밖의 자손으로 현재 살아 있는 이들만도 백여 명에 이른다. 내 아버지 순양군 안몽운은 공의 외증손이 되신다.

가만히 말하건대 공의 사업은 비록 국승(國乘)에 실려 밝게 볼 수 있지만, 묘소에는 비지(碑誌)가 없으니 백세의 뒤에는 이를 아는 이들이 없을까 걱정되었다. 마침내 종손 김백휘가 풍비<sup>171)</sup>를 세워 황천에 까지 닿도록 할 것을 계획하여 나로 하여금 세계(世系)와 관직을 기록하게 하고 다시 무덤 속에 묻으려고 했는데, 연대가 이미 오래되어 전해지는 기술이 자세하지 않으니 실제의 덕과 공적은 만분의 일도 실지 못했다. 다만 들은 것을 삼가 여기에 기록하여 무덤구덩이 남쪽에 넣어두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랄 뿐이다.

---

170) 경력: 조선시대 도평의사사, 관찰사의속관, 충훈부, 의빈부, 의금부, 개성부, 오위도총부, 사평부 등에 속하여 실무 처리를 맡았던 종4품의 벼슬.

171) 풍비: 공덕을 기리어 세우는 큰비석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광산김씨직장공파, 선현실록 491~686》

金綬(김구)

## ◎ 1512년(중종 7) 12월 7일(정미)

성균관의 생원(生員) 김구(金綬) 등이 상소하여 소릉의 복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1512년(중종 7) 12월 8일(무신)

성균관 생원 김구(金綬) 등이 상소하여 소릉 복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1513년(중종 8) 9월 6일(신미)

조강에 나아갔다. 전경(典經) 김구(金綬)가 아뢰기를,

“인군의 학문은 구두(句讀)를 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강구 논란하여 의리(義理)를 연구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야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연에 진강(進講)하는 데 일정한 시각을 정하고 구두를 띄는 것만으로 일을 삼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제왕(帝王)의 전심(傳心)하는 학문을 강구하고 또 《강목(綱目)》을 읽되 먼저 그 필법(筆法)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진강한 책 가운데 왕승종(王承宗)의 벼슬을 삭탈한 것을 맨 머리에 기록하고 이어서 토돌승취(吐突承瓘)로 초토처 치사(招討處置使)를 삼은 것을 기록하고, 토돌승취가 왕승종을 토벌할 때 싸움이 불리한것을 그 아래에 적었으니, 그것은 현종(憲宗)이 환관(宦官)으로 주장(主將)을 삼은 것을 깊이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절실하다. 대저 경연이란 구두만 띄기 위한 것이 아니요, 다스리는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당나라 임금은 환관을 신임하다가 마침내 문생 천자(門生天子)가 되어 그들 손에서 폐치<sup>172)</sup>(廢置) 되기까지 하였다. 소인들도 모두 권세에 아부하여 권세가 이미 이루어지면, 인군이 비록 다스리려고 하나 또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 그 조짐을 막아야 한다.”

하였다. 신용개가 아뢰기를,

“환관의 화는 당나라에서 극도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은 현종(玄宗)이 6품의 관원을 파직하는 법을 만든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가 마침내 이보국(李輔國)과 정원진(程元振) 등이 폐치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한(漢)나라 때에 비록 환관의 화가 있었다 하나 당나라 때처럼 참혹한 지경에 이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장령 윤은필(尹殷弼)이 아뢰기를,

“환관에게는 집안 청소하는 일이나 맡길 뿐이지, 권병(權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석으로 측근에 있으면서 점차로 충량(忠良)을 참소하여 해치니, 그 조짐을 살펴서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관은 임금과 함께 거처하므로 인주의 동정을 살펴서 그 뜻에 맞추게 되니, 조짐을 살펴서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슨 일이든 의심난 점이 있으면 재상과 승지를 인견하여 물어봐야 할 것이요, 중관(中官)만을 시켜서 왕명을 출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섭정하실 때 조사(朝士)를 인견하지 않고 중관을 시켜 분부를 출납하였는데, 성종 조에서 그대로 준례를 삼은 것이요, 조종의 오래된 법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조사를 인접하여 논란하는 때가 매우 잦았거니와, 이제 도 공사(公事)가 있거든 때를 가리지 말고 불러서 물어보시면 성치(聖治)에 도움이 있고 사체에도 맞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

172) 폐치: 폐위 또는 즉위시키는 것

“그 때에도 상서하여 불편을 말한 자가 있었다. 소소한 공사는 다 친계(親啓)할 것 없고, 큰 일이 있으면 재상이 친히 나와서 품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아랫사람은 항시 입거(入居)하여 뵈릴 때에 앞으려 낫을 숙이니, 혹 아뢰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기가 죽어서 다 아뢰지 못합니다. 상께서 편히 앉게 하시더라도, 이 예가 이미 굳어졌으므로 구태여 하지 못할 것이니, 점점 아뢰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편히 앉혀서 낫을 숙이는 예를 그만두고 말을 다하게 하고서도 상께서 또한 그 사람의 기색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재상 중에서도 불편을 말한 자가 있었다. 편히 앉아서 말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윤은필(尹殷弼)·현납 윤인경(尹仁鏡)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 1513년(중종 8) 9월 13일(무인)

조강에 나아갔다. 김구(金絿)가 아뢰기를,

“이길보(李吉甫)가 ‘천하가 이미 태평해졌다.’고 한 것은 현종(憲宗)을 현혹시킨 말입니다. 신은 삼대(三代) 이후에는 태평한 정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비록 조금 평안한 시대는 있었으나, 유지해나간 임금에 불과하였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대학》으로 준칙을 삼아 공을 들이고 힘써 행한 다음에야 태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하는 것이 모두 구차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옳다. 인신으로서 천하가 이미 태평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르다. 당우(唐虞)의 정치를 이루려면 《대학》공부의 차례대로 한 뒤에야 옳을 것이다. 후세에 내려와서는 어찌 참으로 태평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소세양(蘇世讓)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여 8년 동안 성의껏 정치를 하시니 중외(中外)가 편안하니

다. 그러나 그 정치의 효과는 이 정도에 그칠 뿐이요, 태평의 지경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날의 정치를 편안하게 여기시지 말고 그 뜻 세우기를 원대히 하시어, 항상 생각에 나의 정치는 삼대에 비견하지 못함이 부끄럽다 하시고, 무슨 일이든 삼대를 본 받아 힘써 행하시면, 삼대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간 신상(申鎔)·지평 임추(任樞)가 전의 일을 아뢰고 따라서 유진의 일을 힘껏 간쟁하였으나, 상이 이르기를,

“강상이 지극히 크나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도 또한 크다. 옛말에 ‘죄인을 저자에서 처형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지금 대신의 의논은 비율(比律)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대간의 말은 강상(綱常)을 큰 것으로 삼으니, 널리 조정에 물어서 여러 의논을 거두어야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 ◎ 1513년(중종 8) 9월 13일(무인)

노공필(盧公弼)·이자건(李自健)이 의논드리기를,

“유진의 불효한 죄는 비록 중전(重典)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마는, 다만 비율 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강징(姜澂)·임유겸(任由謙)·심정(沈貞)·이장곤(李長坤)·이자견(李自堅)·김휘(金暉)·정광국(鄭光國)·서극철(徐克哲)·이희맹(李希孟)·황성창(黃誠昌)이 의논드리기를,

“비율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연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진의 불효한 죄는 이미 매이죄(罵詈罪)의 아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인명이 비록 중하나 강상도 또한 큼니다.”

하고, 박소영(朴召榮)·윤은보(尹殷輔)·한효원(韓效元)·이언호(李彦浩)·유관(柳灌)·홍언필(洪彦弼)·소세양(蘇世讓)·이청(李清)·민수원(閔壽元)·김구(金絳)가 의논드리기를,

“오형(五刑)의 엄중한 조문이 3천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 불효의 죄가 제일 크므로, 이 죄를 범하면 비록 소소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매이는 불효에 있어서 가장 가벼운 것이나, 율에 있어서는 교수(絞首)에 처하니, 그것은 강상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진의 불효한 죄가 매이보다 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중전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아끼어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맥(李陌)은 의논드리기를,

“강상이 지극히 크나 인명도 또한 중합니다. 지금 유진의 불효한 죄는 놓아줄 수 없으나, 율에 ‘아버이가 고발해야 죄를 준다.’는 조문이 있는데, 비율하여 중전에 처하는 것은 정법(情法)을 무너뜨리는 일인 듯합니다.”

하고 송일 · 정광필 · 윤순이 아뢰기를,

“신 등이 전에 의논이 있을 때, 유진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고 그 범한 바도 매이의 밑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 바 아니었으며, 또 유진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저 인군이 사형을 처단하는 것은 마땅히 율문(律文)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니 이제 만일 비율로써 죄를 처단하여 한번 그 단서를 열어놓게 되면 뒷날의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이미 이것을 생각해서 의논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유진의 죄는 매이의 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 밑에 해당하는가? 나는 그것을 듣고싶다.”

하니, 송일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유진의 죄가 매이 밑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비율하여 죄를 처단하는 것이 미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 1513년(중종 8) 9월 15일(경진)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헌종(憲宗)이, 재상이 사가에서 손님을 보는 일을 허락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주공(周公)은 선비들에게 자신을 굽혀 먹던 음식을 뺏고 감던 머리를

쥐고 나가 맞아들이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영사 송일이 아뢰기를,

“재상이 만일 손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현부를 알아서 쓰겠습니까? 본조(本朝)의 분경금법(奔競禁法)은 신이 그 본의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사간 홍경림(洪景霖)이 아뢰기를,

“재상이 어진 이를 골라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간알자(干謁者)가 많으니, 분경금법은 혁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장순손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재상이 사람을 천거할 수 있었는데, 후세에서는 재상의 권한이 나뉘어 이·병조(吏·兵曹)에서 하므로 오로지 천거하지 못합니다. 분경금법은 조종 때부터 설치된 것이니, 비록 폐지할 수는 없으나, 재상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현부를 알아서 쓰겠습니까?”

하고, 전경 김구는 아뢰기를,

“어진 재상을 얻어 인재를 천거케 하여 모두 그 올바른 사람을 얻게 된다면, 비록 법금(法禁)을 엄하게 하지 않더라도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현재상을 얻으면 모든 집사(執事)가 다 어질 것이니, 군자와 소인의 진퇴는 모두 한 재상의 진퇴에 매인 것이다.”

하였다. 참찬관 이항(李抗)이 아뢰기를,

“이미 위임시키고 또 분경금법을 세운 것은 과연 옳지 못한 일인 듯합니다. 지금의 대신은 경연에만 입시하게 되고, 불시로 소대(召對)하는 일은 없습니다. 들으니 세종께서는 혹 불시에 교자를 보내어 황희(黃喜)를 인견하기까지 하고, 또 자주 신하들을 인접했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인신의 현부를 환히 알아서 모든 일을 직무에 알맞게 맡겼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세에는 사의(私意)가 공공히 행하니, 간사를 방어하는 일을 폐지할 수 없으므로 이 분경금법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집의 김협(金協)이 아뢰기를,

“지금 권문(權門)에 머뭇거리는 자는 모두 인아(姻婭)의 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조행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그 집에 찾아다니기를 즐겨하겠습니까? 이항이 아뢴 ‘불시로 어진 사대부를 소개하라.’는 것은 옳으나 분경금법이 부당하다고 해서 혁파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2월 11일(을사)

주강에 나아갔다. 전경(典經) 김구(金絀)가 아뢰기를,

“호씨(胡氏)가 이르기를 ‘일은 힘쓰기에 달려 있다.’ 하였으니, 이는 임금의 마땅히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만약 ‘학술(學術)이 이만하면 족하고 치도(治道)가 이만하면 족하다.’ 하여 구차스럽게 구습에 얽매인 채 기약이 없으면, 공을 이룰 수 없고 일을 종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옳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임금노릇 하기가 어렵다.’ 하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임금은 그 임금됨을 어렵게 여겨야 한다.’ 하였으니, 임금된 이가 그 임금된 도리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항상 그 어려움을 잊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2월 14일(무신)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이(利)를 말하는 무리를 내치고 절용(節用)과 애민(愛民)에 힘썼다.’는 대목에 이르러, 전경(典經) 김구(金絀)가 아뢰기를,

“절용과 애민이라는 말은 큰 것이니, 임금이 애민을 근본으로 한다면 우락(憂樂)을 반드시 백성과 같이 해야 합니다. 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절용과 애민을 위하여 잡역(雜役)을 건면(蠲免)한 것은 지극한 일이나 마침내 효험

이 없이 백성이 떠돌고 주림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구제하려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은 백성의 부모라 마땅히 절용하고 애민하기를 갓난아이처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관직(官職)을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니, 아랫사람도 또한 위의 뜻을 받들어 시행한 뒤라야 백성이 실혜(實惠)를 받게 될 것이다.”

하매, 구(綏)가 아뢰기를,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이른바 수령은 마땅히 청렴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위대로 반드시 몸소 실천하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한 뒤라야 청렴한 관리가 절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널리 유일(遺逸)<sup>173)</sup>과 효렴(孝廉)<sup>174)</sup>을 구하여 수령으로 탁용(擢用)하면, 지극히 훌륭하지는 못하더라도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2월 27일(신유)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원 문종(元文宗)이 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에게 하유하기를 「조종(祖宗)의 명훈(明訓)과 옛날의 치란득실(治亂得失)을 앞에서 죽 설명하여 짐(朕)으로 하여금 청문(聽聞)을 즐겁게 하라.」 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 허평(許平)이 아뢰기를,

“문종의 이 말은 훌륭하다 하겠습니까만, 만약 그 실속이 없다면 어찌 이익이 있으리까! 대정 경연(經筵)을 베풀어 군신(群臣)을 접하는 것은, 시정(詩政)의 득실과 생민의 휴척(休戚)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경연에 입시(入侍)하는 자가 자음(字音)이나 풀이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물러가니 어찌 이익 되는 바가 있으리까? 폐조(廢朝)이후로 말하기를 꺼림으로써 규간(規諫)하는 기풍이 없어졌으니, 모름지기 이로써 경계를 삼을 것입니다.”

173) 유일: 훌륭한데도 추천에 빠진 것

174) 효렴: 효행(孝行) 있고 청렴한 자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을 마친 뒤에 좌우의 대신들이 옛날의 치란(治亂)과 현재의 득실(得失)을 논진(論陳)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근일에는 과연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매, 전경(典經) 김구(金絀)가 아뢰기를,

“문종(文宗)이 이르기를 ‘짐으로 하여금 청문을 즐거워하게[樂] 하라.’고 한 이 ‘낙’(樂) 자를 모름지기 본받는 것이 가합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학술을 익혀 즐거운 경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훈(聖訓)에 이르기를 ‘아는 자는 이를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이를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하였습니다. 학술은 모름지기 즐거운 경지에 도달한 뒤라야 참으로 선악(善惡)과 의리(義利)의 구분을 알고 스스로 마지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유량(史惟良)의 소(疏)에 말하기를 ‘천재(天災)도 그치게 하고 상서(祥瑞)도 이르게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지당하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니 인심이 화(和)하면 천심(天心)도 화하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있었던 재변이 어찌 인심의 불화로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임금과 신하가 각각 그 화를 이루어 인심이 모두 화하게 한다면 천재도 그치게 될 것이다.”

하매, 평이 아뢰기를,

“대저 인사가 바르게 되면 천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군자(君子)가 조정(朝廷)에 있어서, 간신(奸臣)들이 그 간계를 용납하지 못한 뒤라야 조정이 화하게 되는 것이며, 조야(朝野)가 모두 화하면 천의(天意)가 자연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2월 29일(계해)

조강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오·월(吳越)의 왕이 간특하고 비밀스런 일들을 들춰내므로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전경(典經) 김구(金絀)가 아뢰기를,

“이는 비록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도량이 아닙니다. 간사하고 비밀

한 일들을 들춰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결국은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임이다. 인심의 야박함은 실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니, 임금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속이지 못하도록 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상이 총명을 자부하여, 문부(文簿)의 세밀한 데까지 살피기를 좋아하여, 혹 경미한 하자를 들추어 유사(有司)를 견책하니, 자못 임금의 체면을 상하였고 또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을 감화시키는 덕이 없으므로, 구가 ‘간사하고 비밀한 일을 들추어 낸다.’는 말을 인하여 이를 풍자한 것이다. 그러나 상은 이를 고치지 못하였다. 구는 성현(聖賢)의 글을 배워, 의리에 밝고 치체(治體)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림(士林)이 존중하였다.】

또 강하다가 ‘이도(李濤)가 홀(笏)<sup>175</sup>을 단정히 하고 전폐(殿陛) 앞으로 바싹가서 논변(論辯)할 때에 음성과 기색이 모두 격력하므로, 진주(晉主)가 노하여 연방 꾸짖었다.’는 대목에 이르러 구가 아뢰기를,

“강개(慷慨)한 신하가 마음에서 분격하게 되면 혹 성색(聲色)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임금은 이를 마땅히 우용(優容)하여야 합니다. 이도의 말이 불선(不善)한 것이 아닌데 진주가 노하여 꾸짖었으니 임금이 신하에게 어찌 노여움을 보이리까? 임금의 동정(動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지평 임추(林樞)·헌납 정충량(鄭忠樑)이, 송일(宋軼) 등과 제조(提調)에 관한 일을 논하였다. 추가 또 아뢰기를,

“근래 재상들이 어진 사람을 천거하지 아니하고, 전조(銓曹)에 서신을 보내어 자제(子弟)의 벼슬자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대신이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도리를 상실하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위하는 길은, 현인(賢人)·군자(君子)가 조정(朝廷)에 들어선 뒤라야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대신으로 하여금 모두 숨어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여 마땅한 자를 얻으면 상을 주고,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

175) 홀: 벼슬아치가 조현(朝見)할 때에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는 물건.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象牙)로 만들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나무로 만드는데, 향리(鄉吏)도 공복을 갖추게 되면 나무로 만든 홀을 든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홀(笏).

하면 처벌토록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어진 인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대신은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경솔하게 물러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며, 도제조(都提調)는 예로부터 하던 일인데, 계속한들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였다.

#### ◎ 1514년(중종 9) 2월 29일(계해)

주장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후한(後漢)의 임금이 ‘사인(士人)들이 자손을 위하여 계획하는 일이 많다 하여 모든 일을 환관(宦官)에게 맡겼다.’는 대목에 이르러, 전경(典經) 김구(金絿)가 아뢰기를,

“이로써 보건대, 한주(漢主)의 용렬함이 심합니다. 천지간에는 고기와 벌레 따위도 새끼가 있는데, 어찌 자손이 있다 하여 사인을 쓰지 않을 수 있으리까? 이는 참으로 한주의 시기(猜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임금은 시기를 더욱 끊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대(五代)의 임금은 책할 것도 없거니와 한·당(漢唐)도 환자(宦者) 때문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대저 환자란 문이나 지키고 소제나 할 뿐이요, 국정에는 간여시킬 수 없는 것이니, 이 일을 거울삼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2월 29일(계해)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에서 구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훌륭하다. 사람은 오직 어버이에게 효도하므로 그 임금에게도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귀양(歸養)<sup>176)</sup>하려는 자가 있으면 허락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참찬관 김근사(金謹思)가 아뢰기를,

---

176) 귀양: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다

“귀양할 차례가 되어도 귀양치 아니하는 자는 유사(有司)가 규찰(糾察)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전경(典經) 김구(金絿)는 아뢰기를,

“예로부터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자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순(堯舜)이 천하를 다스린 도(道)도 효제(孝悌)뿐입니다. 위에서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면 아랫사람은 저절로 감화되어 사람마다 모두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양하지 아니한 자를 검찰(檢察)한다는 논의는 부당합니다. 대저 효도는 그 천성에 타고 나는 것으로서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니, 법률로써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3월 4일(정묘)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하다가 ‘충애를 받는 자 [嬖幸]들이 결탁하여 이목(耳目)을 가리웠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時講官)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소인(小人)은 임금의 의향을 가만히 엿보아 비위를 맞추므로 임금은 그 뜻에 맞음을 좋아하여 충애를 특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믿고 권세를 부려 이목(耳目)을 속이고 가리므로, 권세를 부려 시비가 전도하고 사정(邪正)이 착치(錯置)되어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므로 임금이 아랫사람의 대우를 균일하게 하면 절로 이러한 충애받는 자의 근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당연하다. 전일에 말하기를 ‘재능이 있는 자는 우대해야 한다.’ 하였지만 신하의 대우는 균일하게 해야 할 것이며, 한 가지 재능이 있다 하여 남달리 충애함은 불가한 일이다.”

하매, 참찬관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충애의 폐단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군자와 소인을

명백히 분변하여, 군자면 달리 대우하고 소인이면 물리침이 가합니다. 어찌 한결같이 한단데 구애되어 대우를 혼동하리까!”

하니, 전경(典經) 김구(金絿)가 아뢰기를,

“상교(上敎)에 ‘신하의 대우를 균일하게 한다.’ 하신 것은 가하나, 이를 혼동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호현낙선(好賢樂善)은 성정(性情)의 올바른 일이다.’ 하였습니다. 군신(群臣) 중에 도덕과 절의가 있는 사람이면 높은 지위에 두어 책임을 맡겨 수행하게 하고, 특수한 총애로써 대우하여 조금도 시의(猜疑)<sup>177)</sup>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하며, 잡기(雜技)와 간능(幹能)이 남보다 다른 자를 총애하여 특이하게 대우하는 것은 말단의 일입니다. 이리므로 임금이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는 오직 군자와 소인을 분변하는 것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임금은 마땅히 군자와 소인을 명백하게 분변하여 과연 그가 어진 줄 알면 우대를 해야 한다. 만약 일재 일예(一才一藝)로써 특별히 총애를 한다면 그 폐단이 많을 것이다.”

하였다. 또 강하다가 ‘이언도(李彦韜)가 문신(文臣)을 두어 무슨 소용이나 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김구가 아뢰기를,

“문신이 임금을 이끌어 도(道)에 이르게 되면 소인이 그 술책을 부리지 못할 듯하므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니, 임금이 경성(警省)해야 할 바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신이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무신이 아니면 적을 막을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다.”

하매,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문무(文武)는 마땅히 병용(併用)해야 하지만 치치(致治)의 도(道)에는 문(文)을 쓰는 것이 더욱 간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

177) 시의: 시기와 의심

“문무를 병용함은 국가의 복이다. 그러나 문은 근본이요 무는 말단이다.”

하매, 김구가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문을 주로 하고 무를 보(輔)로 하여야 문명의 교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변경(邊境)이 편안하면 무(武)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나, 삼대(三代) 이하로는 문명한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에 무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문(文)이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말에 ‘도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하였고, 또 이르기를 ‘경천위지(經天緯地)’라 하였으니, 이는 문을 도(道)로써 말한 것이요, 후세의 문장은 장구(章句)를 수식할 뿐이라 ‘글은 글대로 마음은 마음대로라.’ 하였으니, 이는 문을 재(才)로써 말한 것입니다. 도(道)를 펜 글은 쓸 만한 글이지만 걸치레만 한 글은 쓸모 없는 글입니다. 쓸 만한 글은 방책(方策)에 실려 있어 모두 마음을 바꾸고 몸을 닦는 방법인데, 지금 글을 하는 자는 실제로 체득(體得)하여 일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한갓 걸치레만 하여 아름답게 보이려 하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무의 이름만 취하고 그 실상을 상고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니, 마땅히 그 덕행(德行)의 여하를 보아 골라서 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3월 4일(정묘)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스스로 체득한 바가 많았다.’는 말에 이르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무릇 학문을 하는 자가 그 몸에 자득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옛말에 ‘글을 읽지 아니하였어도 이 사람이요, 이 글을 읽었어도 이 사람이다.’ 하였으니, 이는 심득(心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학문을 하는 도리는 스스로 자득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깊이 나아가기를 도(道)로써 함은 자득하기 위함이다.’ 하였으니, 배워도 그 몸에 얻는 것이 없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또 강하다가 ‘허겸(許謙)이 산중으로 자취를 감추니 학자들이 많이 따랐다.’는 대목에 이르러, 김구가 아뢰기를,

“허겸은 필부(匹夫)로서 학문을 창도(唱導)하였어도 학자들의 영종(影從)<sup>178)</sup>이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임금이 지성으로 학문을 좋아하면 사방의 선비들이 즐거이 따르지 아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근자에 유생(儒生)들이 관학(館學)<sup>179)</sup>에 취학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즐겨 취학하게 하는 방법은 상께서 학문을 좋아하는 성실과 사유(師儒)를 선택하여 임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 때때로 특별히 중사(中使)를 보내어 사생(師生)을 접대하게 함으로써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을 보이면 유생들이 거의 따라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진 스승을 얻지 못하여 유생들이 즐겨 취학하지 아니하는 데도, 이조에서는 성균관을 한가한 직책이라 하여 대부분 강등된 사람이나 늙고 병든 사람을 임명하니,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하였다.

### ◎ 1514년(중종 9) 3월 10일(계유)

석강에 나아갔다. 《송감(宋鑑)》을 강하다가 ‘원순제(元順帝)의 조서(詔書)에 「화기가 이르지 아니하여 재앙이 때때로 일어나고, 성교(聲敎)가 흠족하지 아니하여 풍속이 순박하지 못하며, 관리의 폐단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백성의 괴로움이 더욱 심하니, 승선(承宣)의 임무를 받은 자와 규핵(糾劾)하는 관서에게 봉행(奉行)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어 그러한가?」 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순제(順帝)의 이 말이 훌륭하거니와, 지금의 폐단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상의 이 말은 시사를 걱정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알면서 고치지 못하고 말하면서 실속이 없는 것은 무익(無益)과 같은 것이다. 지금의 모든 일이 이러하지 않은 것이 없다.】

---

178) 영종: 그림자처럼 붙어서 따라 다니는 것

179) 관학: 성균관과 사학(四學)



전경(典經) 김구(金絀)가 아뢰기를,

“순제는 말은 비록 훌륭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지는 못하였는데, 그 사람은 취하지 않더라도 그 말은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 1514년(중종 9) 7월 8일(기사)

홍언필(洪彦弼)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이빈(李蘋)을 홍문관 교리로, 민수원(閔壽元)을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로, 김구(金絀)를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으로, 임권(任權)을 홍문관 정자로, 심순경(沈順經)을 경상도 병마 절도사(慶尙道兵馬節度使)로, 이권(李綸)을 경상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 ◎ 1514년(중종 9) 8월 21일(신해)

이계복(李繼福)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이장생(李長生)을 우윤(右尹)으로, 연구령(延九齡)을 지평(持平)으로, 윤지형(尹止衡)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김안정(金安鼎)·민수원(閔壽元)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구(金絀)를 박사(博士)로 삼았다.

#### ◎ 1514년(중종 9) 11월 12일(경오)

조강에 나아갔다. 《예기(禮記)》를 강하다가 ‘문백(文伯)의 초상에 봉우(朋友)와 여러 신하는 곡(哭)하지 않았는데도 내인(內人)은 모두 곡을 하여 실성(失聲)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사경(司經) 김구(金絀)가 아뢰기를,

“이것은 반드시 부인에게는 후하면서도 봉우에게는 박대한 까닭으로 이같이 된 것입니다. 대저 내폐(內嬖)가 있으면 비록 선비를 예로써 대우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니, 반드시 내폐를 먼저 없앤 후에야 현사(賢士)를 성심으로써 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진이 좋아하기를 여색 좋아하듯 하라.’ 하였으며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니다. 경강(敬姜)<sup>180)</sup>은 비록 부인이지

---

180) 경강: 문백의 어머니

마는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체념(體念)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집의 윤은필·정언 이청이, 채운문(蔡允文)·유미(柳湄)·이순(李珣)·성희중(成希仲)·심정(沈貞)·남포(南褒)·심의(沈義)의 일을 논핵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이청이 아뢰기를,

“겨울 날씨가 매우 따뜻한데 남방이 더욱 심하여 초목(草木)과 잡화(雜花)가 활짝 피고 새들도 집을 지으니, 재변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풍재(風災)와 수재(水災)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무릇 송사(訟事)같은 일에서 연유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재변을 근신하는 도리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건대 경상도(慶尙道) 초계군(草溪郡)에 이명운(李明胤)이란 자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손자를 사랑하여 따로 노자(奴子)를 주었더니 이명운이 시기하여 그 노자를 때려 죽였으므로 그 어머니가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명운은 또 그 조카를 모해(謀害)하려고 고의로 자기의 종을 죽이고는, 조카가 죽인 것이라고 하면서 관청에 고발하여 죄주기를 청했으니, 이는 작은 변고(變故)가 아닌데도 감사와 수령은 전혀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어찌 재앙을 초래(招來)하여 변고가 생기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뢰기를,

“겨울이 봄날처럼 따뜻한 것은 과연 말한 바와 같다. 이명운의 일은, 풍속이 상패(傷敗)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수령과 방백이 능히 인도하여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매, 윤은필이 아뢰기를,

“경연(經筵)을 여는 것은 정치하는 방법을 헤아려 정하려는 것이고 신하의 용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입시(入侍)하는 사람은 서권(書卷)만 손에 쥐고 드나들 뿐이며 마침내 한 마디 말도 없이 물러가니, 경연의 본뜻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풍속의 폐단과 정령(政令)의 실수가 매우 많으니, 측근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였다.

◎ 1514년(중종 9) 11월 12일(경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고려사(高麗史)》를 강하다가 ‘최치원(崔致遠)을 묘정(廟庭)<sup>181)</sup>에 종사(從祀)케 하셨다.’는 말에 이르러, 김구가 아뢰기를,

“최치원은 동방 문헌(文獻)의 우두머리이므로 묘정에 종사했지마는, 그러나 도학(道學)을 정밀(精密)히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몽주(鄭夢周)같은 이는 젊을 때부터 도학에 마음을 둔 까닭으로, 일찍이 교관(敎官)이 되어 무릇 강론한 바가 뛰어나서 한 시대에서 모두 우원(迂遠)<sup>182)</sup>하다고 여겼으나, 뒤에 중국의 주해(注解)가 나오게 되자 정몽주의 말과 서로 꼭 맞았기 때문에 한 시대에서 추송(推崇)하여 문학의 종장(宗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문묘(文廟)에 종사시킨다면 동방의 문교가 또한 권려(勸勵)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1515년(중종 10) 2월 16일(갑진)

장순손을 우찬성으로, 김전을 예조판서로, 신용개를 병조판서로, 허굉(許礪)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신상(申鎭)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김안로(金安老)를 직제학으로, 이빈(李蘋)을 전한(典翰)으로, 유보(柳溥)를 응교(應敎)로, 홍언필(洪彦弼)을 부응교로, 유인숙(柳仁淑)을 수찬(修撰)으로, 채침(蔡沈)·김구(金絀)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 1515년(중종 10) 2월 22일(경술)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형조판서 강흔·병조판서 신용개·우찬성 장순손(張順孫)·이조판서 박열(朴說)·우참찬 이계맹·지중추부사 안윤덕·유담년·호조판서 고흥산·공조판서 안당·한성부 판윤 이자건·병조참판 이장생·형조참판 유미·풍창군(豊昌君) 심형(沈亨)·계림군(鷄林君) 최한홍(崔漢洪)·청양군(靑陽君) 유계종(柳繼宗)·병조 참의 김극성·판결사 윤은보(尹殷輔)·예조정랑 반석평(潘碩秤) 등이 의논드리기를,

181) 묘정: 문묘(文廟)

182) 우원: 실용에 적합하지 아니함

“신의 의견으로서는 망합이 오면 금부에 가두고, 이빈(李蘋)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으로 그 죄를 설명하고 추문한 후에 남방 외딴 섬에 거처하게 하고, 황형(黃衡)이 북도에 가서 오랑캐의 실정을 보고 온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문관 직제학 김안로 · 응교 유보 · 교리 홍언필 · 부교리 유돈 민수천(閔壽千) · 수찬 유옥 유인숙 · 부수찬 김구(金絿) · 저작 윤자임(尹自任) · 정자 임권(任權) 등은 의논드리기를,

“신 등은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오랑캐의 실정도 모르니, 이 일을 처리하는 데 타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형에 처할 수도 없으며 또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김전(金詮) · 훈련원 도정 조한손(曹漢孫) · 첨지중추부사 이윤종(李胤宗) · 우통례 서지(徐祉) 등이 의논드리기를,

“처음에 잡아온 것은 반드시 죄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지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첨지중추부사 전오륜(全五倫)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망합을 남방 외딴 섬에 두고, 그 아들은 관직을 주어 조정에서 벼슬하게 하고, 또 처자를 옮겨다가 망합과 동거(同居)하게 한다면 저들의 족류(族類)와 부락이 반드시 깊은 원한은 없을 것이며, 또 망합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교성군 노공필은 의논드리기를,

“망합의 죄를 다스리고 싶지마는, 북방의 군사와 말이 단약하며, 군량이 넉넉지 못합니다. 만일 망합을 외딴 섬에 둔다면 그 부락에서는 반드시 죽인 것이라 생각하며, 보복한다고 봉기하여 작적한다면 병란의 연속으로 화가 될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망합을 금부에 가두고 그 무례한 죄를 문책한 후에 특별히 놓아주어 대접하여 보내고, 그 아들을 불모로 삼아 조정에 벼슬하게 하여서 조종조에서 야인으로 겸사복(兼事僕)을 삼은 예와 같이 한다면, 이(利)를 탐내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반하려 하여도 반드시 경솔하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변방 우환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이적(夷狄)을 대우하는데, 작은 죄를 가지고 중한 법으로 처리함은 불가하다. 망합은 원래 사납고 거만하기로 알려졌다. 지금 궐정(闕庭)에서의 과실이 있지만 이는 인면 수심(人面獸心)인 오랑캐의 상태(狀態)이다. 마땅히 책망하여 이끄기를 ‘너에게 큰 죄가 있는 것을 회정(回程)한 후에 들었기 때문에 잡아온 것이다.’ 하고, 또 효유하여 이끄기를 ‘너의 범람됨이 매우 많다. 큰 죄로 처벌하려 하였지만 네가 오래도록 변방 울타리에 거처하면서 국가에 향한 정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된다.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고 엄한 말로 깨우치고 그 고장으로 돌려보낸다면, 저가 잡혀올 때 죽게 될 줄 알았던 만큼 어찌 은혜에 감동하여 허물을 뉘우치지 않겠는가? 아들을 볼모로 삼아 조정에 있게 하는 일은 내 생각으로는, 전에 와서 향화(向化)하였으면 모르되 지금 그들을 많이 와서 있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진씨(晉氏)의 경계이니<sup>183)</sup> 경 등은 살피 헤아리고 멀리 생각하여 다시 의논해서 처치하고 사기(事機)를 잃지 말라.”

하였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그를 구류한다면 그 부락 족속의 보복이 큰일에 이르는 않을 것이지만, 놓아 보낸다면 반드시 심처(深處)에 있는 우지개(于知介)와 합작(合作)계획해서 납치되었던 원한을 갚으려 할 것이니, 그 화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미봉(彌縫)하는 계책은 쓸 수 없습니다.”

하고, 장순손은 아뢰기를,

“지금 아들을 볼모삼아 작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합니다. 옛날 한 고조(漢高祖)도 태공(太公)을 돌아보지 않았는데<sup>184)</sup>, 망합이 어찌 아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유순은 의논드리기를,

183) 진나라처럼 될 것을 조심하라는 뜻. 진나라는 남흉노(南匈奴)의 후손인 유연(劉淵)과 파서(巴西)의 유랑민(流浪民) 이특(李特) 및 선비족(鮮卑族) 모용외(慕容廆) 등 많은 외방 사람들을 끌어들여 잘 대우하다가, 얼마 후에는 그들에게 강토와 세력을 빼앗기고 쇠망하였는데 이를 말한다. 《사략(史略)》 권3 서진기(西晉紀)

184) 한 고조가 초(楚)나라와 패권을 다툰 때, 팽성(彭城) 싸움에서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고, 한 고조의 아버지 태공도 초나라 진중에 포로가 되었다. 후에 두 나라가 광무(廣武)에서 대전할 때 초왕 항우(項羽)가 태공을 성위에 올려 놓고, 한 고조에게 ‘급히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태공을 살겠다.’ 위협하였지만, 고조가 따르지 않았다. 《사략(史略)》 권2 서진기(西晉紀)

“망합이 궐정에서 무례한 짓을 한 것은 앞서도 입조(入朝)한 야인으로 그리 한 짓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랑캐는 금수와 다름이 없어, 깊이 책망할 것이 못되므로 버려 두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망합은 그 중에서도 사납고 거만하여 무력으로 많은 무리를 거느린 자인데 마침 이신(李紳)의 말 중에 그가 의심을 품어 변경의 우환이 될까 두렵다고 하므로 조정에서 의논하는 사람을 보내어 추포(追捕)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잡아왔으나 처리할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망합의 궐정에서의 과실을 그 종족들이야 어찌 큰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망합이 잡혀갔으니 반드시 중한 죄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별로 죄상이 없는데도 조정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하니 우리들도 후일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반드시 의심하여 이반(離叛)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요, 그 중 우두머리들이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일 주창하는 자가 있으면, 오랑캐의 심정은 난을 좋아하는지라 따르는 자가 많아서 크게 변경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망합이 죽지 않고 섬 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의심을 품고 일을 일으킬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같은 배에서 풍파를 만나면 호(胡)나 월(越)이 한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비록 원래 망합과 틈이 있던 자라도 같은 배를 탄 형세에서 어찌 전날 마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망합의 부자를 의금부에 보내어 심수일을 가두어 두고 위관(委官)<sup>185)</sup>을 보내어 엄한 말로 문초하며 그의 무례한 죄를 들어 문책하고는 나중에 대국의 포용(包容)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용서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고 설유해서 놓아 보인다면, 저도 혹 감회하여 뉘우치면서 전일의 귀화(歸化)했던 마음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의 야심을 어찌 끝까지 보장하겠습니까? 이 역시 부득이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아서 변방 근심이 되게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혹은 망합을 놓아보내고 그 아들을 머물러 조정에 두어 질자(質子)로 삼으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불모라는 것은 모두 화호(和好)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잡혀 갇혔는데, 그 아들이 어찌 안심하고 조정에 있겠습니까? 혹시 도망이라도 가서 다시 말썽을 일으키면 끝내는 후일의 우환이 될 것이니, 이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었는데, 송일(宋軼) · 손중돈(孫仲墩) · 김근사(金謹思) · 방유령(方有零) ·

---

185) 위관: 죄인을 심문하는 대신

조원기(趙元紀) · 이항(李抗) · 허굉(許鞏)의 의논은 유순과 같았다. 대사헌 권민수 · 대사간 경세창(慶世昌) · 사간 이행 · 집의 허지 · 장령 권희맹 · 지평 윤인경, 김공망 · 헌납 최중연 · 정언 김인손, 민수원 등이 아뢰기를,

“망합의 무례한 일은 관(館)에 있을 때에 처치하였다면 반드시 좋은 제책이 있었을 것인데, 돌아간 뒤에서야 혹은 치죄(治罪)하자 하고, 혹은 내버려두자 하여서 의논이 정해지지 않아 버려두고 있다가 이신의 말을 들은 후에야 잡아왔으니, 이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무릇 일이란 처음을 바르게 한 후에야 나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이는 것도 바르지 못하고, 외딴 섬으로 귀양보내는 것도 바르지 못하고 또 다시 본토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대저 나라의 큰일을 수상(首相)된 자가 알지 못하니, 대신이 큰일을 맡아하면서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초4일 · 6일 · 8일 · 10일의 의논에 모두 영의정에게 묻지 않았으므로 한 말이다.】 이렇게 하여 틀려지게 된 후에야 신 등으로 의논하게 하시니, 신 등이 감히 그 시비를 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고, 선온(宣醺)하라 명하였다. 정광필 · 김응기 등이 또 검직(檢職) · 수신전(守信田) 일을 의논하고 아뢰기를,

“이것이 모두 조종조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수신전은 더욱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아내로서 누가 신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또 조종조의 옛법을 가볍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유순은 의논드리기를,

“국초 이래로, 벼슬길에 나와 노년에 이르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검직을 제수함이 국전(國典)에 실려 있습니다. 세조조에서 관제를 고칠 때에 의논하기를 검직은 혼 제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한 대의 일을 가지고 반드시 법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제수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수하여, 늙은 선비를 대우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다. 수신전은 조정 선비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 공급받을 데가 없는 자가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치하여 절의를 기름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종친과 조사(朝士)가 모두 직전(職田)으로 생활하는데, 수신전을 복설(復設)하면 경기(京畿)의 국용(國用)이 혹시 부족될까 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1515년(중종 10) 윤4월 23일(경진)

부수찬(副修撰) 김구가 아뢰기를,

“소신이 지금 독서당(讀書堂)에 있는데, 사헌부가 상소하기를 ‘마음대로 출입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본래 독서(讀書)에 능하지 못하고 또 출입하는 일이 많으므로 미안하여 피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해조(該曹)에 문의하겠다.”

하였다.

◎ 1515년(중종 10) 윤4월 23일(경진)

직제학(直提學) 김안로가 아뢰기를,

“독서당의 관원이 이처럼 사헌부의 논핵을 받았는데, 소신(小臣)은 본래 재능이 없고 나이도 들어 병이 있는데도 또한 독서당 관원의 열(列)에 참여하였으니, 피험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가 지적하여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피험하는가? 마땅히 해사(該司)에 문의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안로 · 신광한 · 김구 등이 혹은 ‘독서를 잘 하지 못한다.’ 하고, 혹은 ‘나이가 많고 병이 있다.’ 하면서 모두 피험하니, 체임(遞任) 여부를 해사로 하여금 대제학에게 문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1515년(중종 10) 윤4월 24일(신사)

예조좌랑 최호가 와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독서당 관원 김안로 · 신광한 · 김구 등의 체임(遞任) 여부를 대제학과 이조

에 수의하였더니, 모두 ‘전에는 독서당의 관원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수(數)가 적으며, 또 신광한 등은 모두 독서당에 적합한 사람들이니 체임해서 는 안 된다.’고 합니다.”

◎ 1515년(중종 10) 5월 5일(신묘)

이조·예조·대제학 등이 같이 의논하여 문신 김안로·김정·소세양·유옥·유돈·정사룡·신광한·표빙·박세희·김구·윤계·황효현·정응·손수·유성춘·기준 등에게 사가 독서(賜暇讀書) 할 것을 초계(抄啓)하였다.

◎ 1515년(중종 10) 5월 20일(병오)

예조판서와 대제학이 같이 의논하여 사가 독서에 합당한 문신(文身)으로 소세양·정사룡·신광한·박세희·김구·황효현·정응을 고쳐 뽑았다.

◎ 1515년(중종 10) 5월 27일(계축)

김국픽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영을 사헌부 장령으로, 홍언필을 홍문관 응교로, 유돈을 사간원 헌납으로, 표빙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구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 1515년(중종 10) 6월 6일(신유)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조의 대소원인(大小員人) 밑의 급양민(及良民) 세 자를 깎아 버린 것의 좋고 나쁨을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김전·이계맹·유담년·한형운·유미·정광국·서극철이 의논드리기를,

“성종조에 《대전(大典)》을 경정(更定)할 때에 급양민(及良民) 세 자를 넣어서 기록하여 반강(頒降)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또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급양민 세 자를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깎아버렸습니다. 그때의 의논이 매우 상세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신용개·박열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의 법은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상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빼고 보태어서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폐해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말류(末流)를 장차 무엇으로 구제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양인(良人)되는 길이 매우 좁습니다. 천인(賤人)<sup>186)</sup>이 양민에게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낳은 자식을 모두 천인으로 삼으니,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군액(軍額)이 모자라고 줄어드는 것은<sup>187)</sup>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인이 공사천(公私賤)에 장가들어 낳은 자식이, 대소 관원(大小官員)의 첩의 소생으로 면천(免賤)하는 자와 그 높고 낮은 신분이 무엇이 그다지 동떨어지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구애되어 그들에게 양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급양민세 자를 옛 조문에 첨가 기록하여 양인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율문(律文)에는 양천(良賤)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이 법을 주로 하는 것은, 그 노(奴)로 하여금 양녀(良女)에게 장가들게 하여 그 소생을 점유(占有)해서 자기에게 소속(所屬)되게 하려는 것이니, 양인이 줄어드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인 것으로, 다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율문을 밝혀서 쌓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였다. 안당 · 고흥산 · 성몽정 · 심정 · 이장곤 · 이장생 · 이세응 · 이택 · 이빈 · 유인숙 · 김구 · 윤자임 · 기준 등의 의논은 신용개 등의 의논과 같고, 권균 · 장순손 · 조원기 · 홍언필 · 이언호 · 임추 · 민수천 · 이청 · 임권 등의 의논은 유순 등의 의논과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 ◎ 1515년(중종 10) 8월 22일(병자)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 · 부응교(副應敎) 이언호 · 교리 임추 · 부교리 유인숙과 신광한 · 수찬 이청 · 부수찬 김구 · 저작 임권 · 정자 정응과 기준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은 이러하다.

186) 천인: 공천(公賤)과 사천

187) 노비는 병역 의무가 없고 오직 양민에게만 병역 의무가 있는데, 양민이 천민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을 모두 노비로 삼으니, 양민의 수가 줄고 노비의 수는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군액, 즉 군인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삼가 생각하건데, 박상·김정 등은 망령되이 그릇된 의논을 내어 경솔히 국가의 중한 일을 의논하였으니, 죄가 실로 큼니다. 대간이 종묘 사직의 후 일을 염려하여 망언한 죄를 다스리자고 청한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전하께서도 그 잘못을 환히 아시고, 그 죄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시니, 이는 종묘 사직의 복입니다. 다만, 소(疏)를 올린 것이 곧 구언(求言)으로 인하여서이니, 말한 바가 비록 그릇되고 망령되기가 이와 같더라도 애써 너그럽게 용서하여, 언로(言路)를 넓히고 사기(士氣)를 기르는 것은 이때가 그 기회입니다. 국가가 폐조(廢朝)를 겪음으로부터 사기가 저상(沮喪)하여 말하는 것을 꺼리므로, 전하께서 부지런히 간절하게 달래어 권장하시어도 퇴미(頹靡)<sup>188)</sup>한 기운이 아직 조금도 회복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소를 올림으로 인하여 잘못된 말을 골라내어 전지를 내려 국문하고 죄책을 주려고 하시니, 사류(士類)들이 마음을 빼앗겨 서로 돌아보며 두려워합니다. 신 등은 퇴미한 기운이 장차 전일보다 더 심하여지고, 이에 따라 언로가 막힐까 염려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망령된 의논에 동요되지 않고 종묘 사직의 계교를 정하셨으니, 또 망령되이 말한 죄를 용서하시어 사기를 기르고 언로를 여는 것도 또한 종묘 사직의 계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기회를 잃지마소서.”

【사신은 논한다. 김근사의 음험한 것과 이현호의 좁은 것, 임추의 어두운 것과 신광한·이청의 겁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인숙·김구·임권·정응·기준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찌 시비를 밝게 분별하지 않고 양시양비(兩是兩非)의 꼬투리를 열어서, 조정으로 하여금 분요(紛擾)하여 오래도록 안정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 ◎ 1515년(중종 10) 9월 25일(무신)

대간이 안당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수찬 김구가 정원(政院)에 왔을 적에 이조좌랑(吏曹佐郎) 민수원이 말하기를 ‘대간이 안당을 논박하기는 하나 안당에게 어찌 참으로 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니, 김구는 무연(憮然)히 말하기를 ‘참으로 재상의 체모에 맞는다.’ 하고, 이홍간은 칭탄하여 마지 않았다.】

188) 퇴미: 무너져 흐트러지다

◎ 1515년(중종 10) 10월 4일(정사)

이계맹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자건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성몽정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송천희를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이빈을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으로, 최명창을 응교(應敎)로, 김구를 수찬(修撰)으로, 윤지형·박세희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성몽정의 사람됨은 성품이 본디 명민(明敏)하고 용모가 단중(端重)하여 상이 쓸 만한 재기(才器)로 여기더니, 이때에 이르러 특별히 명하여 품계(品階)를 높여 주었는데 몽정이 검약(儉約)하지 않고서 스스로 화사(華奢)를 숭상하고 주색을 즐기고 유연(遊宴)을 좋아하였으므로, 자못 사림(士林)의 여망을 잃었다.】

【사신은 논한다. 최명창의 사람됨은 성품이 곧고, 평소애 청렴하였다.】

◎ 1516년(중종 11) 6월 19일(기사)

의정부·이조·예조·성균관이 함께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합당한 인원으로서 정수강·방유령·최숙생·김세필·이행·김안국·김안로·김굉·신공제·윤탁·이위·조방언·김양진·유보·허지·문근·송흙·한효원·이언호·공서린·신봉전·정순봉·홍언필·소세양·이원화·권수익·이수·이겸·민수천·한충·최호·황사우·문서귀·표빙·조광조·이득전·김진조·박우·김환·김구·황효헌·안중손·조유형·배익신·김유·서후·진식·유돈·이순·이자·박상·김정을 간택(揀擇)하여 아뢰었다.

【사신은 논한다. 권수익·이수·이겸·조유형·김환은 다 학식에 어두운데도 사유의 간택에 끼었으므로, 시의(時議)가 비방하였다.】

◎ 1516년(중종 11) 9월 3일(신사)

이계맹을 호조 판서로, 안구를 사간으로, 유보·김구를 홍문관 부교리로, 남세준을 지평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유보(溥)는 편협하고 도량이 없었다. 주계군 심원(朱溪君深源)에게 글을 배웠으나, 입으로 읽는 것만 알았지 그의 사람됨은 배우지 못했다. 김구는 학문에 확고한 힘이 있고 일을 당해서는 강개(慷慨)하였다.】

◎ 1517년(중종 12) 2월 25일(신미)

이계맹을 좌참찬으로, 홍숙을 우참찬으로, 안당을 공조판서로, 윤금손을 형조판서로, 최명창을 홍문관 응교로, 김구를 수찬으로 삼았다.

◎ 1517년(중종 12) 3월 6일(신사)

조강에 나아갔다. 《예기》를 진강했는데, 검토했던 김구가 아뢰기를,

“이 때문에 ‘유(儒)는 착한 말을 들으면 서로 고해주고, 착한 일을 보면 서로 보여준다.’ 하였는데, 대개 벗들 사이에 하는 도리입니다. 후세에는 벗의 도리가 없어져 어찌다 하나라도 착한 사람끼리 벗이 되어 서로 선으로써 규계(規戒)하면 소인들이 반드시 모험하여 해치며 당이라고 지목하였으니, 동한(東漢) 때 유림의 화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뒤부터 군자를 해치려는 소인들이 모두 그런 이름을 내세우는데, 혼암한 임금들이 살피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말을 믿어서 마침내 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나라 도 벗의 도리가 없어진 지 오래니, 다시 지치(至治)를 실현하려면 벗의 도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데, 일으키는 근본이 오직 성상께 달렸습니다. 학술이 정대하고 식견이 밝은 대현(大賢)인 선비가 있다면, 신하의 예로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도의를 강마하며 착한 도리로 서로 보인다면, 또한 벗의 도리가 있게 되어 아래서 자연히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장령 공서린·현납 이청이, 정난 공신 노영손·홍숙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1517년(중종 12) 3월 25일(경자)

석강에 나아갔다. 《대학연의》를 진강하였는데, 검토했던 김구가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진 헌공(晉獻公)은 폐희(嬖姬)에게 빠져서 부자간의 큰 변을 당했습니다.<sup>189)</sup> 만에 하나라도 핏박는 궁녀가 서로 핏박할 사세가 있게 되면, 임금이 모름지기

189) 춘추 시대 진나라 19대 임금. 자는 궤제(詭諸). 제강과 간음(姦淫)하여 태자 신생을 낳고, 용(戎)의 두 여인을 맞아 중이 밋 이오를 낳고, 또 여희를 얻어 해제를 낳았는데, 여희가 총애받자, 제 아들을 세우려고 태자 신생을 죽이고, 중이와 이오를 추방한 다음, 순식을 시켜 해제에게 전위(轉位)하도록 하였다. 이에 신생·중이·이오 3인을 앞세운 대부 이극의 손에 해제와 순식이 죽는 일이 생겼다. 《사기(史記)》 권39.

먼저 그 조짐을 살피어 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적서(嫡庶)의 구분이 분명하고 꾀는 궁녀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시독관 조광조는 아뢰기를,

“보통 사람의 감정은 한편에 치우쳐, 사랑함과 미워함이 떼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소하는 말이 쉽사리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여희가 임금 자리를 해제에게 전하게 하려고 참소하기를 ‘종읍(宗邑)<sup>190</sup>에 주장이 없으면 백성에게 위엄을 보이지 못하고, 강장(疆場)<sup>191</sup>에 주장이 없으면 경계하는 마음이 풀리게 되는 법이니, 만일 태자(太子)로 곡옥(曲沃)을 맡게 하고 중이와 이오로 포(蒲)와 굴(屈)을 맡아보도록 한다면, 백성에게 위엄도 보이고 용(戎)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옳은 듯하나 실지는 배척하여 제거하려 한 것이니, 중이를 곡옥으로 내보낸 것이 어찌 현공의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태자는 나라의 저이(儲貳)<sup>192</sup>인데, 어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현공은 용렬한 임금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중등 재질인 임금이라 하더라도 참소하여 이간하는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대저 부수(膚受)·침윤(浸潤)<sup>193</sup>의 하소연이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신이 이 일을 보건대, 궐내(闕內)에서 임금에게 총애받는 궁녀가 반드시 외부의 소인과 내통하여 함께 모의한 것이니, 이극(里克)의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저 국가가 정승을 둘 때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모두 어진이 를 구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어진이란 구득하여 정승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꾀 받는 궁녀 따위의 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대신 중에 어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선류(善類)에게 전심(傳心)하지 못한다면 중용(中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호광(胡廣)의 중용<sup>194</sup>은 시속(時俗)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성실한 마음으로 임금을

190) 종읍: 종묘(宗廟)가 있는 땅. 또는 선조의 땅

191) 강장: 국경 또는 변방

192) 저이: 왕세자의 별칭

193) 침윤: 부수는 부수지소(膚受之愆)의 약어. 곧 살을 찌르는 듯이 통절한 하소연. 일설에는 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끼듯, 점차로 남을 참소하는 것. 침윤(浸潤)은 침윤지참(浸潤之讖)의 약어. 곧 차차 찾아들어 번지듯 조금씩 오래 두고 하는 참소.

194) 호광의 중용: 후한(後漢)때 사람으로, 자(子)가 백시(伯始)이다. 안제(安帝) 때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여러 대를 거치면서 태부(太傅)에 올랐다. 호광은 사체(事體)를 잘 알아 법에 밝았다. 비록 강직한 풍도는 없었으나 자주 보궐(補闕)하였으므로 경사(京師)의 말에 “해결 안 되는 일은 백시에게 물어라. 천하의 중용(中庸)은 호광이 가졌다.” 하였다. 뒤에는 중상시(中常侍) 정숙의 집안과 혼인하였으므로 세속에서 기롱하였다.



섬기지 못하면 마침내 필연코 해가 되고 마는 법입니다. 지금의 대신 중에 중립(中立)하는 사람들은 앞날에 반드시 국사(國事)를 그르칠 것이니, 비록 부모와 임금을 시해(弑害)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해가 많을 것입니다. 부자의 사이는 남이 말하기 어려운 바이지만 참소한 말은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법이니, 성상께서 궁중(宮中)에 계실 때 마땅히 더욱 계신(戒愼)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 1517년(중종 12) 4월 27일(임신)

홍문관이 아뢰기를,

“《대학》을 진강할 때는 시강(侍講)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용을 탐구하고 정미(精微)한 이치를 다 안 사람이어야만이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될 것이니, 직제학 이자·응교 김정·교리 조광조·수찬 김구로 번갈아 진강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 1517년(중종 12) 6월 28일(임신)

병조판서 고흥산 등이 정청(政廳)에서 아뢰기를,

“만포(滿浦)는 곧 심처 야인(深處野人)이 왕래하는 곳이라 그들의 정황을 탐문하는 일이 더욱 중한데, 근자에 탐문한 사변(事變)을 상세히 계문(啓聞)하지 못한 것은 필시 식견과 문장이 짧은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극균이 이 소임을 맡아본 일이 있었으니, 이제 문신(文臣) 가운데 재간(才幹)이 있어 감당할 만한 자를 자급(資級)을 따지지 않고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매, 곧 최세절·반석평·유옥을 의망하니 최세절에 낙점(落點)하고 ‘초삼자(超三資)<sup>195)</sup>’라고 어서(御書)하였다. 서성군 이미(瑞城君李唎)를 복성군(福城君)으로 고치고 강훈을 공조판서로, 이우를 사헌부 지평으로, 윤자임을 홍문관 교리로, 김구를 수찬으로, 정응을 박사(博士)로, 손수를 저작(著作)으로, 박윤경을 정자(正字)로 삼았다.

195) 초삼자: 3자급을 초승(超陞)함

◎ 1517년(중종 12) 7월 8일(임오)

윤자임 · 김구를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 1517년(중종 12) 7월 22일(병신)

부제학 이자(李紆) 등이 상차(上劄)하기를,

“엎드려 보옵건데, 전하께서는 그 뜻을 훌륭한 정치에 두시고 매양 제왕(帝王)을 흠모하시며, 개연(慨然)히 점차 고도(古道)를 회복하고 계시옵니다. 친영례(親迎禮)는 오랫동안 폐지되어 있던 것을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시고 행하기를 서슴지 않으시니 일국 신민은 삼대(三代)의 정례(正禮)를 보고서 감격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삼대의 다스림이 이로부터 회복될 것 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대례(大禮)를 행하심에 있어 이미 그 시작을 바로하시었으니 모름지기 그 뒤를 잘 도모하여 더욱 뜻을 신중하게 하시며 또 십분 지선(至善)을 다하시어 종사(宗寺) 만세의 터전을 튼튼히 하시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털끝만큼이라도 간특한 일이 그 사이에 자라나서 다른 날 국가의 끝없는 화란(禍亂)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소서.

이제 윤순(尹珣)의 처 구씨(具氏)는 본래 음사(陰邪)하고 간특한 자질로서 그가 요사하게 꾸미어 남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모양은 실로 창기(娼妓)보다도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는 또 재술(才術)이 능하여 족히 간사한 짓과 참소를 꾸미며 또 화란을 일으킬 만하므로, 사람들은 그를 모두 요물(妖物)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 향당(鄉黨)에서도 그를 가까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윤순(尹珣) 또한 일개 시정(市井)의 거간군으로서 본래 사특하고 탐심이 있는 데다가 망령되고 사납기까지 하여 선류(善類)를 자못 원수와 같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는 지난번 폐조(廢朝) 때에 말 잘하고 아침 잘하는 것으로써 총애를 얻어 몇 달 사이에 승품(崇品)에까지 올랐고, 그의 처가 또한 궁중에 출입하면서 특별히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의기가 양양하게 된 그는 아무 짓이나 꺼리는 일이 없게 되매, 더럽고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서 견잡을 수 없는 추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귀가 있으면 다 듣고 입이 있으면 모두 말하는데, 윤순이 어찌 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정국(靖國)한 뒤에 여전히 부부가 되어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뻔뻔스러우므로, 길거

리의 아이들까지도 그를 보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나 대하듯 그를 타기하며 그와 함께 어울리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구씨(具氏)도 더욱 방자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몹시 미워하여, 그의 사특한 죄를 드러내어 사람의 도리를 바로잡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물론(物論)이 오래 울결(鬱結)했던 나머지 조만간 터지고자 할 즈음에 마침 그의 족친이 중궁으로 들어오시게 되니 사람들은 모두 어진 국모(國母) 얻은 것을 기뻐하였으나, 다만 간음(奸淫)하고 부정(不正)한 자가 친척 중에 있는 것을 크나큰 불행으로 여겨서 정위(正位)하시는 날 아주 끊어 버려 정시(正始)의 근원을 맑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은 오늘 이처럼 논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전교하시기를 ‘이 일이 지금에야 발설된 까닭을 모르겠다.’ 하시니, 신 등은 성의(聖意)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정위(正位)하시는 첫머리에 감자기 예청(睿聽)<sup>196)</sup>을 어지럽히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급(汲汲)하게 진열(陣列)하는 것은 진실로 종사(宗社)의 화복(禍福)과安危(安危)의 기틀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 이 기틀을 한 번 잃어버리면 지혜가 있더라도 뒷일을 잘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군자는 그 처음을 신중히 한다.’ 하였으니, 이는 그 기초를 바로하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께서는 일을 발단(發端)하는 처음이시니, 마땅히 사특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궁궐을 깨끗이 숙청(肅淸)하시어, 자손 만세에 경사와 복록을 누릴 터전을 만드셔야 합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궤히 중론을 따르시고 시원히 용단을 내리시어 윤순(尹珣)의 조적(朝籍)을 삭탈하고 구씨를 교외(郊外)로 물리치시어 그들이 통교하는 길을 영구히 끊어 놓게 하소서. 밝은 사람은, 죄악이 싹트기 전에 끊고 화기(禍機)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척속(戚屬)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가까운 것도 아니요 또 전하의 성명(聖明)이 환히 비추시니, 스스로 궁중에 드나들며 그 술책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험하고 사특한 무리는 기변(機變)<sup>197)</sup>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진실로 그를 끊어

196) 예청: 임금의 들으심

197) 기변: 임기응변하는 책략

멀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회를 살피 연줄을 만들거나 점점 빠져들게 하는 참언이나 그리고 살을 에는 듯한 호소 등등 백 가지 교묘한 술책을 부리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저 인정이란 점점 그 속으로 빠져들어 가도 스스로는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끊어 버리려면 그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은 소인(小人)에게 대하여 그에게 비록 명백히 드러난 죄악이 없다 해도, 진실로 그 속마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를 사이(四夷) 가운데로 보내어 이매(魑魅)를 방어하게<sup>198)</sup>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라에 재난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렵고, 또 그가 스스로 재난에 빠지게 될 것이 애처롭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가 있을 곳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윤순>을 밖으로 내쫓는다면 다른 날 화란(禍亂)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외척들 역시 온전하게 보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란이 일어난 뒤에 대책을 세운다면 나라가 패하고 제 몸은 죽어서 둘 다 보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여기에 보는 것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 걱정한 끝에 때맞추어 통절히 논계하면서, 전하께서는 그를 깊이 미워하시며 신 등의 말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어, 옛날 사이(四夷) 가운데로 보내어 이매(魑魅)를 방어하였듯이, 곧 출척하라는 명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즐거이 따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듣기를 싫어하시고 또 신 등의 말을 꺼리시는 뜻이 교명(敎命) 가운데 보이며, 왕래하는 동안에 곡진하게 감싸 주시는 등 도무지 끊어 버리고자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이 무리들의 사악한 술책이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니, 전하께서 스스로 화란의 조짐을 만드시면서도 깨닫지 못 하시는가 두렵습니다.

또 하교하시기를 ‘불가불 죄를 만들어 멀리 쫓아 버려야 하겠는데, 죄를 만들자면 또 반드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 봐야겠다.’ 하시고 한편으로는 율문(律文)을 이끌어 언론(言論)을 저지하시었습니다. 이는 매우 편협하고 비루한 일이시니, 역대 제왕(帝王)이 확연 대공(廓然大公)한 도량으로 간사한 무리들을 내쫓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일입니다. 옛날, 사이로 보내어 이매를

198) 사이는 중국 변방에 있는 네 오랑캐, 곧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 본문에 ‘사이 가운데로 보낸다.’ 함은 《대학(大學)》 제10장의 “어진 사람이라야 악한 사람을 몰아내어 사이 가운데로 물리쳐서 중국에서 함께 살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인용된 것으로, 어진 사람이라야 모든 일을 지공 무사(至公無私)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매’는 도깨비란 말이며, 악한 사람이 뒷날 도깨비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다.

막게 한 사람들 어찌 반드시 올문에 대조하여 이의(異議)를 말할 여지가 없게 만든 뒤에야 그 사람을 멀리 보내겠습니까?

대저 은미(隱微)한 술책이란 신문해서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정상(情狀)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요, 그 정상을 안다면 물리치기를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을 알고서도 물리치지 않다가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 사형(死刑)을 받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를 다스린다면 이때는 이미 구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은 중간에서 명을 출납하는 일이 부실하게 되거나 앓을까 두렵기 때문에 어저께 청대(請對)하여 뵈고 남김없이 극론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못 들으신 체 돌아보지 않으시고 대답도 하지 않으시며 또 싫어하고 꺼리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시니, 신 등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교하시기를 ‘자전께 여쭙었더니 이런 일이 없다고 하신다.’ 하시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은 지극히 더러운 것이어서 말하기가 매우 추잡한 것인데 어찌 임금께서 자전께 여쭙어 보신 뒤에 증거를 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전의 한 마디 말씀으로 온 나라 사망의 입을 다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때에 자전께서는 멀리 경복궁(景福宮)에서 기거를 하시었으니, 혼황(昏荒)한 모양을 살살이 아시기는 참으로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대저 한집안에서도 여러 자식들의 은밀하고 사투한 일을 친형제로서도 다 듣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친하고 밀접한 사이에는 남이 말하기를 어렵게 여겨서인데 하물며 지극히 높고 은밀하신 자리라 누가 감히 음란한 일을 자전(慈殿)앞에 고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전께서 듣지 못하신 것은 전하께서 듣지 못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과는 서로 붙어 있다시피되어 있어, 폐주(廢主)의 혼광(昏狂)이 극도에 달하여 도무지 절도가 없었을 때에는 잠깐 동안에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어디로 갔는지 향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추문이 어찌 까닭없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여희(麗姬)<sup>199)</sup>의 야반참소(夜半譖訴)를 사관(史官)이 기록하였으니 여러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추문이 퍼지매 대신도 이미 아뢰었으니 성감(聖鑑)이 밝게 비치시어 의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필코 자전의 말씀으로 증거를

199) 여희: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진(晉)나라 여융의 딸. 진현공이 여융을 칠 때 잡혀가서 현공의 비가 되었는데, 뒤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세우고자 하여 여러 공자(公子)들을 참소하였고, 또 태자 신생을 참살(譖殺)하기도 하였다. 《좌전(左傳)》 장공(莊公) 28년.

삼으시며 여러 가지로 곡진하게 비호하시니 사뭇 말과 간사한 참소가 궁중에 출입하면서 몰래 들어가 그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두렵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평소애 신 등과 조용히 역대 치란 흥망(治亂興亡)의 자취 및 소인(小人)·외척(外戚)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일을 강론하실 때에는, 미상불 탄식하고 분격하게 여기시며 그 임금이 일찍 조처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신 등이 물러나와서는 늘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이러하시니 뒷날 비록 소인·외척의 간사한 자가 있다 해도 조정에 걱정이 없겠다.’ 하였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진실로 괴이한 일입니다. 오늘 일로 보건대 전하의 심지(心志)가 달라지시고 저들의 음사(淫邪)한 근성이 이미 궁중에 뿌리를 박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앞뒤의 상반(相反)됨이 어찌 이리 심하십니까?

전하께서 왕비를 들이신 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외척붙이에게 사정(私情)을 두고 비호하기를 힘쓰시어 종사(宗社)를 위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정론(正論)을 막아 버리시니 이처럼 폐단이 시작되다가가는 그 윤편(論)에 한심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전하의 덕행(德行)이 후손(虧損)되는 것은 주로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인데, 이것이 점점 심하여 마침내는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니 아픈 마음을 가눌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4월 자전께서 이어(移御)하신 뒤로부터는 오랫동안 경연을 폐하시고 군신(群臣)을 접견하지 않으시며 날로 환궁 궁첩(宦宮宮妾)들만 가까이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변 좋고 간사하며 아침 잘하는 무리들이 모두 나아와서 성심(聖心)을 고혹(蠱惑)케 하니, 오늘날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으로써 전하께서 전일에 학문을 좋아하신 것도 단지 허위(虛僞)뿐이요 속은 실상 그러하지 않으신 것을 알겠습니다. 전하께서 처음에야 어찌 거짓으로 하려 하시었겠습니까? 이치를 보는 것이 밝지 않음에 따라 호오(好惡)가 바르지 못하므로 간알(干謁)<sup>200)</sup>이 들어오고 사은(私恩)이 개재하여 더럽고 사특(私酷)하기가 이와 같은데도 그 악(惡)을 모르시니, 하늘이 종사(宗社)를 돌보지 않으시어 전하로 하여금 미혹한 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깨닫지 못하시는 때가 곧 국가의 화란(禍亂)이

200) 간알: 높은이에게 사사로운 일을 청하는 일



썩트는 날이기도 하니,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관 달식(高觀達識)이 있는 선비치고 누군들 관복(官服)을 벗어던지고 아주가 버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렇다 할 치적(治績)이 없이 국사(國事)가 날로 미미해가며, 현사(賢邪)가 섞이고 시비(是非)가 뒤바뀌어, 조정에는 흠어질 조짐이 있고 외방에는 공고한 형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심을 격양(激揚)하고 광구(匡救)할 계책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화란의 씨를 심어 이를 배양하시니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근년 이래로는 천재(天災)와 물괴(物怪)<sup>201)</sup>, 일월(日月)과 성신(星辰), 수한(水旱)·상박(霜雹)<sup>202)</sup>, 그리고 닭과 벌레들의 재앙이 거듭거듭 나타나니, 이는 모두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쇠미한 징후(徵候)입니다. 하늘에서 징후를 내려 보낼 때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황공하고 두려워하며 깊이깊이 살피고 생각하여,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명쾌한 단안(斷案)을 내리시어, 사사로운 정분(情分)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어 구씨(具氏)를 교외(郊外)로 내쫓으시고, 윤순의 조적(朝籍)을 삭탈하여 조정이 숙청(肅淸)되고 국조(國祚)가 오래가게 하시면 이보다 큰 다행(多幸)이 없겠습니다.”【부제학 이자·전한 김정·교리 윤자임·이청 조광조 김구·부수찬 기준·박사(博士) 정응·정자(正字) 박윤경, 안처순 등이 올린 것인데, 기준이 초(草)하고 김준이 교정하고 김구가 글을 썼다.】

하였다.

## ◎ 1517년(중종 12) 7월 27일(경자)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김구가 아뢰기를,

“친영(親迎)은 근고(近古)에 없었던 성례(盛禮)로 이미 행하셨으니, 묘현(廟見)을 어찌 행할 수 없겠습니까? 묘현 한 뒤에야 성례라고 이를 수 있으므로 홍문관이 부득이 아뢰는 것입니다. 신 등은 처음에 조정이 반드시 당초에 마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라 여겨, 행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었더니,

201) 물괴: 괴이한 현상

202) 상박: 서리와 우박



어찌 이렇게 반대할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대신이 이제 또한 여기에 있으니 무슨 마음으로 의논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고례를 행하려 한 임금에 있었는데 부형(父兄)과 백관(百官)들이 행하려 않은 것은, 대개 인심이 옛날의 올바른 예를 오회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행할 만한 예는 위에서 단연코 행하여야 하며, 미진한 의논은 다시 의논하게 하여 마땅함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신용개는 아뢰기를,

“친영한 뒤에 반드시 묘현 해야 한다는 것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은 고금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예문(禮文)의 절차는 고금이 다른 것이니 반드시 모두 같게 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사간 최명창은 아뢰기를,

“정(情)으로 말한다면, 구고(舅姑)가 생존하여 계실 적에는 신부된 이가 마땅히 알현(謁見)하여야 하고, 비록 생존하여 계시지 않더라도 또한 묘당에 나아가 알현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이 섬기 듯하고 없는 이 섬기기를 있는 이 섬기 듯 한다는 뜻입니다. 예(禮)로 말한다면, 3개월 이전에 반마(反馬)<sup>203</sup>하지 않은 것은 대개 사당에 알현하지 않으면 부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니, 그 예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용개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고금의 마땅함이 달라서 절차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처음 의논이 달랐던 것인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또 이와 같으니 다시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을 살펴보건대, 친영하지 않고도 또한 묘현(廟見)한 일이 있으니 그 서로 관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이 묘정(廟庭)에 알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오례의(五禮儀)》에도 또한 이 예를 신지 않았으며, 이미 대신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

---

203) 반마: 신랑집에서 신부가 타고 온 말을 돌려보내는 것인데, 신부가 시집 온 지 3개월 만에 사당에 알현하고서, 부부의 정이 도타와져서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 1517년(중종 12) 7월 30일(계묘)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김구가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는 그 유래가 오랜 것으로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구차한 일이 많이 이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만일 지치(至治)를 구하려면 곧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고, 사경(司經) 정응은 아뢰기를,

“내수사는 비록 선왕조(先王朝) 때에 창립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폐단이 더욱 심하니, 모름지기 이를 혁파한 연후에야 민심이 화복하고 태평해질 것입니다. 그 근본은 바꾸지 않고 끝만을 다스리려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자손이 만약 혁파하지 않으면, 이는 선왕의 실덕(失德)을 무겁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모(貽模)<sup>204</sup>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잘 다스리려 한다면 먼저 이를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고, 영사 신용개는 아뢰기를,

“내수사는 선왕조에서 설치하여 오래되었으므로 곧바로 혁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단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전후 논하는 자가 많은데도, 선왕조의 구사(久事)이므로 혁파할 수 없다 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실로 옳지 않습니다. 대저 선왕의 선도(善道)는 으레 준수하여 잃지 말아야 하고 조금도 동요시켜서는 안 되나 이같은 일은 부득이 없어야 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겸병(兼并)이 정치를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지금 겸병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저 한전(限田)은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전조(前朝)에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논의가 한결같지 않아서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도 시행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시행한다면 거의 옳을 것입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만일 다스림을 이루려면 한전을 불가불 해야 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이행은 아뢰기를,

---

204) 이모: 선조가 후손을 위하여 남겨준 계책

“한전은 용이하게 할 수 없으니 먼저 검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한전 한 연후에야 검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검병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중용히(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함) 상의하여 점차로 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응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의 고제(古制)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속론(俗論)에 구애되어 능히 결단하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정전(井田)은 비록 할 수 없으나 백성의 명전(名田)을 제한하는 것은 으레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신용개가 아뢰기를,

“지난번 봉천상이 상소(上疏)하자 명하여 서용(叙用)하였는데, 대저 말을 진달한 사람을 위에서 채택하여 곧 관작(官爵)에 서용하면 다른 이를 권장시킬 수 있으니 이는 진실로 좋은 일입니다. 단지 신의 뜻은 상소만 가지고 서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인물을 보고서 써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정응은 아뢰기를,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후세에 과거(科擧)를 설치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과목(科目)은 비록 없앨 수 없으나 과목 외에 따로 효렴과(孝廉科)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송(宋)나라는 10과로 선비를 뽑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이 할 수 없으니 문장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덕행이 넉넉한 사람은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게 하면 쓸 만한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장령(掌令) 정순봉은 아뢰기를,

“듣건대, 방외(方外)에 유일(遺逸)<sup>205)</sup>의 선비가 많다 하는데, 곧 과제(科第)를 취택하여 스스로 파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따로 과제(科制)를 세울 수는 없지만 중외(中外)로 하여금 많이 천거하게 하여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

205) 유일: 은둔하여 있는 사람

“식년(式年)의 정액(定額)이 비록 많은 것 같으나, 혹 수령(守令)과 교수(敎授)가 될 자는 있되 요직에 쓸 만한 사람은 참으로 적으니, 모름지기 천거하는 길을 넓혀서 사람 쓰는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과거는 없을 수 없으니 따로 기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순봉은 아뢰기를,

“효제(孝悌)하고 방정(方正)한 사람은 과목(科目)을 숭상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과목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두 가지로 취하는 길을 두어 천거하기도 하고 설과(設科)하기도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정순봉이 정언(正言) 허위(許渭)와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 1517년(중종 12) 9월 25일(무술)

유여림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신광한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김구를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 ◎ 1517년(중종 12) 11월 6일(무인)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김정국이 아뢰기를,

“근자에 대간을 간 일은 중외(中外)에서 보고 듣기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저 임금이 이미 언책(言責)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말을 다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중에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그러운 용납하고 아뢰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대개 성품이 본디 충직한 사람이라면 위엄과 형벌과 화복(禍福)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말을 다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겠으나,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임금은 너그러운 용납하여 말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언관(言官)을 죄다 같았으니 성덕(聖德)에 매우 누가 됩니다.

근년 이래로 상께서 강학(講學)을 날로 도타이 하고 뜻을 기울여 다스리기를 꾀하고 착한 말을 즐겨 들으시므로, 말을 아뢰는 자가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상께서 삼대(三代) 이후의 범상한 임금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어찌 지나친 말이 없겠습니까?

이행(李荇)은 문학(文學)에 능한 선비로 지금 명망이 중하므로,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칭한 것을 재상(宰相)들은 다 지나치다고 합니다. 이행이 만약에 참으로 정인(正人)이라면 말과 마음이 곧 정인과 맞을 터이나, 그 사람은 위낙 탄연(坦然)히 선(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한때의 탄핵하여 논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가 마침내 나라의 일을 그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칭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험사(險邪)하고 화(禍)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소인인데 이는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며,혹 고집불통하여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소인이 아닐지라도 마침내 혹 나라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간이 이행을 논박한 말이 어찌 놀랍기까지야 하겠으며, 인정도 어찌 흥흥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이러하므로 이성언도 상의 뜻을 엿보고 시비를 현혹하여 상께서 한때의 아름답고 착한 언론을 다 허망하게 여기시게 하였으니, 그 술책이 깊습니다. 그 말에 ‘자기와 뜻이 같은 자는 착하게 여기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나쁘게 여긴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간이 입을 다물고 손을 묶고서 인물을 공박하지 못하게 하고 참 소인이 있더라도 대간이 탄핵하여 논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성언의 술책이 이렇게 심한 것입니다. 위로는 선을 좋아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억지하고 아래로는 충직한 말을 배척하는 것이니, 이성언과 같은 자는 상소라 하여 죄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정 소장(疏章)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궁벽한 여항에 살면서 뜻은 옛사람을 좇는 포의(布衣)의 선비 중에, 내 임금인 걸왕(傑王)·주왕(紂王)·유왕(幽王)·여왕(厲王)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여 숨김없이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언의 소(疏)는 이런 것이 아니니 죄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상소라는 데에 있어서는 같을지라도 사정(邪正)의 구분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고사(古史)를 보면 이러합니다. 한 소제(漢昭帝) 때에 상관걸 등이 광광의 충성을 미워하여 거짓으로 연왕(燕王)의 글을 만들어 올렸으나, 소제가 어리기는 하나 아주 밝고 슬기로우므로 능히 그 변을 살폈기 때문에 엄패당하지 않았거니와, 만약에 속았다면 그 화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환제(桓帝) 때에 이르러 이웅·두고의 무리가 청론(淸論)을 격양(激揚)하였는데, 그때에도 간사한 사람이 상서하여 ‘태학(太學)의 유생(儒生)을 길러 봉당을

맺어 조정(朝廷)의 정사(政事)를 비난합니다.’ 하였으나, 환제가 어리석은 임금이므로 마침내 살피지 못하여 동한(東漢)의 큰 화의 터전을 장만하였으니, 이것은 경계하는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행을 특별히 서용(敍用)한 것도 이성언의 소가 들어간 뒤에 있었으므로 못사람의 뜻이 의혹을 풀지 못하니, 이행도 빨리 개정하여 못사람의 의심이 절로 풀리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것은 지당하다. 대간을 간 것이 마침 이성언이 상소한 뒤에 있었으므로 아랫사람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으나, 그 때문이 아니다.”

하였다. 김정국이 아뢰기를,

“대간이 의논할 때에 혹 남의 잘못을 공박하기도 하고 임금의 잘못을 말하기도 하는 것은 다 제 몸에 이롭지 않은 일이니, 스스로는 논핵(論劾)하려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애써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남곤(南袞)은 전엔 동료와 함께 진소(陳疏)하기로 의논하고서 올릴 소를 보고는 긴급하지도 않은 병을 핑계삼아 집에 물러가서 끝내 서명하지 않았으니, 대간의 풍기를 이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대간의 체모를 잃었는데도 찬성(贊成)으로 높여 제수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될 일이니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하고, 또 하종해 · 이숙춘 · 김순몽 · 유영정 등의 일을 논하였으며, 지평(持平) 허위가 아뢰기를,

“요즈음 상께서 대간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싫어하는 기색이 많이 계십니다. 대간이 언책을 맡으면 말이 반드시 격절(激切)하고서야 상청(上聽)을 들이킬 수 있으므로 말이 늘 격절한 것인데, 말이 지나쳤다 하여 간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재상이 연방(延訪) 때에 대간이 그르다고 앞을 다투어 말하고서 물러나와서는 관례에 따라 갈지 말기를 청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이성언의 소를 광패(狂悖)하다 하고 이행은 대신의 천거에 따라 서용하였다고는 하나, 이성언의 소에 따라 서용한 듯 하니 이행의 벼슬을 개정하소서.”

하고, 시독관(侍讀官) 김구가 아뢰기를,

“이성언의 상소가 한번 총명을 더럽힌 이후로 모든 일이 날로 글러갑니다. 대간을 갈고 이행을 서용한 데에 대하여 아랫사람의 의혹이 자심하고 사기

(士氣)가 꺾였으니 마침 간사한 사람이 중간에 숨어들어 공론을 억지하고 선류(善類)를 배척하여 비어(飛語)를 만들어서 시비를 흐리게 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대간이 ‘어그러져 다투어 화합하지 않는다.’ 한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이성언의 소가 시비를 흐리게 하고 흑백을 어지럽혀서 임금의 잘 다스리려는 마음을 끊으려고 ‘조정이 다 그 직사(職事)를 다하지 못하고 외의(外議)에만 따른다’ 하고, 또 대간이 인물을 공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와 뜻이 같은 자는 착하다 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나쁘다 한다.’ 하였으니, 상의(上意)를 동요시키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재상을 이간한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처럼 참으로 화합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렇듯이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는 너그러운 용납하고 대간은 죄다 가시니, 이는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의 깊이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언은 본디 학식이 없고 다만 주색을 좋아하고 말달리기를 일삼는 한낱 도박과 사냥을 잘하는 자일뿐이며, 부자간에 무례하기가 마치 개돼지 같습니다. 그가 급제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겼고, 이번에 한 상소는 어떻게 한 것인지 사람들이 다 의심하거니와, 이성언은 편지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이행의 사람됨도 화평하지 않고 또 집요하여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고 나쁜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칭한 까닭으로 말하면 잘 모르겠으나, 대간이 논한 바에 어찌 연유가 없겠습니까? 혹 집요하거나 화평하지 않다가 그 폐해가 마침내는 나라를 그르치는 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국이 아뢰기를,

“이성언의 소 가운데에 이를테면 ‘금세의 사람들은 한결음에 요순 같은 지경에 나아가고자 한다.’ 한 것은 매우 무식한 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인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순 같게 하려고 바라고 그 성심을 임금에게 미루어 간다면 무슨 일인들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요순 같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른바 ‘우리 임금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는 것이니, 이성언이 임금을 해치는 것이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은 요순과 같게 되려고 스스로 바라야 하고 유자(儒者)는 공맹(孔孟)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바라야 하는데, 이성언의 말은 요순과 같게는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그 말이 믿음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만하다.



남곤이 헌장(憲長)<sup>206</sup>으로서 진소(陳疏)하자는 의논에 참여하고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형적은 그른 듯하나, 병은 역시 무상(無常)한 것인데 어찌 병을 핑계하여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김정국이 아뢰기를,

“듣건데 부제학(副提學) 김정이 귀양(歸養)하기 위하여 정사(呈辭)하니 명하여 외임(外任)을 제수하셨다 합니다. 아들의 정에 있어서는 옳은 일이고 상계서도 효리(孝理)로 나라를 다스리시나, 사람의 거취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지금 쓸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어미의 나이가 노모(老耄)<sup>207</sup>에 이르지 않았고 따로 형제도 있으니, 신은 상계서 귀양을 가벼이 허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어미의 나이는 70에 이르지 않았으나 정상은 중하므로 근처의 외관(外官)을 제수하였다.”

하였다. 위(渭)가 또 하종해 등 4인 및 성세정·김세균·유계중 등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 논박 받은 자가 많으나, 버려야 할 것까지는 없다면 갈 것 없다.”

하였다. 김정국이 또 조방정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방정은 이조(吏曹)에 물어서 처치하겠다.”

하였다.

#### ◎ 중종12년(1517) 11월 6일(무인)

김당을 형조참판으로, 윤희평을 공조참판으로, 김석철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으로 이사균을 동지중추부사로, 김구를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이희민을 정자(正子)로 삼았다.

---

206) 헌장: 대사헌(大司憲)의 별칭

207) 노모: 70세

◎ 1517년(중종 12) 11월 19일(신묘)

장순손을 병조판서로, 고형산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이성동을 사간원대사간으로, 박호를 집의(執義)로, 정충량을 사간(司諫)으로, 정사룡, 권벌을 장령(掌令)으로, 공서린을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로, 조한필을 지평(持平)으로, 김구를 헌납(獻納)으로, 윤자임을 부교리(副校理)로, 최산두, 이약빙을 정언(正彦)으로 삼았다.

◎ 1517년(중종 12) 11월 22일(갑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성동, 집의 박호, 사간 정충량, 장령 권벌, 정사룡, 헌납 김구, 지평 조한필, 정언, 이약빙이 아뢰기를,

“이성언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히고 선류(善類)를 음해하여 중외(中外)의 사람이 시비에 현혹되게 하였는데, 상께서 ‘이미 그 사람이 그른 줄 안다.’고 분부는 하셨으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셨으므로, 중외의 사람들이 혹 옳다고도 하고 그르다고도 하면, 이 때문에 대간이 두세 번 갈렸으니, 이제 멀리 귀양 보내어 시비를 분명하게 해서 못사람의 의심이 풀리게 해야 합니다. 이성언의 죄가 저러한데도 전 대간이 죄주기를 힘껏 청하지 않는 것은 위낙 옳지 않고, 양팽손이 아뢰는 것은 정론(正論)인데 같았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행(李荇)도 특지(特旨)로 참의(參議)를 제수하였는데, 상께서 ‘이성언의 소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분부하셨으나 그 소가 한번 들어간 뒤에 문득 이행을 서용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중외의 인심이 의혹하여 다들 ‘그 때문에 서용하였다.’ 하니 곧 개정해야 합니다. 전 대간이 논한 일이 많으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대하므로 우선 이것을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성언의 소에는 사실로 받아들일 일이 아주 없었는데, 대신이 다들 ‘봉장(封章)<sup>208</sup>한 사람은 죄줄 수 없다.’ 하였다. 그 소를 버려두고 채용하지 않을 따름이요, 죄주어서는 안 된다. 이행은 이성언의 소에 따라 서용한 것이 아니라, 대신의 말에 따라 특별히 서용한 것이니 개정 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

208) 봉장: 실지로 불합하여 상소 하는것

◎ 1517년(중종 12)년 11월 25일(정유)

사간(司諫) 정충량, 장령 정사룡, 지평 조한필, 헌납 김구, 정언, 이약빙이 아뢰었다.

“정승들이 집의 박호가 성삼문의 외손이라 하여 아뢰었는데, 신 등은 이런 의논을 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선왕의 관대한 정치는 형벌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니 같은 성을 이어받은 자손일지라도 미치지 않는데 더구나 외손이겠습니까? 또 듣건대, 성삼문이 세조조(世祖朝)에서 죽었으나 노산조(魯山朝)에서 녹(祿)을 먹었으니 그 뜻은 그 임금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 길을 열어서 권장한 뒤에 아랫사람 중에 격려되어 충성을 다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호를 결코 갈아서는 안됩니다.” 【이때 두 정승의 말은 이미 입계(入啓)하였으나 오래도록 계하(啓下)되지 않았다. 정충량 등이 마침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가 짐승의 말을 듣고 곧 합사(合司)하여 와서 황급히 아뢰었는데, 아뢴 말은 다 김구·이약빙의 뜻이었다. 김구는 소릉(昭陵)을 회복하는 일을 거론하고자 하였으나 동료들이 말려서 드디어 못하였다.】

◎ 1517년(중종 12) 윤 12월 13일(갑신)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유운이 한(漢)나라 마 황후(馬皇后)의 일을 논하면서 아뢰기를,

“명제(明帝)는 정령(政令)을 마 황후에게 상의한 일<sup>209)</sup>이 많은데, 마 황후는 거기에 사(私)를 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어진 점입니다. 그러니 인주(人主)는 비록 안에 명철(明哲)한 후(后)가 있다 하더라도, 정사는 마땅히 삼공·육경과 의논해야 하는 것이지 부인과 상의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은 단지 내사(內事)를 다스릴 뿐입니다.”

하고, 시독관 표빙(表憑)은 아뢰기를,

“태조·태종시대에는 여러 왕자(王子)의 가사(家舍)는 모두 일정한 제도가

209) 마 황후는 복파 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의 딸이자 한 명제(漢名帝)의 후비(后妃). 후덕(厚德)하고 정결(貞潔)하여 명제의 총애를 받았고, 명제를 도와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후한서(後漢書)》 권10 황후기(皇后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사치해지니 참으로 불가합니다. 조종의 규범을 준수하여 점차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하고, 헌납 김구는 아뢰기를,

“후비는 고사(古事)를 알고 의리(義理)에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범은 마땅히 궁위(宮闈)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학문을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마 황후가 장제(章帝)를 보양(輔養)하던 일과 같은 것이 지금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중위(中闈)가 갖 내정(內政)을 시작함에 있어 위로는 자전(慈殿)이 계시고 아래로는 원자(元子)가 있으니 마땅히 지성을 다해서 보양해야 하고 학문의 일도 마땅히 제때에 힘써야 궁중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일국의 모의(母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자는 밖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여자는 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여 각기 그 책임이 있으니 황후가 아무리 어질다 해도 정사를 간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학문하는 일은 어찌 남녀를 구별하겠는가. 또 완자군의 가사가 너무 사치하다는 것은 법사(法司)가 이미 아뢰어서 철거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집을 철거하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하니 당초 지을 때 제도에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매, 검토관 기준이 아뢰기를,

“사치하고 화려한 일은 반드시 궁위(宮闈)와 귀척(貴戚)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안이 바르지 못하는데 밖을 바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집을 바르게 한다면 어떤 일이든 바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대사헌 윤세호가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보니 본도의 백성들이 평안도에 부방(赴防)하는 일과 각역(各驛)에 말을 대는 일로 몹시 곤핍(困悴)하니, 매우 가궁합니다. 그 군졸(軍卒)이 평안도에 입방(入防)하는 일은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추이(推移)하여 가까운 곳에 분정(分定)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는 계속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한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를 흔히 잡류(雜類)에서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어찌 군졸을 존무(存撫)할 방법을

알겠는가? 각별히 골라서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호가 아뢰기를,

“진상(進上)하는 편포(片脯)를, 다른 도에서는 그 고기를 가늘고 얇게 만들어서 근 수를 계산해서 상납합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는 이름은 비록 편포라 하나 육(肉)은 원포(圓脯)이오니, 그것도 근 수를 정해서 상납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녹미(鹿尾)와 녹설(鹿舌)은 그 도의 여러 고을이 서울에서 사다가 상납하니 그 폐단이 큼니다. 작년에는 감해 주었으니明年에도 역시 감하여 주는것이 옳을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녹미와 녹설은 그 폐단이 이와 같으니 역시 더 감해야 할 것이다. 유사에 물어보라.”

하였다. 특진관 유미가 아뢰기를,

“응패(鷹牌)는 벌써 혁파하게 했사오나 외방에서는 향구(鄉狗)·달구(澆狗)·요자(鷄子) 등을 진상하는 것은 감하지 않았습시다. 근래에는 강무(講武)의 일을 전연 하지 않으니, 개[狗]와 요자의 진상도 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쓸 곳이 없다면 한갓 민폐만 끼칠 뿐이니, 진봉(進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 1518년(중종 13) 1월 5일(을사)

헌납(獻納) 김구가 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체직하라.’ 전교하였다.

#### ◎ 1518년(중종 13) 1월 19일(기미)

윤희평을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표빙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구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김공예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최산두를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임권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 ◎ 1518년(중종 13) 1월 23일(계해)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 교리 김구, 부교리 정응은 모두 월과(月課)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고를 당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 등은 모두 월과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고를 당했다. 조광조는 본래 문사(文詞)를 좋아하지 않거니와, 김구와 정응은 모두 문장에 힘을 썼으나, 당시 사람들이 이학(理學)을 귀하게 여기고 문장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글짓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월과의 제술 같은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심지어는 신학후생(新學後生)들에게 대신 짓게 하여 추고를 당하기까지 되니, 선배 문학(文學)하는 인사들이 모두 이를 병통으로 여겼다.】

### ◎ 1518년(중종 13) 2월 4일(계유)

정사룡을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로, 김구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임권을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 ◎ 1518년(중종 13) 5월 7일(을사)

재신(宰臣)과 육조 당상 및 홍문관·대간에 명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수록된 우리 태조(太祖)의 피무(被誣)<sup>210)</sup>에 관한 일을 변정(辨正)하여 주달(奏達)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궐정(闕廷)에서 회의하게 하였다. 정광필, 이손, 장순손, 김전, 남곤, 안당, 고형산, 이자건, 홍숙, 유담년, 이유청, 심정, 조원기, 조계상, 황맹헌, 손주, 이자건, 윤희평, 김극픽, 박광영, 김굉, 조방언, 윤은필이 의논드리기를,

“선조(先朝)가 무고 당하는 것을 보고서 시급히 씻어 버리고자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전말(顛末)을 개진(開陳)하여 명나라 조정에 신달(申達)해야 합니다. 허락하여 개정해 줄지의 여부는 꼭 기약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잘못 전해진 것을 소상하게 알게는 될 것이니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210) 피무: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 태조 이단을 이인임의 아들이라 하고, 또 이단은 고려의 공민왕·우왕·창왕·공양왕 등 네 왕[四王]을 시(弑)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조선(朝鮮) 당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하였던 일로서, 태종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변무사(辨誣使)를 파견,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선조(宣祖) 때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이 관철되었다.

하고, 조광조, 유인숙, 민수원, 김구, 기준, 장옥, 손수, 이인의 의논도 같았다. 이장곤, 정사룡, 유용근, 최산두가 의논드리기를,

“《대명회전》에 수록된 것이 이 지경으로 엉망이니 어찌 성심(聖心)만 애통할 뿐이겠습니까? 백대의 신민이 다 함께 통분(痛憤)할 일이니, 진실로 주청하여 깨끗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선원 세계(璿源世系)의 착오<sup>211)</sup>는 이미 선왕조(先王朝)<sup>212)</sup>때에 주청(奏請)하여 개정할 것을 준허(準許)하였는데, 《대명회전》에는 아직 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지금 다시 변명(辨明)한다 해도 전과 같을까 염려됩니다. 사왕(四王)<sup>213)</sup>의 일은 더욱 통분하니 불가불 변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혁명을 할 때에는 혹 기휘(忌諱)한 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중국의 문적(文籍)으로서는 증빙하여 밝힐 수 없습니다.”

하고, 공서린, 정충량, 민수천, 김식, 이희민은 의논드리기를,

“《대명회전》에 수록된 것은 다만 선원세계의 오류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는 말을 성조(聖祖)<sup>214)</sup>에게 덮어씌웠더니 신 등은 마음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필시 그것을 찬집(撰集)할 때에 근거 없는 말들을 잘못 채록한 것일 것이니, 주청하여 변백하는 일은 늦출 수 없습니다. 준허(準許)를 얻어서 개정될 것인지는 기필할 수 없지만 신하로서 군부(君父)가 무함당한 것을 보았으니, 이것을 씻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참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고, 신용개는 의논드리기를,

“대명 조훈(大明祖訓)<sup>215)</sup>의 조장(條章)에 기재된 이인임 부자(父子)의 계파(系派)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선왕조(先王朝)<sup>216)</sup>때에 이미 주문(奏聞)하여 변명하고 회자(回咨)에도 고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나온 《대명회전》은 여전히 그 잘못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도 없는 악명(惡名)을 듣고 그것이 천하에 유포되었으니, 진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홍무

---

211) 태조가 이인임의 아들이라는 것

212) 태종

213) 사왕: 태조 이성계가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을 죽였다는 일

214) 성조: 태조

215) 대명 조훈: 명태조(明太祖)의 유훈(遺訓)

216) 선왕조: 태종



(洪武)<sup>217)</sup>7년에 공민왕(恭愍王)이 최만생의 무리에게 시해(弑害)되어 후사가 끊어지매, 우·창(禍昌)<sup>218)</sup>이 이성(異姓)으로 그 뒤를 이었다가, 홍무 25년<sup>219)</sup>에 와서 공양왕(恭讓王)이 반정(反正)하여 재위(在位)한 지 4년 만에 천명(天命)이 우리 태조(太祖)에게로 돌아왔고, 공양왕이 손위(遜位)한 지 3년 후에 삼척(三陟)에서 홍(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무릇 왕씨(王氏)의 사왕(四王)을 시해하였다.’ 하니 또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계파(系派)가 잘못된 데 대하여 이미 고치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으며, 또 고황제(高皇帝)의 성지(聖旨)에 ‘왕씨가 시해된 뒤 비록 가짜 왕씨[假王氏]가 이성(異姓)으로 왕이 되었다 해도 이는 삼한(三韓)<sup>220)</sup> 대대로 지킬 양책이 아니다.’ 하였으니, 이 두 조목의 잘못은 그래도 다시 주청하여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는 일은 사실과 달라 통탄할 노릇이나, 명나라에서 우리가 변명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정성을 다하여 주청하여 변명한다 해도 별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명나라에서 비록 사실에 근거한 말을 취하여 고칠 것을 허락한다 해도, 지난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둔 것과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려우며, 고쳐 주지 않는 것과 이미 천하에 유포된 것을 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세히 변명하여 재차 주청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익한 일인 줄 알지마는 이 또한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으로 무함된 이름을 깨끗이 씻을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청하여 변명한 데 대하여 명나라에서 ‘무릇 사왕(四王)을 시해한 일은 아직 좀 기다려 달라.’ 한 것은 명 태조의 유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울러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재차 주청해야 하고, 재차 주청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세 번 네 번이라도 주청해서 기어코 준허(準許)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고쳐 준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낸다면 특별히 전대(專對)에 능한 사람을 골라서 내년 가을 성절사(聖節使)와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송일의 의논도 이와 같았는데 상은 정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217) 홍무: 1374년(공민왕 23)

218) 우·창: 우왕, 창왕

219) 1392년(공양왕 4)

220) 삼한: 곧 조선

◎ 1518년(중종 13) 5월 7일(을사)

불시 소대(不時召待)에 나아갔다. 전경(典經) 이인이 아뢰기를,

“신이 평소 초야(草野)에 있을 때 보니 한 고을 가운데에는 반드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을 등용할 수가 있다면, 군읍(郡邑)이 많기는 하지만 어찌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한 도(道) 안에서 대읍(大邑)을 선택, 학도(學徒)의 수를 따로 정하여 속공(屬公)된 사사(寺社)의 토지로 그들을 기르고, 사표가 될 사람 역시 특별히 선생 장자(先生長者)를 택하여서 시킨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학교(學校) 안에서 그 업(業)을 성취한 자를 국학(國學)으로 올라가게 하면, 인재를 양성하는 도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시독관 김구가 아뢰기를,

“각 고을의 학사(學舍)가 퇴패(頹敗)하고 문묘의 상태도 말이 아니며, 선성(先聖), 선사(先師)의 위판(位版)이 넘어지고 뒤바뀌어서 보기에 미안하며, 부판목(趺板木)<sup>221</sup>도 모두 깨졌습니다. 신령이 의지하시는 물체는 경솔히 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어찌 조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솔히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심한 것이라면 고치지 않을 수 없다. 대신과 해조(該曹)에 묻겠다.”

하였다.

◎ 1518년(중종 13) 8월 21일(무자)

밤에 어떤 사람이 정부의 대문과 간원의 대문에 활을 쏘아 화살이 다 대문에 꽂혔으며 화살대에 글이 달려 있었는데 그 글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조정의 명성 있는 사류(士類)를 가리켜 나라를 망치는 신하라고 썼다.’ 하였다. 정부와 간원이 모두 그 일을 아뢰지 않았다. 식견 있는 사람은 그것이 소인이 조정을 요동하려는 모계(謀計)임을 알았다.

---

221) 부판목: 신주를 바치고 있는 좌대

【사신은 논한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글을 화살에 묶어서 의정부와 문과 사간원의 문에 쏘았었는데 그 글에 ‘김정, 조광조, 이자, 한충, 김안국, 권벌, 유인숙, 신광한, 공서린, 문근, 김구, 윤자임, 정응, 최산두, 이청, 이악방, 유용근, 기준, 장옥, 김식, 박훈, 박세희, 이희민, 양팽손 등 30여 인이 국정을 변경하고 어지럽혀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나, 밝으신 임금이 간사한 술책을 모르고 있는데, 대신은 어찌하여 묵묵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가?’ 하였다. 이는 반드시 탄핵을 받아 직을 잃은 사람이 한때의 명사(名士)를 몹시 미워하여 온갖 계책으로 모함하였으나 그 흥계를 부리지 못하자, 정부와 간원의 문에 화살을 쏘아 조정을 경동(驚動)시킨 것이다. 이 때 김정, 조광조 등이 성상의 지우(知遇)를 받아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쳐서 당시의 폐습(弊習)을 개혁하려고 힘썼으며, 비록 조종의 법이라도 조금만 폐단이 있으면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하였다. 그 마음은 본디 나라를 위해서 하였을 뿐이었으나 사람을 쓸 적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면 그다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칭찬하여 추천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면 비록 쓸 만한 인재라도 물리쳐 버리므로 원망이 크게 일어나서 질투가 날로 심하여 가니, 사람이 다 말하기를 ‘동한(東漢) 당고(黨錮)의 화 후한(後漢) 당쟁(黨爭)의 화로<sup>222)</sup>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였다. 또 신진들은 탄핵이 너무 지나쳐서 노성(老成)한 이 중에 폐기(廢棄)된 자가 많았으므로 조정의 재상이 다 자신을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다. 이 때문에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 이 때 조광조의 명망이 가장 중하여 사모하고 본받는 이가 더욱 많았다. 연소한 무리들이 《소학(小學)》의 도리를 말하며, 행동거지(行動舉止)도 법도에 맞게 하려고 힘쓰고 농지거리도 하지 않았다.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명성만 있고 실지는 없더라도 도학(道學)하는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문관(文官) 및 선비들이 읽는 것은 《근사록(近思錄)》·《소학(小學)》·《대학(大學)》·《논어(論語)》 등의 책뿐이요, 문예(文藝)의 학문은 일삼지 않아서 문장과 학술은 성종조보다 훨씬 쇠퇴하였다.】

222) 화로: 후한(後漢) 당쟁(黨爭)의 화로 후한 말기 환제(煥帝) 때 환관(宦官)인 진번, 이웅 등이 당을 이루어 버티다가, 마침내 진번 등 1백여 명이 화를 당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67 당고전(黨錮傳)

◎ 1518년(중종 13) 9월 1일(무술)

이조 정랑 김구, 이청, 호조 정랑 신명희, 조수천, 박육, 예조 정랑 이순, 병조 정랑 남효의, 정응린, 임권, 형조 정랑 최항, 김세효, 김문성, 이조 좌랑 이약빙, 양팽손, 호조 좌랑 송호지, 정경, 민회현, 예조 좌랑 조광좌, 노필, 이영부, 오준, 공조 좌랑 유성춘, 조우 등이 상차(上劄)하여, 소격서를 혁파해야 함과 대간의 체직이 불가함을 논하니, 비답하였다.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이 이와 같이 상차한 것은 과연 드문 일이다. 그러나 내가 대간을 체직한 것은 다만 국시(國試)를 몰릴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 1518년(중종 13) 9월 10일(정미)

문과(文科) 관시(館試) · 한성시(漢城試)의 시험을 마치고 방(榜)을 발표하였다. 일소(一所)<sup>223)</sup>의 시관 이청은,

“뽑은 사람이 대부분 적합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다.”

하고, 이소(二所)의 시관 윤자임은,

“사람을 잘 뽑고 재능 있는 이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며, 자못 기쁜 빛이 있었으며, 관시의 시관 이약빙도,

“재능 있는 사람은 빠뜨리지 않고 다 선발하였다.”

하고, 또,

“김구【김구도 시관으로 있었다.】는 식감(識鑑)이 신(神)과 같아 참으로 인물을 전형(銓衡)하는 기량(器量)이 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향거 이선(鄉舉里選)의 법<sup>224)</sup>이 무너진 뒤로부터 사람을

223) 일소: 초시(初試) 또는 회시(會試) 때 응시자를 두 곳에서 시험보이는데 그 첫째 시험장을 일소, 둘째 시험장을 이소(二所)라 한다.

224) 향거 이선의 법: 주(周)나라 때 향(鄉)마다 향(鄉)의 대부(大夫)를 두고 향의 세 가지 일, 즉 육덕(六德) · 육행(六行) · 육예(六藝)를 가르쳐 3년 만에 성적을 고사하여 현능(賢能)한 이를 중앙에 뽑아올리는 법이다. 《주서(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정백관(正百官).

시취(試取)하는 데에 공정성이 전혀 없어졌다. 그래서 선비들을 모아서 시험하여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으니 법에 공정하고, 부정한 폐단이 생기는 것을 막게 되었다. 그러나 시문(時文)을 숭상하고 그 사람의 현부(賢否)는 논하지 않았으며, 한 사람의 안목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나, 성인(聖人)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법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選舉)도 이 제도에 따랐으며, 유명한 사람이나 큰 선비가 다 여기서 나와 빈빈(彬彬)하게 태평 시대에 쓰인 이가 앞뒤로 잇따라 나타났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에 들어와서 시비와 호오(好惡)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조감(藻鑑)과 거취가 공정하게 되지 못하여, 마침내는 옛날부터 시행해 오던 과목(科目)의 제도를 폐지하고, 천인(薦引)하여 쓰려고 하며 말하기를 ‘과장에서 뽑은 바는 다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니, 이는 발 잘린 사람을 보고 천하의 신을 없애려는 것과 같으므로 또한 의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 천인(薦引)한 바는 친근한 사람이 아니면 사사(私私)사람이라 명성과 실지가 어긋나서, 바탕은 아름답지 못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대각(臺閣)에 퍼져 있어서 난정(亂政)의 폐단이 되었다가, 겨우 회복된 것은 모두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서로 번갈아 가며 추천하고 찬양하여 부정하게 끌어주어 봉당(朋黨)을 만드는 것이 풍습이 되어, 조정의 관작을 자기의 사사 물건으로 여기니, 삼대(三代)의 향거 이선하는 유의(遺意)가 아니요 곧 시정(市井)의 좁도독이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추태(醜態)이다. 아! 괴이하도다.】

#### ◎ 1518년(중종 13) 9월 16일(계축)

김구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정옥형·김식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 ◎ 1518년(중종 13) 9월 25일(임술)

손주를 한성부 좌윤으로, 박영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최명창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김구를 전한(典翰)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박영은 선산(善山) 사람이다. 소시 적에 무예(武藝)를 업으로 삼아 무과에 올랐다. 그리고 유학(儒學)의 서적을 통달하고 낙동강가에

집을 지어 살며 영화와 복리(福利)를 좋아하지 않았다. 일찍이 남쪽 변방에 장수로 나가서 시를 쓰기를,

외진 남쪽 변방 바닷기운 침침한데

투구 쓰고 갑옷 입은 왕손 늙어가네

기린각(麒麟閣)<sup>225)</sup>에 이름 오르는 것 마음에 없어

낙동강 강마일에 집이 있도다

하였는데, 이때 와서 추천으로 정원에 들어왔던 것이다. 뒤에 병조참판에 올랐으나 얼마 못가서 파직되어 전리(田里)로 돌아갔다. 의술(醫術)을 잘 알았는데, 일찍이 약재(藥材)를 사서 쌓아놓고서 사람 살리는 것을 주업으로 삼으니, 병 보러 오는 사람이 집에 가득하였으며 살려준 사람이 매우 많았다.】

#### ◎ 1518년(중종 13) 10월 2일(무진)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김구가 아뢰기를,

“이 책에 말한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욕을 보게 된다.’<sup>226)</sup> 한 주석에 ‘간언(諫言)이 행해지지 않으면 떠나가야 한다.’ 하였으니, 군신의 사이에는 의리로써 합한 것이므로 듣지 않는데도 떠나가지 않으면 욕이 따르게 됩니다. 선비의 일신은 거취(去就)가 중요하므로 다만 도(道)를 행하려 하다가 도를 행할 수 없으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성에 근본하였으므로 부득이 떠나가기는 하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으니, 공자(孔子)가 천천히 떠난 것과 맹자(孟子)가 3일을 잔 뒤에 주(晝)를 떠난 것<sup>227)</sup>이 이것입니다. 어두운 임금은 반드시 ‘네가 가더라도 내게 무엇이 해로우랴!’ 하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참혹한 형벌을 가합니다. 임금은 신하를 지성으로 대우하고 털끝만큼도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것처럼 하더라도 속으로 십분 성실함이 없으면 간사한 사람이 들어올

225) 기린각: 누각에 걸었다. 여기서는 공명(公名)을 세우는 데에 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226) 《논어(論語)》이인(里仁)에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 자유가 한 말이다.

227)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을 만나고 뜻이 맞지 않아 버리고 가는데 3일이나 잔 뒤에 주(晝)를 떠났다. 이에 대해 윤사(尹士)란 사람이 오래 지체함을 못마땅하게 여기자, 맹자는 “내가 3일이나 잔 뒤에 주를 떠났으나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 여긴다. 왕이 마음을 고칠 것이니, 왕이 고치면 반드시 도로 부를 것이다.” 하여 차마 버리고 떠나지 못함을 말하였다.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

수 있으니, 군자가 어찌 구차하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1518년(중종 13) 10월 4일(경오)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김구가 아뢰기를,

“이 책에 ‘처사(處士) 손복을 불러 국자감 직강(國子監直講)으로 삼았다.’  
하였는데, 손복은 과거(科擧) 출신이 아닌데도 사유(師儒)의 관원으로 삼았  
으니, 오늘날 만약 경술(經術)을 연구한 선비로서 사유가 될 만하거나 경연  
관(經筵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과거 합격 여부를 따지지 말고 제  
수(除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훈회(訓誨)하고 시강(侍講)하는 임무는 경술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  
는 것이다. 하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라야 하겠느냐? 그러나 제도를 가버  
이 고칠 수 없으니, 경술이 있는 사람도 과거에 급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관(臺官)이 되어 경연(經筵)에 들어오더라도 그 언론하는 바는 경연관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문관(文官)의 예에 의하여 쓰더라도 가합니다. 그러나 훗날의 폐단을 염려  
해야 하니, 마땅히 써야 할 자리에 쓰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 1518년(중종 13)년 10월 10일(병자)

정부가 아뢰기를,

“이조·병조가 주의(注擬)할 적에 스스로 상피(相避)하는 법이 있는데 요즈  
음 합당한 인물을 얻기 어렵다 하고 인사 이동할 때에 더러 상피법을 쓰지  
않기도하나, 장래의 폐단이 염려스러우니 그 단서를 터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임명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처럼 하지 말도록 하소서.”



【이때 민수천이 이조 정랑 김구의 자형(姊兄)으로 사간에 임명되고, 김공예는 이조 정랑 박세희의 처남(妻男)으로 도사(都事)에 승진 되었으므로 이 계(啓)가 있는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아뢰바가 지당하다. 그러나 만약 범상한 사람이라면 법전에 의해야 하나, 탁용(擢用)할 만한 사람인데도 법전에 구애 된다면 사람을 쓰는 길이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조·병조에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 ◎ 1518년(중종 13) 10월 19일(을유)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허굉이 아뢰기를,

“신자(臣子)는 이미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으니, 마음과 성의를 다하여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않는 것이 직분입니다. 옛날 송인종(宋仁宗) 때에 거란이 혼단을 일으켜서 보빙(報聘)할 사람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이간이 본디 부필(富弼)에게 감정을 품었으므로 이에 부필을 천거하여 보내게 되었는데, 부필이 입대(入對)하여 강개(慷慨)하게 말하니 인종이 감동하였습니다. 신자 된 자로서는 부필처럼 위험을 피하지 않아야 하고, 위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배양하여 성의가 서로 믿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고, 김구가 아뢰기를,

“어려운 일을 규피(規避)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논어(論語)》의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슬기롭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우직하였다.” 한 말을 따라 말한것인데, 어려운 일을 규피하는 것은 이 장(章)의 본의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이는 나라에 도가 있고 없음을 보아서 처신한 것입니다. 또 영무자(甯武子)가 그때에 사세가 떠날 수 없으므로 떠나지 않고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부자(夫子)<sup>228)</sup>가 허여(許與)한 것입니다. 대저 군신은 의로 합한 것이니, 합하면 있고 합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도

---

228) 공자를 말함

차마 못하는 바입니다만, 성의가 서로 진실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은 군자의 상도(常道)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협박하여 떠나게 하는것은 변고입니다.

그리고 허핑이 아뢰봐,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나라의 큰 일을 당하여 피하려 하는 것 은 아주 옳지 못합니다. 송(宋)나라 때 누가 교활한 오랑캐 땅에 사신가서 죽는 처지에 빠지려 하였겠습니까? 소인이 군자를 미워하여 이에 부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전조(前朝)<sup>229)</sup>의 일로 보더라도 소인이 정몽주를 중국에 보내어 죽을 지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sup>230)</sup> 역대에 이와 같은 일이 진실로 많습니다. 소인은 다 피하려 하지만 군자는 어찌 이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모름지기 평소에 그 위의(危疑)한 시기에 임하여 사절(死節)을 다하는 사람을 배양 해야 합니다.

지금 주상께서 어찌 신하들을 다 모르시겠습니까? 임금만큼 신하를 잘 아는 이가 없으니, 이 같은 신하가 있으면 우대해야 합니다.”

하였다. 김구가 아뢰기를,

“부자가 ‘우리 당의 선비들이 뜻은 높으나 일에는 소홀하다. 하였는데, 부자가 항상 광(狂)자를 일컬으며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선비를 얻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뜻 높은 광사(狂士)나 절조 굳은 견사(狷士)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대개 뜻이 높은 광사는 함께 진취할 수 있으니 그 뜻이 높기 때문입니다. 향원(鄉原)<sup>231)</sup>으로 말하면, 보기에는 어진듯하나 선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간에 처신하여 끝내 도(道)에 나아갈 수 없고, 만약 세상이 어지러우면 적당히 주선하여 화를 면합니다. 광사는 어느 단계에 이른 선비인지라 일을 함에 있어서 혹 마땅하지는 못하지만, 기개(氣概)가 있으므로 성인(聖人)이 그를 취할 것입니다. 비록 일은 소홀하게 처리 하더라도 뜻과 기개가 높고 원대한 사람은 임금이 취해야하니, 말세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없다고 하여 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종조(成宗朝)에 사림(士林)이 기개로서 서로 뜻이 맞았습니다. 그 학문이 정미(精微)한 데까지 추구 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로 좋았습니다.”

---

229) 전조: 고려

230) 고려 우왕(禔王) 10년(1384년)에 권신 임견미 의 농간으로 성절사(聖節使)로 명(明)나라에 갔다. 《고려사(高麗史)》 권117 정몽주전(鄭夢周傳)

231) 향원: 고을 사람들로부터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 《논어(論語)》 양화(陽貨)

하고, 허핑은 아뢰기를,

“자질이 용렬한 사람은 나약해지기 쉬우니, 위에서 장려하여 양성하면 사람마다 다 보고 느껴서 분발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향방을 모르는 자라도 한대의 추향(趨向)을 보면 반드시 선한 데로 돌아갈 것이니, 모름지기 조정의 기풍과 습관이 시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 ◎ 1518년(중종 13) 10월 23일(기축)

야대에 나아갔다. 시강관 김구가 《근사록(近思錄)》의 동정(動靜)에 대한 말에 의하여 동정의 이치를 극력 진달하고, 마침내 ‘임금의 동정은 법도에 벗어나서는 안 되고 더욱이 경솔해서는 불가합니다.’ 하고 풍간(諷諫)하였으니, 아마도 주상의 걸음걸이가 혹 조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김구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리라. 권벌이 아뢰기를,

“국가의 원기(元氣)는 널리 퍼지도록 해야 하니, 사기(士氣)가 꺾이지 않은 뒤에야 근본이 공고해집니다. 요즈음 예조(禮曹)의 공사(公事)를 보면 정몽주(鄭夢周)의 제문을 짓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정(私情)으로써 말하면 당초의 인심이 태조(太祖)에게 돌아갔는데, 마침 세자(世子)<sup>232)</sup>가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올 때 태조와 태종(太宗)께서 마중나가 외방에 계셨습니다. 정몽주가 인심이 태조께 다 돌아감을 보고 대간(臺諫)을 사주(使嗾)하여 태종께 붙은 조준, 정도전, 남은(南閔)들을 다 내쳤습니다. 이때 태조께서 해주에서 사냥하시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하였으므로 풍양(豐穰)에 돌아오셨는데, 정몽주가 조준 등을 귀양 보내었다는 말을 태종께서 듣고 태조께 아뢰어 병환을 참고 서울【개성을 말한다.】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형세가 정몽주와 양립(兩立)할 수 없으므로 정몽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정몽주는 우리나라의 원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포장(褒獎)하고 존숭하여야 강상(綱常)이 크게 밝아집니다.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사정(私情)이 없는 임금이 아니었지만 정공(丁公)을

---

232) 공양왕의 세자 석(奭)

베어서 규범(規範)을 세웠고<sup>233)</sup>, 또 전조(前朝)<sup>234)</sup>에서는 가법(家法)이 아름답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결혼하여 기강(紀綱)이 없었지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취할 만합니다. 소강절(邵康節)<sup>235)</sup>이 말하기를 ‘삼대(三代) 이후로 1백 년간 죄 없는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아서 심복(心腹)의 근심이 없는 나라는 송조(宋朝)뿐이었다.’ 하였는데, 아조(我朝)에는 절목(節目)은 자세하다고 하겠으나 내변(內變)【아마도 노산군(魯山君)이 양위(讓位)할 때의 일을 가리킨 듯하다.】이 없지 않아서 원기가 쓸쓸하였으니, 일일이 아뢰지 않더라도 위에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고는 할 수 없고, 또 소위 난신(亂臣)이라는 자가 어찌 다 참으로 난신이겠습니까? 결(桀)의 개가 요(堯)임금을 보고 짚는 것<sup>236)</sup>은 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부형이 다 두려워하여 자제에게 경계하였습니다. 근래에 위에서 지극히 밝으시므로 사람들이 분발하기를 생각하니, 모름지기 원기를 널리 펴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몽주가 태조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를 입혔으니, 이것으로써 말한다면 과연 원수와 같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이 사람을 포장(褒獎)한 뒤에야 나라의 규범(規範)을 세울 수 있다.”

하였다.

## ◎ 1518년(중종 13) 10월 28일(갑오)

석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233) 정공(丁公)의 이름은 고(固). 초(楚)나라 항우의 장수. 항우를 위하여 한 고조를 팽성(彭城) 서쪽에서 궁지로 몰아 칼로 접전하게 되었다. 한 고조가 위급하게 되자 정공을 돌아보고 “우리 두 사람이 뭐 그리 서로 고생할 것 있소.” 하니, 그는 군사를 끌고 돌아가서 한 고조가 무사하였다. 항우가 멸망한 뒤에 정공이 한 고조를 알현(謁見)하자, 한 고조는 그를 군중(軍中)에 돌려 보이며 “정공은 항왕(項王)의 신하가 되어 불충하였다. 항왕이 천하를 잃어버리게 한 자는 곧 정공이다.” 하고는 정공을 베면서 “후세의 인신(人臣)이 된 자로 하여금 정공을 본받지 말게 한다.” 하였다. 《사기(史記)》 권100 이포전.

234) 전조: 고려

235) 소강절: 강절은 소옹(邵雍)의 시호.

236) 하(夏)나라 결주(桀主) 같은 포악한 사람이 기르는 개도 요(堯)와 같은 성군(聖君)을 보고 짚는다는 뜻으로, 사람의 선악(善惡)을 불문하고 각기 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비유이다. 《사기(史記)》 권83 추양전.

“이 책에 ‘열 집이 사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성하고 신실함이 구(丘)와 같은 자가 있다.’ 하였으니, 우리나라가 좁아서 인물이 적지만, 열 집이 사는 작은 고을에도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에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겠느냐?”

하니, 김구가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합니다. 작은 고을이라도 반드시 어진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디 착하나 기질이 혹 아름답고 나쁨이 있습니다. 상지(上智)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얻기가 쉽지 않으나, 그 자질이 배워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임금의 배양(培養) 여하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 ◎ 1518년(중종 13) 11월 6일(임인)

정원(政院)이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할 만한 사람 26인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그 절목(節目)은 다음과 같다.

“강독(講讀)하는 사람은 하루에 2~3장을 보되, 만약 쉽게 이해되는 곳은 장수에 구애되지 않으며 순말(旬末)에 이르러 홍문관에 모여서 서로 질문하여 변정(辨正)하고, 월말에 이르러 홍문관의 장무관(掌務官)이 그 달에 질정한 장수를 써서 아뢰고 또 사철 끝 달에 강독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입계(入啓)해서 4~5인을 지정하여 읽은 곳을 강론하게 하되, 강론하는 날은 임시에 취품(取稟)한다. 또 홍문관의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 및 김안국, 이자, 김정, 조광조 등이 질문하고 변정하는 날에 매양 와서 논란하며, 또 이 선발에 끼지 못한 사람이라도 앞으로 홍문관에 들어가는 자는 또한 강독에 참여한다.”

그 선발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공서린, 김정국, 신광한, 김구, 민수원, 기준, 정응, 권운, 구수복, 윤형, 이인, 정순봉, 민수천, 유돈, 한충, 윤자임, 최산두, 정옥형, 박세희, 황효현, 이약빙, 장옥, 이충건, 이희민, 조연경, 김식이었다.

#### ◎ 1518년(중종 13) 11월 11일(정미)

이조판서 이장곤이 정청(政廳)에서 말하기를,

“김구를 직제학(直提學)에 의망(擬望)해야 하나, 김구는 몇 달 안에 정랑에서 전한(典翰)에 이르렀으니, 이는 근고(近古)에 없던 바이며, 또 직제학이 되면 오래지 않아서 당상(堂上)에 오르게 될 것이니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정랑 이약빙이 그를 의망하기를 고집하였으나 이장곤이 끝내 듣지 않았다.

권균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수천을 의정부 사인으로, 기준을 홍문관 부응교로 삼았다.

#### ◎ 1518년(중종 13) 11월 17일(계축)

신광한을 승정원 좌승지로, 유용근을 우승지로, 정순봉을 좌부승지로, 김희수를 우부승지로, 윤은필을 동부승지로, 박호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유를 사헌부 집의로, 김구를 사간으로, 민수원을 홍문관 응교로, 기준을 부응교로, 정응을 헌납 겸 성균관직강으로, 권운·유희령을 정언으로, 윤자임을 의주 목사로 삼았다.

#### ◎ 1518년(중종 13) 11월 19일(을묘)

집의 김세준이 아뢰기를,

“근일에 논한 일들은 대사헌과 의논하여 행해야 합니다만, 전 대간이 아뢴 이희웅의 일을 여태까지 유난(留難)하시니 매우 온당치 못하며, 이씨(李氏), 강씨(姜氏)의 일은 더욱 유난해서는 불가하며, 성세정의 일은 논한 중에도 더욱이 유난해서는 불가한 것이니, 곧 들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희웅은 공신(功臣)을 개정할 수 없고, 이씨(李氏), 강씨(姜氏)는 이미 첩으로 논정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논하여 적실(嫡室)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전 대간에게 다 말하였다. 성세정의 일은 만약 추고하여 논죄(論罪)한다면 고신(告身)<sup>237)</sup>을 빼앗아야 하나, 처음부터 대간이 파직만 청하였으니 고신을 빼앗을 수 없다.”

---

237) 고신: 직첩의 별칭

하였다. 간원(諫院)이 김세준을 논박(論駁)하려고 예궐(詣闕)하였는데, 김세준이 먼저 대간청(臺諫廳)에 있었으므로 간원(諫員)이 피하여 상의원(尙衣院)에서 의논하였으나 김세준은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대사간 박호, 사간 김구가 아뢰기를,

“어제 명하여 헌관(獻官)을 다 체직하셨습니다. 헌부가 호강(豪強)한 사람을 억제하기 위하여 악을 미워한 것은 지나친 듯하나,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형을 남용한 것도 아닙니다. 헌관이 된 자가 스스로 편치 못하게 여겨 사직하더라도 상께서는 헤아려야 하는데, 곧 다 체직하였습니다. 대저 대간을 다 체직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전에 간원을 다 체직하고 이제 또 헌부를 다 체직하였습니다. 지금 추복(追復)할 수는 없으나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되면 풍헌(風憲)의 자리가 도리어 가벼워지고 아랫사람이 원망할 것이니, 이로부터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정사에 방해가 있을 듯합니다. 또 집의 김세준은 그 직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김희수는 승지이기 때문에 가자(加資)하였는데, 이제 승지를 체직하였으니 그 가자도 개정(改正)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를 체직한 것은 바야흐로 형조를 추고하기 때문이다. 김희수는 과연 승지이기 때문에 품질(品秩)이 올랐다. 그러나 근일에 이와 같이 품질이 오른 자도 도로 강등하지 않았고, 이조도 품질을 강등하자는 뜻으로 아뢰지 않았으니, 강등할 것이 없다. 김세준은 체직하라.”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2월 8일(임신)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박수문이 아뢰기를,

“여악을 외방에서 없애도록 명하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경사는 본원(本源)이 되는 곳인데 유독 음탕한 유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필시 내정에서 악을 쓰기가 어려워서이겠습니까만, 그러나 밝은 고치고 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찌 사악하고 더러움을 깊이 알고 없었다 하겠습니까? 무릇 시설하는 것은 마땅히 삼대를 본받아야 하는데 삼대에 어찌 여악을 썼겠습니까?”



하고, 사간(司諫) 김구는 아뢰기를,

“삼대 때에 어찌 이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악이 있었겠습니까? 공자 때에 제(齊)나라 사람이 여악을 보냈는데 여악은 대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지금 대신과 예관은 진(秦)·한(漢) 이후 음란한 일을 증거로 삼았으니 어찌 옳겠습니까? 지금 안에는 두고 밖에는 없앤다는 것은 풀은 없애고 뿌리는 두는 것과 같으니 확실히 이익이 없습니다. 자전도 어찌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희환(戲玩)거리고 삼겠습니까? 옛날 제왕의 아버지가 봉양은 도(道)로써 하였지 반드시 이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악에 대한 일을 자전께서 어찌 그대로 두고자 하겠는가? 오히려 음탕하고 더럽게 여겨 싫어하실 것이다. 대신의 뜻은 악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 것이다. 금번 아뢴 바는 마땅하지만 무엇으로 대응할지 모르겠다. 예관과 대신이 전부터 의논하여 왔는데 이제 가부를 가려야 되겠다.”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전자에, 내연에는 고악(瞽樂)을 쓰자느니 남악을 담장 밖에서 연주하자느니 운운하였는데, 담장 밖이라지만 어찌 감히 남악을 내정(內庭)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단지 고악을 쓰는 것 또한 불편합니다. 김안국이 일찍이 고례를 고찰해 보도록 청하였는데, 안국도 얻은 중국 고서가 있어 모두 고찰해 보았지만 결코 대응할 것이 없었습니다. 삼대 방중악(房中樂)은 고찰하지 못했으나 삼대 때에 남악이 어찌 감히 내정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절주(節奏)는 여악이 모두 인도하였으니 단지 고악만을 쓸 수 없다. 만약 폐지한다면 그만이지만 폐지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대신할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매, 김구가 아뢰기를,

“열녀전(列女傳)에 ‘고(瞽)가 송시(誦詩)한다.’ 하였으니, 장님이 주악(奏樂)해도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악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절주는 기(妓)가 아니면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하매, 김토관 구수복이 아뢰기를,

“후세 문자(文字)·문손(文孫) 만세의 계책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탕하고 더러운 것들이 궁궐에 드나들면서 이런 기회를 좇아 화를 가져오는 것은 상께서 보신 바입니다. 지금 자전을 위해서 음탕하고 더러운 것을 두었다고 사책(史策)에 써 두는 것 또한 심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참으로 바른 논의이다. 과연 어찌 이것이어야만 자전을 봉환(奉歡)할 수 있겠느냐? 비단 상전(上殿)뿐 아니라 중궁(中宮) 치하 때에도 악(樂)이나 의물(儀物)을 없앨 수 없으니 또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매, 수문이 아뢰기를,

“우선 먼저 혁파하고 서서히 의논해도 됩니다.”

하였다. 구가 아뢰기를,

“용안 현감(龍安縣監) 공의달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또 전 순천 부사 박기수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곧 그의 첩을 차치하였습니다. 한 고을의 수령으로 조관(朝官)의 첩을 복상중(服喪中)에 빼앗은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파직하고 추문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 또한 현부가 마땅히 밝혀야 할 일이요, 추문도 않고 먼저 파직시켜서는 안 된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3월 4일(정유)

집의 박수문, 사간 김구 등이 합사로 아뢰기를, “김우증이 폐고됨을 분하게 여겨 몰래 흉모(凶謀)를 품고 두세 번이나 화살을 쏘아 투서(投書)한 것은, 상의 마음을 동요시켜 조정이 어지러워지기를 바란 것인데 상이 돌보아 살피지 않음으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통한, 사람을 쳐 없애려는 모의를 세웠으니 그 마음을 살펴보건데 앞으로 못 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불궤(不軌)를 모의하는 자들은 거개 임금결의 약한 무리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는 한편 은밀히 불량한 무리와 결탁하여 스스로의 당원(黨援)을 만들며, 먼저 선류(蘇類)를 섬멸함으로써 점차로 큰 변이 이르게 합니다. 우증의 ‘관(棺)을 쪼개어 시체를 매질하고 공권(功券)을 삭제한다.’는 것과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을 보건데, 봉당을 맺어 난을 일으키려는 정적(情迹)이 이미 드러나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관(推官)등이 화살을 쏘아 투서한 것과 우익을 이룬 당류 및 연체(連逮)된 사람들을 덮어둔 채 마침내 난언을 적용시켜 대적(大賊)을 놓아 주었으니, 조야(朝野)의 누군들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경국대전》의 난언률로 결단한다 하더라도, 난언조(亂言條)에 상(上)을 간범(干犯)하는 정리가 절해(切害)한 자에게는 무거운 법이 있는데, 상이 돌보지 않은 데 대하여 분노를 품고 먼저 사류를 없앨 계획을 품었으니, 간범함이 절해한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우증은 난모(亂謨)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난언(亂言)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봉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시키는 것에 대하여 율조(律條)가 있는데 추관등이 기필코 낮추어 경례(經例)를 따름으로써, 흉도로 하여금 조정의 경중을 헤아리게 하여 간모(奸謀)를 더욱 불어나게 하였으니, 신 등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증을 궁신(窮訊)하여 율대로 처단하고 추관에게도 죄를 주소서, 대사헌 조광조, 대사간 박호는 장관으로서 함께 참국(參鞠)하였으면서도 규정(糾正)하지 않았으니 파직하고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화살을 쏜 일은, 추문하지 않는것이 아니로되 우증이 이미 스스로 자신의 소위가 아니라 했으며, 또 화살에 맨 글이 반은 예서(隸書)이고 반은 언문(諺文)이었으므로 증험하고자 하여 우증(友曾)을 시켜 언문과 예서를 각각 몇 줄씩 씌워 비교해보니, 현격하게 서로 같지 않았다. 언문에 대하여는 우증의 절족(切簇) 및 비복(婢僕)들도 모두 ‘해독하지 못한다.’

하니 우증의 소위가 아닌 것 같다.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은, 우증이 처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였고 대신들도 또한 ‘추문하게 되면 반드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에게 언급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큰 옥사(獄事)가 일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기에 추문하지 말게 하였다. 비록 죄를 가볍게 했다고는 하나, 봉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 시켰다는

율(律)은 역시 그의 죄에 합당하지 않다. 추관(推官)이 잘못하였는데도 대간(臺諫)의 장관이 규정(糾正)하지 않았다면 추문해야 하거니와, 추관이 이미 잘못하지 않았으니 대간의 장관을 파직할수 없다.”

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 3월 5일(무술)

대간(臺諫) · 홍문관(弘文館)이 대신(大臣)을 따라 입대(入對)하기를 청하니, 상이 삼공 및 추관, 대간장관(臺諫長官) · 이관(貳官), 홍문관장관(弘文館長官) · 이관을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우증의 일에 대하여 경 등과 의논 하고자 한다.” 하매 집의(執義)박수문이 아뢰기를, “그 사류(士類)를 쳐 없애어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였다.” 는 것은 복사(服辭)입니다. 율문(律文)에 ‘붕당을 맺어 조정을 문란시킨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죄는 사형(死刑)입니다. 우증의 복초(服招)를 여기에 견주어보면 이 율이 가법됩니다. 무릇 모란죄(謨亂罪)에 어찌 모두 정률(正律)이 있겠습니까? 범한 바의 경중(輕重)을 율에 견주어 죄를 결단할 뿐입니다. 또 난언조(亂言條)에 ‘정리(情理)가 절해(切害)하여 위를 간범(干犯)하면 무거운 법전(法典)이 있다.’ 하였는데, 이제 우증이 자복한 초사(招辭)에 ‘삼공이 백관을 인솔하고 계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화살을 꺾내(闕內)에 쏘았으며 상이 살피지 않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림을 해치려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위를 간범한 것이 아닙니까? 대저 사림을 쳐 없앤다면 조정이 어찌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무릇 죄를 결단함에 있어 과람(過濫)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 죄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형(失形)인 것입니다.”

하고 사간 김구는 아뢰기를,

“이는 난언(亂言)이 아니라 난모(亂謨)입니다. 비록 난언이라 하더라도 정리가 절해하여 위를 간범하면 무거운 형벌을 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른바 간범은 직접 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위를 범하여 정리가 절해 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하물며 우증은 난모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리까!

처음 상의 마음을 요동시켜 흉모(凶謀)를 시험하려 하였으나 상이 오히려 살피지 않았으므로 곧 분심을 품고 사류를 쳐 없애려 하였으니 사류를 쳐 없애

고 난 뒤에는 또 무슨 일을 하려 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품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신(人臣)은 품은 마음이 없어야지 있으면 반듯이 주멸(誅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절해 하다는 율(律)에 해당 시켜도 오히려 가벼운데 도리어 그 율의 가장 가벼운 것을 따랐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를 범족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불가 합니다. 예로부터 간웅(奸雄)이 갑자기 위를 범족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 곁의 악한 무리를 제거하다가 마침내는 불측(不測)한 지경에 이르게된다.’ 하였는데, 옛날 안녹산은 중국 양국충을 잡는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고<sup>238)</sup> 이회광의 반란도 노기(盧杞)를 제거 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으니 고금의 흉악한 무리들은 그 모의가 한결 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녹산·회광을 사로 잡았다면 노기·국충을 제거하려 했다 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간이 고의로 준급(峻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죄에 합당하게 하려 했을 뿐인데, 추관 등이 정물이 없다 하여 난언에 해당시켰습니다. 가령 난언조가 없었다면 또 그 죄를 가볍게 할 것입니까? 무릇 죄는 여러 가지 인데 어찌 일일이 그 정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강(大綱)을 들어, 실정(實情)을 그 율에 견주어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데 한갓 상당(相當)하는 율이 없다 하여 구차히 가벼운 법을 따랐으니, 이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학(大學)》에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추방하여 귀양보낸다.’ 하였거니와, 이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할 뿐만이 아니거늘 소인(小人)을 너그럽게 방면하여 흉악한 무리로 하여금 더욱 만연하게 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되었더라도 이제 다시 죄에 해당되는 율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하고, 부제학(副提學) 김정은 아뢰기를,

“우증의 일은 난언일 뿐만이 아니라 실지로 조모(造謾)입니다. 이른바 난언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질없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무릇 소인은 원대한 식견은 없으나 간계(姦計)는 많은데, 우증이 시사(詩事)를 보고 곧 앙심을 내었

238) 안녹산은 당나라 때 절도사를 지낸 반신(叛臣)으로 돌궐계(突厥系)의 잡호(雜胡)이다. 여러 번 무공(武功)을 세워 현종(玄宗)의 신임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평로(平盧)·범양(范陽)·하동(河東)의 절도사를 겸하게 되었다. 뒤에 재상 양국충과의 반목으로 반란을 일으켜 대연이라 국호를 정하고 황제라 칭하였으나 그의 아들 경서에게 피살 당하였다. 《당서(唐書)》 권225.

으니 이는 상을 원망하여 사림을 해치려 한 것이라, 만약 그의 모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는 입에 올릴 수 없는 흉모(凶謀)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저 흉모를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함께 체결(締結)한 자가 있는 법인데,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옥사(獄辭)가 만연할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온당하나, 이렇게 한다면 난역(亂逆)의 무리를 잡아서 추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정광필은 아뢰기를,

“이 일에 대하여 중의(衆議)가 각각 다릅니다. 사림을 쳐 없애는 일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삼공도 그 속에 들었을 것이니, 이 사람의 모의가 과연 매우 상심할 만한 일이나 그 옥사(獄事)는 평심(平心)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안(推案)은 신이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울을 적용시켜야 옳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에 이른바 ‘붕당을 맺었다.’는 것은 3인 이상이 같이 모의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동류(同類)를 얻으려다 얻지 못하였으므로 난모(亂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울로 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소(年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경악하여 매우 미워하고 있거니와, 신 등도 결장(決杖)하려 했을 뿐이 아니라 이미 장 1백에 멀리 하방(遐方)에 귀양보내게 하였으니 심히 마땅하게 된 것이며, 이른바 위를 간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이를 간범이라 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께서 함부로 사은(私恩)을 쓰시니 상께서 진실로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였을 적에 곧 ‘이는 상을 간범한 것이다.’ 하여 문득 그 울에 의하여 죄주겠습니까? 또 죄수를 국문함에 있어 궐정(闕庭)에서 친문(親問)하는 것은 시종(侍從)이 일찍이 미편하다 했는데, 이제 도리어 궐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하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김구 · 수문은 아뢰기를,

“이미 끝까지 추문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당(黨)의 유무를 알겠습니까? ‘붕당을 맺었다.’는 울을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장심(將心)<sup>239)</sup>이라는 말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239) 장심: 불칙한 마음을 품다.

하고, 수문은 아뢰기를,

“오래도록 흉모를 품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장심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소인의 일을 미리 헤아려 일부러 그 죄를 무겁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모를 꾸민 자는 응당 중형(重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응교(應敎) 박세희는 아뢰기를,

“비록 사류에게만 언급되었다 하나 이미 사류를 섬멸했다면 조정이 무엇을 의뢰하겠습니까?”

하였다. 좌우가 서로 변론하느라 매우 분란(紛亂)하자, 이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안국이 아뢰기를,

“좌우는 각각 품은 의견을 말한 것이요 분쟁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의정 안당은 아뢰기를,

“상 앞에서 사사 일처럼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려 하여 서로 힐난(詰難)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無禮)에 가깝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무례라고 말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각기 소견을 진달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세희는 아뢰기를,

“신 등이 평심(平心)할 수 없어서 우증을 제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증이 사류를 쳐 없앤다는 것은 실지로 불칙한 모의를 품은 것인데, 추관(推官)의 의견은 ‘우증이 무엇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또 사류 1~2인만을 지척(指斥)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이와 같이 가볍게 의율(擬律)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옳습니까?”

하고, 당은 아뢰기를,

“신이 추안(推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대략을 듣건대, 난언(亂言)에 해당시켜야 할 것이요 난모(亂謨)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증은 죄를 받고 원망하여 단지 말에만 올랐을 따름입니다. 만약 사람들과 함께 동모(同謀)하여 시행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난모라고 하여야 합니다.”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강윤희가 미열(迷劣)하기 때문에 우증이 감히 말한 것입니다. 만약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이른바 정리가 절해하여 위를 간범하였다는 조목은, 전에도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받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은 국가의 정치가 광명 정대하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합니다. 사류들이 평시에는 삼대(三代) 이상의 일을 행하려 하더니, 지금 이 사람에게는 율(律) 밖의 형을 가하여 인심을 진복(鎮服)하려 하니 진실로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상께서도 폐조 때의 일을 보셨거니와 진실로 죄가 가벼운데도 베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때 과연 인심이 진복되었습니까? 무릇 사람의 죄는 처음에는 끝까지 힐문(詰問)하여야 하지만 만일 끝에 가서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으면, 의당 경전(經典)을 따라야지 어찌 억울하게 중전(重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전에 박경, 김공저 등도 우증처럼 부질없이 말만 하였을 따름이었는데도, 그때에 형장(刑杖)을 남용하여 궤정에서 낙형(烙刑)까지 가하면서 강제로 승복(承服)을 받아내어 많은 명류(名類)가 귀양갔는데, 지금까지도 모두 그 참혹함을 한하면서 대신(大臣)이 인도한 실수라고 하니, 지금은 의당 대도(大度)로 처리하여하지 어찌 편견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처음 우증의 일을 조옥(詔獄)에 내리라 명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 사체(事體)에 잘되었음을 기뻐하였는데, 다음날 시종·대간이 도리어 궤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삼대 이상의 임금으로 상께 기대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한(漢)·당(唐)의 임금도 하지 않던 일로 계청(啓請)하니, 어찌 이와 같이 불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조옥을 설치한 이유는 우증 같은 무리를 추문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궤정을 추국(推鞠)하는 곳으로 만들려 합니까? 신하는 임금을 인도하여 도(道)로 나아가게 하여야 하거늘, 어찌 살육(殺戮)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시종이 대사헌·대사간 등을 파직시키자고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초 궤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한 것도 이미 잘못되었거든 또 이에 이르렀으니, 대개 장구한 계책을 모른 것입니다. 지금 진강(進講)하는 《송사(宋史)》에 실려 있는 일을 보더라도, 무릇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에는 못할 짓이 없었으나 군자가 소인을 죄증에 있어 살육을 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이제 양사(兩司)의 장관을 체직시키라 명하셨으니, 그 나머지 대간(臺諫)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제 비록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나 혹 시비(是非)가 몽롱(朦朧)하여 양시 양비(兩是兩非)의 설이 있으니 신이 실로 통분해 하는 바이며,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연소한 사람을 꺼려하여 숨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중론(衆論)을 다 들은 뒤에 말하려 하였더니, 과연 이러한 언단(言端)이 있구나. 근래에는 대간이 동료(同僚)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체직(遞職)하는 것이 이미 성례(成例)가 되었다. 그러나 한갓 논박 받았다고 하여 갑자기 체직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대신 등은 이를 의논하여 시비를 결정하라.”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대간은 남이 자기를 논박하는 말을 듣게 되면 진실로 뻔뻔스럽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사헌 등을 체직한 것은 신 등도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당은 노한 목소리로 아뢰기를,

“임금을 인도하여 도(道)로 나아가게 하자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그르지 않다. 과연 사류를 쳐 없앤다면 그 뒤에는 불측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난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무 일을 위해서라고 핑계하지만 마침내는 조정(朝廷)에 화를 끼치기 때문에 대간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증의 모의가 진실로 이와 같았다면 나 역시 어찌 그 죄를 가볍게 하겠는가? 비록 조모(朝謨)라 하지만 윤희의 집에서 발언하였을 뿐이다. 나의 뜻은 추관 등이 비록 일죄(一罪)<sup>240</sup>로 의율(擬律)하였더라도 나는 다시 의논하게 하려 하였다. 단 의심스러운 것은 건춘문(建春文) 및 대내(大內)에 쓴 화살에 김정 등의 일을 말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시 추문하여야 할 것 같다. 그가 억측(臆測)했다고 한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

240) 일죄: 사형

“신은 탄핵받고 있으니 감히 말할 수 없으나 어제 반복하여 헤아려보았으되 그에 해당하는 율(律)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 등도 가볍게 한 것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여 이 율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화살을 쏘아 투서(投書)한 일을 끝까지 심문(審問)하매, 처음에는 박상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다가 금부(禁府)에서 추신(推諉)할 때에 이르러 아울러 박상에게 언급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김정, 박상 등이 상소(上疏)한 일을 인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고, 수문 · 김구는 아뢰기를,

“대신이 신 등을 불가하다 하니 신 등은 직(職)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물러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가려 하자, 안국이 외치기를,

“어째서 갑자기 물러가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여서는 안된다. 대신이 대간의 잘못을 척언(斥言)한 것이 아니다.”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대신 · 대간은 모두 나라 일을 위하여 하는 말이지 진실로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 역시 각자의 소견을 고집하는 것이니, 곧바로 물러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궐정에서 국문하더라도 친문(親問)하는 것은 아니다.”

하매, 세희가 아뢰기를,

“신 등이 어찌 감히 상으로 하여금 궐정에서 행형(行刑)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완만해질까 염려되므로 궐정에서 추신(推諉)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간을 책하여서는 안된다.”

하매, 안국이 아뢰기를,

“궐정에서 추문하려는 것은, 음모(陰謀)한 일에 대하여 언사(言辭)를 꾸미기도 하고 누설(漏泄)되기도 하여 간당(奸黨)이 혹 죄를 면하게 되면 마침내는

국가를 해치게 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꺾정에서 죄인을 추국하면 번거롭기만 할 뿐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당의 말이 진실로 마땅하고 대간·시종도 다른 뜻이 없었으니, 어찌 이로써 그르다 했겠습니까? 신의 뜻에는, 비태와 소장(消長)은 번갈아 상승(相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자의 뜻을 얻으면 국가를 광명(光明)하게 하려 하지만, 소인은 반드시 이를 해치려 하므로 틈을 엿보아 술책을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적(事跡)이 드러났다면 군자를 치죄(治罪)하더라도 또 한 심하다 할 수 없는데, 이제 우증이 죄받은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선인(善人)이 조정에 있으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뜻을 얻지 못하니, 이 무리를 없앤다면 내 뜻을 펼 수 있으리라.’ 하여 윤희의 집에서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사람과 음모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 ‘붕당을 맺었다.’는 율(律)로 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靜)은 아뢰기를,

“상께서 우증의 일을 가볍게 보시니 사류(士類)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가 경하게 여기는 것을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우증이 자복한 초사(招辭)를 보니 가죄(加罪)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화살을 쏘아 투서한 일에 대하여는 우증이 비록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였으나 능히 글속의 사연을 말하였으며, 힐국(詰鞠)에 이르러는 ‘억측하였다.’ 하였으나 이는 억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문하여도 승복하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나, 처음에는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문하여야 하지만 추관이 ‘추문하여도 그 죄의 경중이 가감(加減)되지 않는다.’ 하므로 추문하지 않았다.”

하매, 신용개(申用溉)가 아뢰기를,

“우증은 경박(輕薄)한 자라 지금 신장(訊杖)을 가하면 반드시 ‘내가 했다.’ 할 것입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삼공이 ‘무복(巫服)이니 가죄하기가 미안하다.’ 한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익명서(匿名書)에 대하여 이미 말의 꼬투리가 나왔는데도 추문하지 않는다면, 무뢰배의 자행(恣行)이 더욱 많아질까 염려됩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부터 이를 중시하였으며, 또 궐정에서 추신한 일은 조종조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다 같이 가볍게 하자 하니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른바 ‘다 같이 가볍게 하자.’ 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추문도 허소하게 하고 율(律)에도 맞지 않으니, 어찌 가볍게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흉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류가 해체(解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아무리 나라 일에 힘쓴다 하더라도 국가의 원기(元氣)인 사류의 해태(解怠)가 이와 같다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 뜻은 대신이 사류(士類)를 경시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기미(幾微)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처리하면, 위란(危亂)의 조짐이 이로부터 생길까 염려됩니다.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사류가 만약 이 때문에 해체된다면 이 역시 불가합니다.”

하고, 안국은 아뢰기를,

“이매(魑魅)나 사는 먼 지역에 귀양 보내면 사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율은 가감(加減)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소견이 각기 달라서 율의 당부(當否)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승지(承旨) 윤자임은 아뢰기를,

“이런 일들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역시 대신의 책임입니다. 대신 된 자가 선(善) 좋아하기를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면, 처음부터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증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여야 하겠으나 이처럼 가볍게 논하는 것도 아름다운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인(小人)이 군자를 미워한다 해서 군자가 소인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기필 섬멸하려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평서(平恕)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율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하는 편을 따르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관후(寬厚)하게 하는 것은 가하지만 너그럽게 하여 놓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대 때에도 사죄(死罪)가 있었으니, 율이 합당하다면 그 율을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조율(照律)하였으니 이제 또 사율(死律)로 처단할 수는 없다. 화살을 쏜 일도 또한 추문할 증거가 없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글 속의 사연은 사람들이 다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 이에 ‘내가 어떻게 그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으로 추문하기는 역시 곤란합니다.”

하고, 당(塘)은 아뢰기를,

“익명서의 일은 부자(父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의 단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추신(推訊)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고, 자임은 아뢰기를,

“인심과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신 등은 마땅히 이를 자신의 걱정으로 삼아 힘써야 할 것이지, 이 사람을 다시 추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고, 명하여 김우증을 경흥부(慶興府)로 귀양 보냈다.

【사신은 논한다. 김우증의 옥사(獄事)를 추단(推斷)할 적에 시론(時論)이 같지 않았다. 조광조는 시망(時望)의 으뜸이었는데도 오히려 우증을 다스림에 있어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정원의 뜻도 같았는데, 대간·시종이 기필코 엄하게 다스리려 하였다. 광조는 처음부터 참국(參鞠)하였었는데 추관이 모두 광조를 꺼려하여 추측하기를 ‘우증을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준급(峻急)하게 할 것이요 감히 늦추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광조가 힘써 안색(顔色)을 화하게 하여 먼저 관비(寬比)<sup>241)</sup>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좌우(左右)가 점점 누그러져서 우증이 끝내 목숨을 보존하였다.】

#### ◎ 1519년(중종 14) 3월 5일(무술)

집의 박수문, 사간 김구, 장령 김식, 문관, 지평 박훈, 송호지, 헌납 정옥형, 정언, 양평손, 김광복이 사직하고 물러갔다.

#### ◎ 1519년(중종 14) 3월 13일(병오)

사간을 체직하려 할 적에 이조(吏曹)의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박세희가 자급(資級)은 부족하지만 발탁하여 제수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의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김구를 쓰려하니 어떠한가?”

하매, 판서(判書) 신상이 아뢰기를,

“김구가 과연 그 직에 맞습니다.”

하였다.

---

241) 관비: 관용



◎ 1519년(중종 14) 3월 21일(갑인)

직제학(直提學) 김구에게 명하여 정자(程子)의 사잠(四箴)을 병풍에 써서 들이게 하였다.

◎ 1519년(중종 14) 3월 22일(을묘)

홍문관 직제학 김구 등이 아뢰기를,

“본국에서 주청(奏請)한 것은 종계(宗系)·사왕(四王) 두 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칙서(勅書)를 보건대 종계 한 가지 일만 거론하였고 사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은(謝恩)하는 데 있어 종계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사은한다면, 사왕을 시해(弑害)한 일은 도리어 사실이 되고 말 것이며, 범사(泛辭)로 사은하자니 사왕에 대한 일이 칙서에 없습니다. 속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지당하다. 나도 처음에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칙서의 등사본(謄寫本)만을 의거하여 먼저 의논할 수 없었으므로 우선 정지한 것이다. 또 종계 한 가지 일에 대하여는 이미 개정하라는 준허(準許)를 받았으니 사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왕(四王)의 일에 대하여는 준허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표문(表文)에 언급하는 것이 어떠한가? 내 뜻은 준허받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사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겨진다.”

하고, 이어 정월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아뢴 뜻으로 정부·예조·육경을 불러 궐정에 모이게 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려 있는 사왕에 대한 일이 더욱 중대한데 이제 도리어 준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시 주청사를 보내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 1519년(중종 14) 4월 3일(병인)

석강에 나아갔다. 《논어(論語)》를 강하다가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정사

(政事)를 물은 데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상(賞)을 주더라도 백성들이 도둑질 하지 않을 것이다.<sup>242)</sup> 한 이 말은 상하가 모두 법 받아야 할 것이며, 임금도 이와 같이 해야 하고 신하도 이로써 마음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백리(淸白吏)의 자손을 모두 서용(叙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일 성명(姓名)을 기록한 사람을 이미 다 서용하였는가?”

하매, 특진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청백리의 자손은 이미 초록(抄錄)하였으나 서용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하고, 참찬관 최명창은 아뢰기를,

“근래 통정(通政)으로 정(正)을 삼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통정으로 정을 삼는 것은 곧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이고, 그렇게 하면 하료(下僚)가 된 자들도 반드시 삼가고 두려워하여 사무(司務)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김구는 아뢰기를,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당상(堂上)으로 정(正)을 삼는 것이 해가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곤란하게 여기는데 이조(吏曹)에서는 청하고 있으나, 근래 하지 않던 일이므로 과감히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매, 은보가 아뢰기를,

“육시 칠감(六寺七監)의 정(正)을 충차(充差)하지 않은 자리가 많으므로, 통정으로 정을 삼자는 의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조(提調)는 출사(出仕)하지 않으므로 그 사(司)의 관원의 근만(勤慢)을 알 수 없는데, 만약 당상관으로 정을 삼는다면 이 또한 제조와 같으니, 반드시 모두 통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을 골라 교차(交差)<sup>243)</sup>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정할 · 이유인도 통정으로 정이 되었었으니, 신의 생각에는 조종의 고사를 모방하고 싶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242) 계강자가 도둑이 많음을 걱정하여 물은 데 대한 공자(孔子)의 답변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243) 교차: 당상과 당하를 섞어 차임하다.

◎ 1519년(중종 14) 4월 7일(경오)

정광필, 신용개, 안당, 이계맹, 이장곤, 고형산, 김안국, 김극픽, 권벌, 김당, 최한홍, 박영, 김식, 최산두, 양팽손, 이인 등이 의논드리기를,

“다시 주청하는 것이 온편하지 않다는 뜻을 신 등이 전에도 이미 상의하여 의계(議啓)하였습니다. 이제 남곤 등의 말을 들어보고 또 예부(禮部)의 복본(覆本) 및 칙서의 내용을 다시 참고하여 보니, 주청한 바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대개는 다 준허를 받은 것이며, 칙서에 두 가지 일을 각각 거론하지 않은 것이 비록 미진한 것 같기는 하나 이 때문에 다 준허받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다시 주청하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朝廷)<sup>244)</sup>이 한 가지 일은 준허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칙서에 준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말하였을 것인데 칙서에는 그런 말이 없으며, 또 예부의 복본에도 ‘그리하라.’는 성지(聖旨)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다 준허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오히려 미진하다고 여겨 다시 주청한다면, 사리(事理)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 등은 다시 주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윤세호, 방유령, 윤은보, 이항 등은 의논드리기를,

“종계(宗系)를 변정(辨正)하는 일 및 악명을 씻는 등의 일을 당초에 갖추어 주청하였는데, 이제 칙서를 살펴보니 오로지 종계에 대한 일만 가리킨 것 같으며, 악명을 씻는 일에 대하여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예부에서 비록 ‘주청한 바를 다 들어 준다.’ 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임시 방편으로 한 말일 것이라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의 뜻에는 다시 주청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정, 윤은필, 박수문, 박세희, 정응린, 유형, 조광조, 김구, 이청, 민수원, 권운, 심달원의 뜻도 역시 같았다. 전교하기를,

“대신들도 어찌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내일 내가 다시 의논하여야겠다.”

하였다.

---

244) 중국 조정

◎ 1519년(중종 14) 4월 25일(무자)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김구가 아뢰기를,

“신종(神宗)이 인재(人才)가 없다는 탄식을 하였는데, 그때 사마광, 정호, 정이, 범중엄, 부필과 같은 군자들이 어찌 하나들 뿐이었겠습니까? 만약 이들을 서용(叙用)하였다면 송(宋)나라의 치효(治效)가 삼대(三代) 때처럼 아름답았을 것인데, 어찌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帝)가 참으로 사람을 알아볼 줄 몰랐었기 때문에 포종맹이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종 역시 용군(庸君)은 아니지만 학문이 밝지 못하였던 까닭에 능히 사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비록 인재가 있더라도 서용하지 못하면 나라에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인재는 어느 세대에고 있는 것인데, 웃사람이 성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人物)이 부족한 것이니, 인재가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능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초야에 지우(知遇)를 얻지 못한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인데, 오직 임금과 재상이 지성으로 찾는 데에 달려 있다. 근래 재상(宰相)이 어진이 천거하는 도리에 있어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매, 김구가 아뢰기를,

“지금의 대신들이 어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성으로 어진 선비를 천진(薦進)하는 자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상께서 위임(委任)시켜 책임지우는 것이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께서 지성으로 위임하여 책임지우신다면 대신도 반드시 지성으로 천진할 것입니다. 대저 나라의 치란(治亂)은 모두 대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과연 내가 지성으로 위임하여 책임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매,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신은 못난 자질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외람되이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만약 재기(才器)를 지닌 채 하료(下僚)에 침체되어 있는 자를 신이 실제로 안다면 어찌 감히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의 이르기를,

“홍문록(弘文錄)을 점(點)의 다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미흡한 일인 것 같다. 마땅히 공론에 따라 취사(取舍)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김구가 아뢰기를,

“대신은 모름지기 공론에 의거, 그 당부(當否)를 명백하게 말하여 진퇴(進退)시키고 취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점의 다소로 취사하는 것은 과연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고, 안당은 아뢰기를,

“예전에도 홍문록은 역시 점수로 취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합당하지 못하면 대간이 그 당부를 논할 것인데, 어찌 점수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경사(京師)에 갓었을 적에 육부 상서(六部尙書)와 3각로(閣老)가 대궐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통정사(通政司)의 당상(堂上) 1원(員)이 궐위(闕位)되었으므로 의논하여 보직(補職)시키기 위하여 모두 나아간다.’ 하였습니다. 의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관(大官)이 궐위되면 육부(六部) 및 각로(閣老)가 일제히 모여 가당한 사람을 의논하는데, 가당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탁자위에 놓으면 각각 이름 밑에 원점(圓點)을 치며, 그 점이 많은 사람을 으뜸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중조(中朝)에서도 대관(大官)을 뽑을 적에는 역시 원점을 따져서 취사하고 있으니, 원점을 따져 취사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언의(言議)만으로 취사한다면 곤란한 일일뿐더러, 견제(牽制)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재상(宰相)의 자제(子弟)들은 대신이 알 터이지만,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절로 공론이 있는 것이니 점수를 따지는 것은 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1519년(중종 14) 4월 25일(무자)

불시 경연에 나아갔다. 김구가 아뢰기를,

“이 책에 변혁(變革)에 대한 일을 상세하게 말하였습니다. 대저 변혁하는데 있어서는 진실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니, 번거롭게 고치는 것을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번거롭게 고치는 것은 불가하지만, 너무 심한 것은 모름지기 경장(更張)하여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근일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되 의논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않으니, 어찌 현상만을 고수하면서 그 성효(成效)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군사(軍士)를 선상(選上)하는 일에 대하여 매양 경연(經筵)에서 변혁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民事) 중에서 변혁하여야 할 일인 것이다.”

하였다.

◎ 1519년(중종 14) 4월 28일(신묘)

조강에 나아갔다. 송(宋)나라 신종기를 강(講)하다가 문언박이 낙양(洛陽)으로 은퇴하였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이르기를,

“군자와 소인은 훈유(薰蕕)<sup>245)</sup>와 빙탄(氷炭)<sup>246)</sup>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군자가 조정에 있으면 소인은 야(野)에 있게 되고 소인이 조정에 있으면 군자가 야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군자들이 모두 낙양으로 은퇴하여 있었으므로 소인들이 다투어 조정으로 나왔던 것이다. 만약 군자라면 비록 한 사람이 퇴거(退去)하더라도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큰 것이니 진실로 아껴야 하거니와, 소인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매, 시강관(侍講官) 김구가 아뢰기를,

---

245) 훈유: 훈은 향풀, 유는 나쁜냄새가 나는 풀

246) 빙탄: 솥불과 얼음

“임금의 지향(志向)에 하나라도 부정(不正)한 것이 있으면, 군자는 구차스럽게 머물러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고자 하였고 헌부 또한 청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설치하여야 한다.”

하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설치하시려는 의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만, 신이 호조(戶曹)와 의논하였는데 군자창(軍資倉)에는 나누어줄 곡식이 전혀 없고, 오래 묵어 쓸 수 없는 별창(別倉)<sup>247</sup>의 곡식은 백성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먹을 수 없을 것이니, 명목은 아름답지만 백성이 그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주청사의 상전(賞典) 및 신맹경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 4월 28일(신묘)

심정(沈貞)을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고형산을 호조 판서로, 권균을 예조판서로, 이계맹을 병조판서로, 이세웅을 겸 장례원 판결사(兼掌隸院判訣事)로, 최명창을 예조 참판으로, 김세필·조광조를 겸 동지성군관사(兼同知成均館事)로, 김안국을 겸 전라도 관찰사(兼全羅道觀察使)로 김구를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식을 직제학(直提學)으로, 한충을 전한(典翰)으로, 박세희를 사간(司諫)으로, 기준을 장령(掌令)으로 조우를 지평(持平)으로, 이연경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 ◎ 1519년(중종 14) 4월 29일(임진)

불시 경연(不時經筵)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김구가 아뢰기를,

---

247) 별창: 군자창은 전국의 군전(軍田)으로부터 수납(收納)하여 들인 군자곡(軍資穀)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또 별창(別倉)을 두어 잡곡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백성에게 대여하여 주고 가을에 곡물을 수납하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향리(鄕里)의 천거에 의하여 취사(取士)하였으나 후세에는 과거(科擧)로 취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應試)하는 사람은 먼저 득실(得失)에 마음을 두게 되므로 연소(年少)할 때부터 과거 공부를 익혀 급제(及第)할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거 제도는 비록 폐지할 수 없으나 상계서도 이 폐단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근래에는 혹 과거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리켜 도리어 폐습(弊習)이라고 하며, 조정과 관중(館中)에도 이런 의논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거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쓸만한 어진이 있다면 반드시 과거를 보인 뒤에라야 쓸 것은 없다.”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사습(士習)이 올바르다면 비록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해될 것이 없고, 사습이 일변(一變)되지 않는다면 비록 과거를 폐지하더라도 역시 유익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 과거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상의 뜻을 알아서 선(善) 행하기를 즐겁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과거는 절로 경시(輕視)할 것입니다. 이제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니, 이때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직 대인(大人)이라야 임금의 그른 마음을 바를 수 있는 것이니, 대인을 얻지 못하면 비록 그 시기가 왔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위로는 종사(宗社)를 보호하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을 감쌀 수 있는 대현(大賢)을 얻어서 좌우에 두시어, 경악(經幄)에서 강론함에 있어서도 늘 요순(堯舜)의 도(道)를 앞에서 진달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히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 같은 무리는 학술이 천루(淺陋)하므로 이 성대(聖代)를 만났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매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고, 김구는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학문도 없고 재주도 훌륭하지 못하는데 젊은 나이에 취승(驟陞)하였으니, 이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없고 국가에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므로 늘 물러가서 배운 뒤에 다시 벼슬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근일 사장(師長)을 뽑음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는데도 대간(臺諫)이 김세필을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혹 책임자가 있는데도 조정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김안국이 책임자입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안국이 비록 합당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임(外任)을 제수(除授)하였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5월 17일(기유)

정원이 《성리대전》을 진강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남곤, 김안국, 이자, 김정, 조광조, 김세필, 신광한, 김정국, 김구, 홍언필, 김식, 한충, 박세희, 기준, 정응, 장옥, 조우, 이희민, 황효현, 권운, 이충건 등 21인을 서계(書啓)하였다.

#### ◎ 1519년(중종 14) 5월 27일(기미)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조광조가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못 소인들이 틈을 노려 이간할 때 재상된 사람들이 모름지기 자기의 지향(志向)을 정한 사람이라야 능히 위의(危疑)<sup>248</sup>스러운 때에 국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 사람을 평상시에 보아서 알 수 없으나, 평소에 정직하고 강개(慷慨)한 사람은 다른 때에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유독 모두 현명한 것도 아니며 지금 사람이라도 또한 모두 현명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대저 군자는 외로운 몸을 특별하게 세워 오직 국가의 근심만 하고 조금도 화란(禍亂)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가 화를 만나게 되면 국가는 따라서 멸망하는 것이니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

248) 위: 의심하고 불안함

자취를 성상께서 유의하시어 깊은 밤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인(宣人)이 죽은 뒤 두어 달이 못되어 군자는 물러가고 소인들이 진출했으니, 그 기미(機微)가 관계 있음이 이러한 것이다.”

하자,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이때의 대신이 여대방, 범순인<sup>249)</sup> 같은 사람이 있어 부족하지 않았었으나, 철종(哲宗)의 혼매함이 이르렀으니, 본래부터 선인(宣仁)에게 의심이 있던 제현(諸賢)들이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대신이 된 사람은 이미 국가에 몸을 맡겼으니, 위의(危疑)스러울 때에는 마땅히 힘을 다해 구언해야 하고 몸을 보존할 계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집의 박수문이 이세홍의 일을 논하자, 광조가 아뢰기를,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신이 진실로 자세히 압니다. 첨정(僉正)을 부정(副正)으로 삼는 것이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신 등이 이토록 논하게 되는 것은, 다만 그의 마음가짐이 지극히 음흉하고 험악하여, 부자간·부부간의 천륜(天倫)에 있어서 매우 패려(悖戾)한 짓을 하고, 또한 선량한 사류(士類)들을 모함하여 해치려 하기를 원수처럼 하니, 만일 시종(侍從)이나 대간 중에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사이(四夷)<sup>250)</sup>로 내쳐야 합니다. 신(조광조)의 형 집이 그의 집과 서로 가깝기 때문에 신이 유생(儒生) 때부터 함께 접하여 이야기 했는데 그의 말하는 것을 듣건대 지극히 흉악했고, 지금 입시(入侍)한 이연경도 아는 일이지만, 비록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만일 이 사람이 등용되어 그의 심술을 부리게 된다면, 한 손으로 선량한 사류를 모두 쓸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대간이 논하는 일이 더러 중지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이 사람은 결코 사판(仕版)에 둘 수 없는데, 이런 일을 오래도록 유난(留難)하시어 세월만 연장하니, 상하의 정이 서로 믿지 못하는 듯합니다.”

249) 여대방, 범순인: 송대(宋代)의 정치가들. 여대방의 자는 미중(微中), 시호는 정민(正愍). 범순인의 자는 요부(堯夫), 시호는 충선(忠宣)이다.

250) 사이: 사방 오랑캐 나라

하니, 연경(延慶)이 아뢰기를,

“신은 절친한 사이인데,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하니, 광조가 아뢰기를,

“세훈이 만일 권세 있는 요직에 있게 된다면, 비록 연경이라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자신이 담당하여 <말할> 것이지만, 지금 하는 벼슬이 과연 긴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연경이 전의 일을 의논하자, 당이 아뢰기를,

“근래에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겨 인재 양성하기를 과연 지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표(師表)될 만한 사람을 구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릇 유생들 가르치기를 법령으로만 몰아세울 수 없고 현명한 사표를 구득한 후에 자연히 따라서 흥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부제학 김식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을 때 사림(士林)들이 모두 대사성이 되었으면 하여, 마치 송(宋)나라 때의 손복(孫復)<sup>251)</sup>과 같았었는데 마침 과거에 급제하여 사성이 되고 조광조가 또한 동지(同知)가 되므로, 유생들이 모두 가서 모여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식은 부제학이 되고 광조는 대사헌이 되어 자주 가지 못하게 되매, 제생(諸生)들이 모두 실망했습니다.

부제학은 명사들 중에도 또한 될 만한 사람이 있지만 사표에 합당한 사람은 조종조(祖宗朝)에도 또한 드물게 있어, 세종조에는 김구(金堦)·김말뿐이었습니다. 윤탁이 비록 물망은 김식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순직하고 박학한 사람이어서 수동지(守同知)가 될 만하고 식은 대사성을 제배하기에 가합니다. 또한 식은 경연관으로 있기에 합당하니, 대사성으로 경연관을 겸임하여 평소에는 성균관으로 사진(仕進)하다가 때로는 더러 경연에 입참(入參)하도록함이 편리하겠습니다. 선조때에 유진이 이학(理學)을 알기 때문에 성균관관으로서 때로는 더러 경연에 입참하고 응기는 또한 예조 정랑으로서 입참 했었으니, 이는 또한 조종조에도 하던 일입니다. 부제학은 승지 김구, 이조 참의 신광한 같은 사람이 모두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근래에 문관으로서 명망있는 사람으로 겸관(兼官)을 삼아 왔다갔다하게 했었는데, 직무가 한 가한 틈이 없어 왔다갔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도로 폐지 했었으나 이번에

251) 손복: 송대(宋代)의 학자. 자는 명복(明復). 호는 수양자이다. 저서로 《역설(易說)·《춘추총론(春秋總論)》·《손명복집(孫明復集)》 등이 있다. 《송사(宋史)》 권432, 《송원학안(宋元學案)》 권2

김식, 윤탁, 이득전으로 하여금 오래 그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과연 자연 효과가 있게 될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의 뜻도 그러하다. 다만 홍문관은 중요한데 식이 경연관이 된 지 오래지 않았으니 지금 갑자기 개정함이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매, 당이 아뢰기를,

“사유(師儒)는 누구나 할 수 없으니, 제유(諸儒)들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아니고선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균관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서 인재가 모두 여기에서 배출되고, 외관(外官)에게 경연관을 겸임시킨 것이 또한 조종조의 고사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 ◎ 1519년(중종 14) 5월 27일(기미)

김세필을 이조참판으로, 윤탁을 수동지성균관사(守同知成均館事)로 정순봉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김구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김식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 ◎ 1519년(중종 14) 6월4일(병인)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글에 임하여 이르기를,

“무릇, 재변을 어느 일의 반응이라고 적실하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맹후(孟后)<sup>252)</sup>를 폐출하고, 제현<sup>253)</sup>을 귀향 보냈으니 천재를 부를 수 있는 일이다. 요사이 가뭄 징조가 심한 것도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매, 참찬관 김구가 아뢰기를,

“오직 자신의 마음이 성실하기에 달린 것이니, 군신(群神)을 접하거나 궁중(宮中)에 있을 때에 안과 밖이 한결같이 할 뿐이요 탄 데서 구할 것이 없습

---

252) 맹후: 송철종의 황후

253) 제현: 사마광, 정이, 문언박, 소식, 황정견 등을 말한다. 《원우당인전(元祐當人傳)》

니다. 백성이 주리고 곤궁한 것은 천재가 번갈이 생겨 연사가 풍년들지 않기 때문인데, 이래서 원통해 하는 기운이 응결되어 재변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에 임용된 사람이 절반은 천거된 사람인데, 신이 듣건데 이들이 백성에게 임하여 모든 시행하는 일이 모두 범상한 사람들과는 다르므로 백성이 혜택을 입는다 하니 이들은 모두 군·현에 임용한다면 백성의 곤궁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대신에게 달렸으니 대신이 극력 구하여 천거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또 천과(薦科)<sup>254)</sup>한 사람들을 지금 이미 임용하였으니 그 나머지 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조(銓曹)가 또한 모름지기 듣고 보아, 임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예로 대우하지 말고 혹 6품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추천받은 사람들을 만약 참봉(參奉)으로 삼는다면 어찌 능히 자신의 포부를 펴겠는가?”

하매, 영사 신용개가 아뢰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아 올리는 것이 가합니다. 비록 천거 받았더라도 모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구는 아뢰기를

“대신이 세세한 일까지 모두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 대신 대우에 또한 성의를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이미 위임했다면 현명 여부를 헤아릴 것 없이 공경하고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조종조에서는 대신을 매우 중하게 대우하여 병이 나면 문병가는 사자(使者)가 길에 잇달았습니다. 대저 대신 대우는 규례에 구애 받을 것 없이 일이 있으면 소대(召對)하여 마땅히 한 가정의 큰 중 부리듯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확실하게 그의 현명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거하지 못합니다.”

하고 지평 조우는 아뢰기를,

“외방의 훈도(訓導)는 거의 책임자가 아닌데다 또한 자중(自重)하지 못하기

---

254) 천과: 곧 현량과(賢良科)를 말하는 것. 이들에게는 전시(殿試)만 보였다.

때문에 능히 교회(敎誨)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근자에 추천받은 사람이 매우 많아 모두 예조(禮曹)에 기록되어 있으니, 각 고을 교관(敎觀)을 비록 일일이 이들로 임용 할 수는 없지만, 만일 큰 부(府)나 큰 군(郡)에 임용한다면 가하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큰 현자는 아니더라도 역시 한 고을의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니 취재(取才) 여부에 구애하지 않고 임용하여도 되고 만일 그런 소임에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道) 관 찰사에게 하서(下書)하여 직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소임에 나갈 것이며, 또한 그 실효(實效)의 정도를 보아 더러는 참봉, 더러는 직장(直長)으로 제배(除拜)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외방 학교가 점차 불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훈도의 소임이 지극히 천하기 때문에 생원 진사들도 오히려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희망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훈도가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거된 사람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더러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은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또한 외방의 수령도 오히려 다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훈도이겠습니까? 비록 일일이 가려서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큰 주(州)·군(郡)에는 가려서 보냄이 가합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6월 7일(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속통감(續通鑑)》을 진강(進講)하였는데 ‘제(帝)가 붕(崩)하자 단왕길 이 즉위 하였다.’는 대문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이때 일찍 태자(太子)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일찍 태자를 세웠다면 어찌 이런 폐단이 있었겠는가?”

하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세자 책봉(冊封)에 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신은 조종조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7세에는 으레 책봉하는 법이다. 또한 이 시절의 원자 교양이 지극히 중요하여, 어려서부터 교양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대신들이 힘써야 된다.”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분부가 이러하시니 곧 종사(宗寺) 만세의 복인데, 다만 대신들이 자주자주 왕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동궁의 요속(僚屬)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보양(輔養)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한갓 대신들 뿐이겠습니까? 홍문관 관원은 비록 나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가서 모시며 덕성을 보양 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대신이라도 다 현명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약 하나라도 사특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이게 된다면, 비록 원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해독이 적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홍문관 관원으로 하여금 그 곁에 가서 모시면서 원자에게 현명한 사대부 접하는 도리를 알게 한다면, 뒷날 세자가 되었을 적에 자연히 바른 선비들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이 비록 더러 가서 모신다 하더라도 한갓 곡진하게 예절만 행하려 하고 경계하여 가르치는 도움이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대신 중에서 주공(周公)같은 사람을 얻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대신이 원자에게 뵈일 때 잘못이 있음을 보게 되면 마땅히 경계하여 책망하고, 더러는 한 가정의 늙은 종이 아이를 안아 주듯이 해야 하는데, 신이 듣건데 대신이 비록 간다 하더라도 만나절을 모시지 못한다 하니, 이제는 모름지기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을 모두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 관원이 왕래하는 것도 또한 가하고, 동궁의 요속은 머지않아 차임(差任)하겠는데, 만일 대신들이 힘들여 교도하여 더러는 만나절 더러는 온중 일을 같이 있으면, 비록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또한 될 것이다. 광조가 지금 우려한 바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보도(補導)하는 설비를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세에 복을 쌓을 시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매,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원자가 천품이 총명하여 학문에 있어서 반듯이 능하지 못한바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전후좌우를 모두 바른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겨우 5세이므로 항시 오래 모실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항시 바른 사람이 가서 모시도록 함은 바른 사람을 꺼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대신이 직무를 버리고 날마다 가서 모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때로 가더라도 홀로 예절만 다하고 말것이 아니라, 더러는 교회(敎會)하기도하고 더러는 경계하여 책망하기도 하여 한갓 왕래만 하지 말아야하고, 또한 상계서도 세속 사례에 구애하지 마시고 매양 전내(殿內)로 불러들이시어, 무릇 선을 착하게 여기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이치와 그 당시의 정사가 잘되고 잘못된 까닭을 또한 순순히 말해주어 저절로 귀에 익도록 한다면 자연히 훈도(薰陶)되어 점차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민간의 병폐와 고통도 또한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귀에 쫓고 눈에 익으면 저절로 버릇이 지혜와 자라게 될 것이니, 이는 동방 만세의 복일 것입니다.”

하였다. 광조가 또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지금 국가에서 닦아 거행하는 일이 모두 선조에서는 거행하지 않던 일이요, 더러는 경장(更張)하는 것도 있는데, 뒷날에 소인들이 만일 소술(紹述)을 핑계삼아 모험하게 된다면 선량한 사람들이 반듯이 씨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이니, ‘소술’이란 말로 큰 화를 만들어 낼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1~2년 간에 대간이 한 일은 모두 뒷날에 소인들이 구실삼을 것들이어서,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한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는 폐단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의 문소전과 연은전은 곧 원묘인데 신을 섬기기에 번독스럽고 민생에게 폐가 있습니다. 비록 하루 아침에 헐 수는 없지만, 성학이 고명하시어 사리를 흰히 하시니 스스로 그름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세종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이로 본다면 더러는 사회에 밝지 못하신 듯싶습니다.

능·묘의 삭망제사와 문소·연은 두 전의 삼시 제사는 한갓 시끄럽기만 할 뿐 신을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 등의 말이 죽히 성상의 뜻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지만, 지극한 다스림을 보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신은 예 아닌 제사를 흠향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여자들이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니 모름지기 성상께서 유명한 이치를 살피시어 단연코 개혁 하신다면, 곧 만세의 공론에 맞고 민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종께서라도 만일 지금 같은 때라면 반드시 창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창시(創始)하신 뜻을 신이 미처 잘 알지 못하나 늘 세종조에 창건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요사이 춘추관이 《실록(實錄)》을 고찰 하건데 태종조에 문소전에 제사한 일이 있으니, 어느 때 창건 하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종조의 일을 경솔하게 고치기를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삼시 제사를 차리기는 매우 번거로와 겨우 철상(撤床)했다 도로 차리게 되니, 비록 용인(甕人)·선부(膳夫)라 한들 날마다 되풀이하는 것을 어찌 능히 한결같이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하는 사람이 과연 많기는 하나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6월 16일(무인)

부제학 김구 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논계한 정원 일을, 대신들이 체직하거나 파직함은 지나치다고 하였는데, 대저 대간의 책임은, 일이 기미(幾微)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비록 형적이 세미 한 듯 하더라도 논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에 대간이 논계한 말은 헤아리고 생각해서 한 것이요 또한 소견이 있는 일입니다. 근래에 대신들이 손쓰기를 더러 용이하게 하는 듯 하고, 대간의 기세는 점차 처음만 못하여 지는데, 무릇 일이 처음에는 비록 미미한 듯하지만 말류(末流)에는 마침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신 등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이런때에 있어서는 주상께서 반듯이 공론이 지향하는 바를 잘 살피시어, 조정의 기세가 세워져 든든하고 원대해지게 하셔야 하는데, 그 발단이 이때에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말은, 대간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서로 가타부타 하는 것인데 어찌 방해됨이 있겠는가? 이는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하였다.

◎ 1519년(중종 14) 6월 17일(기묘)

부제학 김구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기세는 붙잡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더러 소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대신이 망령되이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는 매우 중대하니 상께서 마땅히 스스로 그 기미를 깊이 고려하시어 미리 처치 하셔야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대간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로 승지를 파직함은 지나치기 때문에 서로 가타부타 하는 것이요, 무슨 뜻이 있어 손을 써 제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 1519년(중종 14)년 6월 23일(을유)

이계맹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유담년을 병조판서로, 최숙생을 판증추부사로, 정충량을 이조참의로, 신광한을 승정원 도승지로, 김구를 좌부승지로, 박세희를 동부승지로 이청을 사간원 사간으로, 박 훈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 1519년(중종 14) 6월 29일(신묘)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유관·김수경 등의 일을 아뢰니 체직 하도록 하였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부제학의 소임은 잡다한 일에 능한 사람에게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때의 공론이 부제학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데다, 아래 관원도 또한 가려서 시키니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유인숙이 부제학이었으니, 이른바 ‘잡다한 일에 능하다.’는 말은 인숙을 가르킨 것으로서 곧 임금을 깨우친 말이다.】

하고, 헌납 송지호는 아뢰기를,

“김구는 부제학이 된지 오래지 않아 체직하여 승지가 되었는데, 본원이 장차 유임을 청하려다가 승지의 소임이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6월 29일(신묘)

방유령을 병조참판으로, 민상안을 한성부 좌윤으로, 최한홍을 우윤으로, 윤자임을 승정원 우승지로, 한충을 동부승지로, 김구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광좌를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 ◎ 1519년(중종 14) 10월 6일(병인)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조종조 이래로 사람을 이(利)로 이끌어 상사(賞賜)에 절도가 없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접때 한날 이과(李頤)의 일로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들이 외람되게 공신의 칭호를 얻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한날 이과가 홀로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가서 잡아온 것이 무슨 기록할만한 공이겠습니까?”

하고 참찬관 김구가 아뢰기를,

“고변(告變)같은 일은 그것만으로 공이라 할 수 없으며, 훈구(勳舊)의 신하가 나라의 일에 노고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미쳤으면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대신의 직임은 중하거니와, 신이 듣건데 좌의정 신용개가 죽으매 임금께서 거애(擧哀)하고자 하셨으나 그 일을 곧 정지하셨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예전에 허조가 죽으매 세종께서 매우 슬피 곡하시어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는데, 지금도 이 말을 듣는자는 황송하고 감동됩니다. 허조는 참으로 어진 재상입니다. 잠시도 나라의 일을 잊지 않으므로 세종께서도 우대 하셨습니다. 대저 임금과 재상이 서로 돕는 것을 옛사람은 머리와 팔다리에 견주었으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과연 거액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예관 이 별전(別殿)이 없다하여 어렵게 여겼고, 또 그날 비가 내렸으므로 거행을 미루었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팔도에 어사를 보내어 전곡(錢穀)을 살핀다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은 감사에게 맡겨야 하며 임금의 덕이 닳이고 닳이지 않는 데에는 관계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과연 다른 일로 말미암아 아울러 살피게 한다면 옳겠으나, 따로 어사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호조가 군자가 부족하다고 아뢰었으므로 그런 것이다.”

하매, 좌찬감 이유청이 아뢰기를,

“성종 때에 평양의 곡식이 많이 소모 되었으므로 성종께서 듣고 따로 어사를 보내어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조광조【이때 대사헌 이었다.】가 아뢰기를,

“경기감사는 그 직임에 능하지 못하고, 듣건데 학교의 일이 매우 허술하다 하니 이제 논박하여 갈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만 그런 뜻으로 효유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효원은 성품이 용렬하고 학술도 없으니, 학교를 닦으려 한들 할 수 있으랴. 구박해서 하게 할 수도 없다.】

#### ◎ 1519년(중종 14) 10월 13일(계유)

불시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의 이르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도 힘들게 여겨 ‘내 정치가 이미 족하다.’

고 생각하지 않고 늘 천하의 한 물건이라도 안정할 데를 얻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더구나 후세의 임금이야 내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생각하여 백성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매, 참찬관 김구가 아뢰기를,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안정할 데를 얻지 못하게 한다면 어찌 임금의 도리이겠습니까? 옛 성인은 내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니와, 이 족이라는 글자가 치도(治道)를 크게 방해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더욱 잘 살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뜻이 마음에 생기지 말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0월 25일(을유)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 등이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 11월 29일(기축)

불시 경연에 나아갔다. 홍문관 관원 전수를 입대하게 하였는데 부제학 김구 등이 공신에 관한 일을 힘껏 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개정하기 어렵다.”

하매, 정원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 11월 3일(계사)

홍문관이 상소하여 공신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비현합(丕顯閣)<sup>255)</sup>에 나아가 부제학 김구를 인견하였다.【승지 박훈과 기사관 안정·조구령·이구 등도 입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차자를 보니 그 뜻이 과연 절실하다. 조정의 대신에게도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토록 고치지

---

255) 비현합: 경복궁 안에 있는 동궁의 편당



않겠는가?”

하매, 김구가 아뢰기를,

“아랫사람이 함께 청하는 까닭은 공의(公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는 공론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김구가 땅에 부복하여 매우 오래도록 대명 하였으나 임금은 잠자코 답하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년 11월 10일(경자)

홍문관이 면대를 청하니, 임금이 대사헌 조광조, 대사간 이성동, 부제학 김구를 인견하였다. 조광조 등이 힘껏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대신이 다들 옳지 않게 여기는데 임금의 뜻을 고집하시니, 아마도 임금의 뜻이 치우치게 매인 곳이 계신 듯합니다.”

하고 이성동이 아뢰기를,

“성려(聖慮)에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매인 사의가 계시다면 크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 11월 15일(을사)

밤 2고(鼓)금중(禁中)이 소요하므로, 승지 윤자임 공서린, 주서 안정, 검열 이구【모두 정원에 직숙(直宿) 했었다.】 등이 허둥지둥 나가보니, 연추문(延秋門)<sup>256)</sup>이 이미 활짝 열리고 문졸들이 정돈해 서 있었고, 근정전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니 청의의 군졸들이 전폐(殿陛) 아래에 좌우로 웅립하여 있었다. 윤자임 등이 밀어 제치고 들어가 곧바로 경연청으로 가니 합문의 안팎에 다 등불을 벌여 밝혔고, 합문 밖에는 병조판서 이장곤, 판증추부사 김전, 호조판서 고형산, 화천군 심정, 병조참지 성운이 앉아 있었다.

---

256) 연추문: 경복궁의 서문

윤자임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공 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니, 이장곤 등이 답하기를,

“대내에서 표신(標信)<sup>257)</sup>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소.”

하였다. 【《정원일기》에는 “임금이 편전에서 홍경주, 남곤, 김전 정광필을 비밀히 불렀고 이장곤, 안당은 뒤에 있는데, 조광조 등을 조옥(詔獄)<sup>258)</sup>에 내릴 것을 의논하였다.”

하였다.】

윤자임이 말하기를,

“어찌 정원을 거치지 않고서 표신을 냈는가.”

하고, 곧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계(入啓)하고자 하니, 승전색 신순강이 곧 나와서 성운을 불러 말하기를,

당신이 승지가 되었으니 곧 들어가 전교를 들으시오.”

하니, 윤자임이 외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였으나, 성운이 곧 일어나 들어가려 하니, 윤자임이 성운에게 외치기를, “승지가 되었더라도 어찌 사관이 없이 입대 할 수 있겠소?” 하고, 주서 안정을 시켜 성운을 말리게 하였다. 심정이 말하기를,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소.”

하고 드디어 성운의 띠를 잡고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성운이 심정의 팔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5~6인이 심정을 밀어냈다. 얼마 안 지나서 성운이 도로 나와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의금부에 내리라.”

---

257) 표신: 공문의 개폐, 야간의 통행이 금지된 시간 중의 통행허가. 군국의 긴급한 일에 관한 지시, 관원, 군사 등의 징소(徵召)등의 증명으로 쓰는표, 표신의 종류에 선전표신(宣傳標信), 휘지표신, 내지표신, 통행표신 등이 있으며, 모양도 원·방·예·곡등 여러 가지가 있다.

258) 조옥: 의금부의 옥

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승정원에 직속하던 승지 윤자임 공서린, 주서 안정, 한림<sup>259)</sup>이구 및 홍문관에 직속하던 응교 기준, 부수찬 심달원 이었다. 윤자임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금부<sup>260)</sup>에 명하여 우참찬 이자, 형조판서 김정, 대사헌 조광조, 부제학 김구, 대사성 김식, 도승지 유인숙, 좌부승지 박세희, 우부승지 홍언필, 동부승지 박훈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이후로는 사관이 참여하지 않았다.】

### ◎ 1519년(중종 14) 11월 15(을사)

금부의 당상들을 비현합에 불렀다. 정광필, 안당, 김전, 남곤, 이장곤, 홍숙, 성운, 채세영, 권예, 심사순 등이 입시하니, 임금이 성운에게 명하여 추고전지(推考傳旨)를 기초하게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 남양군 홍경주, 공조판서 김전,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 호조판서 고형산, 화천군 심정, 한성부 좌윤 손주, 병조참판 방유령, 참의 김근사, 참지 성운, 호조참의 윤희은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봉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sup>261)</sup>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측목(側目)<sup>262)</sup>하고 다니며 중족(重足)<sup>263)</sup>하고 섭니다.

사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유사에 붙여 그 죄를 분명히 비루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259) 한림: 예문관 검열의 별칭

260) 금부: 의금부의 약칭

261) 궤격: 언행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

262) 측목: 두려워서 바로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보는 것

263) 중족: 두려워서 활보하지 못하고 발을 포개모아 서 있거나 발을 좁게 띠어 걸음.

“죄인에게 벌이 없을 수 없고 조정에서도 청하였으니, 빨리 정죄 하도록 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한 사람이 중의를 모아서 죄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곤이 좋겠다.”

하매, 남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붓을 들고 엎드렸다. 정광필이 문안 가운데의 한 어구를 가르키며 아뢰기를,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듯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격하기는 하였으나,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그 정상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고쳐야 하겠다. 사람이 죄를 받음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해야 승복할 것이다. 조정의 뜻에 따라서하라.”

하였다. 그래서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윤자임, 박세희, 박훈의 이름을 쓰니, 임금이 이르기를,

“준도 아울러 써야한다. 심달원 같은 자는 셈할 것도 없다. 이구는 입직(入直)한 한림(翰林)인데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누구를 우두머리로 합니까?”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조광조를 우두머리로 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에게 대한 추고전지에, 상충 사람에게는 격론 하였다는 등의 말로 문죄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화부(和附)하였다는 등의 말로 문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김식 이상을 상충이라 하고, 윤자임 이하를 그 다음이라 한 것이다.】

하니, 임금과 좌우가 다 옳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들이 늘 한 짓은 다 정의에 핑계대었으므로 그 죄를 이름붙여 말하기 어려우니, 짐작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1월 15일(을사)

의금부에 전지를 내렸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봉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과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윤자임, 박세희, 박훈, 기준 등이 궤격한 논의에 화부한 일들을 추고하라.”

#### ◎ 1519년(중종 14) 11월 16일(병오)

정광필, 안당 등이 면대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들어오기 전에 추안(推案)<sup>264)</sup>을 먼저 들이라.”

하고, 드디어 추관 김진, 이장곤 홍숙 등을 인견 하고 나서 지만취초(遲晩取招)<sup>265)</sup>와 조율(照律)<sup>266)</sup>을 명하였다.

이에 김정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4세입니다. 나이가 젊고 우직한데다가 성품도 좁고 급한데, 외람되게 육경에 오르매 늘 스스로 조심하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여 논사 할 때에는 한결같이 올바른 데에서 나오게 하려고 힘쓰고 밤낮

264) 추안: 추고의 시말을 기록한 문서

265) 지만취초: 지만초사를 받음. 즉 죄인에게 자복하는 공초를 받아내는 것. 지만은 ‘자복이 늦었다’는 뜻으로, 죄인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여 오다가 늦게 승복하니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266) 조율: 율문에 조준함. 즉 어떤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 조문을 찾아서 해당 시키는 것.

으로 근심하여 왔을 뿐입니다. 서로 봉비를 맺고 궤격이 버릇이 되어, 국론이 전도 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한 일은 신에게는 참으로 없습니다.”

하였고, 김구는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 32세입니다. 성품이 본디 어리석으나, 다만 고인·사우의 도움을 사모하여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교유하였을 뿐입니다. 인물을 진퇴(進退)<sup>267)</sup>하는 것은 하류가 할 일이 아니며, 착한 자를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여 한갓 공론을 가지고 서로 시비 하였을 뿐입니다. 봉비를 맺고 궤격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다는 것은 신의 뜻과는 다릅니다.”

하였고, 김식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외람되게 천은을 입어 뽑혀서 대관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하여서는 대사성으로 승수 되었으므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권요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물을 진퇴한일이 전혀 없으며, 봉비를 맺고 궤격이 버릇이 되어,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였다는 것은 신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였고, 조광조는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8세입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믿는 것은 임금의 마음뿐입니다. 국가의 병통이 이의 근원에 있는 줄로 망령되게 생각하여 국맥을 무궁한 터전에 새롭게 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였고, 윤자임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2세입니다. 성품이 본디 광우하나, 다만 옛사람의 글을 읽어서 시비를 조금 압니다. 국가에서 일을 논할 때에 혹 조광조, 김식, 김구 등과 서로 뜻이 같으므로 함께 교유하였을 뿐입니다. 그 논의가 궤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며, 사사로이 서로 부화하였다는 것은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고, 기운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28세입니다. 젊어서부터 옛사람의 글을 읽었으므로, 집에서 효제를 다해야하고 나라에서는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

267) 진퇴: 천거하거나 배척함

뜻을 같이하는 선비와 고도를 강구하고 국가가 반드시 요순(堯舜)의 정치에 이르게 하고자하여 선한 자는 허여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미워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젊어서부터 사귀어 왔으며, 김식, 김구, 김정은 늦게 상종하였는데, 그 논의가 궤격한지는 모르겠으며, 함께 교유하였을 뿐이고 서로 부화한 일은 신에게는 참으로 없습니다.”

하였고, 박세희는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29세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뿐 아니라 성품도 소우(疏愚)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행검(行檢)이 없으나 옛사람의 글을 읽었으므로 시의를 참작하여 일에 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신의 직분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신이 젊어서부터 교유하였고 김식, 김정, 김구도 늘 교유하였으나, 그 논의가 궤격한지는 모르겠으며, 상종하였을 뿐이고 참으로 서로 사사로이 부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고, 박훈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6세입니다. 성질이 본디 미열하나, 옛사람의 글을 읽었으므로 입심, 행기를 옛사람과 같이 하기로 스스로 기약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고 밤낮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또 사우가 없으면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과 서로 교유하였을 뿐이고, 그 논의가 궤격한지는 모르겠으며, 사사로이 서로 부화하였다는 것은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1월 16일(병오)

김전, 이장곤, 홍숙이 조광조 등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었다.

“원율이 없으므로 비율로 맞추었으나, 지극히 과중하므로 신등은 크게 몰랐습니다. 듣건대 조광조 등이 지만취초 때에 다들 통곡하며 ‘성명만 믿고 국사를 위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무슨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하기에 신 등이 이 말을 듣고 매우 측은하였습니다. 이 율로 죄주면 만세에 관계될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의 옥중소(獄中疏)와 함께 들였다. 그 조율에는,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봉비를 맺어,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



와 뜻이 다른 자는,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다 참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곧 《대명률》의 간당조(姦黨條)이다.】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은 조광조 등의 궤격한 논의에 부화하였으니, 죄는 수종(隨從)이므로 1등을 감하여 각각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하고 고신(告身)<sup>268)</sup>을 진탈(盡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고, 조광조 등의 옥중소에는,

“모두 망령되고 어설프며 우직한 자질로 성조를 만나 경연에 출입하여 경광을 가까이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임금의 성명만을 믿고 우충(愚衷)을 죄다 말하여, 못사람의 시기를 범하되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아서 우리 임금이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제물을 위한 꾀이었습니까? 천일이 비추는 아래에 다른 사심이 없었습니다. 신 등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나, 사류의 화가 한번 시작되면 뒷날의 국가의 명맥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천문이 멀어서 생각을 아를 길이 없으나 잠자코 죽는 것도 참으로 견딜 수 없으니, 다행히 친히 국문하시는 것을 한번 허가해주시면 만 번 죽더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뜻은 넘치고 말은 막혀서 아를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1월 16일(병오)

정부, 육조, 한성부가 동사(同辭)로 아뢰기를,

“이제 조율을 보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서로 봉비를 맺었다는 말을 저들이 승복하지 않고 증험도 없는데, 이 율로 죄주면 성덕에 크게 누가 될 것입니다. 면대하여 친계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당초의 마음은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자 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268) 고신: 관작을 제수하는 사령서

조정에서 이와 같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조광조, 김정은 사사하고, 김식, 김구는 장 1백에 처하여 절도(絶島)에 안치(安置)<sup>269)</sup>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은 장을 속하고 고신을 진탈하고 외방에 부처(付處)<sup>270)</sup>하도록 하라. 이렇게 곧 판부(判付)<sup>271)</sup>하라.”

하매, 기사관 채세영, 이공인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나라의 일을 위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대신에게 다시 물어서 판부 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상세히 의논 하였다. 이렇게 판부하라.”

하였다. 그래서 김근사가 돌아보고 채세영의 초필을 빼앗아 판부를 만들자 하였으나, 채세영이 곧 붓을 가지고 멀리 물러가서 허용하지 않으며 또 아뢰기를,

“이것이 큰 일이나, 임금의 말이 한번 내리면 고치기도 어려운 것이니,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김근사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다시 물어서 판부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하여 결단해야 하겠다.”

하였다. 정광필, 안당, 김전, 이장곤, 홍숙이 입대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의 조율은 같다. 그러나 4인의 죄가 다 같은가 차이가 있는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

269) 안치: 《대명률》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바닷가의 황무지 등에 보내어 가족이 모여 살 수는 있게 하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형벌

270) 부처: 《대명률》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까운 도에 보내어 그곳 수령의 처지에 맡겨 살 곳을 정하게 하며, 가족이 모여서 살 수는 있으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형벌.

271) 판부: 옥사의 심리를 끝내어 품신한 사안에 대하여 임금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

“저 4인의 죄상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으며, 임금께서 무슨 율로 죄주려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율에 따라 죄주려 하신다면 2~3등을 감하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털끝만한 죄라도 실정보다 지나치게 벌준다면 크게 성명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무정한 일 이므로 신 등이 조율할 때에 서로 보면서 실색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율공사(照律公事)를 굽어보며 점검 하는데 차마 말을 내서 하지 못하는 기색이 보이는 듯하더니, 한참 있다가 정광필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조정에서 죄주기를 청한 일이므로 가볍게 죄줄 수 없다. 조광조, 김정은 사사하고, 김식, 김구는 절도에 안치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정광필이 놀란 빛으로 부복(府伏)하여 아뢰기를,

“확실한 일일지라도 성명의 조정에서 어찌 이 율로 사류(士類)를 죄줄 수 있겠습니까?”

성종조(成宗朝)에서 임사홍의 죄가 이 율에 합당할 만 하였는데도 이것으로 죄주지 않았습니다. 임사홍은 참으로 간교한 사람이니, 조광조에게 임사홍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율로 죄줄 수 있겠으나, 워낙 그렇지 않은데 어찌 다른 뜻을 가졌었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였을 뿐입니다. 신이 비록 미열(迷劣)하여 선(善)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나, 어찌 살육(殺戮)하는 일로 임금을 인도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심지는 조금도 비뚤지 않은데 사사(賜死)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신이 추관(推官)으로서 추국(推鞠)에 참여하였는데, 조광조 등이 말하기를 ‘성명을 밋고 국사를 위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도리어 이렇게 되었다.’ 하므로,

듣고서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성명의 조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조광조 등은 다 젊은 사람이니 이는 어설프고 곧기만한 소치인데 어찌 심한 죄를 쥐야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정은 신에게 삼촌질(三寸姪)이 되는데, 평생에 청류(請流)로 자처하였습니다. 신이 저 사람을 감싸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명의 조정에서 이 율로 사

대부(士大夫)를 죄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임금이 살육의 꼬투리를 열면 국가의 기맥(氣脈)이 크게 상할 것이니, 더 짐작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중한 일이므로 갑자기 결단할 수 없다. 반복하여 깊이 생각해서 결단하겠으니 대신들은 우선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1월 21일(신해)

정부(政府)에 하교(下敎)하였다.

“아, 내가 덕(德)은 밝히지 못하면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뜻만 간절하므로, 인물을 알아보는 명철(明哲)이 없어 사람을 쓰거나 버릴 때에 착오가 많았으니 매우 부끄럽다. 요전에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이 함께 시종(侍從)으로 있으면서성리(性理)의 학문을 조석으로 권강(權講)하기에 내가 그들의 사람됨이 내 정치를 도와 이룩하는 데에 참여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좋은 벼슬을 가려서 주고 자급(資級)의 차서를 뛰어넘어서 옮기매, 몇 해가 안 되어 다들 현요(顯要)의 반열(班列)에 발탁되었으니, 내가 대우를 부족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조광조 등이 서로 결탁하여,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해서,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조종(祖宗)의 법은 지킬 것이 없고 노성(老成)한 사람들의 말은 채용할 것이 없다 하며,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sup>272)</sup>이 버릇되게 하고, 일을 의논할 때에도 조금만 이의를 세우면 반드시 극심한 말로 배척하여 꺾어서 저희를 따르게까지 하였다. 그래서 국론(國論)이 전도되고 조정(朝政)이 날로 글러가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탄(憤嘆)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이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제 그들이 한 짓을 살펴보면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것이 된다. 일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끝내 용서할 수 없으니,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려서 백관(百官)에게 명시해야 마땅하다. 다만 전일 시종의 신하였음을 생각해서 말감(末減)<sup>273)</sup>하여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원방(遠方)에 안치

272) 궤격: 정상을 벗어나 과격함

273) 말감: 가장 가볍게 처벌함

(安置)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은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한다. 각각 죄에 따라 죄주는 것이니, 이것을 내가 그만둘 수 있겠는가! 중외(中外)에 포고하여 모두가 내 뜻을 알게 하여라.”

【남곤(南袞)이 기초(起草)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2월 11일(신미)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유보가 강독(講讀)하던 글 가운데에 있는 이강(李綱)의 ‘법도와 기강이 아주 통속(統屬)이 없다.’는 말을 들어 지금 기강이 해이한 데에 대해서 논급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저 명분이 정해지고 조정이 엄숙하면 기강이 절로 설 것이다. 근일의 병통은 옷 사람이 잘 단속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매, 유보가 아뢰기를,

“기강을 세우려면 형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바르게 되면 조정이 절로 엄숙해지고 기강이 절로 서나 형법만을 숭상하면 국맥이 도리어 사라질 것입니다. 근래 시사(時事)를 보면 기강이 아주 퇴폐하였으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이 없어졌으므로, 상하에 분별이 없고 선후가 전도되며 당상(堂上)과 낭관(郎官) 사이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매, 영사(領事) 정광필이 아뢰기를,

“송희종(宋徽宗)은 임금다운 큰 도량이 없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화석(花石)에 뜻을 붙였고, 원우(元祐)<sup>274)</sup> 이래로 조신들이 서로 경복(傾覆)하여 군자가 공격하기도 하고 군자가 소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였으므로 인재가 아주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송나라는 그리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난망(亂亡)

---

274) 원우: 송 철종(哲宗)의 연호

의 조짐은 본디 한길만이 아닙니다. 송나라와 지금은 다르기는 하나 다르다 하여 염려하지 않으면, 그 한 생각이 발하는 데에 따라 홍망이 갈라질 것이며, 일이 장차 굴러질지도 모르는데 염려하지 않는다면 기강이 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 이 이르기를,

“기강을 세우기에 바쁘다하여 서두르려 한다면 온편치 못할 것이다.”

하매, 집의(執義) 유관이 아뢰기를,

“접때 기강이 퇴폐한 것을 걱정하여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만 하고 엄하게 다스리기에만 힘썼으니 이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헌부(憲府)가 이 뜻을 알고 한다면 될 것이다.” 하매, 유보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근래 조종조(祖宗朝)의 구법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 조광조 등을 죄줄 때에 기강이 아주 없었다. 유생이 상소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겠으나 문을 밀치고 궐정(闕廷)에 마구 들어왔으며, 유생은 따질 것도 없으나 조사(朝士)까지도 그러하여 마치 싸우는 것 같았다.”

하매, 유관이 아뢰기를,

“이번에 유생들이 궐정에서 통곡한 것은 매우 사람의 정리에 맞지 않습니다. 늘 저희끼리 마치 못 미칠세라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더니 죄받던 날에는 통곡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정리가겠습니까?” 하고 헌납(獻納) 남효의가 아뢰기를, “조금만 기강이 있다면 재상의 집이라 해도 곡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궐정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연경·이희민은 대관(臺官)으로서 다투어 궁문에 들어와 옷을 찢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싸움이지 나라의 일은 아니다.” 하매, 검토관(檢討官) 이환이 아뢰기를, “송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휘종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유래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쇠퇴한 뒤에 나라의 형세가 어지러워지면 슬기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강에 통속이 없으니, 종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근래 형제 숙질 사이에도 그 잘못을 남에게 밝혀 말하고, 부자간일지라도 숨기지 않는 것이 곧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카롭게 나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심과 풍속의 시비와 향배가 이러하니, 임금께서는 사(邪)와 정(正)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부형이 용렬하더라도 그 자제를 가르쳐야 하거니와, 자제가 도리어 부형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전에 듣건데, 자제가 하는 짓을 부형이 막아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부형이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부형의 잘못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임금께서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적발하여 백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찾아내어 죄주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하다.” 하매, 참찬관(參贊官) 김희수가 아뢰기를,

“이따금 한두 사람의 부형의 잘못을 말하기를 하나 한때의 사람들이 어찌 다 그럴겠습니까? 상하가 다 옳지 않다고 말해서 스스로 제가 그르다는 것을 알게 하면 그 버릇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부에서 추고하는 객윤원의 일에 있어서 현부(憲府)가 제 뜻【현부의 뜻이다.】을 좇지 않는다 하여 그 서리(胥吏)【금부의 서리이다.】에게 매를 쳤으니 매우 온당치 않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황형이 아뢰기를,

“군자와 소인은 얼음과 숯과 같은 형세이니 자세히 밝혀 가리면 자연히 바루어질 것입니다. 한(漢)나라에서 현량(賢良)을 책시(策試)하여 뽑을 때에 넓은 천하에서도 겨우 한둘을 얻었을 뿐인데, 더구나 좁은 우리나라에 어찌 현량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현량과의 일은 시비가 판연합니다. 뽑힌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 아래에 주기(註記)한 행적이 사실과 크게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무리는 다 선거에 들었고 외방 사람은 겨우 한둘이 있을 뿐이니, 조종의 구법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만세에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입격한 대책(對策)중에 는 문리도 이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고 장원(壯元)의 대책도 좋지 않았습니니다.” 하고, 특진관 한형윤이 아뢰기를,

“그때 다들 세력이 치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어기지 못하였으나 장손손, 조계상은 시사를 말하다가 죄에 걸려 폄출(貶黜)당하였습니다. 당시에



누가 몰라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임금께서 환히 아셨으니 곧 혁파해야 합니다. 대신이 당초에 잘못하고서 이제도 혁파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니, 신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남효의가 아뢰기를, “신이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있을 때에 그 일을 맡았으므로 보았습니다. 영의정【정광필을 가리킨다.】이 도당(都堂)에서 그 불가함을 크게 주장 하였는데 좌우에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신도 그 집에 가서 부당하다고 말했으며, 판서 권균도 어렵게 여겼으므로 예조(禮曹)가 당초에는 지체하였는데, 간원(諫院)이 아뢰어 예조를 추고하매 얼마 안가서 권균이 갈리고 남곤, 이제맹이 서로 이어서 수행하였습니다.

【남곤, 이제맹은 다 판서를 지냈다.】정광필이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말하고서 이제는 의논하는 것이 이리하니 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향거리선(鄉舉里選)의 법은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뒤에 점점 거짓이 많으므로 정자(程子)도 ‘뒤에는 거짓이 많았다.’ 하였으니, 선비가 출신하려면 과거에 응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이래로 조금이라도公道(公道)를 보존한 것은 오직 과거 뿐 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죄다 무너뜨렸습니다. 친림(親臨)하여 하례 받은 일은 헤아릴 것이 못 됩니다.” 하고 이환이 아뢰기를,

“현량과 뿐 아니라 올 가을의 별시(別試)도 다 그 문하의 사람들을 뽑아서 했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제까지 분관(分館)하지 않았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바야흐로 합방(合榜)하여 파직할 것을 논하고 있으므로 아직 분관하지 않았으며 또 승문원(承文院)이 먼저 가린 다음에 타관(他官)에 분속(分屬)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이 과방(科榜)의 신래(新來)가 선생(先生), 장자(長者)에게 무례하므로, 사관(四館)이 경연(慶宴)에 가지 않았고, 승문원도 가려 뽑으려 하지 않았다.】안당, 남곤 등이 신에게 말하기를 ‘읽기 어려운 대책 하나가 있다.’ 하였는데 조광조 등은 ‘이것은 아무의 대책인데 그 인물이 쓸만한 사람이니 뽑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인물이 쓸만하다 하여 합격시켰다면 매우 옳지 않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였으나,

좌우가 다 이름을 대지 않았다.【곧 성수종인데, 그 이름을 말하기 어려우므로 대답하지 않았다.】 김희수가 아뢰기를, “이자가 도총부(都總府)에 입직(入直)하여 신을 불러서 공사(公事)를 의논한 뒤에【그때 김희수는 승문원판교였고, 이자는 제조(提調)였다.】

함께 그 대책을 보았는데, 신이 이자에게 ‘사재(四宰)【이자는 우참찬이었다.】는 대책을 알아보는가.’ 했더니, 이자가 ‘갓가지로 살펴봐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남곤이 대제학으로서 시관이 되었으니 시장 안에서 선비를 책시(策試)하는 일은 문형(文衡)을 맡은 자가 주장해야 마땅한데, 조광조, 김구, 김식이 강제로 마음대로 하였으니 어찌 옳겠습니까?”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한 집에서 4인을 죽이는 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일이겠습니까! 또 김식은 승선 부정(崇善副正)과 혼인을 맺었는데 승선의 아내는 바로 반성위(班城尉) 강자순의 서출입니다. 제 집을 귀하게 하려고 반성의 첩을 후실이라 하고는 개간을 사주하여 논집하게 하였으니 매우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남효의가 아뢰기를,

“저 사람을 우러러보는 자는 다 이욕(利慾)을 가진 자입니다. 예전에는 출신(出身)<sup>275)</sup>이면 사관(四館)에 분속(分屬)하고 문음(門蔭)<sup>276)</sup>이면 참봉이 되었다가 점차로 승진하였는데, 근래는 지나치게 탄핵하여 천거된 사람이면 곧 6품의 벼슬에 제수되므로 사람들이 다 그쪽을 붙좃았습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조정이 존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환이 아뢰기를,

“근자에는 사람들이 다 나라의 형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알았으나 그때 경연에서 아뢰거나 사석에서 말하면 반듯이 배척하므로,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종께서 음으로 도우시고

---

275) 출신: 문과,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사람

276) 문음: 급제하지 않고 부조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오른사람.

하늘이 성충을 유도하여 시원히 내렸으나 지금 그 시비를 말하는 대신이 한 사람도 없고 전일 정국공신(靖國功臣)의 개정 여부를 논하던 일은 크게 관계 되지 않는 것인데도 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복합하여 마치 위망이 당장 닥친 듯이 극언하였는데 이제는 도리어 물러나 움츠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미혹하고 용렬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형세가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방을 혁파하면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죄를 더 주면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붙쫓은 자를 죄다 다스릴 수 없으며 저들의 죄가 어찌 귀양 보낼 죄보다 크겠습니까? 이제 백관을 거느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저들의 죄를 정할 때에 육조의 장관 이상은 가하다 하고 참판이하는 불가하다 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이처럼 한결같지 않으므로 인심이 인정되지 못하고 시비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대저 시비는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하매, 김희수가 아뢰기를,

“순 임금은 양단을 잡아 그 중도를 백성에게 시행하였으니, 이것은 만세의 제왕이 본받을 일입니다. 아랫사람들의 의논이 폭주하면 임금께서는 중도를 써서 선하면 따르고 악하면 시행하지 마실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은 구차하게 하나로 합치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량과는 일이 한가지 인데도 의논이 다르므로 말하는 것이다.”

하매, 김희수가 아뢰기를,

“정승을 두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하료에게 모의해서는 안 되는데, 안당이 정승이 될 때에는 대신과 모의하지 않았습디다. 신이 듣건대, 성종께서 널리 복상(卜相)하고자 참의 이상으로 하여금 궐정(闕廷)에 모여서 의논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한형운이 아뢰기를,

“그것은 신이 주서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상참(常參)<sup>277</sup> 뒤에 대신에게 명하여 모여서 복상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허종이 아뢰기를 ‘이미 신을 정승 자리에 두셨으니 여러 사람들과 복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드디어 노사신(盧思愼), 이극배를 천거하여 마침내 이극배가 정승이 되었습니다.”

하고, 김희수가 아뢰기를,

“지금도 정승 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니 대신과 의논하셔야 합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신용개가 죽은 뒤에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도 발탁해서 정승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하고 아랫사람이 있었으나, 임금께서 가리실 일이요 신하가 말할 일이 아닙니다. 안당이 당초 정승으로 들어갔을 때에 인망에 매우 맞지 않았는데, 오준, 이영부만이 피하고 논하지 않으므로 사체에 어그러졌다 하여 계청해서 파직하였습니다. 안당이 정승에 합당치 않은것은 소민도 다 압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대간이 한 사람의 소견으로 말한다면 따를 수 없겠으나, 공론에 의한 것이 라면 따라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따라야 할 일은 곧 들어 주었거니와, 현량과를 혁파 하려는 뜻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인재가 아까워서 현직에만 서용하지 말게 한 것이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2월 14일(갑술)

생원 화이옥과 유학 윤세정, 이내 등이 상소 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

277) 상참: 조의(朝儀)의 하나.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돈령부·육조의 당상관 사헌부·사간원에서 각각 1원 및 경연의 당상관·당하관 중에서 각각 2원 등이 매일 번갈아 임금 앞에 나아가 배례하는 일. 이때에 아뢰 일이 있으면 전에 올라가 아뢴다. 《경국대전》예전(禮典)조의(朝儀).

“집때 성충이 스스로 깨달아 여덟 신하를 귀양 보내시니, 중외가 모두 감복하여 ‘성명이 요순과 같으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의 덩굴이 뻗어가는 것이 걱정되면 서린 뿌리를 끊어야 하며 덩굴이 뻗으면 도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인후에 여유가 있으나 강단에 부족하시고, 대신은 살육을 아뢰는 것을 어려워하나 먼 계책이 없으므로, 삼묘의 찬축(竄逐)<sup>278)</sup>은 보였으나 양관(兩館)의 주살(誅殺)<sup>279)</sup>에는 너그러웠습니다. 법을 굽혀 은혜를 펴는 것이 제왕으로서 아름다운 일이지는 하나 죽을 죄인 데도 용서하는 것은 조종께서 허락하지 않으실듯합니다. 정법은 우리 조종께서 만드신 것이고 후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가벼이 변경하실 수 없고 신하는 더욱이 마음대로 변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죄를 결단할 때에 《대명률》을 쓰는데, 《대명률》도 고황제(高皇帝)<sup>280)</sup>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의 법을 변란 하는 신하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은 조종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죄율이 참형에 해당 하는데도 낮추어 유형에 처하는 것은 고황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7~8인의 죄지는 신하를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조종과 고황제를 이렇게 업신여기시니, 당사와 후세에서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공과 관·채는 형제인데 주공이 죽었고 석작과 석후는 부자간인데 석작이 죽었으나<sup>281)</sup>, 군자가 주공, 석작을 순신이라 일컬었으니, 그 대의에 의하여 친족을 멸한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한 무제가 소평군을 죽일 때에 ‘한 아우 때문에 선제의 법을 어긴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묘(古廟)<sup>282)</sup>에 들어가겠는가?’ 하고 곧 법대로 논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룩하신 전하께서 죄인을 죽이는 것을 아까와하여 도리어 주공, 석작, 한무제 보다 못한 일을 하십니까?

278) 찬축: 《서경》 순전(蕪典)에 “삼묘를 삼위(三危:지명)로 찬축하였다.” 하였다. 삼묘는 사흉(四凶)의 하나인 만족. 순 임금이 난을 일으킨 삼묘를 쫓아낸 고사를 인용하여 조광조 등의 유배를 비유해 말한 것이다.

279) 주살: 공자가 노 나라의 사구가 된지 7일 만에 다섯가지 큰 악을 경유한 대부 소정묘를 양관 아래에서 죽였다. 양관은 왕궁의 중문위에 있는 두 누. 《공자가어》.

280) 명태조

281) 석작은 춘추시대 위 장공 때의 대부. 공자 주우가 군사를 좋아하므로 석작이 장공에게 간하였으나 장공이 듣지 않았고, 또 석작은 자기 아들 석후가 주우와 노는 것을 말했으나 금할 수가 없었다. 장공이 죽고 환공이 서니, 주우가 환공을 시해하고 석후와 함께 진 나라로 갔는데 석작이 진나라 사람에게 청탁해서 잡아다가 주우와 자기 아들인 석후를 죽이고 공자 진을 임금으로 세워서 위나라를 안정시켰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3년 4년.

282) 고묘: 고조의 사당

신 등은 그 당을 갖추어 말하겠습니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등 4인을 권세있는 자리에 나누어 차지하여 노성, 한충, 정은, 박훈, 윤자임, 기준, 박세희는 조아가 되고, 최산두, 장옥, 이충건, 이희민, 조광자는 응견이 되고 안당, 이자, 김안국은 우익이 되었습니다. 형세로 서로 의지하고 안팎으로 서로 도우면서 날마다 폐지하는 것은 조종의 구법이요 날마다 끌어 들이는 것은 일 좋아하는 신진이요 날마다 배척 하는 것은 자기들과 배치되는 정인이었습니다. 무리를 나누고 당을 합하여 궤습(詭習)<sup>283)</sup>을 격렬히 양성하여, 아비를 비평하는 아들을 곧다하고 형을 비평하는 아우를 공정하다 하였습나다. 위로는 조종의 법을 고치고 가운데로는 전하의 조종을 흐리게 하고 아래로는 우리나라의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신하로서 이런 큰 죄를 졌는데 목 베지 않고서 무얼 기다리겠습니까? 《춘추》가 죽었거니와 신 등이 목 베어야 한다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형은 입을 다물어 감히 자제를 가르치지 못하고 조정은 치열한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하께 고하지 못하였으니 조아가 조광조, 김식, 김정 등이 있는 것만을 알고 전하께서 계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늘이 성충을 유도하여 사심을 밝게 보시게 하매 혁연(赫然)히 진노하여 먼저 8인을 다스려 부처, 안치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신민이 비로소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군력이 전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전하께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8인의 신하의 죄는 죽어야 마땅한데 특별히 안치·부처 하셨으니 전하께서 간사한자의 뜻에 대하여 매우 환히 아시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이제 크게 간사한 것이 제거되기는 하였으나 잡초가 아직 제거되지 아니하여, 조아, 응견, 우익과 그 나머지 아랫것들이 조정에 가득 차 있고, 아래에서 부화하는 백면서생(白面書生)도 많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세월이 오래 되어 천노가 조금 풀리시고 구신은 늙어서 물러가고 대간은 체직되어 이 무리가 틈을 타서 예전처럼 도사리고 안치·부처한 신하도 따라서 은혜를 입어 점차로 진용 되면, 변란과 경장이 예전보다 갑절로 더할 것입니다. 전하의 국가가 극심하게 손상되고 조종의 정법이 극심하게 손상 되었으니, 죽이더라도 국가·정법의 손상을 보상 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조종의 노여움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자와 같은 주살(誅殺)을 행하여 빨리 신민에게 보답 하소서.

283) 궤습: 정상을 벗어난 버릇

전일 전하께서 요순과 같이 되려는 뜻을 두고 당우(唐虞) 때와 같은 정치를 간절히 바라시다가 마침 이런 사람들을 얻어 모두 현직에 발탁하시매, 3~4년이 못되어 지위가 경상(卿相)에 이르렀고, 그들을 좌우에 두고 고문에 응하게 하여 말하면 들어주고 계책하면 따라서 조금도 어기는 의논이 없으셨으니, 요순과 같이 되기가 어렵지 않고 치도(治道)가 광대(廣大)하고 화락(和樂)해야 할 터인데, 근년 이래로 세도는 더욱 혼란해지고 인심은 더욱 궤사(詭辭)해져서 아비 노릇 못하는 아비와 자식 노릇 못하는 자식이 많고, 형 노릇 못하는 형과 아우 노릇 못하는 아우가 많으니, 오상의 실도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한창 효제를 떠벌이고 태평을 가식하여 당우 때와 같은 치세가 올 것이라 하였고, 전하께서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험(應驗)은 위로 천지를 감동시켜, 넘어졌던 나무가 절로 일어나고 8월에 서리가 내리고 못 꽃이 겨울 에 피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5월에 지진하고 8월에 해일하고 바위가 절로 울고 견탄(犬灘)의 물이 7일 동안 붉고 해에 양훈(兩暈)이 있고 백홍(白虹)이 해를 꿰었는데, 이런 큰 재변은 전하께서 친히 들으셨습니다. 그 밖에 애매하여 잘 나타나지 않은 작은 재변은 이루 셀 수 없는데다가, 홍수와 가뭄이 잇달아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거듭되어, 가난한 백성이 생업을 잃고 유리(流離)하여 사망으로 흩어진 자가 4년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의 마음을 속였으니 어찌 재변에서 징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전하를 속인 자는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으나 하늘을 속인 자는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들을 죽여서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 하소서. 또 무리의 괴수를 죽여서 그 나머지에게 위엄을 보이면 오히려 위촉되고 조정이 안정될 것인데, 무엇이 어려워서 하지 않으십니까?

또 신 등은, 대신이란 원수(元首)의 고굉(股肱)과 같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수가 병들면 고굉이 구제하는 것이 의리인데, 오늘날의 신하 정광필은 수상(首相) 자리에 있으므로 백관을 거느리고 전폐(殿陛) 아래에 서서 위로 천충(天寵)에 아뢰고 아래로 군신(君臣)에게 타일러 정치를 문란하게 한 대부(大夫)를 죽여서 조정을 바로잡는 것이 직분인데도 능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뇌정(雷霆) 같은 위엄을 범하여 부월(斧鉞)의 주살을 늦추며 후환을 두려워하여 시종 구제하니, 저런 정승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저 근일의 조정의 재상들은 전하께서 결단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무리가 다시 기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흔히 양단(兩端)을 잡고 망설이며, 오직 4~5인의 대간, 시종 외에는 한 마디 끝은 말을 내어 전하를 위해 공언하지 못하니, 신 등은 전하와 군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귀양 간지 한 달 남짓 되어도 임금의 노여움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나, 죽이고자 청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쾌하게 결단하지 못하였다. 생원 황이옥이 이를 알아차리고 망령된 이내, 윤세정 두 사람과 함께 상소하여 조광조를 극심하게 헐뜯고 사류를 많이 끌어내어 조아, 우익, 응견이라 지칭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곧 조광조 등에게 사사(賜死)하고, 따라서 이옥 등을 칭찬하여 술을 공궤(供饋)하라고 명하였다. 이옥이 처음에는 조광조 등이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 신구(伸救)하는 소를 기초하여 벗들에게 보였으나 마침내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고쳐 기초하여 헐뜯어 임금의 뜻을 맞추니, 사람들이 다 ‘본디 성품이 흉악한 자다.’ 하였다. 이내와 윤세정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자들이었다.】

#### ◎ 1519년(중종 14) 12월 16일(병자)

임금이 비현합(丕顯閣)에 나아가 시사(視事)하였다. 대사헌 이항·대사간 이빈 등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어제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30여 인을 봉당으로 죄줄 수 없다. 죄다 소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신 등은 봉당이란 설이 신 등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광조 등이 죄받을 때에 교결(交結)을 명목을 삼았으므로 그것을 말한 것이며 이 사람들을 죄다 소인이라고 아뢴 것도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였으므로 봉당이라 한 것이며, 봉당은 본디 소인이 하는 일이므로 봉당이란 이름을 풀이하면 반드시 소인이라 하게 됩니다. 대저 마음이 다른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공론을 빙자하여 그 무리를 끌어댈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 물리치려는 폐단은 작고 물리치지 않는 폐단은 뒤에 다시 커질 것입니다. 성명(聖名)이 이미 저들의 죄를 환히 살피셨으니, 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신 등이 아뢴 것은 죄가 같은데도 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쌓인 폐단이 있는데, 무릇 아뢰어 논하는 것을 임금께서 들어 주시지 않고, 홍문관, 정부, 육조와 유생들이 상소하여 극심히 말하고서야 들어주심으로, 무릇 의논을 정하는 것이 임금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권강(權綱)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 등이 아뢰는 까닭은 다만 권강이 위에 있기를 바라서일 뿐입니다. 또 신 등의 말이 옳으면 행하고 그르면 신들을 죄주셔야 합니다. 현량과는 혁파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박영이 외람되게 받은 가자도 개정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승지 조옥근이 비현합에서 친계(親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 조광조 등의 죄를 정할 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일이 분명하지 않아서 전대간도 그 연유를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정에 화란(禍亂)을 좋아 하는 신하가 있어서 기밀한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광조 등이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고 있었으니, 그런 때에 헛된 일을 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소가 아니면 간사한 것이겠으나 나라에 큰 변이 있어서 고한 것이니, 그 모의가 비밀하였든 아니든 논할 것 없다. 당나라 때에 환관의 권세가 치성 하였는데도 점점 위망(危亡)에 이르렀으니 지금 사류의 당거(黨據)가 의심스러운 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화란을 좋아하는 무리가 반드시 빙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죄(首罪)를 주벌(誅罰)하고 나서 호오(好惡)를 보인다면 인심의 추향이 절로 정해질 것이다. 만약에 그 무리를 죄다 다스린다면 인심이 위구할 것이며 소인이 조정에 가득하더라도 혹 죄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죄주기를 청한다면 이는 종묘사직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다. 대신으로서는 본디 국사를 위하여 제집을 잇고 공사를 위하여 제 몸을 잇고서 밤낮으로 생각하여 시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신은 국사를 여사로 보아 배회하고 바라보며 그 양단만을 잡고 있으니 이것은 저들이 죄받는 경중을 보아서 스스로 처신하려는 것이리라. 대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백년이 지나도 시비가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대저 사람의 죄를 논할 때에는 먼저 그 근본을 다스려야 하는데 나무에 견주 건데 뿌리가 썩고 나면 가지나 잎은 절로 마르는 것이니 원악(元惡)이 주벌되고 나면 위협에 못 이겨 쫓는 자는 죄줄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대신이 시비를 정하지 아니하고 요행이 면하려고만 힘쓰니 이렇게 하면 나라의 위망이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또 지금 대간이 살육의 꼬투리를 여는 것도 아니고 법외로 죄주려는 것도 아니나 그 근본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 말단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옳은지 모르겠다.

조광조 등의 죄를 왕법(王法)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인심이 안정되고 의논이 그칠 것이다. 대저 지금 시비가 결정되지 않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는 까닭은 삼공의 직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광필과 김전은 빨리 갈라. 조정

의 일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현량과와 박영의 일은 윤택할 수 없다.” 하였다. 이항 등이 또 아뢰기를,

“왕언(王言)이 이처럼 정대하니, 신 등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신의 거취는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국사를 꺾는 완급이 같지 않고 사람의 생각도 다름에리까! 근일 시비를 결정하지 않은 죄는 워낙 면할 수 없으나, 별로 큰 허물이 없는데 한꺼번에 모두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조옥곤이 이를 아뢰자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은 국가의 치란(治亂)에 관계되는 일이 있어도 시비를 결정하지 않으니 삼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모두 가면 뒤에 삼공이 되는 자는 애써 마음 쓸 것이다. 곧 남곤, 이유청을 명소(命召)하여 정승으로 삼으라.” 하였다. 남곤 등이 부름을 받고 들어오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의 진퇴는 워낙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삼공은 자리만 채울 뿐 아니라 직임에도 힘써야 한다. 전일 일이 크게 글러졌는데 삼공이 알고도 구제하지 않았으며 지금 대간이 아뢰는 것은 매우 큰일 인데 삼공이 돌보지 않으므로 이미 갈라고 명하였다. 나는 근본만 주별하면 그 무리가 절로 그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간이 여러 번 꺾정에 와서 분분이 아뢰어 마지않으니 사람들이 위구할 것이며 대간이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말단만 다스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 조광조 등은 율문(律文)에 따라 명정(明正)하게 죄를 다스려야 하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정광필은 숙성한 덕이 이미 드러났고 수상 자리에 오래 있어 국사에 힘을 다하였으며 뚜렷한 허물이 없는데 문득 같고서 신 등으로 갈음하게 하시니 임금의 뜻이 어찌하여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관의 장관도 가벼이 갈 수 없는데 더구나 대신을 쓰고 버리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안에 이미 안당(安塘)을 갈고 또 이 두 사람을 가면 신 등도 매우 미안합니다. 조정에서의 정사와 호령은 날날이 사방에서 듣고 자손이 지키는 것인데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벼슬한 지 겨우 20여 년에 지위가 삼공에 이르면 조야(朝野)가 놀 날 것입니다. 이는 신이 사사로운 은혜를 입는 것이고 공정한 일이 아니니, 신이 혐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가 글러질까 염려해서입니다. 또 대간이 아뢴 것은 저들을 그르다고 생각하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죄다 찾아서 죄줄 수는 없으니, 대간의 뜻도 어찌 죄다 죄주려는 것이겠습니까? 임금께서 아시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제 정광필 등이 서계(書啓)한 사람을 죄다 죄줄 수 없다고 애써 말하였는데, 이제 또 모두 30여 인을 서계하였습니다. 선왕 때에 임사홍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므로 그 죄가 워낙 크나 유 3천 리(流三千里)에 그쳤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에 의거해야 마땅하나, 경중을 헤아리는 것은 상께 달려 있습니다. 조광조 등은 임사홍과 같지는 않고 다만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임금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남에게 저지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스스로 소인이 되어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어찌 문득 왕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심도 안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가 있는 자는 죄주고 죄가 없는 자는 용서해야 인심이 안정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만세 뒤의 자손을 위해 헤아려서 조치하여 성덕(聖德)에 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백집사(百執事) 일지라도 까닭 없이 갈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정광필 등은 뚜렷한 허물이 없음에리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간이 아뢴 것은 그 무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수죄 자를 이미 죄주었거니와, 그 나머지는 낱낱이 죄줄 수 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천둥 같은 임금의 위엄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니 사람들이 두려워할지라도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이 스스로 열복하여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이 직분을 다하지 않는데 간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조정의 일은 빨리 정해야 한다.

조광조 등의 죄는 본디 그 율문이 있으니, 율문대로 결단하면 인심이 안정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무지한 백성에 대해서도 죄 없이 죄에

결릴세라 염려하는 것인데, 저들은 전에 시종(侍從)의 반열(班列)에 있었으니, 율문대로 죄준다면 마땅한 일이 아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사람의 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결단해야 하고 아랫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 없다. 죄대로 죄주어야 하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임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유배에 처해야 하고 대죄(大罪)를 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송나라 백 년 동안에 조사(朝士)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이 근본을 배양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즉위하신 이래로 미친한 사람일지라도 처형된 자가 없는데 조광조 등은 비록 불초할지라도 전에 시종이었으니 율문대로 다스려서는 안됩니다. 다만 조율(照律)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조광조는 무죄할 수 없어 이미 저와 같이 유죄한데다가, 또 국문(鞫問) 받을 때에 당상(堂上)의 이름과 자(字)를 불렀으니 이것도 큰 죄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홍숙의 말을 들으니 다들 매우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미친 사람 같았다 합니다. 조광조가 죄가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물의와 대간의 말을 절충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대간이 논계(論啓)한 사람들은 대신들과 함께 그 경중을 의논하여 그 중에서 중한 자를 뽑아서 죄주어야 하겠다.”

하고 조옥(詔獄)<sup>284)</sup>의 당상 심정, 손주를 명소하여 이르기를,

“조광조 등 4인【김구, 김정, 김식을 아울러 4인】은 사사(賜死)하고, 윤자임 등 4인【박훈, 박세희 기준을 아울러 4인】은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되, 오늘 안으로 낭관(郎官)을 보내라.”

---

284) 조옥: 의금부(義禁府)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 올문대로 다 해서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광조 등 4인은 절도에 안치하고 그 아래 4인은 먼 곳에 유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벌을 사의(私意)로 행할 수 없으니, 왕법을 밝혀서 인심을 안정시켜야한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4인 중에서 경중이 또한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4인 중에도 분별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추고에 따라 이미 동물로 하였으니 대신들과 의논해서 정해야 하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에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조광조의 지휘를 받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의논은 이미 4인을 동죄로 하였으니 이제 분별할 수 없으나, 4인 중에 경한 자가 있다면 말해야 하리라.”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김구는 조광조와 동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김구 이하는 절도에 안치하고 조광조 등 3인은 사사하는 것이 옳겠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당나라 때에 왕비, 왕숙문 등이 봉당을 지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나, 모든 사람이 다 면하고 왕비만이 사사되었습니다. 이제 죄다 사죄를 가한다면 성덕에 누가 될 듯하니, 그 죄수만을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며, 국문 받을 때에 한 짓도 죽을 만하다.

또 조광조가 시종직에 오래 있었으므로 나도 그 사람을 조금은 아는데 그 마음이 곧지 않으며 김정은 우혹(愚惑) 하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이 글러진 것은 다 조광조가 유도한 것이니 절도에 안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옛말에 ‘사이(四夷)<sup>285)</sup>로 내쳐서 이매(魑魅)<sup>286)</sup>를 막는다.’ 하였습니니다. 왕자의 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손주가 아뢰기를,

“제왕에게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있어야 하니, 저들을 절도로 쫓거나 서북으로 멀리 유배하면 임금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사사해야 하며, 김정 이하 3인은 절도에 안치하고, 윤자임 이하 4인은 서북 지방의 먼 곳에 안치하는 것이 옳겠다. 여기 서계된 자들은 본디 모든 대신에게 널리 의논해야 하겠으나 조종조에서는 한 대신으로도 큰일을 결정하였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대간을 불러서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은 모두 들어오도록 하라. 다만 대간이 이미 뽑아서 아뢰었는데 또 뽑게 하면 어렵게 여기는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또 이곳은 좁다.” 하고 곧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이르기를, “저들은 이제 죄를 더하였으므로 인심이 절로 안정될 것이니, 또 그 무리를 다시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저들은 다들 경연관이 되었었으니, 서로 사귀 자가 두세 사람에 그치겠습니까? 이제 이미 과수를 죄주었으니 그 무리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인심이 그 그른 것을 알아서 추향이 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에게 죄를 더 준 까닭은 동류를 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285) 사이: 사방의 미개한 땅

286) 이매: 도깨비, 사람을 잘 홀리는 자의 비유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신 등이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고 아뢰는 말은 모두 죄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계 한 사람은 신 등도 들었고 공론도 퍼진 자입니다. 그 죄는 임금께서 재량하셔야 하나 과연 경중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유배된 사람과 죄가 다른 자가 있다면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대신과 함께 의논하면 그 죄의 경중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조광조의 죄는 사람들이 다 아나, 너그러운 법에 따라 처결해야 합니다.” 하고, 집의(執義) 유관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대부를 대우하는 것이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더라도 전에 시종 줄에 있었으니, 대우하여 천지와 같은 도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이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께서는 다만 근본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불가 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 중에 각별히 깊이 사귀어 상중한 자가 있으니 이는 죄주어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큰일을 곧 결단하지 않으면 이론이 어지러이 일어날 것이니, 곧 오늘 크게 정하고 그 경중을 매겨서 분명하고 바르게 죄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의 경중은 내가 잘 모르니 대신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이 일은 매우 크니 대간에게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제 대신이 이 자리에 있는데 미관(微官)의 말로 큰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신 등이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벌이 다 대간에게서 나오므로 일이 글러졌었는데, 이제 대간이 대신으로 하여금 전제(專制)하게 하고 스스로 부족을 보충하겠다 하니 그 뜻이 매우

착하다. 대신과 육경(六卿)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큰일은 사람마다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이 많으면 분요하여 결단할 수 없어,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신으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참작하여 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앞에서 의논하여 정하면 미진할 듯하니, 밖에 나가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이빈이 아뢰기를,

“윤광령은 저 사람들에게 응견(鷹犬) 노릇을 하여 사람들이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정언 조침이 아뢰기를,

“윤광영 뿐이 아니라 그 무리는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데, 이제 죄주면 중외(中外)의 인심이 다 시원하게 여길 것이니, 어찌 승복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항 등이 황지(黃紙)를 인명 위에 붙이는 일을 끝내고 곧 단자(單子)를 만들어 올렸다【황지가 이름 위에 붙은 자는 안당, 김안국, 최숙생, 유운, 유용근, 정응, 최산두, 이희민, 양팽손, 이연경, 이약빙, 윤광령, 이충건, 조광좌, 송호례, 송호지, 정완 등 17인인데 대사헌 이항이 주관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표가 붙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에서 죄가 중한 자들입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표가 붙은 자가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과 다시 의논해야 한다. 문득 정할 수 없다.”

하였다. 이항 아뢰기를,

“현량과(賢良科)도 혁파해야 합니다. 큰일을 어찌 번번이 의논하겠습니까? 이제 표가 붙은 사람을 죄주고 또 현량과를 혁파하면 또한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대간이 계청(啓請)하여 혁파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임금께서 대신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혁파한다면 사체가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그 천거가 매우 공정하지 않았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관과 대신의 의논이 그러하니 혁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드디어 비현합(丕顯閣)으로 돌아가 대신 남곤, 이유청 등을 불러서 대간이 표를 붙인 단자를 주고 이르기를,

“이 표가 붙은 자는 무슨 까닭이며 표가 붙지 않은 자는 무슨 까닭인지, 대간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표가 붙은 자는 물으실 만하나 표가 붙지 않은 자는 물으실 것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층은 다른 일로 추고하였으니, 절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그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파직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표가 붙은 자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임금께서 헤아리어 처치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자는 이미 파직하였거니와, 최숙생은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젊은 사람들과 상종하였을 뿐이며 봉비(朋比)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으나, 표를 붙인 데에는 역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정국은 표를 붙일 수 없는 자인가? 최숙생과 유용근은 죄가 같은가?”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직해야 할 자가 있고 귀양 보내야 할 자가 있고 고신(告身)을 빼앗아야 할 자도 있으니 임금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주서(注書) 정세호에게 명하기를,

“파직할 자는 이름 아래에 표를 붙이고 귀양 보낼 자는 이름 위에 표를 붙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양팽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양팽손은 저들과 상종하여 좋은 벼슬을 차지한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현량과를 혁파하였으니, 이연경, 송호지는 포의(布衣)<sup>287)</sup>이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최숙생이 젊은 사람들과 상종하기는 하였으나, 정완 등과 죄를 같이한다면 애매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

287) 포의: 벼슬이 없는 선비

“유용근, 정응, 최산두, 정왕은 죄가 같은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들은 젊어서 사리를 몰라 저들에게 붙좃은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안국은 마땅치 않은 사람을 많이 천거하였으나, 역시 조정의 명에 따라 천거한 것이다. 유운은 칭찬하여 아뢴 잘못이 있기는 하나 별 뜻은 없었을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이충건은 어떤 사람인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나이가 젊고 과실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광령, 이충건은 누가 경하고 누가 중한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윤광령은 생원(生員)으로서 벼슬을 차지하려고 저들에게 붙좃았으며 그 마음이 어리석습니다. 이충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은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자는 전에 저들과 상종하였으니 파직만해야 한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남방은 풍기가 유순하여 절도에서도 살 만하나, 북방은 풍기가 사나워서 남방과 같지 않습니다. 김정, 윤자임 등은 그 죄에 경중이 있는데, 경한 자가 도리어 북방에 있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자임 등은 전에는 다 부처(付處)하였으나 이제는 안치하는 것이니, 과연 전일과는 다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윤자임 등은 남방에 안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극변안치(極邊安置)는 배소(配所)가 이미 정해졌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대간은 김안국과 유운을 중임에 제수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 써서 아뢴 사람 중에서 표가 붙지 않은 자일지라도 어찌 안심하겠는가? 그 나머지를 다시 거론하여 죄줄 것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김안국은 과연 나라의 일에 부지런한 자이다. 대간이 아뢴 것은 큰일을 맡기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여염에서 《소학(小學)》은 힘써 행하게 된 것은 다 저들이 주창하였기 때문이므로, 저들이 귀양 간 뒤로는 무지한 백성들이다 ‘죄받은 것은 《소학》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니, 듣기에 매우 미안합니다. 조광조 등이 죄받은 것은 《소학》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나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사기가 꺾인 까닭이니, 지금은 언로(言路)를 열어 직간(直諫)을 받아들이고 대신과 함께 나라의 일을 도모할 때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제부터는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조심하고 삼가서 측석(側席)<sup>288)</sup>하여 조금도 게으른 뜻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 하겠다. 모든 일은

---

288) 측석: 거리에 바로 앉지 못하고 어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어서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 커진 뒤에 제지하면 일이 번거로와 지고 인심이 안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늘 두려운 생각을 가져 하루도 안심한 것이 없었다. 이연경·송호지는 과방(科榜)을 혁파하면 죄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것은 벌을 더하여 그 죄를 스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유용근 등 4인【정응, 최산두, 정완을 아울러 4인】은 먼곳에 부처하고, 안당 등 3인【유운, 김안국을 아울러 3인】은 파직하고, 이자 등 11인【최숙생, 이희민, 이악병, 이연경, 조광좌, 윤광령, 송호지, 송호례, 양팽손, 이충건】은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라.”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2월 16일(병자)

전교하였다.

“접때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이 서로 봉비가 되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고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후진을 이끌어 궤격(詭激)이 버릇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가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왕법으로 논하면 본디 안율(按律)하여 죄를 다스려야 하겠으나, 특별히 말감(末減)하며 혹 안치(安置)하거나 부처(付處)한다. 대저 죄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벌은 경중이 없이 한 과조(科條)로 죄주는 법에 어그러지므로 대신들과 경중을 상의하여 조광조는 사사 하고 김정, 김식, 김구는 절도(絶島)에 안치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은 극변(極邊)에 안치하라.”

【사신은 논한다. 대간이 조광조의 무리를 논하되 마치 물이 더욱 깊어가듯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일을 날마다 드러내어 사사하기에 이르렀다. 임금이 즉위한 뒤로는 대간이 사람의 죄를 논하여 혹 가혹하게 벌주려 하여도 임금은 반드시 유난하고 평반(平反)하였으며, 임금의 뜻으로 죽인 자가 없었



는데, 이번에는 대간도 조광조를 더 죄주자는 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분부를 하였으니, 시의(時議)의 실재가 무엇인지를 짐작해서 이렇게 분부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전일에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뵈었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이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서 나온 일 같다.】

【또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의 죽음은 정광필이 가장 상심하여 마지 않았으며, 남곤까지도 매우 슬퍼하였다. 성세창의 꿈에 조광조가 살아 있을 때처럼 나타나서 시를 지어 성세창에게 주었는데 ‘해가 저서 하늘은 먹 같고, 산이 깊어 골짜기는 구름 같구나, 군신의 의리는 천년토록 변치 않는 것, 섭섭하다 이 외로운 무덤이여!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가엾이 여겼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는 성세창이 경솔하게 퍼뜨린 것을 옳지 않다고도 하였다.

조광조는 온아(溫雅)하고 조용하였으므로 적소(謫所)에 있을 때 하인들까지도 모두 정성으로 대접하였으며, 분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공경하고 아꼈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유엄이 사사의 명을 가지고 이르니, 조광조가 유엄에게 가서 스스로 ‘나는 참으로 죄인ियो.’ 하고 땅에 앉아서 묻기를 ‘사사의 명만 있고 사사의 글은 없소?’ 하매, 유엄이 글을 적은 쪽지를 보이니, 조광조가 ‘내가 전에 대부(大夫) 줄에 있다가 이제 사사받게 되었는데 어찌 다만 쪽지를 만들어 도사에게 부쳐서 신표로 삼아 죽이게 하겠소? 도사의 말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을 뻔하였소.’ 하였다 아마도 유엄이 속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겠다. 조광조의 뜻은, 임금이 모르는 일인데 조광조를 미워하는 자가 중간에서 마음대로 만든 일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정승이 되었고 심정이 지금 어느 벼슬에 있는가를 물으매 유엄이 사실대로 말하니, 조광조가 ‘그렇다면 내 죽음은 틀림없소.’ 하였다.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 당로에 있으므로 틀림없이 죽일 것이라는 뜻이겠다. 또 묻기를 ‘조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오?’ 하매, 유엄이 ‘왕망(王莽)의 일에 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니 조광조가 웃으며 ‘왕망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한 자요, 죽으라는 명이 계신데도 한참 동안 지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소? 그러나 오늘 안으로만 죽으면 되지 않겠소? 내가 글을 써서 집에 보내려 하며 분부해서 조

처할 일도 있으니, 처치가 끝나고 나서 죽는 것이 어떻겠소?’ 하기에 유엄이 허락하였다. 조광조가 곧 들어가 조용히 뜻을 죄다 글에 쓰고 또 회포를 썼는데 ‘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집 처럼 근심하였네. 해가 아래 세상을 굽어보니, 충정을 밝게 비추리. 하였다. 또 거느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관을 얇게 만들고 두껍게 하지 마라라. 먼 길을 가기 어렵다.’ 하였다. 자주 창문 틈으로 밖을 엿보았는데, 아마도 형편을 살폈을 것이다. 글을 쓰고 분부하는 일을 끝내고, 드디어 거둬 내려서 독하게 만든 술을 가져다가 많이 마시고 죽으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당초에 능성(棱城)에 가자 고을 원이 관동(官僮)의 수인을 보내서 쇄소(洒掃)의 일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조광조가 죽을 때에 이들에게 각각 은근한 뜻을 보였다. 또 주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네 집에 묵었으므로 마침내 보답하려 했으나, 보답은 못하고 도리어 너에게 흉변(凶變)을 보이고 네 집을 더럽히니 죽어도 한이 남는다.’ 하였다. 관동과 주인은 스스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고, 오래도록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지금도 조광조의 말을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린다.】【또 사신은 논한다. 당시의 언론으로서는 정해진 의논이 있어 이의가 없었으나, 혹 평반(平反)하자는 논의가 있고 심정의 무리도 더욱 심하게 하지는 않을 뜻을 보여 가혹한 의논이 없을 듯하였는데, 아부하는 자들이 위에 뜻을 맞추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날마다 새로운 의논을 내어 반드시 조광조를 죽이고야 말게 하였다. 조침은 조광조 등이 패하기 전에 서로 허여 하지는 않았으나 불화하지도 않았는데, 정언(正言)이 된 뒤에 마치 원수의 집처럼 논치(論治)하여 숨은 흠을 찾아내어 죄에 빠뜨린 것은 심정 등도 너무 심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드날릴 계제가 되는 길을 얻었다. 당초에 경세인이 조침의 이웃에 세들어 살았는데, 조침은 경세인이 당시 사람들에게 추중(推重)되는 것을 알고 드디어 그 환심을 샀다. 경세인도 자기에게 후하게 대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 조침을 추어 칭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이름이 드러날 뻔 하였는데 이윽고 이 변이 일어났으니 그 반복이 이처럼 말할 수 없었다.】

#### ◎ 1519년(중종 14) 12월 25일(을유)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이빈이 아뢰기를,

“한충의 죄는 조광조 등보다 못하지 않은데 이제 다른 일로 추고하고 조율

도 다르니 어찌하여 이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다른 일로 추고하더라도 절로 큰 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저들의 전례에 따라 추고하지 않은 것이다.”

하매, 이빈이 아뢰기를,

“전일 서계(書啓)한 사람들에 대하여 황표(黃標)를 붙일 때에 김정국(金正國)에게는 붙이지 않았으나 이제 들으니, 김정국은 저들이 죄받았을 때에 봉장(封章)으로 치계(馳啓)하였다가 저들의 죄목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도로 가져오게 하였다 하는데, 그 소장(疏章)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청은 마음에 주장이 없어 매우 우혹(愚惑)하므로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으나, 이제 와서 들으니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홀로 죄받지 않았다 합니다. 이청은 본디 굳은 마음이 없어서 한결같이 저들의 지휘에 따랐으니 워낙 셀 것도 없으나, 국가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습니다. 종친(宗親)의 일【시산정 이정숙(詩山正 李正淑)의 무리이다.】은 당초에 서계하였으나, 임금께서 결단하여 그 죄를 정하였으므로 감히 다시 아뢰지 않았습시다만, 이제 들으니, 파릉군(巴陵君)은 그때 한밤에 종친부에 가서 종친들을 모았으므로 왕자군(王子君)으로 하여금 놀라고 두려워 전도하게까지 하였다 하는데, 그 까닭을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 죄받은 사람이 자못 많아서 인심이 안정되지 않는다. 대저 조정이 안정되고 나서야 인심이 절로 안정되는 것이니, 이제 다시 그 무리를 찾아내어 죄주면 인심이 더욱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청, 김정국은 저들과 다름 없는 자인가?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면 또한 옳지 않을 것이다.”

하매, 영사(領事) 남곤이 아뢰기를,

“김정국, 이청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식이 아직 높지 못하므로 저들에게 불쫓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찾아내어 죄준다면 인심은 안정될 기약이 없을 것이며, 더 죄주지 않더라도 전일의 잘못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마땅하다. 다만 종친의 일은, 전일 대신을 면대했을 때 다들 불가하다 하여 귀양보내기를 매우 어렵게 여기므로 고신(告身)만 빼앗고 말았다. 파릉군이 한 것이 이러하다면 죄가 과연 중하다.”

하매, 이빈이 아뢰기를,

“파릉군은 다른 종친의 예로 죄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조정의 정령(政令)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미 매우 심한 자를 제거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더 죄준다면 가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무리를 끝까지 다스린다면 인심이 과연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파릉군의 일은 매우 놀랍다.”

하매, 유관이 아뢰기를,

“종친은 국사에 간여하지 않는 것인데, 파릉군은 그때 종일 함문(閤門) 밖에서 있었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유보가 아뢰기를,

“과거는 공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량과는 이미 혁파하였으나, 이제 듣건대 별거(別舉)도 매우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물의가 들끓는다 합니다. 그때 남곤도 시관이었는데, 어찌 공정하지 않았음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한 것이므로 혁파하기 어려운 듯 하기는 하나 공정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혁파하지 않은 것도 옳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거와 현량과는 차이가 있다. 대간이 ‘미리 문제를 내어서 시험하였다.’ 하나 이것은 한두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 어찌 과장(科場)에서 모두들 그 문제를 알았겠는가? 공정하지 않게 과거에 든 자를 적발하여 삭제해야 하며, 한 사람 때문에 온 과방(科榜)을 혁파할 수는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신과 안당이 함께 시관이었습니다. 저 둘이 한 대책(對策)을 보고 매우

칭찬하였으나, 신과 안당은 ‘이 글은 과장에 맞지 않는다.’ 하였는데, 저들은 다 이 대책은 떨어뜨릴 수 없다.’ 하므로, 신도 나약하여 그들이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대저 과거의 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론에 맞아야 하는데, 저들이 그 대책을 보고 문득 칭찬하는 것이 마치는 사람을 아는 것 같았고, 신도 ‘인물이 유여(裕餘) 한다면 문사(文詞)에 있어서는 혹 넉넉지 못하더라도 쓸 수 있다.’ 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또 문제를 낼 때에 기습(氣襲)이란 제목을 주장한 자는 김식이었으나 문제를 지은 것은 못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이니, 미리 문제를 냈다는 것은 매우 헛된 말입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그때 시관에게 공정하지 않은 자를 물으면 알 수 있겠으나, 대저 책문에는 규구(規矩)가 있으므로 문제의 뜻만 같으면 문자에 혹 다른점이 있더라도 그 대략은 다를 것이 없는데 저들이 이미 문제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일러 주어서 그 사이에 미리 들은 사람은 다 과거에 들었다 하니, 이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근일 문제가 매우 예스럽지 않은 것은 다 저들이 창도(唱導)하였기를 힘쓰는데, 옛글의 문체가 이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촌야의 사람이라도 다 알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행(李荇)이 올라오면【이행은 전에 내쫓겨져서 외방에 있었는데 이제 대제학을 제수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문체를 바꾸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송조(宋朝)에서 서곤체(西崑體)<sup>289)</sup>를 고쳤는데 이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대간은 전시(殿試)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규례인데, 그때 정원(政院)이 대간을 많이 의망(擬望)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289) 서곤체: 시체(時體)의 하나. 오대·송초 사람들이 당 때의 이상은 의 시체를 본떠 고사를 즐겨쓰던 체인데, 양억등이 창화한 시집을 《서곤창화집》이라 한데서 유래하여 이런 시체를 서곤체라 하게 되었다. 《명물육첩》

“이는 정원의 잘못일 뿐 아니라 나의 낙점(落點)도 그릇된 것인데, 대간이 들어간 것도 매우 옳지 않다. 그 과방(科榜) 가운데에서 공정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인가? 이미 현량과를 혁파하였는데 또 이 과방을 혁파하면, 역시 사람을 쓰는데에 있어 부족한듯하다. 홍문관·사관에 결원(闕員)이 많이 있는데, 이 과방이 정해지고 나서야 홍문록(弘文錄)<sup>290</sup>을 만들 수 있으니, 공정하지 않았던 사람을 대간이 뽑아서 아뢰라.”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공정하지 않은자가 있더라도 남의 손을 빌어 지은 따위와는 같지 않고 다들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다만 괴벽할 뿐이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글은 괴벽하더라도 공정하게 뽑았다면 괜찮겠으나, 이는 사정을 용납하여 미리 짜고 한 뜻이 있으므로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만 삭제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역시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 사람 때문에 혁파하는 것 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하매, 이빈이 아뢰기를,

“사관(四館)<sup>291</sup>에서는 이 과방이 공정하지 않다 하여 간택하지 않았으나, 임금께서 간택하라 하시면 간택할 것입니다. 홍문록이야 어찌 이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재주 없이 급제한 자가 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지 않은 까닭은 그 시관이 공정하게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방은 매우

290) 홍문록: 홍문관의 교리, 수찬 등에 임명될만한 후보를 선거하는 기록. 우선 홍문관의 7품 이하인 관원, 즉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가 문과방목(文科榜目)을 상고하여 합당한 사람을 배껴낸 다음에 홍문관 부제학, 응교(應敎), 교리, 수찬 등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권점(圈點)을 치는데, 이것을 본관록(本館錄) 또는 홍문록이라 한다. 이 본관록을 가지고 다시 의정, 참찬, 대제학과 이조의 판서, 참판, 참의 등이 모여서 권점을 치는데 이것을 도당록(都堂錄) 또는 정부 홍문록(政府弘文錄)이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문록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때에 차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임금에게 아뢰어 교리, 수찬에 임명한다.

291) 사관: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

공정하지 않으므로 물의가 들끓어 퍼져서 극구 비난하니, 이렇다면 열 번 혁파하더라도 안 될 것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이 과방에 든 사람은 사관에 대하여 죄를 얻었으니, 사관이 간택하지 않으려 한다면 위에서 간택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혁파하지 않는다면 사관이 어찌 간택하지 않겠는가!”

하매, 동지사 신상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남의 손을 빌어 제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삭제하고 말았으니, 이 과방도 공정하지 않은 사람만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자주 혁파하면 앞으로 낙제하는 자가 서로 선동하여 유언을 퍼뜨려 혁파하기를 바랄 것이다. 전일 현량과를 과방할때에도 대신이 반드시 뒤 폐단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더구나 이 과방 이겠는가? 공정하지 않은 자를 삭제해야 한다.”

하매, 유보가 아뢰기를,

“송태종이 ‘문형(文衡)은 공기(空器)인데 어찌 사람(私濫)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시다. 공정하지 않은자가 남아 있으면 역시 뒤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망설일 것 없이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이 과방은 초시 때에도 신도 시관이 되었는데, 수시관은 최숙생이고 그 나머지는 김구, 김식, 박훈 등 이었습니다. 문제를 낼 때에 저들이 신 등에게 말하지 않고 저희끼리 사사로이 의논하여 시책을 내었으므로 신은 당초에 책제(策題)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시다. 이것은 사사요 공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러하다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이 일은 조옥곤도 압니다.”【조옥곤도 시관이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향거리선(鄉舉里選)의 법은 그 폐단이 공정하지 않기에 이르렀으므로, 역대에서 다 과거를 공정한 것으로 삼았고, 정자도 사람을 뽑는 데에는 모를 지기 과거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법이 참으로 중한 것인데, 근래 과거가 구습만 따르고 구차하며 공정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파방하는 것이 한때의 폐단이 된다 하여 혁파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폐단이 앞으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조옥곤이 아뢰기를,

“승문원이 간택한 뒤에야 타관에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듣건데 승문원이 간택하여 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대신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하니, 남곤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 신의 죄입니다.【전시 때에 남곤도 시관이었는데 조광조, 김식 등의 말에 따라 성수종을 뽑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그러나 혁파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전에는 사관에 권지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지관이 하나도 없다 합니다. 두 과방을 잇달아 혁파하면 아마도 조정에 쓸 만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후세에서 이것을 빙자하여 전례로 삼으면 그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둘에 그치지 않으니 온 과방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관이 간택하려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과방만 혁파하여 공정하지 않은 폐단을 씻어 버리면 명일에 크게 거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데, 사람들이 다 성수종을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삭제하는 폐단은 파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삭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쓰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임금의 분부가 마땅하십니다.”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신상이 과거에 급제할 때에 정소종도 삭제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함께 의논하여 결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홍문관의 남행에 꺾원이 많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홍문관에 감당할 만한 인원이 없으므로 이처럼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신이 전에 홍문관의 남행으로 채워졌다가 5년 뒤에야 박사가 되었는데 그때 재상들은 오히려 갑자기 오른 것이라 하였으며, 성희안은 남행으로 종사하여【홍문관 정자였다.】 9년 토록 오래되었었는데 당시에 역시 나이 젊고 글에 능한 사람이라 하여 뽑아서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남행이 된지 오래지 않아 초승(超陞)하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근래 갑자기 오르는 폐단이 있으므로, 그 직임을 맡은 자가 내가 이 직임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현재의 직임을 돌보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직임에는 경중이 있고 일에는 대소가 있는데 성종조에는 그 경중, 대소에 따라 사람을 각각 적당하게 임용하였으므로, 죄다 착하지는 않더라도 온갖 벼슬이 직분을 다했습니다. 근일에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만 흠이 있는 사람이면 배척하여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므로 각사(各司)의 관원에 꺾원이 많으니, 어찌 일대에 인재가 없어서 그 벼슬을 비워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후세에도 듣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의 폐단은 자주 사직하는 것은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다.”

하매, 유관이 아뢰기를,

“대간은 언책(言責)을 맡았는데, 어찌 언책을 맡고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사직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도 말할 만한 때가 있으나, 근일의 폐단은 의논이 전혀 대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대신과 대간의 말은 임금께서 절충해서 쓰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정사를 어지럽혔는데 이제 다들 내쫓겼으므로 인심이 다 시원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정사를 마음대로 하던 때에 조정이 억제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역시 임금의 소치인데, 근자에 저들이 죄받은 뒤로는 임금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으니, 신은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저들도 당초에는 드러나게 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모든 일을 다 옛것을 본떠서 하였으므로, 대신들이 그 그릇을 알더라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나도 저들이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줄 몰랐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허물을 자기에게 돌린다 하였으니 대간이 아뢴바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천거로 육조의 낭관이 되었거나 백집사의 직임에 있는 자가 과연 많으나, 죄다 개정하려 하면 조정에 인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 중에서 쓸만하지 못한 자만을 가려서 개정하도록 하라.”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저들을 죄준 것은 조정을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자리면 예전대로 두고 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 한나라의 문제, 경제 때에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것은 순후한 풍속입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근자에 관작이 외람하므로 인심이 승복하지 않으며 국사도 글리깁니다. 전일 배척받은 사람들이 어찌 죄다 쓸만하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들이 구인을 물리치고 오로지 천거된 사람을 임용하였으므로, 천거된 사람으로서 수령이 된자가 사리를 몰라 마치 시동처럼 앉아 있었으나, 그때의 대신들이 그름을 알지라도 그 세력이 치열하므로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임금께서 이미 그 시비를 환히 살피셨으니, 현우(賢愚)가 섞여서 등용되게 한 것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당초에 사람마다 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겨서 좇았으나, 이제 이미 호오(好惡)를 정하였다면 인심이 스스로 시비를 알아서 허물을 고칠 것이니, 반드시 개정할 것 없습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김정국은 전일 황해도에 있을 때에 계청(啓請)한 것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김정국이 노하여 사직하고 떠나려고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대개 세력이 치열함을 빙자하여 멀리서 조정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니, 이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대저 감사(監司)는 소견을 아뢰고 해조가 그 가부를 논해야 하는 것인데, 김정국이 제 말을 좇지 않았다고 하여 노했다면 매우 옳지 않다. 그때 하서하여 불가한 뜻을 일렀거니와 이제 추론(追論)할 수는 없다. 또 전일 서계(書啓)한 사람을 낱날이 추론한다면 아마도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정국, 이청은 대간이 물의에 따라서 아뢰었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미 그 경중을 의논하여 죄주었는데, 이제 다시 다스린다면 인심이 위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중친의 죄는 파직만 하더라도 되겠으나, 파릉군은 다른 예에 따라 논할 수 없다.”

하매, 신상, 홍숙이 다 아뢰기를,

“이미 파직하였으니 다시 더 죄주는 것은 오히려 못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중친이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하겠으나, 파릉군이 한밤에 한 일은 아주 놀랍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김정국, 이청은, 그 죄를 추론하면 인심도 반드시 위구(危懼)할 것입니다. 심한 자만 제거해야 하고 일체 다스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물의가 있으므로 대간이 아뢰었을 것이다. 별서는, 대간이 공정하지 않은 자를 뽑아서 대신이 결단해야 한다.”

하매, 유관이 아뢰기를,

“뽑기 어렵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혁파하면 안 됩니다.”

하였다.

#### ◎ 1519년(중종 14) 12월 25일(을유)

전교하였다.

“한충은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과 사귀어 붕비가 되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하며, 성세로 의지하여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후진을 인도하여 궤격이 버릇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 뜻으로 금부에 명하여 신국하게 하라.”

◎ 1520년(중종 15) 1월 19일(무신)

사간 남세준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근래 몇몇 무리들이 때를 타고 발탁되어 시중의 반열에 올라 옛도를 펴서 넓히는 체하면서 천청(天聽)을 현혹(眩惑)시키고 주장하는 바를 자신하면서 오류를 홀롱한 것인 양 꾸몄으며, 새로운 것만 즐겨하면서 옛적을 궁구하지 않았고 명분만 즐겨 하면서 실상을 힘쓰지 않은 채, 과감하게 이론을 제기 함으로써 조정을 동요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노성한 사람을 멀리하고 완동(頑童)<sup>292)</sup>을 가까이 하였으며,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사사로 하여 은밀히 자신들의 사심을 이룸으로써 위로는 전하를 기만하고 다음으로는 대신을 모욕하고 아래로는 사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은 법 받을 것이 없고 구장(舊章)은 준수 할 것이 없다는 의논이 일어나, 번거롭게 변경(變更)하여 성헌(成憲)을 어지럽혔으므로 선왕의 법이 폐추 되었습니다. 드디어 는 비록 지친(至親)이라 할지라도 서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일어나, 아들은 아버지를 비방하고 아우는 형을 비방하는가 하면 조카는 숙부를 헐뜯고【과거에 김철문의 종이 자기의 주인이 한 산작에 침체되어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겨 “조카 김구가 헐뜯기 때문이다.” 하면서 늘 불평하였었는데, 김구가 귀양 갔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부터 우리 주인이 현 요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조카가 숙부를 헐뜯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를 가르킨 것 같다.】 벼를 팔아 자신을 천거하게 되었으므로 천륜의 질서가 이지러졌습니다. 이에 청관직(淸官職)은 자금(資級)을 확장시켰고 1년도 안되어 아울러 청요직을 차지 하였으므로 작상을 권병(權柄)이 참람하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사람을 서용함에 있어 마땅히 조행(操行)으로 뽑을 것이요 문예에 구애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조작하여, 후생으로 하여금 수행을 밖으로만 꾸미게 하고 강습을 전폐하게 하였으므로 학교의 도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예가 무너지고 악이 이지러졌으며 도가 저상되고 문이 폐추 되었는데도 요순, 우탕, 문무의 정치를 바랄 수 있다 하였으며, 흥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도둑이 떴 지어 일어나 횡행하는데도 길에 떨어뜨려진 남의 물건을 줍지 않는다는 교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서로

---

292) 완동: 신진을 가르킨다.

승상하고 분경(奔競)<sup>293)</sup>이 풍속을 이루었는데도 시습이 바른 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남의 비행을 고발하는 일이 날로 성행하여 상하의 질서가 무너졌는데도 민심이 두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소학》의 도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순서대로 수업하여 쉬운 것부터 배워서 점차 깊고 어려운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하여 배움이 넉넉해진 뒤에 벼슬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저들은 한때의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를 구명하게 하여 이를 예의로 실행하게 함으로써 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허한데 빠지게 하고 보고 듣는 데만 져게 하였으며, 이록(利祿)으로 꾀고 조진(躁進)으로 인도함으로써 몸을 닦고 성품을 기르는 도구를 한 몸을 위한 벼슬의 첩경(捷徑)으로 삼게 하였으며, 이론 세우는 것을 스스로 훌륭하게 여기고 과격한 행동으로 요행을 바랐으므로 인심이 날로 거짓된 데로 흘러갔습니다.

향약(鄉約)을 설치한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정제하여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불선을 부끄럽게 여겨 선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하는데도 안으로는 경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 약정이 되고 밖으로는 방면을 맡은 자가 오로지 독책(督責)을 일삼아, 향약의 본의는 준행하지 않고 번거롭고 가혹하게 하기만을 힘썼습니다. 이리하여 태장(笞杖)<sup>294)</sup>의 권병(權柄)이 천례(賤隸)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시비의 의논이 향호(鄉豪)에게서 나오게 되어 인륜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수원(讐怨)이 엇갈려 일어났으며, 남의 분묘를 파헤치기도 하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으므로 민정이 두려워하였고 풍습이 날로 퇴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은, 조종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선으로 옮겨가고 죄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화에 들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신하로서는 감히 마음대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김정, 김식, 조광조가 교대로 헌부에 있으면서 율문을 각박하게 하고 법전을 준엄하게 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으므로 온 집안이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있었으며, 혹 법을 굽혀 은혜를 팔기도 하고 정상을 꾸며 기림을 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악한 짓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면되기를 바라게 하였으며, 생사의 조종이 한결

293) 분경: 엽관운동(獵官運動)

294) 태장: 죄인에게 매나 장을 치는 것



같이 그들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여항(閭巷)의 백성들은 김식을 가리켜 혹리(酷吏)라하고 조광조를 가리켜 생불(生佛)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조종의 흠홀(欽恤)<sup>295)</sup>하는 뜻과 전하의 위복(威服)의 권병으로 하여금 벼풀 데가 없게 하였습니다.

과거는 조종께서 취인(取人)하던 공도였으니 전하께서도 감히 그 취사(取捨)를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옛날 현량과의 법을 빌어다가 조종 적에 없었던 과목을 만들어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할 즈음에 자못 편사(偏私)한 뜻을 품고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으므로, 못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음이 또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 가을 공선(公選)할 때에는 미리 출제의 내용을 누설하였는가 하면 책문(策問)하여 취인하던 날에 이르러서도 다시 그 권병(權柄)을 마음대로 휘둘러 자기들의 사사로움을 행하였었는데, 비록 문형(文衡)을 맡은 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감히 그 사이에 손을 쓸 수가 없었으므로 1백 년 동안 취사(取士)하여 오던 공기(公器)를 한때의 당을 심는 사물로 만들었으니, 마음아픈 일이라 할 만합니다.

무릇 수년 사이에 그들이 법을 이랬다 저랬다 동요 시키면서 인심을 변이(變移)시킨 일은 모두 올바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야로 떼 지어 모여 인물을 비평하는 한편 조정의 일을 모의 하면서 ‘아무는 정승이 될 만하고 아무는 장수가 될 만하고 아무는 대간이 될 만하고 아무는 시종이 될만하다.’ 하였으니, 개인의 집이 정사를 하는 곳이 되었고 일개 선비가 출척(黜陟)의 권병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자는 괴팍한 행동을 과감히 함으로써 그 욕망을 이루었고 나약한 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편히 여김으로써 취용(取容)되기를 구하였으므로, 차라리 부모에 대한 정성을 빠뜨릴지언정 감히 하루라도 그들의 집에는 문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차라리 사장(師長)을 업신여길지언정 감히 하루라도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었습니다. 이리하여 뿌리가 깊이 박혀 꼭지가 맺히고 싹이 돌아 가지가 만연해져서 권력을 믿고 세도를 켜므로 아무도 감히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현부(賢否), 시비(是非), 치란(治亂), 득실(得失)에 대하여 일체 상도와 어긋나게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逆說)을 함으로써 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말하고 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노성(老成)하여 숙덕(宿德)을 지닌 이들은 내쳐 쓰일 데가 없게 만들고서 경박한 소년들을 현 요직에 발탁하였으

295) 흠홀: 죄 지은자를 신중히 심의하는 것

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동자국(童子國)이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강이 무너져 국세가 날로 저하되었고 권병이 아래로 옮겨져 임금의 위협이 행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음이 너무 성하여진 그 징후가 천지를 감동시켜 무인년의 지진(地震)이 있었던 것인데 이는 고금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별과 해가 변을 고하고 무지개가 이상한 모양을 보이고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고 넘어진 나무가 일어나고 암석이 스스로 울고 해일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절후를 잃어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식견이 있는 선비들은 가슴을 치면서 남몰래 탄식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누구라도 조석 사이에 변고가 일어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아침하는 무리들은 바야흐로 태평 세상이 될 것이라고 거짓 꾸며 물정을 미혹시켰으니, 일세를 기만함에 있어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애초부터 어찌 나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자성(資性)이 집요하고 지식이 단천(短淺)하여, 왕자의 도는 탕탕평평(蕩蕩平平)한 것이고 군자의 덕은 두루 하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오(過誤)를 잘한 것으로 꾸며 조정의 화의 기틀을 만들었으니 애석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된 허물이 비록 ‘이 무리가 능히 중도를 준수하지 않고 편당(偏黨)을 좋아한 때문이다.’ 고는 하지만, 또한 전하께서 능히 부시(敷施)를 잘하지 못하여 탕탕평평하게 하는 도에 미진함이 있어 그런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근년에 전하께서는 너무 급하게 다스려지기를 구한 나머지 사람을 너무 조급하게 서용(敍用)하셨으며, 신진들을 믿고 임용하였으므로 3~4년 못되어 경상의 지위에 이르게 함으로써 명기를 경솔히 사용하여 억제할 방법이 없게 하였으며, 끝내는 그들로 하여금 교만 방자하게 하여 이처럼 극도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치우치게 편애한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다행히 하늘과 조종께서 은밀히 성충(聖衷)<sup>296)</sup>을 유도하시어 상의 크게 결단하심을 힘입어 죄인이 잡혔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그래도 천지 같은 도량으로 가법계 귀양 보내는 형벌을 가하셨으니 성은이 지극하신 것입니다. 그런

---

296) 성충: 임금의 마음

데도 이배(移配)하라는 분부를 듣고서는 다투어 서로 망명하여 무뢰배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전하의 하늘같은 은덕을 저버렸습니다. 아, 평일 경악(經囑)을 출입하면서 사림을 과장하던 것과 정색하고 큰소리 치던 것, 성현을 자기(自期)하고 절의를 자부하던 것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으며, 따라서 그 정상(情狀)이 오늘날 다 드러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약 성심이 끝내 빠져든 채 되돌리지 않는다면, 나라를 잃는데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변연히 깨달으시어 신충으로 결단, 이미 정사를 어지럽힌 죄를 다스리고 또 자신을 책망하는 성지를 내리시어 기왕의 잘못을 사과 하셨으니, 비기건데 일식, 월식과 같아서 한결같이 구법(舊法)이 회복되었으며, 따라서 광채가 휘황하여 만경이 함께 새로워졌습니다. 이 어찌 생민의 복이 아니겠으며 국가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 ◎ 1521년(중종 16) 10월 23일(신축)

홍문관이 상소하였다.

“예로부터 소인은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제거하기는 더욱 어려워, 비록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임금이라 하더라도 현혹되지 않는 일이 적었습니다. 대개 하는 말도 군자의 말과 유사하고 하는 행동도 군자의 행동과 유사하여, 간사하게 꾸미고 잘못을 어물어물하며 공을 핑계하고 명분을 가장 함으로써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소인인 줄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알지 못하고 군자로 대접하게 됩니다. 뜻을 얻게 되면 동류들을 끌어들이어 서로 결탁하여 널리 당파를 심어 조정에 가득 배치하여, 좌우로 있게 되고 안팎으로 뿌리박게 되면, 권세를 손에 쥐고 용사(用舍)<sup>297)</sup>를 마음대로 하여 세력과 기焰이 치열하므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은 위에 고립하게 되고 국가 사세는 아래에서만 급급하여 장차는 바로 잡을 수 없게 되는 법이니, 이는 나라를 가진 이들의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비록 더러 정상이 이미 드러나 임금이 깊이 그의 간사함을 알아차리고 제거 하려고 하더라도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그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비록 평소와 같은 동류가 아닌 자이면서도 다투어 서로 구출하게 되어, 이 때문에

---

297) 용사: 사람을 씬과 버림

조정안에는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하고 향간에서는 이론이 붕기하여, 움의 싹이 자라나므로 불효 불충하고 환득환실(患得患失)하는 무리들이 그런 속에서 노리다가, 이리다가는 마침내 이 세상에 뜻을 얻지 못하게 되겠다.

여기게 되면 남몰래 무뢰배(無賴輩)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음모하게 된다.

이는 사세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괴이할 것이 없으나, 진실로 요사이의 국가의 큰 근심거리에, 청컨대 신 등이 그 시말을 말하겠사오니, 전하께서 마땅히 더 성찰하고 후회하심으로써 후세를 위해 배려하소서.

지난날에 국운이 불행하여 사람들이 사단을 시작하매, 박상, 김정이 본디 음흉하고 간사한 자들로서 궤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때에 시시비비가 한이 없었으므로 말과 의논이 흥흥하여 달을 넘기고 해를 넘겼었는데, 안당이 형편없는 소인으로서 자신이 전형을 맡아 인물들을 진퇴하되, 조정과 의논하지 않고 말마다 불초한 아들과 사사로이 집에서 인물의 장단을 의논했습니다.

조광조, 김식, 박훈은 모두 안처겸이 평소에 심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비에게 말하여 초직(初職)에 6품을 제수하여, 조종들의 사람 임용하는 공정한 법을 무너뜨렸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단지 광조 등이 시급히 뜻을 얻게 하려 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계획은 광조 등이 뜻을 얻게 되면, 뒷날 자기들을 천거하기를 또한 자기들이 오늘날 광조를 천거 하듯이 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뒷날의 일을 마련하기를 지극히 교묘하고 지극히 간사하게 하였다 하겠으니, 안당 부자의 정상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이미 형성되어 안당이 영수가 되자 군소(群小)들이 뜻을 얻어 서로가 추대하여, 조광조, 김정, 김식, 유운, 이자, 김안국, 최숙생, 김구, 한충, 유인숙, 박세희, 김정국, 신광한, 기준, 정응, 이약빙, 최산두, 이충건, 이희민, 양팽손, 정완, 이청의 무리가 요직을 나누어 차지하여 대간이 되었다가 시종이 되었다가 하면서 충추 기관을 관장하였는데, 봉당끼리만 친히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것이 탐오(貪汚)하면서도 다스림을 빙자하고, 자신은 사정을 쓰면서도 공을 핑계하여 날마다 편당 심기를 일삼았습니다.

만일 자기들과 틀리는 사람이라면 비록 공경 대신으로서 봉공(奉公)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서로 조작하여 얹어대어 있지도 않은 과실을 꾸며 배척하고, 만일 과오를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심술이 바르지 못하다느니 마음속이 은밀하다느니 이 사람은 시비가 일정하지 못하다느니, 거의 모두 파출(罷黜) 시켰습니다.

만일 자기들에게 붙는 사람이라면 학행이 있다느니 성리학을 안다느니 향방을 안다느니 합니다. 이런 뒤로부터 의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져, 광조, 김정, 김식의 집 때문에 거마가 붐비며 밤낮없이 폐로 모여 의논했고, 신용개가 죽은 것을 듣고는 정완의 집에 모여 그 후임자를 의논하되, 김식이 ‘효직(孝直)이 바로 적임자이다.’ 하였는데 효직은 광조의 자이고 광조는 ‘아직 나를 말할 것은 없고, 원충이 직차(職次)가 또한 높으니, 이 사람이라야 한다.’ 했는데 원충은 김정의 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약빙, 기준이 많은 사람들의 좌중에서 드러나게 말하기를 ‘광조는 이조판서에 합당하고, 이자는 병조판서에 합당하고, 문근은 형조판서에 합당하다.’ 하였으며, 심지어 안찬은 서얼(庶孽)인데도 또한 형조정랑에 가합하다고 하여, 조금도 기탄(忌憚)함이 없었습니다.

이때 성균관 동지가 비었는데, 광조와 김정이 함께 경연에 입시 하였다가 광조가 김정이 적임자라고 하자, 김정은 광조가 적임자라 하여, 그야말로 감히 서로 사양하는 체하면서 실지는 자기들을 서로 추어댔고 또 편전에서 광조를 소대할 적에 문근이 입시 했었는데, 광조가 이락(伊洛)<sup>298</sup>의 연원(淵源)을 받은 학문이 있다.’ 했었으니, 이런 말들은 진실로 벼들과의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군부의 앞에서이겠습니까?

그날 광조가 또한 아뢰기를 ‘이런 말은 평상시의 경연에서는 번거로운 것 같기에 아뢰지 않았습시다.’ 했습니다. 무릇 신자가 임금께 진언할 적에 할 말이 공정한 것이라면 공적으로 말하는 법인데, 어찌 아뢰 수 있고 아뢰 수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한마디 말은 요망하고 사특한 태도가 극도에 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가 한 일에 사특하고 간사한 정상이 드러난 것을 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성명(聖明)께서 환히 아시는 바인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그만두지 않음은, 진실로 소인들의 심정과 태도를 한때에 폭로해 놓지 못하면 후세에 시비가 시끄러워져 결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당(奸黨)들의 일이 실패되던 날에 죄악에 대한 징계를 현저하게 보이지 못하여 정도에 어긋났습니다. 그 때문에 비록 큰 간특한 사람들은 제거 되었

---

298) 이락: 이수와 낙수, 송대의 학자 주돈이와 정호 형제가 살던 지역으로, 곧 정주학을 말한다.

지만 가라지 들은 오히려 남아, 의지를 잃고 의구(疑懼)하는 무리들이 여러 날을 복합하며 모두 죄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심한 자는 더러 ‘이 사람들은 적심으로 국가에 보답한 사람이다.’ 고까지 하였으며 아래로 유생들에 이르러서는 대궐 안으로 마구 들어와 머리를 풀고 호곡(呼哭)하였으니, 광조 등이 너무도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현혹시켰음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흥(大興)은 자취를 감추고 가만히 남몰래 커나가지만 오래되면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지금 광조등의 여당 정숙, 안치겸 등이 화란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서 남모르는 잔인한 짓과 한없는 요망한 짓을 하되, 많은 불평하는 무리들을 모아 유인하다 속이다 하여, 올빼미 같은 짓을 하고 맹수 같은 짓을 하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돕고 신명이 도움을 힘입어, 간사한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흉악한 무리들이 모두 현륙(顯戮)<sup>299)</sup>을 받으며, 온 나라 신민들이 기뻐서 어찌 할 줄을 모르니, 이는 바로 국가의 한없는 복이기는 하나, 또한 전하의 한없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수성(修省)하고 경구(驚懼)하는 마음은, 비록 한 가지 재변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하여 계신(戒愼)하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이번의 흉악한 반역 음모는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변괴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이는 바로 전하께서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근본을 바로잡고 시작을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신 등이, 국가의 처지가 잘못된 일을 들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마침 흉악한 반역의 큰 옥사를 만나게 되어 조정이 허둥지둥하고 신자들이 참담 분개하여, 미처 말을 할 틈이 없고 다른 일을 돌볼 수가 없어, 우선 사태가 안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자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어, 각근(恪勤)하게 봉공(奉公)하는 사람이 적고 사삿일을 보려 구차하게 빠져나오는 풍습이 생겨, 선위(宣慰)하러 나간 지 순월(旬月)<sup>300)</sup>이 채 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늙었다고 사면한 재상이 있습니다. 만일 몸이 아프거나 성묘(省墓)를 하거나 휴양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휴가 신청을 들어준 재상을 중히 여기는 일인데, 재상된

299) 현육: 죄인을 죽여 시체를 대중에게 보이는 것

300) 순월: 열흘 또는 한달가량



사람들이 은택을 빙자하고 사정에 끌려 대계 전장(田庄)일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종묘의 제삿날에도 육조의 당상들이 절반이나 병위(兵衛)에 충당되고 반차(班次)의 빈 데가 많았으니 한갓 묘정(廟庭)의 큰 예식에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음을 더없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기강이 평소부터 해이되었기 때문에, 상하의 유대가 엄격하지 못하고 대소의 관원이 기탄없이 방자하여, 심지어 내의(內醫)·습독관(習讀官)이 대궐 안에서 창기(娼妓)를 끼고 떼 지어 술을 마시는데도 마침내 죄를 당하지도 않고, 백사의 장관도 또한 마음대로 뜻하여, 공물 수납과 작지(作紙)<sup>301)</sup> 정수를 정당한 규정보다 과람하게 하면서도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갖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민생들이 더욱 살아갈 수 없으니, 진실로 한스럽습니다.

아, 기강의 해짐이 한결같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전하께서 심상히 여겨 등한히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정령을 내릴 때나 한 가지 일을 시행할 적에도 더욱 합당하게 되도록 중정(中正)을 준수하여 지공한 마음을 넓히고 유구한 도리를 세우셔야 하는데, 요사이의 정령이 물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무릇 형벌과 상은 천하의 공적인 것입니다.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면 일정한 법도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몰래 외국 오랑캐와 내통하여 본국을 속이는 자에게는, 본래 그런 율문이 있는 법인데, 특별히 감등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비록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즉시 도로 율문대로 하시기는 하셨으나, 경상(經常)을 잃게 된 누덕(累德)으로 본다면, 《서경》에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고 한 유가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임금은 상사(賞賜)할 적에 경솔히 시행할 수 없는 법이니, 옛적에 낡은 바지를 간수해 두고 빈소(嗔笑)를 아낀 이<sup>302)</sup>가 있었던 것이 어찌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이 한편에서 듣건대, 전하께서 훈구(勳舊)들에게 상으로 내렸던 밭을 옮겨 종실(宗室), 척완(戚腕)<sup>303)</sup>들 집에 주시되, 그들의 상언(上言)에 의해

301) 작지: 일종의 수수료. 지세 기타의 각종 잡세에 덧붙여 문서 꾸미는 종이 값으로 받는 돈이나 곡식.

302) 한 소후가 낡은 바지를 간수해 두게 하니, 시자(侍者)가 “임금은 역시 불인 합니다. 왜 하사하지 않고 간수합니까?” 하니 소후가 “명주는 한번 찡그리고 한번 웃는 것도 아낀다고 했다. 나는 반드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였다. 《한비자》 내저 설.

303) 척완: 임금의 내외 척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리지 않고 특별히 떼어주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사체로 해아려보면 공(公)은 가볍고 사(私)가 중하게 된 일인데, 어찌 그런 발단을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또 벼와 곡식이 잘 익지 않음이 근년에 더욱 심하여 민생들이 곤궁함이 이같은 때가 없는데, 한 해 동안에 두 번이나 중조(中朝)의 사신[使命]이 왔으니, 영접이나 전송에 쓴 비용과 공급이나 수송에 당한 노고를 이루 말할 수 있었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일으킬 시기가 아닌듯 합니다. 신 등이 삼가 듣건대, 본궁(本宮)을 수리하는 데 백성의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토목 공사의 노고가 전보다 배가 되는데, 이변에 부득이 지공(支供)하는 일이 있는데다가 수리하는 일을 또한 조금도 쉬지 않는다 하니, 신 등은 백성의 힘이 더욱 곤궁하게 될까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번란을 치렀으니 다스리기를 생각하고 위태를 겪었으니 안정을 도모하여, 기강을 진작하여 정돈하고 정사를 바로 잡으시되, 과람하게 내린 명을 거두고 공정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인자한 덕이 한결같이 바른 뜻에서 나오고 조금도 정사의 사이에 사적인 뜻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면, 국가가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 ◎ 1521년(중종 16) 11월 1일(기유)

김억제가 다시 공술하기를,

“신이 거제에 가서 한층을 만난 뒤 남해로 가서 김구를 만나보고 한층에게 말한 일을 말하자, 구가 ‘어찌 그런 불길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기에 신이 드디어 평산포를 건너 전라좌도로 가서 수사 원평조를 만나보고 곡물(穀物)을 구색하여 순천으로 해서 동북으로 갔다가 이어 나주로 가는 길에 최운을 만나 김구에게 말해준 뜻대로 말하니, 운이 ‘어찌 그리 불길한 짓을 하는가?’ 했습니다. 신이 드디어 나주 농사 집으로 가 한 달을 머무르고, 전주 농사 집으로 가 한 달을 머물렀다가 도로 신의 본고장으로 갔는데, 이에 앞서 하정이 ‘구례, 광양 현감을 데리고 전주에서 모이려 한다.’ 했습니다.” 하였다.

#### ◎ 1531년(중종 26) 11월 5일(을묘)

영의정 정광필과 우의정 장순손이 아뢰기를,

“신들이 뻔뻔스레 직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에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옥사(獄舍)가 끝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옥사가 끝났으니, 신들이 직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시종과 대간이 모두 신들을 그르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공론입니다. 비록 그의 깊은 속뜻【이행(李荇)의 깊은 뜻을 말함.】은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같은 말로 아뢰었다가 이제는 도리어 그르다고 합니다. 그가 이른바 ‘사류(士類)를 무함하고 조정에서 일을 꾸민다.’ 한 것은 사죄(死罪)에 해당됩니다. 그보다 낮은 죄에 해당하여 사죄는 면하더라도, 역시 그 죄는 작지 않습니다. 비록 신들의 일이 별 뜻이 없다고는 하지만, 견제를 받아 하였다 해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모르고 하였다 해도 옳지 않습니다. 신들의 인품이 선하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우러르는 지위(地位)에 있는데 이처럼 낮 뜨거운 일을 했으니, 마음이 참으로 편치 못합니다. 이는 다만 한 몸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후세(後世)에 비난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끝내 직에 나아갈 수 없으니, 속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조정에 큰 변이 있으니, 나도 통한(痛恨)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대간과 시종의 논제가 만약 경들에게 관계되었다면 왜 함께 논하지 않고 좌상(左相)【이행을 말함.】만을 지적했겠는가? 이로 보아 경들은 관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저 재상과 사림(士林)은 둘이 아닌 것으로 모두가 사림(士林)인 것이다. 재상은 사림을 마치 자제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잘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칭찬하고, 잘못이 있으면 공평한 마음으로 논변(論辯)해야 조정이 저절로 화평해지고 소인이 감히 그 사이에 이간질하지 못하게 된다. 어찌 재상이 사설(邪說)에 현혹되어 몰래 간사한 모의를 하여 사림을 해쳐 선비의 기개를 꺾으려 하는가. 그런데 이 때문에 조정이 불화하니, 이후부터라도 조정이 화평한 가운데 가부(可否)를 논함으로서 선비의 기개를 부식(扶植)시켜 당당한 조정을 만든다면, 비록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sup>304)</sup> 같은 간인이 있더라도 요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굳게 사직해서야 되겠는가? 이처럼 인심이 안정되지 못할 때에는 나만이 마음을 쓸까 아니라 대신들도 확실한 자세로 사특한 의논을 진정시켜야 한다. 사직하지 말라.”

304) 동탁: 왕망은 중국 전한(前漢) 때 왕위를 찬탈한 역적. 평제(平帝)를 죽이고 신(新)나라를 세웠으나 내치와 외교에 실패하여 15년 만에 멸망하였음. 동탁은 후한 때의 간신. 영제 때 전장군이 되었고 그 후 소제를 폐하고 하태후(何太后)를 시해한 다음 헌제(獻帝)를 세웠는데 그 후 왕윤의 계책에 의하여 여포(呂布)에게 죽었음. 《後漢書》권202 여웅기초.

하였다.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신들의 평생 포부였습니다. 신들이 전일 김정의 당류로서 죄를 입은 자들<sup>305)</sup>은 참으로 범죄한 자들이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순봉과 유인숙 등은 그때 죄를 입은 자가 아니라 곧 나중에 소급하여 논의된 자들입니다. 신들의 뜻은 그들을 비록 대간이나 시종에 제수할 수는 없지만 군현(郡縣)에 쓰는 것이야 무엇이 방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들이 조금이라도 사람을 모함하려는 마음을 지녔으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신들이 김안로의 일을 아뢰는 것은 다만 육경(六卿)에서 체직시키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 뒤에 육조(六曹)에서 아뢰는 뜻에 대해서는 신들은 모릅니다. 다만 홍문관의 차자(劄子)를 보니 ‘어찌 김안로 하나 때문이겠는가? 사람을 모함하여 조정에서 일을 꾸미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직에 나아간다면 이처럼 인심이 포악한 때에 비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정광필은 홀로 아뢰기를,

“9월 10일, 처음 이 일【김안로의 일을 아뢰는 일.】을 의논할 때 신은 동관(同官)들이 모인 다음 의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그 의논을 들었고 아뢴 때에도 신의 입에서 나왔으니, 신이 더욱 직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의 잘못 때문에 정부를 더럽힐 수는 없으니, 이는 다만 신 하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의 체모로 보아도 부당한 일입니다. 밤낮 생각해 보아도 사세가 직에 나아갈 수 없는 형세입니다. 또 신이 조정에 있는 지 이미 오래여서 잘못된 일이 많은데다가 질병까지 있습니다. 전원을 체직시킬 수 없으면 신만이라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답하기를,

“경들에게 사람을 모함할 뜻이 없었다는 것은 상하가 모두 환히 알고 있다. 홍문관 차자는 대체적인 것을 범연히 논한 것이며 육조를 선동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로 보면 경들은 관계되지 않았으니 사직하지 말라. 정순봉과 유인숙 등을 백집사(百執事)에 서용한들 방해될게 뭐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둘러 서용한다면 여론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뜻은 긴요하지 않은 일로 찬축당한 재상이 많다는 것이다. 박광영과 정운점은

---

305) 기묘 사화 때 죄받은 자들을 말함

방면하고, 김구와 박훈<sup>306)</sup> 등은 양이(量移)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의논하려 했으나 꼬투리가 없어 못하고 말았다. 이제 경들이 김정 등의 당류로서 죄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일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일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다. 다른 사람은 그만이지만, 【박세희, 김정, 윤자임, 기준, 한충 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남은 생존자는 김구와 박훈 뿐이다. 방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이하여 너그러운 법을 보이는 게 어떠한가?”

하고, 정광필에게 답하기를,

“경이 비록 다른 사람의 의논에 따라 아뢰었더라도 경의 잘못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유인숙 등의 일은 반드시 서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들이 평소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박광영과 정윤겸은 그들의 죄로 처벌하였으니 당연합니다. 다만 각도의 관찰사가 마문(馬文)<sup>307)</sup>을 만들고 차사원(差使員)을 정하는 일은 전에도 있던 일인데, 함부로 역마를 타고 다른 도로 돌아다니는 것은 관찰사는 모르는 일이요 수령이 스스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박광영과 정윤겸은 방면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김구와 박훈은 무거운 죄를 짓고 귀양을 갔으니, 신들이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양이하여도 괜찮을 듯합니다. 또 상의 분부가 이처럼 정녕하시니, 신들은 물러가 여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심사순의 일을 명백하다 하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이 명백하다고 한 것입니다. 홍우세는 사람들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란스런 꿈으로 해서 관직을 제수했다는 일과 죄인을 찾아가 본 일로 보면, 나랏일을 논한 혐의가 없지 않으니, 죄를 주어도 좋겠습니다. 심정은 흉모(凶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난역죄(暖域罪)로 추고하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합니다. 후세에 역시 정대함을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법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들이 그 사람을 애석하게 여기는

---

306) 이들은 모두 기묘사화 때 주모자로 몰려 죄를 입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주모자로서 이때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이들 둘이었음.

307) 마문: 역마를 이용하게 하는 공문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 적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의견이 이러므로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 하였다,

“박광영과 정윤겸은 방면하고, 김구와 박훈은 양이하라. 심사순과 홍우세의 일은 대간이 금부가 중대한 계기에 관계되는 일을 늦추었으니 추문 하라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미 금부 관리를 추고하였다. 그 후 삼성 교좌(三省交坐)<sup>308)</sup>하여 연일 심사순을 형추(刑推)하고 있기 때문에 홍우세 역시 연일 형추하는 것이다. 그 홍모가 심정의 소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홍우세가 처음에 가서 만났다는 것을 승복 하였지만 만나서 꿈을 빙자하여 조정의 관직을 마음대로 배설(排設)한 것은 숨겼으니, 이것이 홍모이다. 그러나 홍우세와 심사순은 차이가 있으니, 홍우세는 이제부터 형문의 일수를 계산하여 형추하라.”

#### ◎ 1533년(중종 28) 3월 26일(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장순손, 우의정 한효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미 상체(上體)가 강녕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전에 창구가 봉합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전에 비해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별다른 증세는 없고 건강도 평소와 같다. 창구가 침으로써 켜 곳은 이미 아물었으나 저절로 터진 곳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이는 반드시 구멍이 깊어서 새 살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근래 경연과 계복(啓覆), 조하(朝賀), 조참(朝參), 상참(常參)<sup>309)</sup>등의 일을 일체 정지함으로써 여러 신하들을 대하지 못한지가 오래니 매우 미안하다. 이제 정무를 볼 수 있는데, 정무를 보려면 단지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추운 날씨에 내외의 일을 보게 되면 다시 편안치 못할까 걱정된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308) 삼성 교좌: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세 부서가 자리를 함께 하여 죄인을 신문 하는 것

309) 조정 의식의 한 가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중추부, 의빈부, 돈녕부, 육조 한성부의 당산관 및 사헌부, 사간원 관원 한 명. 경연의 당산관, 당하관 각 2명이 매일 윤차(輪次)로 임금 앞에 모여 배례하는 의식. 이때 아뢰 일이 있으면 전에 올라가 아뢰.

“조심하여 조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들이 아뢰려고 한지 오래입니다.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조사들의 녹봉을 나누어 줄 광흥창(廣興倉)의 곡식이 이미 바닥이 났으므로 각사의 잡물을 조금씩 합하여 다음 달의 녹봉을 준비했습니다. 국고가 텅 비었다고 할 만하니 불가불 미리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금년의 기후도 이미 풍년이 들 상이 아니어서 붉은 기운이 하늘에 깔렸으니 이는 또한 가뭄이 들 징조입니다. 만약 다시 흉년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 군과 공주, 옹주의 제택을 사들이기에 이미 거만금이 들었고 영조(營造)하는 데도 군사들을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스스로 역사를 못하고 남을 대신 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의 땃가가 면포(綿布) 80~90필에 이르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고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외방은 이 때문에 더욱 곤궁해져서 도망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택은 영선(營繕)하는 일이 부득이 하여 한 일이지는 하지만 국고가 비고 백성들의 곤폐(困弊)가 이때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으니, 의당 국가의 비용을 줄여 백성이 다 힘을 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사들인 집을 다 영선하지 못한 것은 불가불 다 영선해야 하며, 담장을 다 수리하여 쌓지 못한 것도 불가불 다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들이 그것 때문에 입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집을 사들일 때는 튼튼한 집을 가려 사들여 수리하면 국가에서는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군사들이 자신의 용역을 대역 시키는 값은 한정된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거두는 폐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법사로 하여금 그 법을 거둬 밝히고자 합니다. 또 근년 이래 재변이 겹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5~6년 내에 죄를 입은 사람을 제외한,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은 이미 15년이 지났으므로 살아남은 자가 몇 명 되지 않고, 반정 때 죄를 입은 무지한 사람들도 세월이 매우 오래되어 거의 사망 하였으니 어느 정도 소통시켜도 안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은혜는 위에서부터 나와야지 아래에서 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죄의 경중은 상계서도 아실 것입니다. 만약 경중을 보아 차례대로 은혜를 베풀어 서용하거나 놓아주거나 양이(量移)시키는 것은 모두 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군과 공주, 옹주의 집에 대한 일은 국가에서 억지로 사들인 것이 아니다. 스스로 진상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해조로 하여금 시기에 준하여 사들



이게 한 것이다. 대신이 아뢴 것처럼 튼튼한 집을 진상한다면 수리만 하면 될 것이니 국가에서는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도 폐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진상하는 집은 거의가 낡아서 쓸 수 없는 것이기에 부득이 고쳐 짓게 되어 폐단이 생긴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튼튼한 집을 진상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번 영산군의 집은 그가 자원하여 진상하였지 내가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자녀에게 분급하려 했던 것이기에 나는 그 집이 튼튼한 것으로 수리만 하면 되고 공력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진상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대간이 마침 그 문제를 논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제 만약 튼튼한 집을 진상하는 자가 있다면 고쳐 지을 필요가 뭐있겠는가? 군사들의 대역하는 값은 반드시 정한 액수가 있을 것이니, 법사에서 거듭 밝혀야 한다.

또 지난번에 각도의 죄인을 적간한 계본을 보니 비단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과 폐조(廢朝)<sup>310</sup> 때 폐단을 일으키다 죄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왜금(倭金)【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자기의 황금을 몰래 왜인들에게 주어 거짓으로 왜금이라 속여서 헌납하여 값을 받으려 한 것임.】 때문에 죄를 지은 자도 있었다. 이처럼 죄인들이 많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심이 간악할 때 반역한 죄인을 가볍게 놓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왜금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나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키다 죄를 입은 사람은 본디 모두 무지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이제 놓아 주어도 되겠다.

기묘년에 조광조와 함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비록 한때 잘못을 저질렀으나 역시 모두 불초한 사람들만은 아니다. 비록 대간이나 시종은 삼지 못하더라도 백집사(百執事)에는 제수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서용했더니 말썽을 일으킨다는 여론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 지난번에는 조정이 소란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진정된 듯하지만, 갑자기 서용한다면 그들이 여론에 배척받지 않겠는가? 우선 시일이 더 지난 다음에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가운데 권벌은 조광조와 상관이 없는 줄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 한충은 폐조때 장숙원의 서제(書題)<sup>311</sup>였다. 권탁(權鐸)이 선한 사람을 위해 서계(書啓)할 때 권벌은 승지로서 찬조한 것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조광조의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용하려고 하였는데 대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심지어

310) 연산군을 말함

311) 서제: 서리(書吏)



차자까지 올렸다. 그래서 감히 서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당시 장옥도 다른 일【조광조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일】때문에 죄를 입었는데, 장옥은 이미 서용되었다. 이제 비록 죄를 입었지만 그것도 다른 일【이행이 죄를 입을 때 장옥은 이행의 혼가(婚家)로 죄중에서 말을 만들어 낸 죄임】때문이었다. 그런데 권벌만 유독 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정에 사람이 없어 전조에서 판서를 주의(注擬)하기가 어렵다 하기에 부득이 기간이 가깝고 오래된 것을 헤아려 승급하여 서용한 것이다. 최세절은 정원에 있는 지 이미 오래고 감사와 판서를 지낸 적이 많기 때문에 최세절을 형조판서에 제수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여론이 흡족히 여기지 않고 지금 논박하여 아뢰었다. 권벌을 이제 서용하고자 하지만 크게 서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외직 이라면 한 고을을 제수하고 내직이라면 한 가지 일을 위임하려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경들이 죄인을 놓아 주라는 내용으로 아뢰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낸 것이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아뢴 뜻은 난역(亂逆)죄인을 놓아 주자는 것이 아니며 역시 죄지는 자를 모조리 서용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난역을 저지른 죄인은 오래되었거나 오래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놓아줄 수 없으며 전가사변(全家徙邊)<sup>312)</sup>한 자도 가벼이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상계서 놓아 주시고자 하더라도 신들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아뢴 것입니다. 다만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들과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킨 사람을 더러 서용하기도 하고, 전리로 놓아 보내기도 하고, 양이 시키기도 하면 이것도 소통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시행해야겠기에 아뢴 것입니다.

권벌을 서용하는 일은, 신들도 모두 조정에 있을 때의 일이었으나 대간이 논개 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순봉과 유인숙은 기묘년 후에도 논박을 받지 않고 조정 반열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행이 대사간이 되어 죄를 보태어 아뢰어 파직시켰던 것인데 그때 무슨 일로 논박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유의 사람들로써 아직까지 조정에서 직을 맡고 있는 자가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안국의 일도 그 두 사람과 같은데, 서용 여부는 상계서 권벌의 서용에 대해 하문하시므로 아뢰입니다.”

312) 전가사변: 《대명률》 유형에 준하여 형벌로 죄인의 가족을 함경도나 평안도 등의 국경 지방에 옮겨 살게 하는 것

하니 전교하였다.

“죄를 입은 사람으로 난역에 관계된 자 종사에 관계된 자 전가사변 된 자는 모두 놓아 줄 수 없다. 기묘년에 죄입은 사람을 서용하는 일도 갑자기 말썽의 단서를 열어서는 안된다. 다만 그때 죄를 입은 사람이 거의 다 죽어 없어지고 오직 박훈과 김구만이 사고 없이 살아 있으니, 이들은 놓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권벌을 서용하는 일은, 그가 조광조의 무리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자기의 죄 때문에 처벌받았고, 처벌 받은 지도 오래 되었다. 이제 크게 서용할 수 없으나 외방의 직에는 제수해도 된다.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킨 자와 왜금 때문에 죄를 입은 자들도,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고 있는 때이고 원망에는 대소가 있을 수 없으니 그들 역시 놓아 주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다. 더군다나 권벌, 정순봉, 유인숙, 김안국 등은 기묘년에 죄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죄를 입은 자들이다. 정광필이 이미 기묘년에 죄를 입은 자들을 소통시킬 것을 청하여 아뢰고, 또 권벌 등 4인을 서용하고자 아뢰었으니 그 뜻이 아름답다고 하겠다. 그런데 좌찬성 김근사는 정광필의 말을 그르게 여겨 항상 사람들에게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들을 서용하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하기에 정광필이 이렇게 까지 말한단 말인가.’ 하니 듣는 자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 ◎ 1533년(중종 28) 3월 26일(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이 죄를 입은 사람들을 마땅히 그 죄의 경중을 보아서 놓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원에서는 누구누구가 죄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 경중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킨 자와 왜금 때문에 죄를 입은 사람을 이제 의금부로 하여금 그 죄명을 써서 아뢰게 해야 합니까. 권벌을 서용하는 일과 박훈과 김구를 놓아 주는 일도 승전을 받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이 아뢴 뜻도 역시 범연하게 ‘잡죄인(雜罪人)에 대한 죄의 경중은 위에서 알 것이다.’ 한 것이지,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킨 자와 왜금을 사칭한

사람의 죄의 경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킨 자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때 건의한 대신 역시 추문도 하지 않고 ‘누구는 아무데서 폐단을 일으켰다.’ 하면 그대로 죄를 주었던 것이다.

창졸간에 이렇게 죄를 주었고 의금부도 그 유배처만을 정했던 것이니 어떻게 죄의 경중을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죄명을 써서 아뢰더라도 나 역시 그 경중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누구는 놓아주고 누구는 놓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놓아 주려면 모두 놓아주고 놓아 주지 않으려면 모두 놓아 주지 말아야 한다. 대체로 그들이 죄를 입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놓아 주도록 승전을 받들라.

권벌과 장옥은 각각 다른 일로 죄를 입었는데, 장옥은 이미 서용되었으나 유독 권벌만이 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이 아뢴 끝에 내가 발론한 것이다. 이제 ‘권벌은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의 예가 아니고 경진년에 다른 일로 죄를 입었기 때문에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서용한다.’고 승전을 받들면 그가 조광조의 무리가 아님을 알 것이다. 박훈과 김구 역시 모두 죄를 입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놓아 주어야 한다는 일로 승전을 받들라.”

#### ◎ 1533년(중종 28) 10월 18일(정해)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장순손이 아뢰기를,

“무릇 큰 죄에 대한 일은 반드시 허문한 뒤에 아뢰지만 작은 일은 바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마음에 항상 탄식 스러운 점이 있어 아뢰고 싶어도, 두려운 마음에 감히 아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살리기 좋아함은 성인의 큰 덕이라 상계서도 늘 형옥(刑獄)에 잘못이 있을까 염려 하셔야 됩니다. 유세창은 나이 17세의 무식한 사람으로 자기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모두 사죄에 해당 시켰습니다. 대체로 차라리 죄진 자를 살려 주어 상법을 어기는 것은 그래도 무방한 것인데 상계서 이 뜻을 모르실까 하여 감히 아뢰니다. 김구와 박훈은 동시에 죄를 받았으나 상계서 이미 그들을 방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산두는 그 죄가 김구와 박훈 같지 않은 데도 홀로 방면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이처럼 애매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구와 박훈은 이미 다 방면하였는데 최산두만 방면하지 않은 일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순손이 아뢰기를,

“신은 정사룡이 문장에 능하고 또 하향할 뜻을 가졌으므로 아뢰었습니다. 소세양은, 문신 출신의 중국 사신이 나올 경우에 관반을 반드시 신중하게 가려야 하는데, 한 사람이 사고가 생기면 궁색한 처지에 이를까 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사룡은 논박받고 체직된 지 과연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만약 중국 사신이 나온다면 평소에는 버렸다가 일이 닥쳐서 서용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대신의 말을 옳게 여겨 서용한 것이다. 이제 동반에 서용하도록 명했지만 전조(銓曹)로 하여금 알아두게 한 것일 뿐, 일부러 자리를 비워서 서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순손이 아뢰기를,

“평소에 반드시 그들을 흥기시켜야 합니다. 지난날 황필이 ‘나 같은 사람은 가문의 나막신 같은 꼴이다.’ 했는데 사람에게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서용해야 됩니다. 이희보는 체직 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대간의 말이 타당하지만, 중국 사신은 반드시 한림원에서 선발되어 나올 것으로 원접사 혼자는 상대 할 수 없고 반드시 여럿이 가서 조력해야 합니다. 희보가 제술(製述)은 특출하게 뛰어난지 모르겠으나, 고문을 많이 알아 지난날 부족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조력했기 때문에 아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아뢰기를,

“이희보는 임지가 멀지않고 또 중국 사신이 나오는 시기를 알 수가 없으니 임시해서 체직하여 부르게 하라.”

하였다. 사간 이임이 아뢰기를,

“요즘 재변이 잇따랐는데 혜성(彗星)과 성운(星隕)은 예전에도 드물던 것입니다. 《춘추》에 이변(異變)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별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중하게 보았습니다. 옛일로 보면 별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그 응험이 있었으니, 조정에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아무런 단서가 없이 이렇겠습니까. 환하게 밝은 데에서 허물이 있는가 반성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또한 밤낮으로 깊은 궁궐 남모르는 곳에서도 과감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인심이 사납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쇠미한 시대라도 어찌 지금 같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위를 능멸하고 국법을 업신여겨 심한 경우에는 자제가 그 부형을 능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처벌받은 자는 범죄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도리어 조정을 원수로 여기며, 조금만 탄핵이나 논박을 당하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탄핵하고 논박한 사람을 원망 합니다. 근래 계본을 보니 거자(舉子)가 입문관을 구타했다는데, 입문관은 시관이나 다를것 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도둑이 1백여 년이나 전해 내려온 일영대(日影臺)<sup>313)</sup>를 뜯어 훔쳐갔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국법이 있다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강을 힘써 세우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요즘 재변이 잇따랐고 성변(星變)도 전에 없이 심하다. 비록 어떤 일에 대한 감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어찌 까닭 없이 발생했겠는가. 근래 사간원과 홍문관의 차자에서 말한 것이 타당하다.”

#### ◎ 1538년(중종 33) 4월 12일(을묘)

이조판서 윤인경 등이 기묘년에 죄를 입어 직첩을 환수 당하고 죽은 사람의 명단을 입계하기를,

“이 사람들 중 송호지, 민회현, 방귀온은 그 당시 현량과로 서용되었으나 지금은 현량과의 직첩으로 쓸 수 없으므로 전에 받은 직첩으로 서계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판중추부사 최숙생과 이장곤, 우참찬 이자, 참판 유운, 관찰사 문근수, 지충추부사 김세필, 병사 유용근, 승지 윤자임과 박세희, 부제학 김구, 참의 이성동, 전한 정응, 사인 최산두, 정랑 정완, 이희민, 송호지, 도사 노필, 좌랑 민회현, 현감 안우, 참봉 방귀온, 강년부정 이기, 종남 부수 이창수 등은 모두 직첩을 되돌려주라.”

---

313) 일영대: 해가 뜰 때와 질 때의 그림자를 보아 동서를 판별하던 기구를 받치던 판

◎ 1551년(명종 6) 10월22일(병자)

예조에 전교하였다.

“《소학》은 곧 인륜을 밝히는 책으로서 아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존경하며 임금에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가 갖추어 실려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면 모두 《소학》에 입학하여 쇄소(灑掃)·응대(應對)·진퇴(進退)의 절차와, 예·악·사·어·서·수의 글을 가르쳐서 방심을 수습하고 덕성을 배양하여 《대학》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런데 지난번 기묘인【조광조, 김정, 김식, 기준, 윤자임, 김구 등】이 화를 당한 이후로는 재앙을 부르는 책이라 지목하여 선비들이 즐겨 보려고 아니하니, 자제들만 배우려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부형된 자들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기묘 인이 화를 당한 것은 곧 봉당을 만들어서 과격하게 하였던 소치이지, 이 어찌 《소학》이 그렇게 시켰겠는가? 지금 폐습이 이에 이르고 인심이 바르지 못하여 염치가 없어지고 탐욕과 비루함이 풍습을 이루어서 장차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필시 선비의 학문이 바르지 아니하고 어린이의 양육이 단정하지 못하여 다잡아서 다스리는데 공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유학들로 하여금 먼저 《소학》을 익혀서 성현이 가르치는 법을 알게 하여 후일 덕을 증진시키고 학업을 닦는데 근본이 되게 하고, 그 가르치는 절목(節目)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중외에 효유(曉諭)하라.”



## 자암 기년록

공은 성은 김씨고, 자는 대유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자호는 자암인데, 만년에 남해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호를 율곡병수라 했다. 증조의 이름은 김예몽인데, 예조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문경공이다. 조부의 이름은 김성원인데, 성균관 사예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계문인데, 대홍현감을 지냈고 승정원좌승지에 증직되었다. 현감공이 단성현감 이겸인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공을 낳으니 홍치 원년 무신년(1488년) 9월28일 이었다. 공은 한양 동부 연희방 댁에서 태어났다.

홍치 2년 기유년(1489년)

홍치 3년 경술년(1490년)

홍치 4년 신해년(1491년)

홍치 5년 임자년(1492년)

홍치 6년 계축년(1493년) 나이 6살. 이 해에 〈석류시(石榴詩)〉를 지었다. 공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질이 늑연하여 이미 어른다운 모습을 보였다. 겨울에 머리에 종기가 생겨 머리카락을 깎아냈다. 공을 아끼는 사람들이 찬바람에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해 담비 가죽으로 귀를 가리도록 공에게 주었다. 그러나 감사해하면서 사양하며 말했다. “남의 물건을 허투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고 끝내 받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사람들로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홍치 7년 갑인년(1496년)

홍치 8년 을묘년(1495년) 나이 8살. 이 해에 〈오작교시(烏鵲橋詩)〉를 지었다.

홍치 9년 병진년(1496년)



홍치 10년 정사년(1497년)

홍치 11년 무오년(1498년)

홍치 12년 기미년(1499년)

홍치 13년 경신년(1500년)

홍치 14년 신유년(1501년)

홍치 15년 임술년(1502년)

홍치 16년 계해년(1503년) 나이 16살. 이 해에 <장락궁기<sup>314)</sup>>로써 한성시<sup>315)</sup>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홍치 17년 갑자년(1504년)

홍치 18년 을축년(1505년)

정덕 원년 병인년(1506년)

정덕 2년 정묘년(1507년) 나이 20살. 이 해 9월 초이레에 사마시(司馬試)에 거듭 장원으로 급제했는데 과제는 모두 문집 안에 보인다. 고관(考官)이 생원시권(生員試券)에 대해 “퇴지가 지었고, 희지가 썼다.” 고 평가 했다.

정덕 3년 무진년(1508년)

정덕 4년 기사년(1509년)

정덕 5년 경오년(1510년)

정덕 6년 신미년(1511년)

정덕 7년 임신년(1512년)

정덕 8년 계유년(1513년) 나이 36살. 이 해 춘삼월 한충방별시(韓忠榜別試)에 제2등으로 급제했다. 4월 초이틀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되고, 7월 15일 홍문관정자겸춘추관기사관(弘文館正字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되었다.

---

314) 장락궁(長樂宮): 장락궁은 두 곳이 있다. ①한(漢)나라 때의 궁궐 이름. ②고려시대 평양성 안에 있던 궁전

315) 한성시(漢城試):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실시한 식년생원진사(式年生員進士) 초시(初試)와 식년문과 초시, 감시초시라고도 한다. 식년 바로 전년에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어 시행 한다.

정덕 9년 갑술년(1514년) 나이 27살. 이 해 초여드레 행홍문저작(行弘文著)에 임명되고, 8월 21일 수홍문박사(守弘文博士)에 임명되었다.

정덕 10년 을해년(1515년) 나이 28살. 이 해 2월 16일 수홍문부수찬(守弘文副修撰)에 임명되고, 10월 초나흘 수홍문수찬(守弘文修撰)에 임명되었으며, 승문검교(承文檢校)를 겸직했다. 11월 14일 수이조좌랑(守吏曹佐郎)으로 옮겼다.

정덕 11년 병자년(1516년) 나이 29살. 이 해 7월 17일 사과점승문검교(司果兼承文檢校)로서 수성균전직(守成均典籍)과 지제교(知製敎)에 올랐다. 9월 초사흘 수홍문부교리겸춘추관기주관(守弘文副校理兼春秋館記主官)·승문원교리(承文院郊理)에 임명되었다.

정덕 12년 정축년(1517년) 나이 30살. 이 해 2월 25일 강자(降資)<sup>316)</sup>되고 수홍문수찬겸승문원검교(守弘文修撰兼承文院檢校)에 임명되었다. 6월 29일 강자된 것이 환수되었다. 7월 초여드레 다시 홍문부교리(弘文副校理)에 임명되고, 10월 19일 특가(特加)되고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 더해졌다.

정덕 13년 무인년(1518년) 나이 31살. 이 해 정월 초닷새 수공조정랑(守工曹正郎)에 임명되고, 17일 수예조정랑(守禮曹正郎)에 올랐으며, 19일 수홍문교리(守弘文校理)가 되었다. 5월 16일 수이조정랑(守吏曹正郎)에 임명되었다. 9월 초사흘 수홍문응교겸춘추관편수관(守弘文應敎兼春秋館編修官)·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승문원교감(承文院校勘)에 올랐다. 9월 홍문관전한겸승문참교(弘文館典翰兼承文參校)가 되고, 25일 수사간원사간겸성균사성(守司諫院司諫兼成均司成)에 임명되었다. 11월 17일 수장낙원정(守掌樂院正)·지제교겸성균사성(知製敎兼成均司成)·승문참교(承文參校)에 올랐다.

정덕 14년 기묘년(1519년) 나이 32살. 이 해 3월 초닷새 수홍문관직제학 겸편수관(守弘文館直提學兼編修官)·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성균사성(成均司成)·승문참교(承文參校)에 임명되고, 13일 승문원동부승지겸춘추관수찬관(承文院同副承旨兼春秋館修撰官)에 올랐다. 4월 28일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임명되었다. 6월 23일 우승지(右承旨)에 오르고, 26일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지제교겸경연참찬관(知製敎兼經筵參贊官)·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임명되었다.

316) 강자(降資): 관원의 품계 곧 자급을 근무 태만이나 업무소홀, 낮은 성적 결과 등의 이유로 강등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

정덕 14년 기묘년(1519년) 11월 16일 체포되어 금오(金吾)<sup>317)</sup>에 갇히고, 개령<sup>318)</sup>으로 부쳐되었다가, 12월 17일 남해절도에 유배되었다.

정덕 15년 경진년(1520년) 나이 33살. 남해 유배 중에 가정 5년(1526) 나이 39살 정월 초여드레 부상(父喪)을 당했다.

가정 7년 무자년(1528년) 나이 41살. 11월 14일 또 모상(母喪)을 당했다.

가정 10년 신묘년(1531년) 나이 44살. 이 해 사면을 받아 예산(禮山)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방계<sup>319)</sup>에 따라 임피(臨陂)<sup>320)</sup>로 옮기라는 명령을 들었다. 때문에 몸을 호남으로 돌리면서 가족들은 예산으로 보냈다.

가정 11년 임진년(1532년) 나이 45살. 이 해에 임피에 있었다.

가정 12년 계사년(1532년) 나이 46살. 이 해에 사면을 받아 4월 초순 경에 충남 예산 신암 종경리 고비(考妣)의 묘소에 배례했다. 이날 산소 앞 개울 토교(土橋)에 이르렀을 때 말에서 떨어져 크게 부상을 입었다.

가정 13년 갑오년(1534년) 이 해 직첩(織帖)을 환수받았다.

가정 13년 갑오년(1534년) 11월 16일 나이 47살. 예산 서면(西面) 왕자지(王子池)<sup>321)</sup> 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만력 19년 신묘년(1591년, 선조 24) 공께서 세상을 떠난 지 57년 뒤 이 해 5월 22일, 중종 무인년(1518년) 남곤 등이 입경하여 변무 했을 때 선생이 표를 지어 요청해 비준을 받아 광국원종공(光國原從功) 1등에 오른 사실을 들어 선생에게 가선대부·이조참판·겸홍문관·제학(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동지경연(同知經筵), 의금부(義禁府)와 춘추관(春秋館), 성균관사(成均館事)에 증작(贈爵) 되었다.

---

317) 금오(金吾): 의금부의 별칭

318) 개령: 지금의 경북 김천시

319) 방계: 다른 관서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뢰었을 때나, 임금이 어떤 일에 대하여 신하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또는 임금이 시킨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도록 아뢰는 것

320) 임피: 지금의 전북 군산시 옥구읍

321) 왕자지: 예산 신암 화순옹주 묘 아래 쪽에 있던 연못

# 참고문헌

『광산김씨사온직장공파보』

『기재잡기』

『당적보』

『원교필결』

『명현록』

『기묘명현록』

『국조인물고(상)』

『연려실기술』

『조선왕조실록』

자암집 김영익 역

자암집 임종욱 역

선현실록(광산김씨 사온직장공파) 김철영 역

예산군지편집위원회, 『예산군지』 1987. 912~913

신암면지편찬위원회, 『신암면지』 2008. 314~776

한신대학교 박물관, 『조선전기 명필의 서예』 2011. 92~95

예산문화원 『예산문화원보』 1988. 2~16

광산김씨유적보감 상권. 389

광산김씨사 1권 346~347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오래된 기억 소중한 만남』 16~29



〈 자랑스러운 자암의 후손 〉

김풍익 중령은 자암 김구 선생의 14대 손으로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서 1921년 8월 6일 출생하였다.

1948년 10월 12일 소위로 임관 하였다.

육군 포병학교 교도 대대장으로 복무중이던 김풍익 소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사수하기위해 축석령 방어선에 투입되었다.

적전차가 서울 방향으로 진격하려하자 김풍익 소령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105mm대포로 직접 조준사격하여 적 전차를 파괴후 전사하였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산화한 그에게 그해 8월 육군 중령에, 12월에 을지 · 충무 무공훈장이 추서되었으며 대한민국 포병의 군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묵향의 향기가 그윽한 문화 예술의 고장  
 충남 예산군 신암면을 방문 하시면  
 신암면 종경리 신암농협 후, 좌향에 있는  
 자암 선생의 묘소를 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암 선생의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암기념사업회 회장 김 충 희



## 편찬위원회

---

|     |       |                   |
|-----|-------|-------------------|
| 위원장 | 김 시 운 | (예산문화원장)          |
| 위 원 | 김 종 옥 | (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 |
| 위 원 | 박 병 하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 위 원 | 신 익 선 | (충청남도 문인협회장)      |
| 위 원 | 정 낙 신 | (예산문화원 이사)        |
| 위 원 | 박 복 규 | (예산문화원 이사)        |
| 위 원 | 김 도 회 | (예산문화원 이사)        |
| 위 원 | 전 용 국 | (예산문화원 자문위원)      |
| 위 원 | 송 재 철 | (예산문화원 자문위원)      |

---



북향의 분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

비매품



9 788996 822394  
ISBN 978-89-968223-9-4